발간등록번호
11-1543145-000033-10

공익직불제

종합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내사항

- 본 공익직불제 종합지침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공익직불제도 관련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자 담당 공무원과 농업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교육용 자료' 입니다.
- 본 지침서에 수록된 내용, 사례와 질의응답 등은 교육 대상자가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본 지침서에 인용 또는 참고한 모든 자료는 출처를 밝히고자 노력하였으나, 잘못 표기되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054-429-4116

contents

종합지침서

활용 가이드

Ⅰ 공익직불제 종합지침서 개발 배경 및 활용 목적 6
Ⅱ 각 학습 내용별 구조 7
Ⅲ 핵심내용 요약 9

제1장

공익직불제와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

Ⅰ 공익직불제 31
1. 공익직불제란 31
2. 농업부분에 대한 직접지불제 의미의 변화 32
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가치 33
1.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기능 33
2. 공익기능의 가치 36
3. 국제사회의 공익기능과 가치 중시 농정 동향 38
4. 국내의 공익기능과 가치 중시 농정 동향 43
참고 참고문헌 49

제2장

공익직불제의 이해

Ⅰ 공익직불제 개편 배경과 추진경과 55
1. 공익직불제 개편 배경 55
2. 공익직불제 추진 경과 57
Ⅱ 공익직불제 개편 방향 61
1. 공익직불제 개편 기본 방향 61
2. 개편 기본 구조 62

제3장

기본형 공익직불제

Ⅰ 기본형 공익직불제 67
1. 기본형 공익직불제 구조 67
Ⅱ 기본직불금 대상 농지 및 대상농업인 68
1. 대상 농지 68
2. 대상 농업인 70
Ⅲ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 75
1. 소규모 농가란 75
2. 지급요건 75
3. 지급 단가(금액) 77
Ⅳ 면적직접지불금(면적직불금) 79
1. 지급요건 79
2. 지급구분과 구간별 기준면적 79
3. 지급단가 80
4. 지급금액 81
5. 지급상한 82
Ⅴ 재배면적 조정의무 83
1. 재배면적 조정의무란? 83
2. 재배면적 조정 계획 수립 방안 83
Ⅵ 농업인 준수사항 84
1. 주요 내용 84
2. 준수사항 이행점검 86
3. 농업인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감액방법과 기준 87
4. 준수사항 세부 내용 93
Ⅶ 사업추진 체계 156
1.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 157
2. 신청·접수 준비 158
3.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단계 159
4. 신청내용 조사 및 등록증 교부 170
5.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등록사항 변경) 173
6. 각 기관별 준수사항 이행점검 절차 177
7.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180
8. 사후관리(사업추진 상황점검) 181
참고 관련 서식 182

제4장 선택형 공익직불제

Ⅰ 선택형 공익직불제 261
1. 선택형 공익직불제 구조 261
Ⅱ 친환경농업직불제 263
1. 친환경농업직불제 263
2. 지원대상 263
3. 지원자격 및 요건 265
4. 지원형태 및 지급단가 265
5. 지원한도 266
6. 사업추진체계 267
참고 관련 서식 272
Ⅲ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278
1.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278
2. 지원대상 279
3. 지원자격 및 요건 280
4. 지원기준 및 지급기간 산출방법 280
5. 지원형태 및 지급단가 28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281
7. 사업추진체계 282
참고 관련 서식 286
Ⅳ 경관보전직불제 290
1. 경관보전직불제 290
2. 지원대상 291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294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294
5. 사업추진체계 295
참고 관련 서식 305
Ⅴ 논활용 직불제 326
1. 논활용 직불제 326
2. 지원대상 327
3. 지급요건 329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33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330
6. 사업추진 체계 331
참고 관련 서식 346

제5장 부정수급

Ⅰ 부정수급의 범위 369
Ⅱ 부정수급 사례 370
1. 재촌지주, 부재지주의 부당수령 370
2. 분리등록 371
3. 관행적(고의) 신청 371
Ⅲ 부정수급 방지 대책 372
1. 실경작 확인 프로세스 보완 372
2. 감독·제재·벌칙 강화 373
3. 직불금 수령자 정보 공개 확대 374
4. 명예감시원제 도입 374
5. 신고포상금제 및 부정수급 신고센터 활성화 375
6. 특별사법경찰관리 도입 376
Ⅳ 부정수급자 처리절차 377

부록1 질의응답

1 개요 382
2 대상농지 383
3 대상 농업인 391
4 구비서류 404
5 지급 금액 406
6 이행점검 408
7 부정수급 410
8 기타 사항 412

부록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종합지침서 활용 가이드

Ⅰ 공익직불제 종합지침서 개발 배경 및 활용 목적
Ⅱ 각 학습 내용별 구조
Ⅱ 핵심내용 요약

Ⅰ 공익직불제 종합지침서 개발 배경 및 활용 목적

① 공익직불제 종합지침서 개발 배경

공익직불제 시행 표준 지침을 제시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편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② 공익직불제 종합지침서 활용 목적

2.1 활용 대상

- 공익직불제 시행 관련 공무원(공직자),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업무 담당자 및 공익직불제 시행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과 대국민

2.2 활용 목적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및 가치를 이해하고 농업인의 공익적 역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공익직불제의 기본 개념과 제도 시행 시 필요한 주요 내용을 학습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에 참고할 수 있다. 다양한 사례와 참고할 수 있는 도구들을 통해 쉽고 친숙하게 직불제 제도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 공익직불제 관련 문제 발생 시 지침서를 참고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③ 공익직불제 관련 자료 확인 사이트

- https://www.mafra.go.kr(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정책홍보 〉 공익직불제
- 위 사이트에서는 본 공익직불제 종합지침서와 관련 교육컨텐츠(영상, PPT, 리플릿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각 학습 내용별 구조

① 전체 종합구조

INTRO	BODY	OUTRO
'알아봅시다'를 통해 해당 장의 학습 목표 정리	공익직불제의 기본 개념과 제도 시행 시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함축하여 정리하였으며, 사례 알아보기, 용어설명, 심화 학습 등 다양한 자기주도학습용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을 지원	관련 서식, 법령, 참고문헌 정리

② 종합지침서 자기주도형 학습 도구 활용

① 사례 살펴보기 : 핵심내용 이해 촉진을 위해 관련 예시 및 사례를 제시

사례 살펴보기 지급대상 농지 대상여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하게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아온 A씨, 하지만 최근 3년간('17년~'19년)은 깜빡하고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기본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인가?

➜ 기본직불금은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이력이 있어야 하므로, A씨는 기본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② 용어 설명 : 추가 설명이 필요한 용어의 경우 각주를 통해 별도 정리

- 농업·농촌이 수행하고 있는 공익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집단에 비해 약 18.3% 더 높은 지불의사액[1]을 표시

1)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
소비자 또는 고객이 한 단위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가격

③ 관련 법령/시행령/시행규칙 : 핵심내용과 연계하여 필요한 관련 법령의 색인 가이드를 제공



지급대상 제외 농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①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 단,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의 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④ 관련 서식 : 핵심내용과 연계하여 필요한 관련 서식의 색인 가이드를 제공



⑤ 심화 학습 : 추가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제공

심화학습

Q 왜 대상농지를 이전 직불금 수령 이력이 있는 농지로 제한했을까요?

A 대상농지의 급격한 확대를 방지하여 재정규모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직불금 신청·지급 관련 현장 혼란 최소화 및 제도의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Ⅲ 핵심내용 요약

종합지침서의 내용을 각 장별 핵심내용으로 요약하여 제공하였다. 핵심내용 요약을 확인한 뒤,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학습이 필요한 경우 페이지 가이드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유도하였다.

제1장

공익직불제와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

Ⅰ 공익직불제

1. 공익직불제란 p.31

가.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

- 공익직불제의 법적근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나. 공익직불제의 정의

-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2. 농업부분에 대한 직접지불제 의미의 변화

- 농가경영위험 관리 →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보상

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가치

1.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기능 p.33

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촌과 농업활동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이외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미비한 비상품 생산물이 발생시키는 기능

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다원적 기능을 발생시키는 비상품 생산물 중에서 법적인 규제가 없으면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기능

2. 공익기능의 가치 ····· p.36

가. 공익기능의 가치란

나. 공익기능의 가치 추정액

-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27조 9천억원(2016년 불변가치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3. 국제사회의 공익기능과 가치 중시 농정 동향 ····· p.38

가. 세계 농정 패러다임과 전환 필요성

- 경제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화

나. 주요 선진국의 공익기능과 가치 중시 농정

- 미국, EU, 스위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농업생산 활동으로 창출되는 토양, 수자원 등 환경보전, 생물다양성유지, 경관 및 문화보전 등 다양한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익직불제 혹은 공익형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농업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 및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

4. 국내의 공익기능과 가치 중시 농정 동향 ····· p.43

가. 기존 직불제 도입배경

- 우리나라의 직불제 정책은 WTO 체제 출범 이후 농가소득 지원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직접지불제를 확대 도입
  -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 1999년 친환경농업직불제, 2004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FTA피해보전/폐업지원직불제, 2005년 쌀소득보전(고정,변동)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2009년 친환경축산직불제, 2012년 밭농업직불제 도입

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

-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다원적·공익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농업·농촌이 수행하고 있는 공익기능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높일 수 있음이 확인됨

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가치 확산된 미래모습

- “공익직불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환경, 생태, 경관, 문화 등의 보전 및 유지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공익기능제고와 가치 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임

제2장

공익직불제의 이해

Ⅰ 공익직불제

1. 공익직불제 개편 배경 p.55

가. 기존 직불제의 성과 및 한계

-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보전을 위해 쌀직불금 등 기존 직불제를 도입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규모화, 생산구조 효율화에 기여하였으나 다음의 한계 발생
  [한계1] 쌀 공급 과잉
  [한계2] 쌀 이외 타작물 재배 및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 기능 미흡
  [한계3]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요구수준 미충족
  [한계4] 직불금 지급 한계치 도달에 따른 증액 불가능

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필요성 확대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제고한다는 현 정부의 농정방향에 따라 기존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확대·개편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발생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가

2. 공익직불제 추진 경과 p.57

가. 2015년~16년 : 농업 직불제 한계 지적 및 제도 개선 요구 확대
나. 2016년~18년 :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 마련
다. 2018년~19년 : 개편 세부사항 논의
라. 2019년 : 공익직불제 추진 근거 마련
마. 2020년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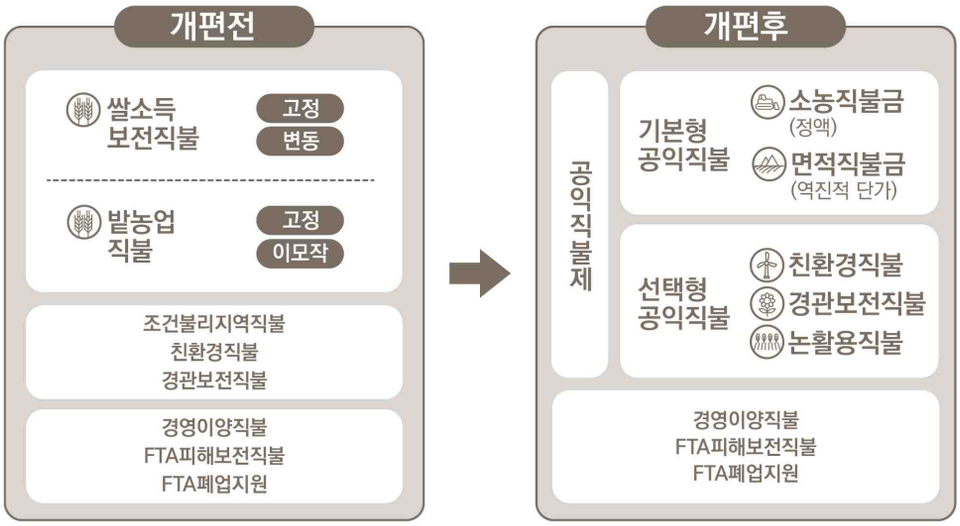
Ⅱ 공익직불제 개편 방향

1. 공익직불제 개편 기본 방향 p.61

가. 쌀 편중 및 쌀 생산연계 문제 해소를 위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 지급
나.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다.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강화
라. WTO 허용보조(Green Box)로의 변화를 통해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

2. 개편 기본 구조

p.63


개편전
쌀소득 보전직불
고정
변동
밭농업 직불
고정
이모작
조건불리지역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개편후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
소농직불금
(정액)
면적직불금
(역진적 단가)
선택형 공익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제3장

기본형 공익직불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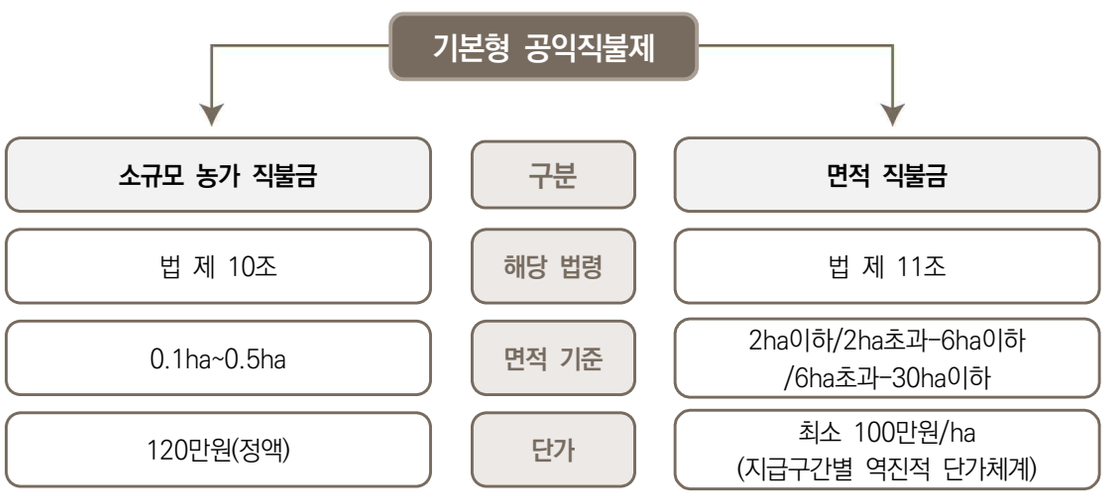
Ⅰ 기본형 공익직불제

1. 기본형 공익직불제 구조 p.67

가. 공익직불제 개편 전 직불제와의 비교

-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제(고정), 밭농업직불제(고정), 조건불리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

나. 기본형 공익직불제 구조



Ⅱ 기본직불금 대상 농지 및 대상농업인

1. 대상 농지 p.68

가. 대상 농지 조건

- '17~19'년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등
- (쌀직불) '98~'00년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나. 대상 농지 주요 특징

-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현행 쌀고정직불·밭고정직불·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를 유지
- 단, 개편에 따른 대상농지의 급증 및 재정규모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대상농지에 '과거 직불금 수급실적' 요건 적용

다. 지급대상 제외 농지

①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 단,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가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②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③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

④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

* 다만, 2016.1.21.이전에 형질변경으로 농지로 인정받아 지원받던 임야는 지속 지원

⑤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

⑥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농지

⑦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내 농지

⑧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⑨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⑩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농지 등

2. 대상 농업인 p.70

가. 대상 농업인 조건

- 기존 직불금 수령자 : '16~'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신규 직불금 수령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업육성대상자
  : 직불신청일부터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1000㎡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나. 대상 농업인 주요 특징

-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현행 쌀고정직불·밭고정직불·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업인과 기본적으로 동일

다. 지급대상 제외 농업인

①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②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휴경면적은 면적 산정시 제외)

③ 직전연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자

* 다만, 정당한 사유로 농지를 분할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자에 포함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등록신청 또는 수령한 자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직불금 등록신청 또는 수령한 자

⑥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⑦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⑧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Ⅲ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

1. 소규모 농가란 p.75

- 소규모 농가의 범위 :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

2. 지급요건 p.75

① 농지 경작면적 : 0.1~0.5ha이하
② 농지 소유면적(농가) : 1.55ha미만
③ 농촌지역 거주기간 :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
④ 영농 종사기간 :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
⑤ 농업외 종합소득금액(개인) : 등록신청 전년도에 2,000만원 미만
⑥ 농업외 종합소득금액(가구) : 4,500만원 미만
⑦ 기타 소득금액 : (축산업)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3,800만원 미만

- 위 사항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

3. 지급 단가(금액) p.77

- 120만원(면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

Ⅳ 면적직접지불금(면적직불금)

1. 지급요건 p.79

-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대상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고,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할 경우 지급

2. 지급구분과 구간별 기준면적 p.79

- 기준면적 구간별(2ha이하, 2초과~6이하, 6초과~30이하)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3. 지급단가 p.80

구간 / 단계	면적직불금(만원/ha)		
	2ha이하 (1구간)	2초과~6ha이하 (2구간)	6초과~30ha이하 (3구간)
논·밭 진흥지역(a)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b)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c)	134	117	100

* 30ha를 초과하는 면적의 단가는 마지막 구간(6초과~30ha이하)의 단가를 적용

4. 지급금액 p.81

- 면적직불금 산출식 : 지급금액 = X + Y + Z
  ① 논·밭 진흥지역 면적(a)에 지급할 금액 X = Σ (해당 구간별 면적 × 해당 구간별 단가)
  ② 논 비진흥지역 면적(b)에 지급할 금액 Y = Σ (해당 구간별 면적 × 해당 구간별 단가)
  ③ 밭 비진흥지역 면적(c)에 지급할 금액 Z = Σ (해당 구간별 면적 × 해당 구간별 단가)

5. 지급상한 p.82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Ⅴ 재배면적 조정의무

1. 재배면적 조정의무란? p.83

- 수급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본직불금 신청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

2. 재배면적 조정 계획 수립 방안 p.83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하여 조정의무 부과 작목 및 면적 등을 포함한 재배면적 조정 계획 수립

Ⅵ 농업인 준수사항

1. 주요 내용 p.84

- 기본직불금(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17개 의무
-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먹거리안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영농활동 준수 등 5개 분야 17개 의무(세부 평가단위) 도입

분야	준수사항(평가단위 수)	기대효과
환경 보호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물과 땅의 건강 회복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생태계 보전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농촌 공동체 활성화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먹거리 안전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안전·안심 먹거리 공급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영농활동 준수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경영체 역량 강화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2. 준수사항 이행점검 p.86

- 점검기관 : 농관원, 지자체, 농진청 등
- 조사방법 : 현지조사 원칙으로 필요 시 서류조사 병행
- 조사대상 : 표본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기법 활용
- 표본 수 : 의무별로 현지조사 표본의 적정 비중
- 타부처 소관법에 따른 의무 : 타부처 소관법에 따른 의무 위반사항 파악을 위한 협업·통보 체계 마련, 직불금 관리 시스템과 연계
- 점검 시기(적용 기간) : 해당년도 직불금 지급 시 지난해 10월부터 해당년도 9월까지 실시한 이행점검 결과를 지급액에 반영
- 이행점검 결과입력 또는 결과전송 : 매년 10.31일까지 지자체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입력하여 전송, 익년 1.20일까지 이행점검 결과 및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에 보고

3. 농업인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감액방법과 기준 p.87

가.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감액방법

-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 총 감액(지급제한) 비율 : **등록연도 기준 최대 100%까지**
  - **복수위반** : 지급제한 적용단위 기준 2가지 이상의 준수사항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을 합산**하여 적용
  - **반복위반** : 전년도와 동일한 유형의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2회 반복시 20%, 3회 반복 이후 40% 감액 적용**
  - **가중, 감경기준** : 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제한 기준의 1/2범위에서 가중, 감경 적용 가능
- **예외 적용**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경우 미이행한 농지 등 부분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은 농지 등에 대한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현장의 이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행 초기에 완화된 의무 및 감액 수준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함

4. 준수사항 세부 내용

가. 환경보호

1)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p.93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을 준수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비료량 기준」을 준수할 것

2) 비료 적정 보관·관리 p.102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를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

3)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p.103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하고, 동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지 아니하고 액비 살포기준을 지킬 것

4)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p.106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농약 및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유출·방치하지 않을 것

5)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p.108

-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하천수 이용시 허가 등을 받고, 동 법 제52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6)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p.110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시 허가 등을 받고, 동 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나. 생태계 보전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p.113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② 다음의 활동 실시

-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휴경을 하더라도 1농지형상 유지 4 교육이수 5 경영체 정보변경 6공익 증진활동 7 법상 의무 준수 등을 지켜야 함
-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2)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p.117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동 법 제24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3)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p.120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 및 그 주변에 규제병해충,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할 것

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1)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p.123

- 마을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치회(마을이장 포함 3~5인, 경작사실심사위원회가 수행 가능)를 구성하여 공동활동하고 활동결과를 해당 마을(자치회)에서 보관
- 농관원이 이행점검 등 필요시 마을(자치회)에 공동활동 결과를 요청하면 해당 마을(자치회)은 관련 자료를 농관원에 제출
-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또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과 관련한 마을 공동활동*에 참여할 것

  * (1) 마을 주변 영농·생활폐기물 공동 수거·처리 (2) 마을공동공간 청소·정비·경관개선 (3) 생태교란 식물 제거 (4) 농경문화의 계승을 위한 공동체 활동 (5) 지자체, 마을 자율조직 등이 운영·개최하는 마을축제, 농업기술교육, 문화활동 등 공동행사

- '20년과 '21년에는 총 활동시간이 연 8시간 이상, '22년과 '23년에는 연 12시간 이상, '24년 이후로는 연 2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p.126

- 영농폐기물을 임의로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 등에 보관하여 농지등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할 것
-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을 농지에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않을 것

라. 먹거리 안전

1)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p.129

-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국내 미등록 농약(밀수농약), 등록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난 농약(폐기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잔류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2)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p.138

- 이산화황 등 기타 유해물질의 임의사용으로 인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p.143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출하연기, 폐기 등의 출하제한 명령을 준수할 것

마. 영농활동 준수

1)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p.146

- 영농활동과 관련된 (1) 필지별 종자(종묘)·농약·비료 구매내역, 사용내역 등(영수증 포함) (2) 필지별 경운 일자 (3) 수확·판매 등 기타 영농활동 등을 재배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할 것
- 농관원 등 관계기관에서 기본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적합 발생시 농약·비료 구매·사용기록을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시 협조할 것

  * 작성방법 : 수기 또는 온라인 기록, 단, '20년에는 농자재구입 영수증 보관 시 인정

2)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p.149

- 농업인은 매년 직불금을 지급받기 전(9.30)까지 농관원, 지자체, 농진청 등이 주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관련 교육을 2시간 이수할 것

  * 교육내용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공익직불제 운영 및 공익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등의 준수사항 등

3)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p.152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할 것

  * (1) 농업인 또는 법인의 성명(명칭), 주소 (2) 농지에 대한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재배품목, 시설현황

Ⅶ 사업추진 체계

p.156

업무 흐름	시기	주요내용
① 경영체 변경등록	2-4월	•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농업인등) - 농관원(지원·사무소) * 시군, 읍·면·동 협조
② 신청·접수 전	4월	• 기본직접지불제 시행지침(안) 시달 • 사업설명·홍보, 신청·접수 일정 공고
③ 직불금 신청·등록	5-6월	• 사업신청서 배부(읍면동) - 경영체 정보를 토대로 신청서 배부 • 등록신청서 제출(농업인등)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③ 신청자 정보 공개	6-9월	• 농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읍면동(마을) 게시판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④ 신청내용 조사 (서면·현지) - 등록증 교부	7월	• 대상농지·농업인 여부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경우 경작사실 조사(읍·면·동) • 등록증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 확정, 읍·면·동에서 출력·발급 * 등록 제외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⑤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 등록내용 변경신청(신고)	7-9월	• 지급요건 검증(농식품부, 지자체 등) * 농외소득, 토지대장, 주민정보, 중복신청, 농지전용 등 • 검증 결과 통보 : 소농직불 대상 여부 등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준수사항 등 이행 점검(농관원 등) → 확인조사 결과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 (필수점검)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 신규·관외 신청자, 팜맵·경영체정보 불일치, 전년대비 신청면적이 많은 경우 등 • 등록 내용에 대한 의견제출 및 수정(읍·면·동)
⑥ 직불금 지급	11-12월	• 지급대상자·면적·금액 요청(시·군·구→시·도→농식품부) • 통장계좌입금(시·군·구→지급대상자) •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⑦ 사후관리	연중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644-8778) 및 시·군 신고센터 •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제4장

선택형 공익직불제

Ⅰ 선택형 공익직불제

1. 선택형 공익직불제 구조 p.261

-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를 포함
  - 밭직불제의 논이모작은 논활용직불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하고 식량자급률의 증진뿐만 아니라 품목별 수급안정 등까지 그 목적에 포함하여 운영

Ⅱ 친환경농업직불제

1. 친환경농업직불제 p.263

가. 사업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나. 주요 내용

-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

2. 지원대상 p.263

가. 지원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나. 지원대상 농산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산물 및 무농약농산물

다. 지원대상 농지

- 2020년 사업기간(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3. 지원자격 및 요건 p.265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4. 지원형태 및 지급단가 p.265

인증단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5. 지원한도 p.266

가. 지급한도 면적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0.1~5.0ha

나. 지급한도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6. 사업추진체계 p.267

Ⅲ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1.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p.278

가. 사업 목적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나. 주요 내용

- 친환경축산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안전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금을 지급

2. 지원대상 p.279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3. 지원자격 및 요건 p.280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4. 지원기준 및 지급기간 산출방법 p.280

- 지원기준: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 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

5. 지원형태 및 지급단가 p.280

구분	지급 단가	비고
한 우	유기 170,000원/마리	* 육우는 한우 지급단가 보다 50% 감액 지급
젖 소(우유)	유기 50원/L	* 우유 1L는 1.03kg임
돼 지	유기 16,000원/마리	
산란계(계란)	유기 10원/개	*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 가능 산식:{(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입증량 × 단가)} × 0.5
육 계	유기 200원/마리	* 토종닭은 육계 지급단가 보다 30% 증액 지급
오 리	유기 400원/마리	
오리알	유기 20원/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p.281

-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3천만원

7. 사업추진체계 p.282

Ⅳ 경관보전직불제

1. 경관보전직불제 p.290

가. 사업 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주요 내용

- 농촌과 준농촌 지역에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

2. 지원대상 p.291

가. 지원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나. 지원대상 농지등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중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등으로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토지로 사업신청일부터 이행여부 확인·점검시까지 경관작물의 재배·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 (농지)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초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이상 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 이어야 함.(준경관초지의 경우 집단화 최소면적 미적용)

다. 지원대상 작물

- 지원대상 작물은 초화류로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

지목	농지		초지
작물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준경관초지
대상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경관, 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p.294

가.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 45만원/ha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p.294

- 농업인은 30만 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50만 제곱미터

5. 사업추진체계 p.295

Ⅴ 논활용 직불제

1. 논활용 직불제 p.326

가. 사업 목적

-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나. 주요 내용

- 식량자급률의 증진, 쌀 과잉문제 대응 등을 위하여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논활용직접지불금(이하 “논활용직불금”이라 한다)을 지급

2. 지원대상 p.327

가. 지급대상 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 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 밭농업(논이모작): 논에서 보리, 밀, 콩 등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에 이용되는 논

  - 종전의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

나. 지급대상자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2 승계자

다. 지급대상 품목

-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 및 시설 면적 제외)

①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②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료작물 및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옥수수, 수단그라스, 호맥, 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Birds foot trefoil(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Tall fescue(톨페스큐), 티모시, Perennial rye grass(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Redtop(레드톱), Reed canarygrass(리이드 케너리그라스), Meadow fescue(메도우페스큐), Bromgrass(브롬그라스) 등

3. 지급요건 p.329

-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면서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에 지급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p.330

- 지급단가 : 1ha 당 50만원 (㎡당 50원)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농지면적(㎡)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p.330

- 농업인 : 30ha (300,000㎡)
- 농업법인 : 50ha (500,000㎡)
-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 400ha (4,000,000㎡)

6. 사업추진 체계 p.331

제5장

부정수급

Ⅰ 부정수급의 범위 p.369

-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불금의 전부를 미지급, 환수. 기본직불 등록자가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

Ⅱ 부정수급 사례 p.370

1. 재촌지주, 부재지주의 부당수령

-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 소유주가 양도세 감면, 농업인 지위 유지 목적 등으로 직불금 부당 수령

2. 분리등록

- 보다 많은 직불금 수령을 위한 농지 또는 농가의 분리등록(농지 분할, 농가 분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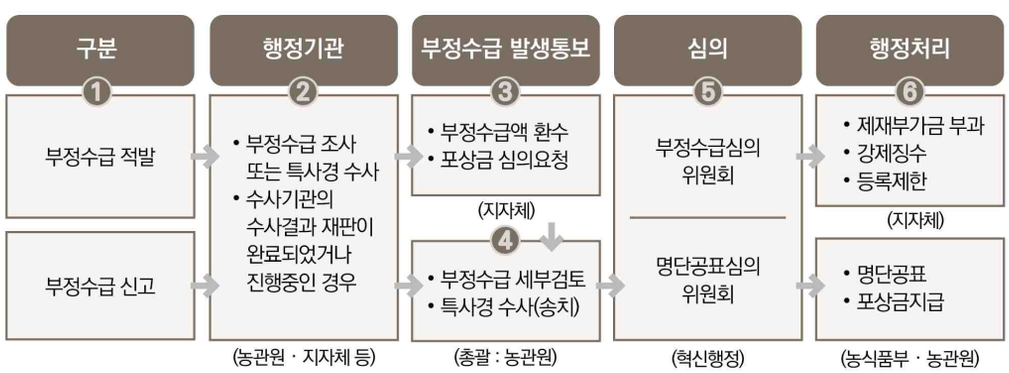
3. 관행적(고의) 신청

- 부정신청 하여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행적·고의적인 신청

Ⅲ 부정수급 방지 대책 p.372

- 비농업인의 부정수급 증가에 대한 농업인 우려를 감안하여 신청, 이행점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지제도 개선 추진
  1. 실경작 확인 프로세스 보완
  2. 감독·제재·벌칙 강화
  3. 직불금 수령자 정보 공개 확대
  4. 명예감시원제 도입
  5. 신고포상금제 및 부정수급 신고센터 활성화
  6. 특별사법경찰관리 도입

Ⅳ 부정수급자 처리절차 p.377



제1장
공익직불제와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

Ⅰ 공익직불제
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가치

제1장
알아봅시다

- 공익직불제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농업인의 공익기능 증진을 지원할 수 있다.



Ⅰ 공익직불제

① 공익직불제란

가.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

- 공익직불제의 법적근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6858호, 2019. 12. 31., 전부개정]

(명칭 및 목적 등)

① (명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

② (목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와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공익증진 기능 강조(제1조)

③ (시책 및 기본계획) 공익직접지불제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제3조), 관계행정기관 협의, 국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제4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구성 및 대상)

① (구성)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소농, 면적))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친환경농업, 친환경안전축산물, 경관보전 등)로 구분(제5조)

② (적용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과 농지등을 대상으로 규정(제6조)

나. 공익직불제의 정의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공익직불제란 농업생산자와 농촌주민들이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재정을 통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경제이론적으로는 농업활동과 함께 결합적으로 생산되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익기능 제공에 대한 보상 성격

- 공익직불제는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는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공익기능과 이에 대한 공익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농정으로의 전환을 의미

② 농업부분에 대한 직접지불제 의미의 변화 : 농가경영위험 관리 →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보상

○ 농업부문에 대한 직접지불제는 1995년 WTO 출범이후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추세 속에서 미국, EU, 스위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농가경영위험 관리차원의 주요 농정수단으로 자리잡아왔으며, **최근에는 농업과 농촌유지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공익기능에 대한 기여를 보상(Remuneration)하는 측면을 강조하며 진화**

• 즉 선진국들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환경 및 자연보호, 생태 및 경관보전, 전통문화 계승, 농촌 활력 및 지역균형 발전 등 농업과 농촌이 유지됨으로써 창출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보상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활용

- 미국, EU, 스위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농업의 본원적 기능인 국민들에 대한 식량공급 이외에 농업과 농촌이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연관되며 창출하는 다양한 공익기능 유지와 가치 확산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농정의 핵심수단으로 활용

- **농업의 다양한 공익기능과 가치 확산을 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정책성과와 함께 이러한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는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소득보전이라는 효과를 보기 위한 목적**

○ 우리나라의 경우도 WTO 체제 출범 이후 본격화된 농산물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에 대응하여 농가의 소득안정과 함께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직불제를 시행해 왔으나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

○ 하지만 다행히도 2019년 12월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이 바라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기존의 농업직불제를 공익형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공익형 직불제 농정으로의 전환을 공식화

• **기존의 농업직불제를 공익형으로 전환함은 지금까지 쌀 중심·대농 편중의 농업직불제의 한계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

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가치

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기능

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촌과 농업활동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이외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미비한 비상품 생산물[1]이 발생시키는 기능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농업생산과 함께 식량안보,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수자원 보호, 토양 유실과 홍수방지, 생태계 보전, 농촌의 전통문화 보전 등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

표 1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관련 국제사회 논의 내용

구 분	기 능	
WTO	① 환경보전 ② 식량안보 ③ 농촌개발	
OECD	① 경관보전 ② 종·생태계다양성 유지 ③ 토양의 질 보전 ④ 수질보전 ⑤ 대기의 질 보전 ⑥ 수자원의 효과적 이용 ⑦ 경지보전 ⑧ 온실효과예방 ⑨ 농촌활력 유지 ⑩ 식량안보/식품안전 ⑪ 문화유산 보호 ⑫ 동물복지	
FAO	사회적 기능 (Social function)	① 도시화 완화 ② 농촌공동체 활력 ③ 피난처/휴양처 기능
	문화적 기능 (Cultual function)	④ 전통문화계승 ⑤ 경관제공
	환경적 기능 (Environmental function)	⑥ 홍수방지 ⑦ 수자원함양 ⑧ 토양보전 ⑨ 생물다양성유지
	식량안보 (Food Security function)	⑩ 식량의 안정적 공급 ⑪ 국가 전략적 요청
	경제적 기능 (Economic function)	⑫ 국가/국토의 균형발전과 성장 ⑬ 경제위기 완화기능

※ 자료: 서동균(1999), 임정빈(2003)외 등 참조

1) 비상품 생산물
: 식량안보, 환경과 경관 그리고 전통문화 등 시장거래 및 가격 책정이 어려운 생산물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표 2〉와 같이 긍정적 기능과 더불어 부정적 기능도 있음.

표 2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긍정적 기능	부정적 기능
식량안보의 기능	식량수급 및 세계식량시장 불안정에 대처	
환경 및 경관 보전의 기능	수자원함양, 홍수조절, 대기정화, 토양보전, 생물종 보존, 아름다운 풍경 등	농약, 비료, 제초제 등에 의한 환경오염 축분의 악취, 비닐하우스 등의 경관 훼손
경제적 기능	생산증대, 고용증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사회문화적 기능	전통문화 보전, 지역사회 유지, 정서함양 등	지역이기주의 등

○ 따라서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농정의 목적이나 방향이 될 수 없고 부정적 기능을 감소시키면서 공공재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추구해야 함

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다원적 기능을 발생시키는 비상품 생산물 중에서 법적인 규제가 없으며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기능

사례 살펴보기 공익기능의 효과

구분	정의	관련 의무사항	효과
식량안보 기능	필요한 식량에 대해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접근이 가능한 것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 토지를 농업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	■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발생한 세계 식량가격 위기기간 동안 국제 쌀 가격 195% 상승, 우리나라 쌀 가격 2.98% 증가
환경보전 기능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과 관련된 행위	농지 및 용·배수로 관리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사용량과 권장하는 비료 사용량을 준수	■ 수질정화 : 농작물은 유기물을 분해하여 생장에 이용함으로써 수질을 정화(연간 7억 톤) ■ 대기정화 : 농업은 연간 2,160만 톤의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1,560만 톤의 산소를 배출하여 대기 정화 기능을 수행 ■ 홍수 방지 : 논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 많은 물을 담고 있다가 서서히 방류함으로써 홍수를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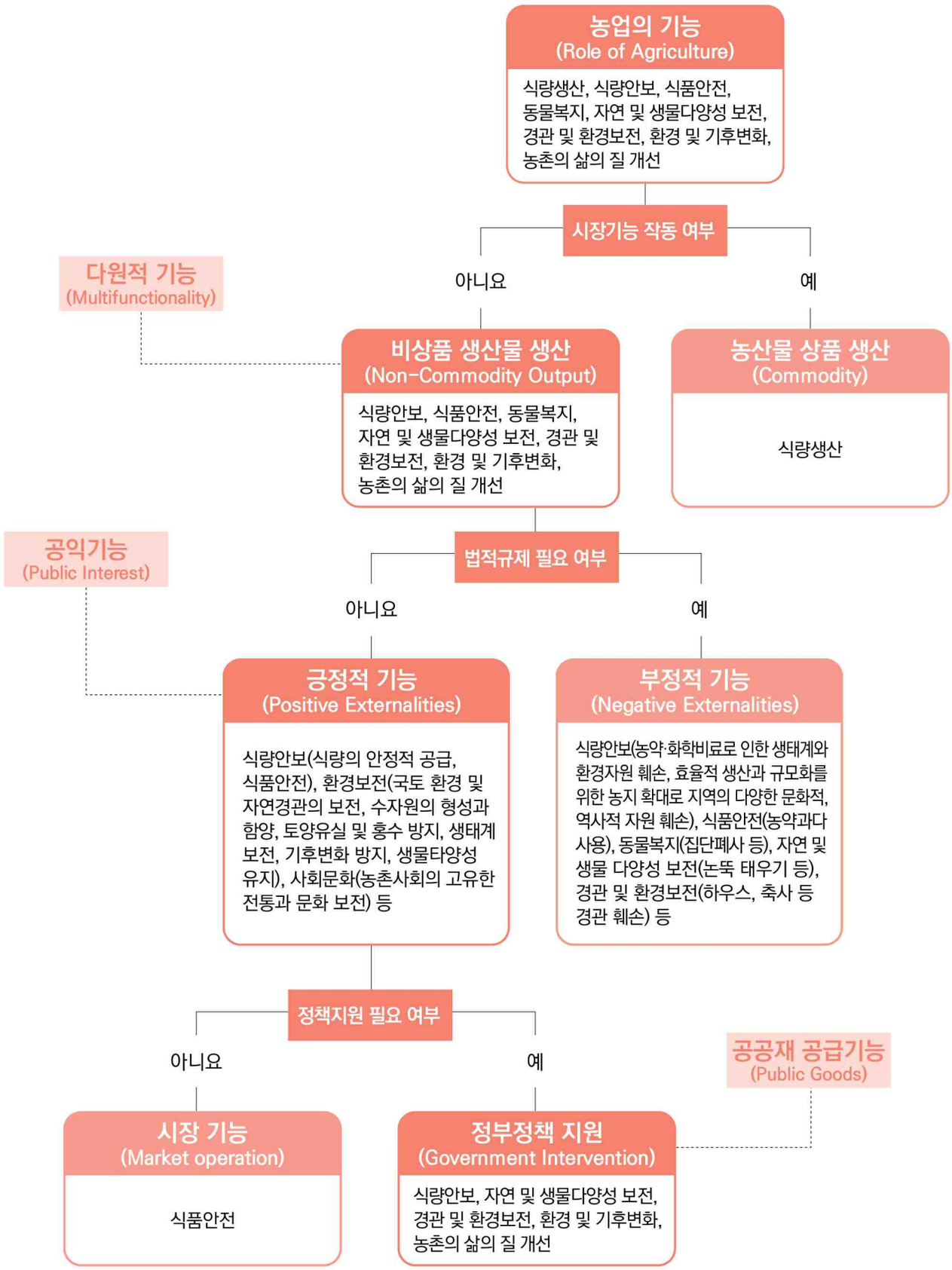


그림 1 공익적 가치 개념도

② 공익기능의 가치

가. 공익기능의 가치란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가치는 크게 3가지 범주의 예시로 설명 가능

•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능을 포함한 경제적 기능 :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농업생산의 특성과 세계곡물시장의 독과점적 성격과 협소성 및 비탄력성이 빈번한 가격파동(약 10년 주기로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거듭)을 일으키고, 정치적 갈등에 의해 언제라도 전략무기화될 가능성이 있기에 자급에 의한 식량 안보가 필요

사례 살펴보기 경제적 기능 : 식량안보의 위협

1980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이 내린 대 소련 곡물금수조치



• 환경보전 기능 :

식물 등을 통해 대기 정화의 기능, 농지의 수자원 함양, 홍수조절 기능 등을 통해 역할

사례 살펴보기 환경보전 기능 : 농업의 홍수조절 기능

논농사 덕에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A지역에서 쌀 생산에 드는 비용은 100이며, 논농사 대신 댐을 건설하여 홍수를 막는 비용이 50, 같은 양의 쌀을 수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30이라고 가정할 때 댐을 건설하여 홍수를 조절하고 쌀은 수입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며 논농사가 홍수 조절기능을 지닌다는 이유로 논농사를 보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나 논농사가 홍수조절기능 이외에 수자원 함양, 생물다양성 보존 등 다른 공익기능을 함께 공급한다면 이러한 공익기능을 공급하는 비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

홍수 조절 기능만 고려		다른 기능도 함께 고려
논농사(100) 〉 댐건설(50) + 쌀수입(30)	→ (다양한 공익기능 반영)	논농사(100) - 다른 공익기능(a) 〈 댐건설(50) + 쌀수입(30)
댐을 건설하고 쌀을 수입하는 것이 유리		쌀 농사를 짓는 것이 유리

• 사회·문화적 기능 :

농업생산 활동이 영위됨으로써 농촌과 농촌거주민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으로 휴양과 체험의 공간으로서 국민정서 함양을 지원. 또한 농업·농촌에 결부된 전통문화 유지, 지역사회 유지 그리고 농촌경관을 형성하는 효과가 발생

나. 공익기능의 가치 추정액

○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농업의 공익기능에 대한 가치 평가 결과는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범위에 따라 매우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농업생산의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

○ 가장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2018)은 농업에만 초점을 두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연간 약 27조 9천억원(2016년 불변가치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이러한 추정치는 2016년 농업생산의 경제적 부가가치 22조 5천억원보다 5조이상 큰 금액이고, 이를 기능별로 세분해 보면 환경보전(약 18조 4천억원), 사회문화적 가치(약 4조 1천억원), 식량안보(3조 1천억원), 농업경관(약 2조원)의 순

표 3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추정액 (2016년 불변가치 기준)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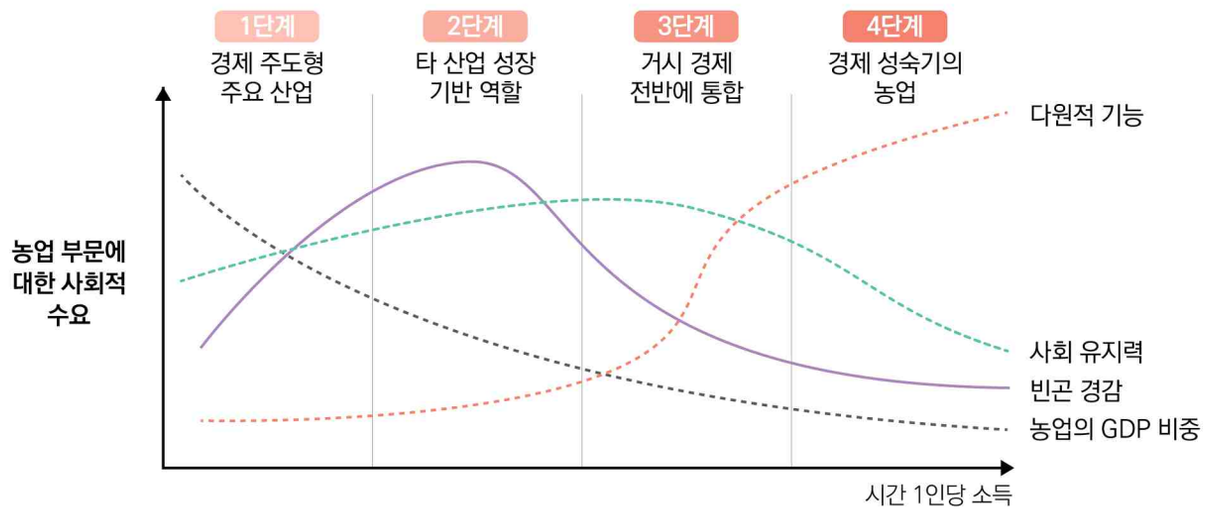
구분		농업			
		논	밭	농업일반	전체
		124,341	46,323	105,655	276,319
환경보전	A. 홍수 조절	13,552	3,300	13,005	29,857
	B. 지하수 함양	23,000	976	-	23,976
	C. 기온 순화	28,103	9,619	-	37,722
	D. 대기 정화	32,079	26,780	-	58,859
	E. 토양유실 저감	2,120	-	-	2,120
	F. 축산분뇨 소화	6,765	5,648	-	12,413
	G. 수질 정화	18,722	-	-	18,722
	(소계)	(124,341)	(46,323)	(13,005)	(183,669)
H. 농업 경관		-	-	20,452	20,452
I. 사회·문화적 기능 (농촌활력 제고 기능 포함)		-	-	41,040	41,040
J. 식량안보		-	-	31,158	31,158

※ 자료: 김수석(2018) "지속가능한 농업에서 다원적 기능으로의 여정",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말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현재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이 창출하는 공익기능에 대해 적절하게 가치 평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농업이 창출하는 공익기능과 가치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

③ 국제사회의 공익기능과 가치 중시 농정 동향

가. 세계 농정 패러다임과 전환 필요성



※ 자료: Zawojska(2013)

그림 2 경제 발전 단계별 농업에 대한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 변화

○ 경제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화

- 도시민이 농업·농촌에 대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 농업·농촌 발전 방안 검토 필요
-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깨끗한 환경과 문화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자보이스카(2013)는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GDP 등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수요보다 중시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고 분석

○ 농산물 무역자유화 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

- 농산물 시장 개방 이전에는 경쟁력이 낮은 나라에서도 자국 국민의 식량 마련 차원에서 농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함께 다양한 다원적 기능(때론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기능 발생)이 자동적으로 발생
-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농산물 역시 국제무역질서에 편입됨에 따라 농산물 수입국들은 농업생산을 축소하게 되고, 식량생산과 농업이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 공급 또한 감소
- 이에 따라, 농업문제를 시장원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

○ 수입국들의 노력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OECD 회원국들의 농업정책을 통해 추구해야 하는 공동목표 중 하나로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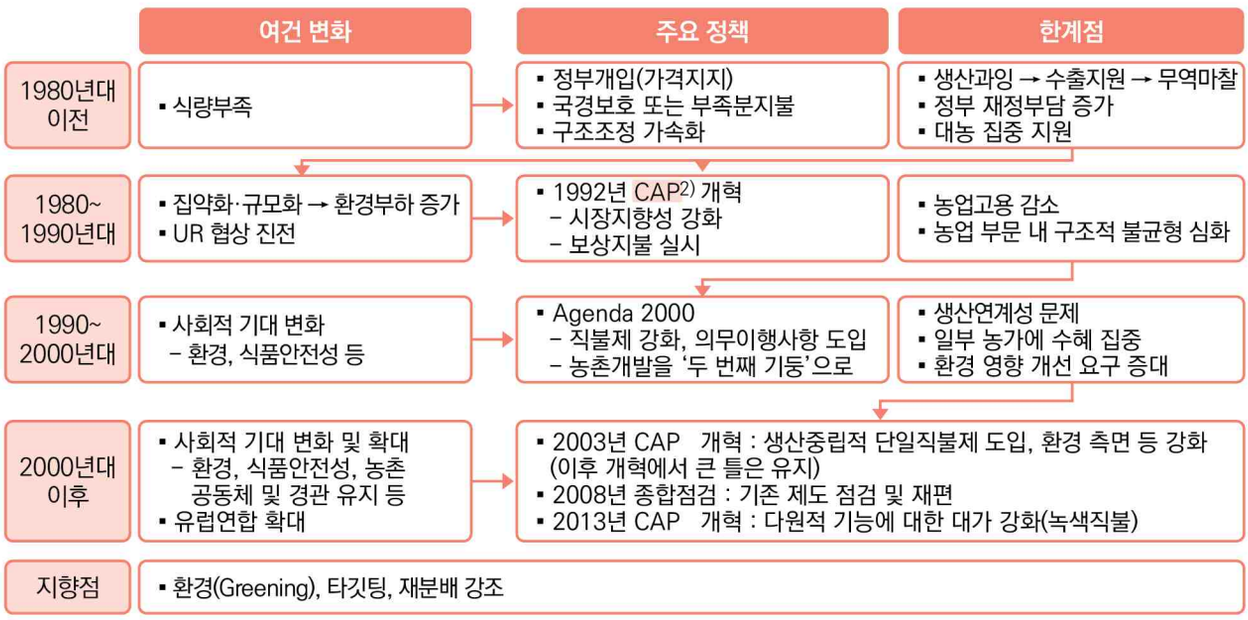
나. 주요 선진국의 공익기능과 가치 중시 농정

○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EU, 스위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농업생산 활동으로 창출되는 토양, 수자원 등 환경보전, 생물다양성유지, 경관 및 문화보전 등 다양한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익직불제 혹은 공익형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 및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

○ 이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가치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는 공익직불 정책을 강화하고, 공익직불 예산을 확충

1) 유럽연합(EU)

- 1980년대 이전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식량 부족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이후 대부분 품목에서 공급 과잉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
  -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서 집약화와 특정 품목 전문화가 가속화되었고 이로 인한 농약·비료 등의 투입재 사용 증가, 환경 질 악화, 생물학적 다양성 감소 등의 심각한 문제가 대두
- 1990년대 다원적 기능과 고부가가치 농업 개념을 중심으로 농업 부문 지원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
  -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생산활동과 자연환경보전을 수행한다는 인식을 농업인에게 함양시키고 환경관리자로 생각하고 지원(의무이행사항 도입)
- 2013년 다원적 기능에 대한 대가를 강화하는 '녹색직불제' 시행
  - 의무이행사항: 영구초지 유지·관리, 생태 중요 지역, 작물다양화 의무 규정 준수 등
  - 농업인이 의무이행사항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농사자문서비스' 운영
- EU의 경우 전체 농촌발전기금(Pillar 2) 예산 중 토양침식 방지 또는 감소, 생물학적 다양성 유지 및 제고, 경관보존 등 환경보호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공익형 지불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7.9% 수준



※ 자료: 유찬희·김종인·박지연(2016: 1).

그림 3 유럽연합의 농업 여건 변화와 농정 개혁 과정

2)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공동농업정책)

: 196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으로, 15개 회원국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단일시장, 역내 농산물 우선, 공동 재정부담 등 크게 세 가지 기본원칙 아래 시행되며, 1992년 제1차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단행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업협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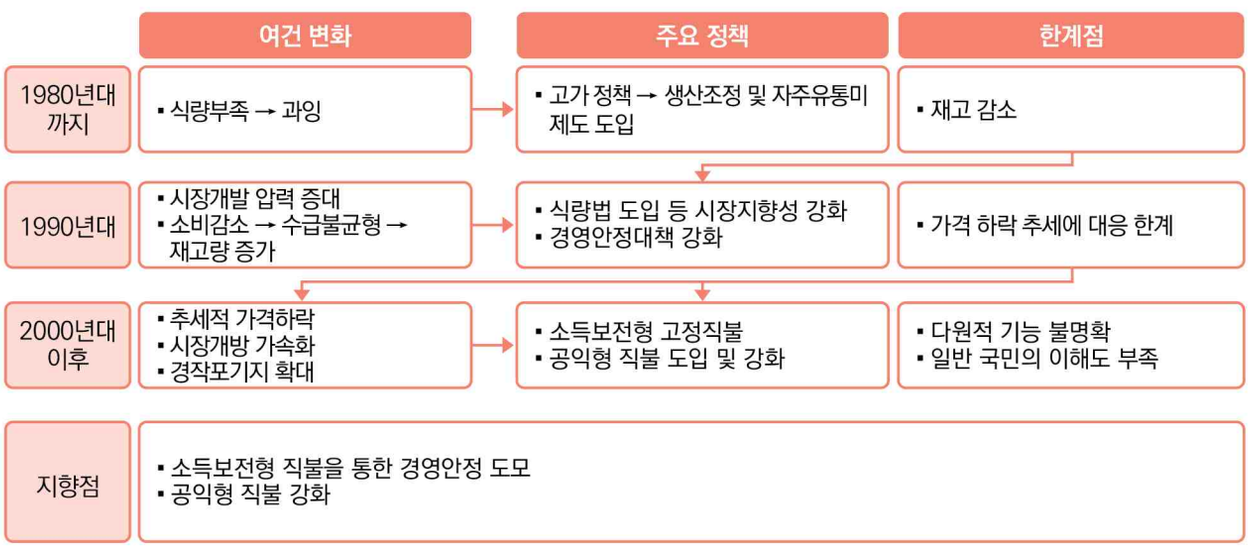
이후 계속 정책의 틀을 유지하다 1997년 7월, 공동농업정책의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공동농업정책 개혁, 구조·결속기금 개혁, 유럽연합 가입 대상국에 대한 지원, 2000~2006년의 예산지침 등 4개 부문의 개혁과 조정안을 골자로 하는 종합안을 내 놓았는데, 이 종합안 이름은 '아젠다(Agenda) 2000'이다.

특히 이 '아젠다 2000'은 유럽연합 농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역내 농산물 생산의 과잉과 비싼 가격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품 안전성에 대한 유럽형 농업 모델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논의에 따른 것으로, 장기간의 논의 끝에 1999년 3월 최종 타결을 보았다.

주요 내용은 곡물 지지가격의 15% 인하, 10% 의무휴경비용 유지, 필요시 곡물에 대한 수출세 적용, 쇠고기 지지가격 20% 인하 및 축산농가 소득감소분 보상, 쇠고기 안전장치 개입 시스템 유지 및 민간 부문 저장기능 활성화, 우유 생산 쿼터제 폐지 검토 등이다.

2) 일본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심각한 쌀 부족 문제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통한 높은 쌀 가격 유지로 증산을 유도하였으나 과잉재고 문제 심화
  - 생산조정 등의 정부농업정책은 시장 개방 압력이 늘어남에 따라 의무수입물량 상승과 1인당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재고 문제 증가
- 2000년대 이후 다원적 기능의 유지·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공동체의 지역활동을 지원하는 '다면적 기능 직불제'를 도입
- 중산간지역 고령화 심화와 영농 중단 등의 이유로 다원적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를 도입
- 일본의 경우도 공익직불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데, 전체 농업직불예산의 10.7%로 우리나라(4.2%)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 자료: 유찬희·김종인·박지연(2016: 21).

그림 4 일본의 농업 여건 변화와 농정 개혁 과정

3) 스위스

-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 속에서 식량안보의 어려움을 겪었던 스위스는 가격 및 판매 보장을 통해 계획적 식량생산을 달성하는 자급자족 체제를 추구하였으나 가격지지 정책 부작용(생산량 급증, 가격 하락)과 환경부하 문제 심화
- 1996년 「연방헌법」상 농업 조항 제104조*를 삽입함으로써 농정의 새로운 방향 제시라는 내용 변화뿐 아니라 이런 내용을 수용하게 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농업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농업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 변화

*「연방헌법」 제104조
제1항 "연방(정부)은 지속가능하고 시장지향적인 생산을 통해 ① 국민의 먹거리 보장, ②자연생태계 및 경작경관 보존, ③ 지방분권적 주민 정주에 대해 본질적인 기여를 하도록 함."이라고 농업의 역할을 규정
제2항 "연방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과업을 갖는다."고 규정. 주요 과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농가소득을 직접지불금 형태로 지원", "연방은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센티브로 자연친화적이고 동물친화적인 생산형태를 육성", "비료와 화학비료 및 다른 보조제의 초과사용에 의한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환경을 보호"등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즉, 지속가능성, 공동경제적 성과, 경쟁력의 육성 및 확대를 농정 목표로 삼아 2014년도부터 직불제도 변경
- 스위스의 경우 생물학적 다양성 유지, 경관보존, 유기농업, 동물복지 등 공익형 직불예산이 전체 농업 직불금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2% 수준

	여건 변화	주요 정책	한계점
1980년대 까지	▪ 영농조건 불리 ▪ 낮은 가격 경쟁력 ▪ 식량안보 강조	▪ 정부개입(가격지지) ▪ 국경보호 및 집약화 ▪ 조건불리직불 도입(1959)	▪ 생산과잉 ▪ 환경 문제 대두 ▪ 농가 간 소득불균형 심화
1992~ 1999년	▪ 집약화 → 환경부하 증가 ▪ UR 협상 진전	▪ 1992년 개혁 : 시장지향성 강화 (가격/소득정책 분리) 및 생산비 연계 직불 도입(일반 및 생태) ▪ 1996년 국민투표 : 다원적기능에 대한 공감대 확인	▪ 농업고용 감소 ▪ 농업 부문 내 구조적 불균형 심화
1999~ 2002년	▪ 시장지지에서 소득보전으로 ▪ 경쟁력 제고 필요성 증가 ▪ 시장접근성 강화 압력	▪ 신농업법(1999년) – PEP[3] 의무화 등 – 생태직불 비중 점증	▪ 생태직불 참여 증대 등 ▪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 증가
2002~ 2013년	▪ 시장지지에서 소득보전으로 ▪ 직불제 강화 및 효율성 제고	▪ 신농업법(1999년) 이후 직불제 근간을 유지 ▪ 2014~2017년 농업정책에서 기존 직불제를 재편하고 세부 조정하여 효율성 제고 노력	
지향점	▪ 1990년대 개혁 이후 시장지향성 강화 + 환경친화적 영농 + 사회에 공공재 공급 기조 유지 ▪ 생산중립성, 타깃팅, 맞춤형 농정 지향		

※ 자료: 유찬희·김종인·박지연(2016: 21).

그림 5 스위스의 농업 여건 변화와 농정 개혁 과정

3) PEP(Proof of ecological performance, 생태적 성과증명)
: 유럽연합 등에서 적용하는 의무이행사항(cross compliance)와 유사한 개념으로 농가의 농약, 비료 사용량의 절감, 수자원 및 환경자원 보호 등의 의무준수사항

④ 국내의 공익기능과 가치 중시 농정 동향

가. 국내법에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하나의 절로 다루고 있음

국내법에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과 가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기존 직불제 도입배경

○ 우리나라의 직불제 정책은 WTO 체제 출범 이후 농가소득 지원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직접지불제를 확대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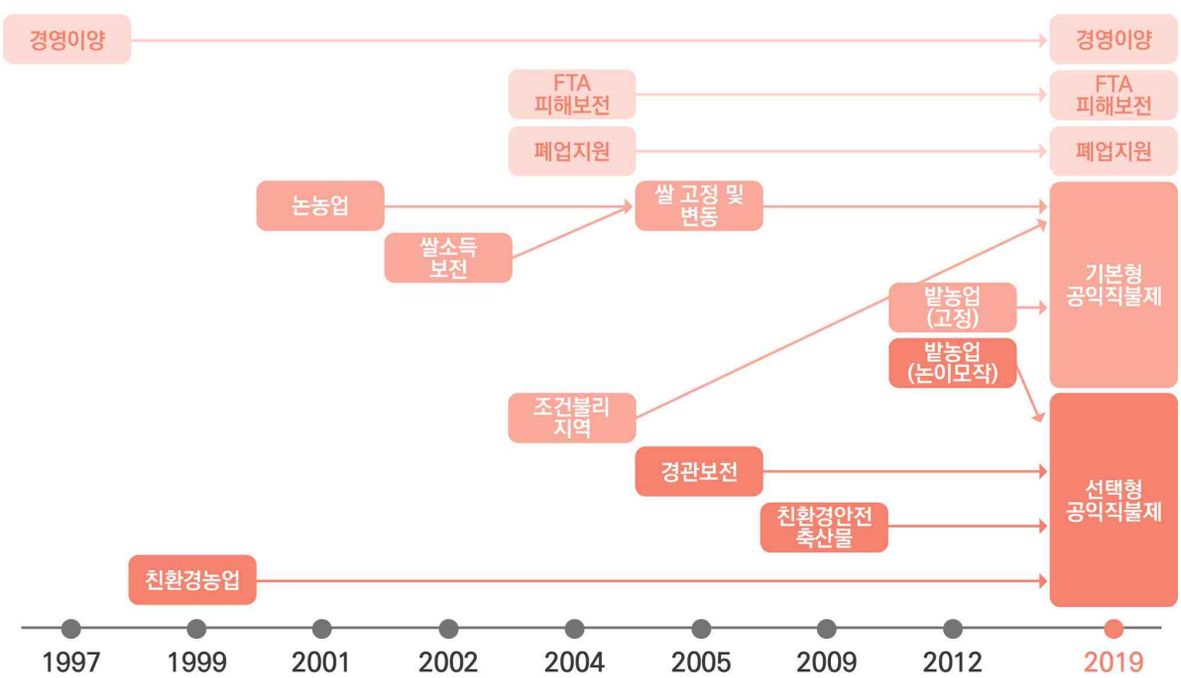


그림 6 기존 직불제 도입 변천사

-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 1999년 친환경농업직불제, 2004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FTA피해보전/폐업지원직불제, 2005년 쌀소득보전(고정,변동)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2009년 친환경축산직불제, 2012년 밭농업직불제 도입
- 논농업직불제는 정부가 쌀값 등의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 정부가 농산물을 비싸게 구입해 주는 가격 보조가 금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을 보조해 주기 위해 2001년부터 도입

표 4 직불제 도입 과정

구 분	첫시행연도	목 적	역 할	근거법령
경영이양	1997	소득안정, 농업구조개선	구조개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불제도 시행규정(1997)
친환경농업	1999	친환경농업 확산	공익기능 제고	
쌀(고정,변동) 소득보전	2001	소득 안정, 자급률 제고 농지의 사회적 편익 확보	소득안정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2)
조건불리지역	2004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공익기능 제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불제도 시행규정(1997)
FTA피해보전 /폐업지원	2004	경영안정, 피해보전	구조개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4)
경관보전	2005	지역경제 활성화	공익기능 제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불제도 시행규정(1997)
친환경안전축산물	2009	친환경축산 확산	공익기능 제고	
밭농업	2012	소득 안정, 자급률 제고	소득안정	

- 이 중 현재 국내의 공익기능을 일부 포함하여 농업소득보전을 지원한 직불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나 그 비중이 매우 적어 앞서 말한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유지 및 확산을 위한 '공익직불'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아직 부족한 상태
  - 예컨대 2018년 기준 공익기능을 일부 포함하여 농업소득보전을 지원한 직불금이 전체 농업직불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이며, 전체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불과

표 5 공익기능을 일부 포함하여 농업소득보전을 지원한 직불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구 분	내용
제16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농업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
제23조의2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친환경축산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축산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

구 분	내용
제24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농업인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건불리지역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
제34조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및 제61조에 따른 농촌과 준농촌 지역에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관보전직접지불보조금(이하 “경관보전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

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

1) 공익기능과 가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다원적·공익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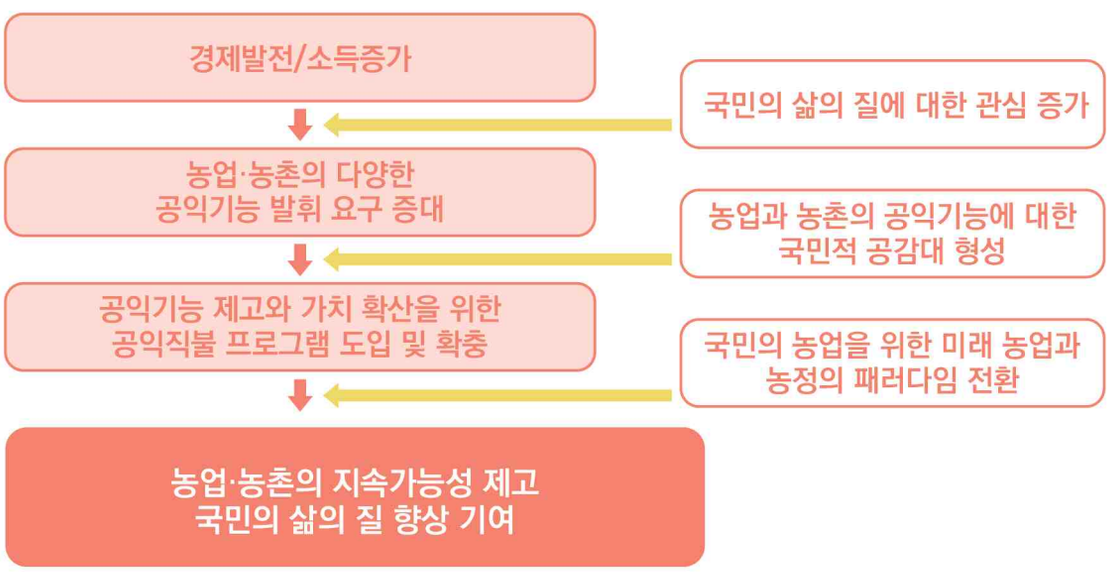


그림 7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및 가치 확산의 필요성과 의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국민의식조사결과(2018년)에 의하면, 현재 농업·농촌에 기대하는 역할 중 농업의 본래 기능인 안정적 식량공급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2%임에 반해 식량공급 기능 이외 환경 및 경관보전 등 다양한 공익기능이 중요하다고 한 응답비율은 59.8%(무응답 1.0%포함)
- 특히 미래 농업·농촌에 기대하는 역할 중 안정적인 식량공급 기능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7.0%, 다양한 공익기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3.0%(무응답 0.7% 포함)로 미래에는 더 큰 비중으로 공익기능을 창출해줄 것을 국민들은 요구
  - 즉 국민들이 앞으로 농업·농촌이 수행하기를 원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반면에 ‘전통문화의 계승’, ‘전원생활의 공간’, ‘관광 및 휴식의 장소’ 등의 역할을 기대하는 응답자의 비중 높아짐

표 6 농업·농촌에 기대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국민인식도 (2018년 기준)

(단위: %)

	현재 인식			미래 인식		
	농업인	도시민	소계	농업인	도시민	소계
안정적 식량 공급	39.4	40.8	40.2	29.3	25.2	27.0
식품 안전성 향상	21.7	25.5	23.9	21.9	26.6	24.5
지역 활성화	13.0	17.7	15.6	11.5	13.3	12.5
환경 보전	14.2	6.3	9.7	19.1	15.6	17.1
여가 공간 활용	3.0	4.5	3.8	5.1	8.7	7.1
문화유산 보존계승	2.6	4.3	3.5	4.7	7.2	6.1
경관보전	3.7	1.1	2.2	6.8	3.7	5.1
무응답	2.3	0.0	1.0	1.6	0.0	0.7

※ 자료: 송성환·박혜진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 대다수 국민들이 환경, 자연, 문화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인식하여 점점 더 농업활동과 농촌공간의 생물다양성, 자연생태, 친환경 및 경관 등 공익기능 창출을 중시

2) 농업·농촌 공익기능과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액 증가

- 농업·농촌이 수행하고 있는 공익기능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2018, 김선웅 외)
  - 농업·농촌이 수행하고 있는 공익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집단에 비해 약 18.3% 더 높은 지불의사액[4]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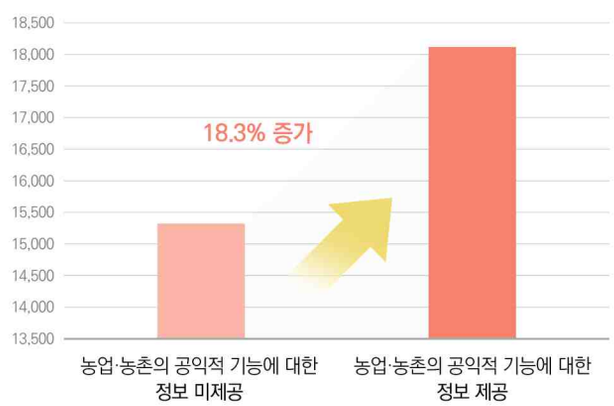


그림 8 농업·농촌 공익기능과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액 증가

4)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
: 소비자 또는 고객이 한 단위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우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가격

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가치 확산된 미래모습

- “공익직불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환경, 생태, 경관, 문화 등의 보전 및 유지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공익기능 제고와 가치 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임

-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정착으로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다양한 공익기능과 가치가 확산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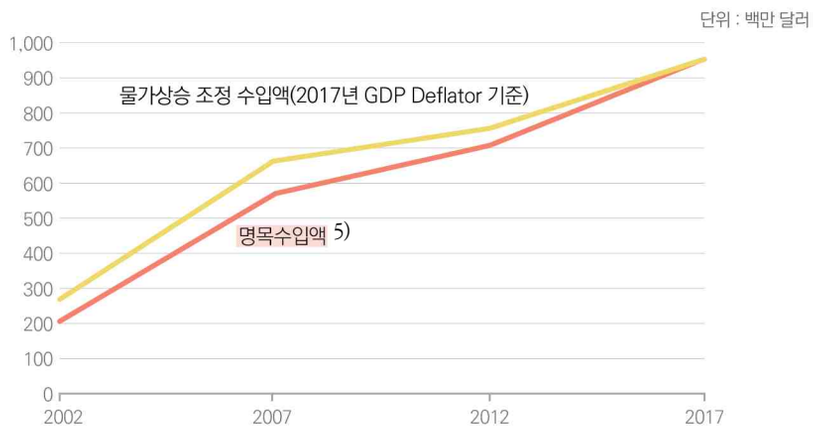
그림 9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선순환 모습

-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이 공익기능을 증진하여 농촌의 환경 및 생태, 경관 여건을 개선하고, 개선된 환경·생태·경관 여건이 지역농업과 연계되어 다양한 소득 및 고용기회 창출 가능
-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생태·경관에서 생산된 국산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되어 높은 가격에 팔리고, 농업과 농촌을 서비스 산업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다양한 공익기능을 유지 발전시켜 비시장적 부가가치를 창출 가능

사례 살펴보기 미국의 농촌체험관광

농촌체험관광은 농장견학 및 과수체험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초기농, 중소농에게 중요한 부가수입원임. 농촌체험관광은 농가수입 증대 외에 농촌개발, 농촌에 대한 관심증대, 농촌유산 보존과 같은 부수적인 장점이 있으며, 농촌 지역의 고용 창출에도 기여. 2017년 농촌체험관광 수입액은 총농가수입액의 5.6% 정도지만 약 9억 5,000만 달러에 이르며, 2012년에 비해 약 2억 4,600만 달러가 증가하였음.

표 7 2002~2017년 농촌체험관광 수입액 추이



※ 자료: USDA, ERS.

- (차별화) 수입 농식품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해서 차별화된 농산물로 농업을 고부가가치화
- (서비스산업화) 수입으로 대체될 수 없는 도시민의 자연, 생명, 문화 공간 욕구를 충족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공공재산업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제고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비시장적 공익적 가치 창출



그림 10 한국 농업과 농촌의 미래 모습

5) 명목수입액
: 장래 본격적 수입을 하겠다는 뜻을 포함한 소액의 수입액

- 강혜정. 2007. OECD 농업의 다원적 기능 논의 동향, KREI 세계농업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공기서·이충열·이명훈. 2013. 기후변화를 고려한 논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 농업경영·정책연구, 40(2):352-380.
- 권오상 외. 2000. 농업의 다원적 기능관련 논의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농업개발연구소.
- 권오상·김기철·노재선. 2004. "설문조사기법을 이용한 다원적 농업의 범위의 경제성 검정." 농업경제연구 45(2): 85-110.
- 김선웅·김태훈. 2018.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보 제공이 소비자의 지불의사액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2018. "지속가능한 농업에서 다원적 기능으로의 여정",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말하다」 2018년 KREI 이슈토론·성과발표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오세익. 2003.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종인 2019. 일본의 경영안정 및 공익형 직불제도. 한국농업경제학회 연구용역 위탁원고.
- 김태곤 2014. 일본의 새로운 농업보호와 다원적 기능 직불제. 세계농업 제170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연·배민식. 2019. 공익형 직불제의 의의와 과제. 농정연구 69호. 농정연구센터
- 김태연·임정빈·이정환. 2017. 농업의 존재이유 구현을 위한 대책: 공익형 직불. 시선집중 GSnJ 234호. GSnJ Institute.
- 송성환·박혜진. 2018.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481.
- 김용렬·정학균·민자혜. 2013.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정포커스 제53호.
- 김태곤. 2014. 일본의 새로운 농업보호와 다원적 기능 직불제. 세계농업 제170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연. 2015. 한국농업의 다원적 기능: 그 불편한 진실. 시선집중 GSnJ 제190호.
- 농촌진흥청. 2001. 농업의 다원적 기능 평가 방법.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
- 박성쾌. 2006. 수산업에 대한 국가 역할: 헌법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와 해석. 수산해양교육연구, 18(3): 244-260.
- 사동천. 2017.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헌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분야 헌법개정토론회 발표자료.
- 서동균. 1999. 농업의 다원적 기능 연구와 평가사례, 농촌진흥청
- 서동균·이상용·이두원·박승용. 2003. 농업생산환경 조건별 다원적 기능 가치 평가, 농촌진흥청
- 송주호. 2003. DDA 농업협상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신용광·이상영·김영. 2004. 농촌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와 편익이전. 농촌계획, 10(1):1-7.
- 오내원. 2017. 공익형 직접지불제 확대·개편을 위한 과제. 농식품 재정사업 리포트(2017 상반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세익, 김동원. 2004.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세익·김수석·강창용. 2001.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평가 연구. 농림부.
- 유진채. 1999. 농업의 시장과 비시장적 총합가치 평가모델 개발-조건부가치측정법을 중심으로, 농업정책연구, 26(1):3-12.
- 유진채·공기서·여순식·서명철. 2010. 유기농업의 공익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실험선택법을 적용하여.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8(3):291-313.
- 유찬희, 다원적 기능, 어떻게 볼 것인가? 이론적 검토와 쟁점, 농업직불제 연구포럼 발제자료, 2017. 11

- 유찬희·김종인·박지연. 2016. 주요 국가 직접지불제 도입 배경과 경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찬희·박준기·김종인·박지연. 2016.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1/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찬희·심영규·이관률. 2018.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 방향과 과제: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찬희·이명기·남숙경·임정빈·심영규·김상태. 2017. 주요 국가의 다원적 기능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및 국내 활용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찬희·조원주·김선웅. 2018.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양승룡·임송택·양혜경·이춘수. 2011.『농업·농촌의 가치평가』. 농촌진흥청.
- 이상영·신용광·김영. 2003.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불의사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30(3): 524-535.
- 이명헌. 2013. EU 농정개혁의 최근 동향.『계간 농정연구』, 제45호: 67-94.
- 이재옥. 1999. 농업의 다원적 기능- WTO 차기 농산물협상과 관련한 국제 논의동향. 농촌경제, 22(2):39-51.
- 이정환. 2017. 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의 개조. 시선집중 GSnJ 232호. GSnJ Institute.
- 이진홍. 2014. 지역농업의 공익적 가치 재조명: 경기도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6(3):5-32.
- 이홍림·박윤선·권오상. 2015. 편익이전 기법을 이용한 개별 및 지역별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 추정. 농업경제연구, 56(3):1-26.
- 임정빈. 2016. 스위스 농업의 혁신과정: 농업직불제를 중심으로. 2016년 2월 3일 지역재단 발표자료.
- 임정빈. 2014. 2014년 미국 농업법 환경보전정책(Conservation)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세계농업 Vol, 17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정빈. 2018.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산의 필요성과 정책과제,"「친환경농업연구」20권1·2호 통합본(2018): 21-48.
- 임정빈·이수연. 2011. 다원적 기능에 몰입하는 스위스 농업과 농정(1). 시선집중 GSnJ 제123호, GSnJ Institute,
- 임정빈. 2003.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제적 논의 내용과 주요쟁점.「농업생명과학연구」37권3호
- 임정빈·이명헌·이승훈. 2016, 공익형 농업직불제 개편 방향: 조건불리직불제와 경관보전직불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 KREI 연구용역보고서
- 황정임·김은자·이상영·이성우. 2009. 농촌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의 경제적 가치. 농촌지도와 개발, 16(3):644-667.
- Abler, D. 2004. Multifunctionality, Agricultural Policy, and Environmental Policy.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33(1): 8-17.
- Cahill, C. 2001. The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What Does It Mean? The Multifunctionality Word, Spring 2001 Edition.
- Claassen, R., V. Breneman, S. Bucholtz, A. Cattaneo, R. Johansson, and M. Morehart . 2004. Environmental Compliance in U.S. Agricultural Policy: Past Performance and Future Potential, USDA, ERS,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No. 832.
- European Commission. 2013. Overview of CAP Reform 2014-2020 "Agricultural Policy Perspectives Brief" N°5/ December 2013
- European Commission. 2016.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Review of greening after one year, Annex 1: Presentation of the green direct payments scheme"

- Federal Office of Agriculture of Switzerland. 2016. “Swiss Agricultural Policy” Presentation for a South Korean Delegation (23. August 2016)
- FAO. 2007. “Roles of Agriculture Project: Project Brief”. Rome.
- FAO, 1996. Food Security: Some Macro- economic Dimensions.
- Garzon, I. 2005.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in the European Union: Is There Substance Behind the Discourse’s Smoke?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
- Hall, D., Rosillo-Calle, F. 1999. “The Multifunctional Character of Agriculture and Land: the energy function (Background Paper 2: Bioenergy)”, in Background Papers: FAO/Netherlands Conference on the Multifunctional Character of Agriculture and Land, (Ed.) Trenchard, R., Rome (FAO). Maastricht, 12.17 September 1999.
- Maier, L. and Shobayashi, M. 2001. Multifunctionality: Towards an Analytical Framework.
- Megan Stubbs. 2014. Conservation Provisions in the 2014 Farm Bill(P.L. 113-79), April 2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3504, Washington D.C.
- Megan Stubbs. 2016. Conservation Compliance and U.S. Farm Policy, CRS Report R42457, Washington D.C.
- Miceli, V. 2005. EU Agricultural Policy: the Concept of Multifunctionality and Value Added Agriculture.
- OECD. 2017. Evaluation of the relevance of border protection for agriculture in Switzerland 〈TAD/CA/APM/WP(2017)19〉
- OECD. 2015. OECD Review of Agriculture Policies: Switzerland 2015.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5. Public Goods and Externalities: Agri-Environmental Policy Measures in Selected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01. Multifunctionality: Towards an Analytical Framework. OECD Publishing.
- OECD. 1998.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Issue and Policies. Directorate for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OECD, Paris.
- OECD. 1997. Enviromental Benefits from Agriculture. OECD Publishing.
- WTO, 1998. “Non-Trade Concerns in a Multifuctional Agriculture,” Paper submitted by Norway. AIE/22.
- Zawojska, A. 2013. “The Economic and Social Justifications for Public Spending to Agriculture: Theoretical Insights and Empirical Observations.” Oeconomia 12(4): 133-143.

제2장 공익직불제의 이해

Ⅰ 공익직불제 개편 배경과 추진경과
Ⅱ 공익직불제 개편 방향

제2장
알아봅시다

- 공익직불제 개편의 배경과 개편방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Ⅰ 공익직불제 개편 배경과 추진경과

① 공익직불제 개편 배경

가. 기존 직불제의 성과 및 한계

○ 2004년 쌀 재협상 등 시장 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 시 농가 피해보전을 위해 쌀직불금 등을 도입(2005년)

1) 도입 성과

○ 농가소득 안정 도모

- 쌀 목표가격과 산지 쌀 가격과의 차이의 85%를 보전하여 농가수취가격을 매년 목표 가격의 95% 이상 달성

○ 농업의 규모화, 생산구조 효율화에 기여

- 안정적인 농가 수취액 유지로 쌀전업농 육성목표 등을 달성

쌀전업농 경영면적

2005년	→	2017년
전체면적의 30%		전체면적의 58%

2) 한계점

○ **쌀 공급 과잉**

- 쌀직불금은 쌀 생산 조건으로 지급되고, 타작물보다 높은 단가를 지급함에 따라 쌀 공급과잉 심화요인으로 작용
- 쌀 공급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쌀 재고량은 2008년 68만톤에서 2018년 144만톤으로 증가(적정 재고량 74~78만톤)
- 재고량 증가에 따른 보관비용 증가 등 국가 재정 낭비 초래
  - 최근 5년간 연평균 25만 톤의 추가재고 발생으로 4천억 원 수준 재정손실 발생

○ **쌀 이외 타작물 재배 및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 기능 미흡**

- 대농이 확대(규모화로 쌀농가 비중 감소)되는 반면 직불금이 쌀직불에 편중되는 양상을 띔
- 직불금이 쌀에 집중되어 있어 타작물 생산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전체 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 장치로서의 역할에 한계

- 최근 10년간 쌀직불이 전체 직불제 예산에서 차지하는 평균비중이 80.7%
- 현행 직불제도는 면적 기준으로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여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기능이 미흡
- 상위 7% 대농이 직불금 39.4%를 수령

표 1 ha(1만㎡) 당 쌀·밭 직불금 지급단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쌀	311만원	→	179만원	→	117만원
밭	40만원		45만원		50만원
차이	271만원		134만원		67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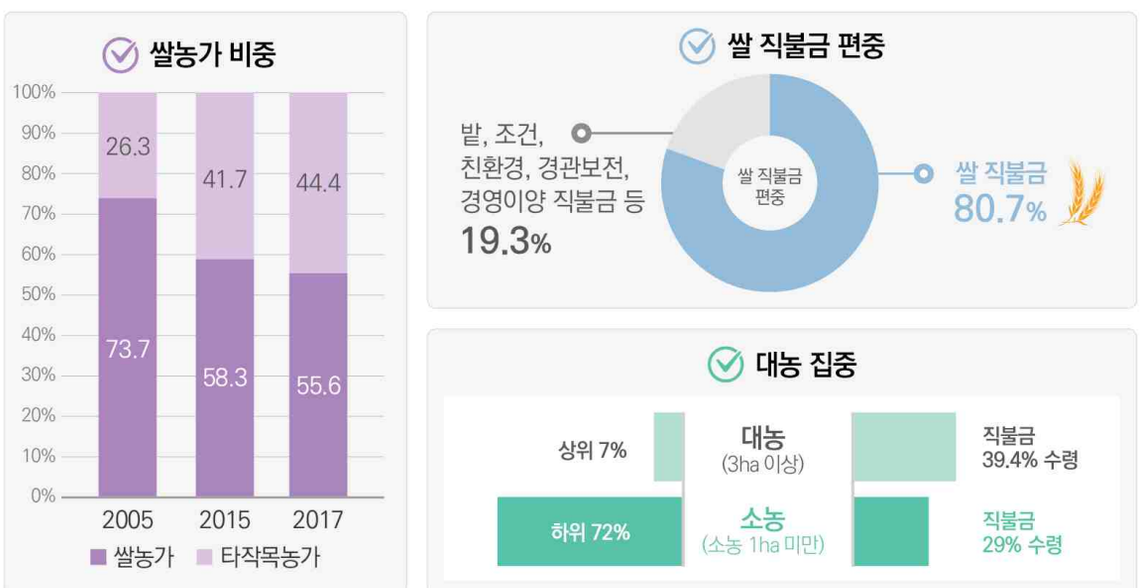


그림 1 직불금 편중 양상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요구수준 미충족

-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쉼터로서의 농촌, 환경·생태·문화보전 등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요구수준 미충족

표 2 농업·농촌의 기능에 대한 소비자 인식(KREI, '18)

구분	2006년		2016년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42.3%	→	34.0%
자연환경 보전	10.9%		25.8%

○ **직불금 지급 한계치 도달에 따른 증액 불가능**

- WTO 농업협정 상으로 감축대상보조인 이전의 쌀 변동 직불제는 보조총액측정치(AMS)[6]인 1조 4,900억 이상은 지급 불가(이로 인해 '16년도 쌀 변동직불금은 1조 4,900억원의 초과액 77억을 지급하지 못하였음)

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필요성 확대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제고한다**는 현 정부의 농정방향에 따라 기존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확대·개편

- 고령화와 이촌 현상으로 나날이 축소되고 있는 농촌현실의 위험관리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과도 직접적인 연계
  - 농업은 인간 생존의 필수 재화인 식량을 생산·공급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식량 생산과정에서 생산량 변동 위험과 시장교역에서 나타나는 가격 변동성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식량공급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침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발생에 대한 국민의 요구 변화
  - 과거 식량 부족시기에는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핵심적 역할이 공익기능이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농산물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품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환경보전, 경관유지, 수질 및 토양 관리 등 지속 가능성을 위한 농업부문의 활동 강화 필요성 강조
- 농가소득보전 등의 기존 직불제 역할에서 공익직불제를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창출로 역할 확대
  - 농업관련 이슈, 환경과 기후 대응, 지역사회 유지, 젊은 후계농 확보, 국토의 균형발전(형평성 확보)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이슈로 확대

② 공익직불제 추진 경과

가. 2015년~16년 : 농업 직불제 한계 지적 및 제도 개선 요구 확대

○ 한·중 FTA 여·야·정 합의,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 내·외부의 농업 직불제 한계 지적 및 제도 개선 요구 확대

-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11) : "직불제 전반의 성과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재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실시('16.5~'17.2) : 농업분야 직불금 사업군 심층평가 연구

6) 보조총액측정치(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해야 하는 무역 왜곡 보조금의 총계로 1960년대 말부터 선국국들이 지속적으로 써온 국내농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원정책 수단을 말하며, 과잉생산과 무역왜곡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쌀 변동직불금이 여기에 해당되며, 감축대상보조라고도 한다.

나. 2016년~18년 :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 마련

○ 연구용역·포럼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 마련

- 연구용역을 통해 직불제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개편 시 검토 필요사항 도출, 개편 대안 마련 및 대안별 효과 분석 실시

  - 연구용역 현황 : 농업직불제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16.12), 쌀 변동직불제 개편방안 연구('19.3)

- 직불제 정책포럼(7회, '16~'17), 이슈토론회('18), 전문가 좌담회('18) 한국경제학회 토론회('18) 등을 통해 농업인단체, 학계 의견 수렴

다. 2018년~19년 : 개편 세부사항 논의

○ 차기 쌀 목표가격 변경을 위한 동의안(188,192원/80kg)을 국회에 제출하며 직불제의 근본적인 개편 논의 제안('18.11)

- 농해수위 여·야간 논의('19.1)를 통해 직불제 재정규모, 쌀 수급안정장치 등 보완장치, 향후 일정 등 합의

  - (목표가격) 206~226천원/80kg, 2년('18~'19년산) 한시적용, (직불제) 2.4~3.0조원, 50% 순증, (쌀 공급조절정책) 시장격리, 휴경제·생산조정제 등 쌀 수확기 가격안정장치 법제화

라. 2019년 : 공익직불제 추진 근거 마련

2019.12.10	→	2019.12.27	→	2020.1.10
2020년 공익직불제 예산 2.4조원으로 확정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쌀 수급안정장치 제도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1) 2020년 공익직불제 예산 확정('19.12)

○ '20년 공익직불제 예산으로 2조 4,000억원을 편성

-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으로 2조 2,816억원, 선택형공익직불 사업으로 1,184억원이 반영되었음

○ '19년 직불금 예산(1조 4,122억원) 대비 70%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 평균 직불금 지급액(2.1조)에 비해서도 큰 규모임

- 쌀변동직불금은 '16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지급된 '17년 결산액을 반영

- 농업인단체가 주장하던 수준(3조원 이상) 보다는 낮은 규모이나 과거 직불금 지급액, 상임위 간사간 논의 수준(2.4~3.0조원)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었다고 판단됨

  - 과거 직불금 지급액 : (최근 3년 평균) 2.1조원, (5년) 1.7조원

표 3 '20년 공익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19 예산(A)		'20 예산(B)			
		정부안		최 종	
사업명	예산액	사업명	예산액	사업명	예산액
•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802,770	•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799,400	• 공익기능증진직불 (경영이양직불 포함)	2,399,965
• 경영이양 직접지불	47,179	• 경영이양 직접지불	38,981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54,647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53,872		
• 밭농업직접지불	207,790	• 밭농업직접지불	213,995		
• 경관보전 직접지불	8,356	• 경관보전 직접지불	8,800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38,110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24,417		
• '18년산 쌀소득보전 변동직불	253,300	•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1,060,500		
합 계	1,412,152	합 계	2,199,965	합 계	2,399,965
				• '19년산 쌀소득 보전 변동직불	238,400

2)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19.12)

○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익직불제 시행 및 목표가격 수준이 확정됨

- (목표가격) 26,750원/10kg으로 '13~'17년산(23,500원/10kg, 188,000원/80kg) 대비 13.8% (3,250원/10kg) 인상, '18~'19년산에 한시 적용
- (공익증진직불법) 공익직불제의 구성,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소규모농가 직불금 도입, 농업인 준수의무 등을 규정

3) 쌀 수급안정장치 제도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

○ 쌀 수급·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수급안정장치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

-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미곡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포하도록 했다. 또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당해 연도 생산되는 미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수확기인 10월 15일 이전에 신곡수요량을 넘는 당해 생산된 쌀은 정부가 매입하는 '자동시장격리제'가 가동된다.
- 이는 신곡 공급량이 급증할 경우 남는 쌀을 정부가 자동으로 시장과 격리한다는 면에서 적시에 가격안정 정책이 가동되는 효과가 있다.

마. 2020년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20.5)

- 시행령에서는 기본직불금 지급요건, 선택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확정됨
  -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소농 범위, 지급기준 및 지급단가 등을 규정
  - 면적직불금 기준면적 구간을 농지등의 유형별로 3개 구간으로 정하되 구간별 단가는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

- 시행규칙에서는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선정 절차 및 지급제한 등 사후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확정됨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지급대상자 등록, 서류 등 보관·비치 의무 등을 규정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제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제한 등을 규정

Ⅱ 공익직불제 개편 방향

① 공익직불제 개편 기본 방향

○ 쌀 집중, 대농 편중, 쌀 과잉생산 등 현행 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

가. 쌀 편중 및 쌀 생산연계 문제 해소를 위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 지급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및 작물 간 형평성 제고

•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 금액 지급으로 논·밭 형평성 제고, 콩·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 확대와 자급률 향상

- 콩 재배면적은 '17년 49천ha(22.0% 자급)에서 '23년에는 75천ha(33.0%)로 기대

나. 중 · 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

• 소규모 농가는 면적(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

• 그 밖의 농가는 재배 면적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여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

-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며 커질수록 낮은 단가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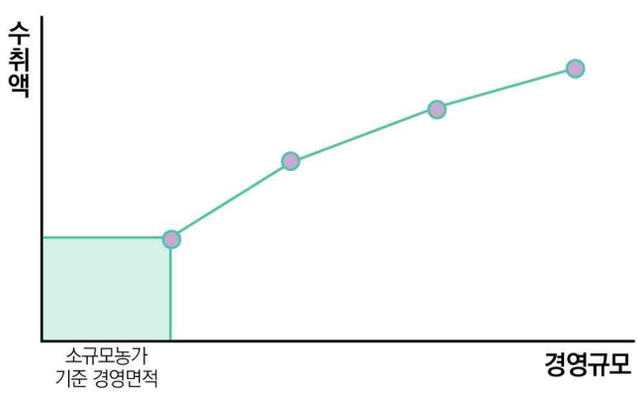


그림 2 경영규모별 직불금 수취액(안)

다.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생태 · 환경 관련 준수의무 강화

- 환경·생태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 환경보호·공동체 유지·먹거리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의무 강화

라. WTO 허용보조(Green Box)로의 변화를 통해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

- WTO 허용보조(Green Box)[7]로의 변화를 통해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
  - 생산·가격에 연계되지 않는 '생산 비연계 허용보조'로 AMS 한도와 상관없이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 지속적인 제도 운영 가능

② 개편 기본 구조

-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개편
  - 현행 9개 직불 중 6개 직불을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이양직불과 FTA 폐업지원 및 FTA피해보전직불 등 3개 직불제는 공익직불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운영



그림 3 공익직불제 기본 구조

  -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쌀고정), 밭농업직불(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쌀직불의 변동직불은 폐지)
  - 밭농업직불(논이모작 → 논활용직불로 명칭 변경), 친환경직불(농산물 및 축산물),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하여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 가능토록 설계
  - 논이모작직불은 논활용직불로 명칭을 변경하며 식량자급률의 증진뿐만 아니라 품목별 수급 안정 등까지 그 목적에 포함하여 운영

7) 허용보조(Green Box)
: WTO 농업협정상 무역 및 생산왜곡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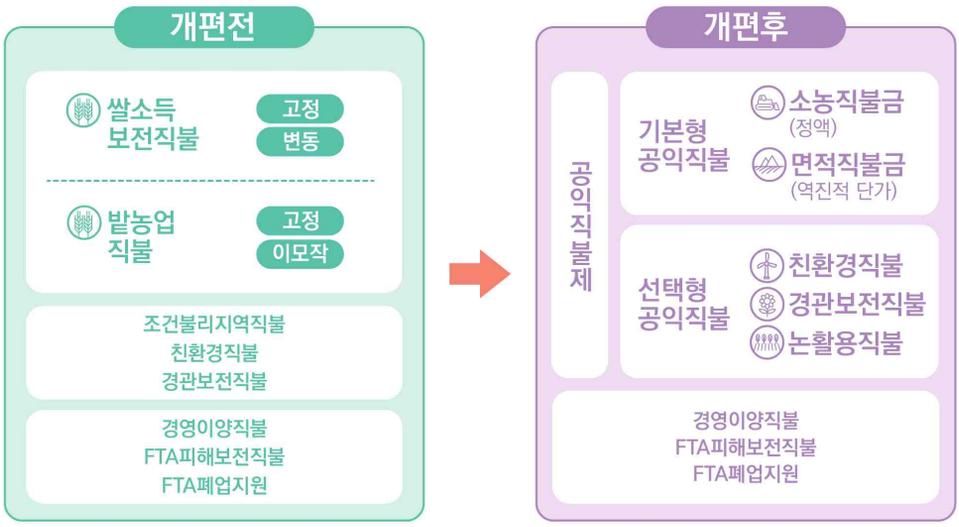


그림 4 공익직불제 개편 전, 후 농업직불제 종류 및 유형

제3장 기본형 공익직불제

Ⅰ 기본형 공익직불제
Ⅱ 기본직불금 대상 농지 및 대상농업인
Ⅲ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
Ⅳ 면적직접지불금(면적직불금)
Ⅴ 재배면적 조정의무
Ⅵ 농업인 준수사항
Ⅶ 사업추진 체계

제3장
알아봅시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의 대상, 지급요건 등을 이해할 수 있다.
- 농업인의 준수사항을 이해하고 철저한 이행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다.
- 각 추진체계 및 일정에 따라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다.



Ⅰ 기본형 공익직불제

① 기본형 공익직불제 구조

가. 공익직불제 개편 전 직불제와의 비교

<table>
<tr><th colspan="2">개편 전</th><th></th><th>개편 후</th></tr>
<tr><td colspan="2">조건불리 직불제</td><td rowspan="8">→</td><td rowspan="4">기본형 공익직불제</td></tr>
<tr><td rowspan="2">쌀 직불제</td><td>쌀고정 직불제</td></tr>
<tr><td>쌀변동 직불제</td></tr>
<tr><td rowspan="2">밭 직불제</td><td>밭고정 직불제</td></tr>
<tr><td>논이모작 직불제</td><td rowspan="4">선택형 공익직불제</td></tr>
<tr><td rowspan="2">친환경 직불제</td><td>친환경농업 직불제</td></tr>
<tr><td>친환경축산 직불제</td></tr>
<tr><td colspan="2">경관보전 직불제</td></tr>
</table>

-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제(고정), 밭농업직불제(고정), 조건불리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
  - 쌀직불제의 변동직불제는 폐지
  - 밭직불제의 논이모작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

나. 기본형 공익직불제 구조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불금	구분	면적 직불금
법 제 10조	해당 법령	법 제 11조
0.1ha~0.5ha	면적 기준	2ha이하/2ha초과-6ha이하 /6ha초과-30ha이하
120만원(정액)	단가	최소 100만원/ha (지급구간별 역진적 단가체계)

Ⅱ 기본직불금 대상 농지 및 대상농업인

① 대상 농지

가. 대상 농지 조건



그림 1 대상 농지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포함)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다년생 개량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로 지원받던 초지는 제외

1 쌀직불 대상 농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정)에 이용된 농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쌀소득보전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농지등

- 단,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사유로 위 기간에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법 제2조제3호 논농업 → 부록2 P.2

2 밭직불 대상 농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밭고정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농지등

- 단,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사유로 위 기간에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①「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②「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법 제2조제4호 밭농업 → 부록2 P.2

3 조건불리 대상 농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농지등

심화학습

Q 왜 대상농지를 이전 직불금 수령 이력이 있는 농지로 제한했을까요?

A 대상농지의 급격한 확대를 방지하여 재정규모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직불금 신청·지급 관련 현장 혼란 최소화 및 제도의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 대상 농지 주요 특징

-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현행 쌀직불·밭고정직불·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를 유지
- 단, 개편에 따른 대상농지의 급증 및 재정규모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대상농지에 '과거 직불금 수급실적' 요건 적용

사례 살펴보기 지급대상 농지 해당여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하게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아온 A씨, 하지만 최근 3년간('17년~'19년)은 깜빡하고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기본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인가?

➜ 기본직불금은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직불금(쌀,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이력이 있어야 하므로, A씨는 기본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다.



다. 지급대상 제외 농지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임

①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법 제8조제2항 지급대상 제외 농지 → 부록2 P.4

* 단,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가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②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③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

④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

* 다만, 2016.1.21.이전에 형질변경으로 농지로 인정받아 지원받던 임야는 지속 지원

⑤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

⑥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농지

⑦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내 농지

⑧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⑨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⑩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농지 등

② 대상 농업인

가. 대상 농업인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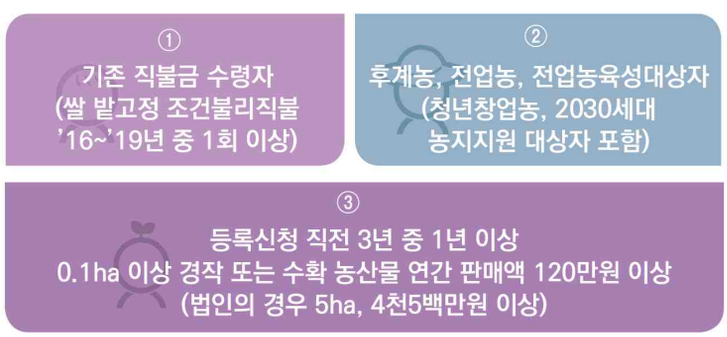


그림 2 대상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등**

농업경영정보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등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등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충족 필요

시행령 제5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부록2 P.7

심화학습

Q 만일 농촌이 아닌 지역에 주소(또는 사무소)를 두고 농업을 하는 농업인은 대상농업인이 아닌가요?

A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농업인의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거나,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하여 5만㎡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일 경우
2)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혹은, 4,6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일 경우
3)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2 위의 1 이외의 자

①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포함)으로 선정된 농업인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 포함)

* 선정된 후 탈락된 자, 현재 농업에 종사[8]하지 않는 자는 제외

③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다음을 충족하는 자**

- **(농업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1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등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충족 필요

- **(농업법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5만㎡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④ '04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농업인) 농지면적 1만㎡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 직전 연도에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농업법인) 농지면적 5만㎡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 직전 연도에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8)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일부위탁 포함)
* 일부위탁: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의미

3 승계자

-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 고령, 질병, 부상 등 논농업에 종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계속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 단, 소농직불 승계자는 소농직불 지급요건 충족 필요, 미충족시 면적직불로 승계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산입

  ** ①직전 1년간 기존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여 영농에 기여하고, 사유 발생 이후에도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 ②농업경영체, 농업인확인서 등으로 농업인 확인이 가능하고 농업외종합소득, 무단점유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아울러,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농촌지역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심화학습

Q 농촌지역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읍·면의 지역이 아닌 경우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역을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농촌지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구분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 명시하는 농촌지역	
	"나"목의 1 (시의 지역 중 동지역)	"나"목의 2 (자치구 지역 중 동지역)
①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②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①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②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①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②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나. 대상 농업인 주요 특징

○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현행 쌀직불·밭고정직불·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업인과 기본적으로 동일

다. 지급대상 제외자

○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임

①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②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휴경면적은 면적 산정시 제외)
③ 직전연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자
* 다만, 정당한 사유로 농지를 분할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자에 포함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등록신청 또는 수령한 자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직불금 등록신청 또는 수령한 자
⑥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에 한함)
⑦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농지에 한함)
⑧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법 제9조제3항 지급대상 제외 농업인 → 부록2 P.6
시행령 제6조 농업 외 종합소득→ 부록2 P.7

심화학습

Q 작년보다 신청농지 면적이 줄어들어 기본 직불급 지급대상이 안되는 경우 소명방법은 무엇일까요?

A 기본직불금 신청농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 직불금 수령을 위해 부정하게 농지를 분할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지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매매·증여·상속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임차계약 종료 등 신청면적 감소가 정당한 사유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유권이전 및 농지임대차계약 증명자료, 농지전용허가증,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 등으로 증명하거나,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로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예시

① 소유권이전 및 임대계약 종료, 농지전용허가증,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 등을 증명하는 자료

②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자료(ⓐ, ⓑ 각 1개 이상) : ⓐ임대차계약서, 농장주확인서 등 임대차기간, 임차인, 임대인을 알수 있는 서류,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대가 지불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미혼 자녀(세대 분리 3년내) 등 동일 농가내에서의 임대차는 농지분할 사유로는 불인정, 다만, 농지 전체를 승계하거나 이전부터 동 사유로 분할하여 기 지급받던 농지는 인정

심화학습

Q 소득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A 소득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소득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심화학습

Q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서는 임대수입이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데 직불제에서도 임대수입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A 직불제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은 시장개방에 다른 농촌거주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소득의 불안정 요소가 적은 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취지임에 따라 임대수입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심화학습

Q 신규 신청인 A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이 넘을 경우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A의 배우자 B로 신청자를 변경신청 가능한지요?

A 직불금 지급대상 요건을 미충족하였다 하여 타인으로 신청자를 변경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B가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음 연도에 B가 직불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Ⅲ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

① 소규모 농가란

- 소규모 농가의 범위
  - 소규모 농가 : 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감안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 자격요건 검증대상 :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

- 세대분리 인정의 예외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 미혼인 19세 미만 자녀
  - 결혼 이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한 후 3년 이내인 자

사례 살펴보기 세대 분리 농가

사례1) 세대 분리 불인정

Q. 부부인 A씨와 B씨, A씨는 OO군의 농지에 경작을 하고 있고, B씨는 △△군의 농지에 경작을하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소농직불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소농직불금 지급단위는 농업인이 아니라 공가입니다. A씨와 B씨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이므로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동일세대로 간주하여 개별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면적직불금은 개별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례2) 세대 분리 인정

Q. C씨의 아들인 D씨, 결혼을 하면서 가족농지를 분할하여 각각 경작하고 있습니다. C씨와 D씨는 소농직불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결혼한 자녀의 세대분리는 정당한 세대분리로서 인정되므로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지급요건

- 다음 사항 1~7까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농가의 구성원 중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농직불금 지급(농업법인은 제외)

1 **농지 경작면적 : 0.1~0.5ha이하**

-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농업인)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2 **농지 소유면적(농가) : 1.55ha미만**

- 비농업인을 포함한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3 농촌지역 거주기간 :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

- 농가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3년 이상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농촌에 있어야 인정, 다만, 질병의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와 기간에 한해서는 농촌에 거주한 것으로 봄

4 영농 종사기간 :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

- 농가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기간이 3년 이상
-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등으로 인정

5 농업외 종합소득금액(개인) : 등록신청 전년도에 2,000만원 미만

- 농가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외소득이 2천만원 미만

6 농업외 종합소득금액(가구) : 등록신청 전년도에 4,500만원 미만

- 농가 모든 구성원의 농외소득이 4천5백만원 미만

7 기타 소득금액 : (축산업)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3,8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과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축산 5천6백만원, 시설 3천8백만원) 미만 충족 필요

  * 시설채소, 시설과수, 시설화훼, 버섯 등 시설에서 재배되는 고소득 품목

- 농업인이 신고하는 소득을 인정하고, 과소 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사육·시설 규모 등을 감안하여 확인

심화학습

Q 소규모 농가의 규모를 0.5ha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소농직불금의 목적은 우리나라 농가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고 포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직불금 수령 경영체의 면적 분포를 보면 전체의 47%가 0.5ha 이하를 경작하고 있고, EU 농업 직불제에서 사용중인 소농기준 선정방식을 국내에 적용시 소규모 농가 평균 경지면적은 0.5ha 수준임을 감안하여 소규모 농가의 규모를 이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사례 살펴보기 이 경우는 소농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례1) 농사면적이 0.5ha 일지라도 같은 주소에 있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1.55ha 이상일 경우
→ 2 요건 미충족

사례2) 취미농, 귀농한지 얼마 안 된 사람, 직불금 많이 준다고 하니 바로 농지구입해서 신청하는 사람 등
→ 3, 4 요건 미충족

사례3) 배우자(농업인)의 농외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
→ 5 요건 미충족

사례4) 본인과 배우자(농업인)은 소규모로 농사짓고 농업외소득이 각각 2,000만원 미만이지만, 같이 사는 자녀(비농업인)의 연봉이 4,500만원 이상
→ 6 요건 미충족

사례5) 축산 소득은 없으며, 딸기 시설재배를 통해 소득 4,000만원
→ 7 요건 미충족

○ **위 사항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 소농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적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사례 살펴보기 소농직불금 vs 면적 직불금

Q. 밭비진흥지역 0.8ha를 가지고 있는 A씨(농지 경작 면적 이외 모든 소농직불금 수령조건 충족),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어느 것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A. A씨의 경우, 농지 경작 면적 이외 모든 소농직불금 수령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더 높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소농직불금 신청이 더 좋겠네요.
- 소농직불금 신청 시, 120만원 수령
- 면적직불금 신청 시, 107.2만원 수령

③ 지급 단가(금액)

○ 120만원(면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

심화학습

Q 소농직불금이 120만원으로 설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A 과거 직불금 지급액, 소농직불금 지급 기준 면적, '20년 직불금 재정규모, 국회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만일 공익직불제로 개편이 되지 않았더라면 예측되는 '20년 당시 직불금 지급액(고정 107.6+변동평균 87 = 194/ha)을 최소기준으로, 과거 최대 지급액이었던 '16년산 진흥논 쌀직불 지급액(고정 107.6+변동 211 = 311/ha)을 최대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소농직불금 기준이 되는 농가내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지급대상 경지면적의 합이 0.5ha로 검토됨에 따라, 기존직불금 수령 경영체 규모(47%가 0.5ha 이하), 해외 사례(EU 농업정책보조에서의 소농은 호당 평균경지면적 16.1ha의 30% 수준인 5ha 미만, 우리나라 호당 평균 경지면적에 동일기준 적용 시 0.5ha) 최소(97만원/0.5ha)와 최대(155만원/0.5ha) 사이에서 직불금 예산증액(정부안 2조2천억 → 최종 2조4천억원)과 국회 등 대외적으로 논의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2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 1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 여부 체크리스트

나는 소농직불금 대상자일까요, 면적직불금 대상자일까요?

- 아래 조건에 해당될 경우 1점을, 해당되지 않을 경우 0점을 점수 칸에 매겨 주세요

조건(조건에 해당되면 1점 부여)	점수
★ 농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 대상 농지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농업 외 소득이 2,000만 원 미만	
농가 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 원 미만이고,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 원 미만	

총점 **7점** 소농직불금 대상자입니다.

총점 **6점** (★조건 미포함)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 중 원하는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점 **6점이하** (★조건 포함) 면적직불금 대상자 입니다.

Ⅳ 면적직접지불금(면적직불금)

① 지급요건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그러나, 농업·농촌 공익가치 향상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지급예정인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 'Ⅵ. 농업인 준수사항' 확인

② 지급구분과 구간별 기준면적



그림 3 면적직접지불금 구간별 기준면적

- 기준면적 구간별(2ha이하, 2초과~6이하, 6초과~30이하)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9]를 적용
- 쌀 수급균형 회복효과 극대화를 위해 진흥지역 안의 논·밭, 진흥지역 밖의 논, 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단가 차등화
  ① 논·밭 진흥지역 〉 ② 논 비진흥 〉 ③ 밭 비진흥

심화학습

Q 농업진흥구역이란 무엇일까요?

A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실제로 기계화된 영농이 가능하도록 바둑판 모양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하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농업진흥구역이라고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9) 역진적단가
: 경작면적의 범위를 3단계로 구분하며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클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구분

③ 지급단가

표 1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단가

구간 / 단계	면적직불금(만원/ha)		
	2ha이하 (1구간)	2초과~6ha이하 (2구간)	6ha초과~30ha이하 (3구간)
가. 논·밭 진흥지역	205	197	189
나. 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
다. 밭 비진흥지역	134	117	100

* 30ha를 초과하는 면적의 단가는 마지막 구간(6초과~30ha이하)의 단가를 적용

- 기준면적 구간별,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한 지급단가 적용

- 현재의 논밭 이용형태와 관계없이 과거 기준연도 이용형태로 지급하므로 쌀직불 지원받던 농지는 논, 밭직불·조건불리 지원받던 농지는 밭으로 적용

- 구간별 단가는 가(논·밭 진흥지역)→나(논 비진흥)→다(밭 비진흥) 순서로, 기 적용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되는 단가를 적용
  가. 논·밭 진흥지역 : 면적에 따라 해당되는 구간별 단가를 가장 먼저 적용
  나. 논 비진흥 : '가'의 면적 이후부터 해당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다. 밭 비진흥 : '가' 또는 '나'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사례 살펴보기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과 논 19년 대비 지급단가 상승률**

기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직불금을 수령하던 밭농가의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쌀농가 뿐 아니라 밭농가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사례1)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 : ('19) 158만원/ha → ('20) 385 (144%↑)

2019년	→	2020년	→	인상율
158만원		385만원		144%↑

사례2)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3ha : ('19) 352만원/ha → ('20) 526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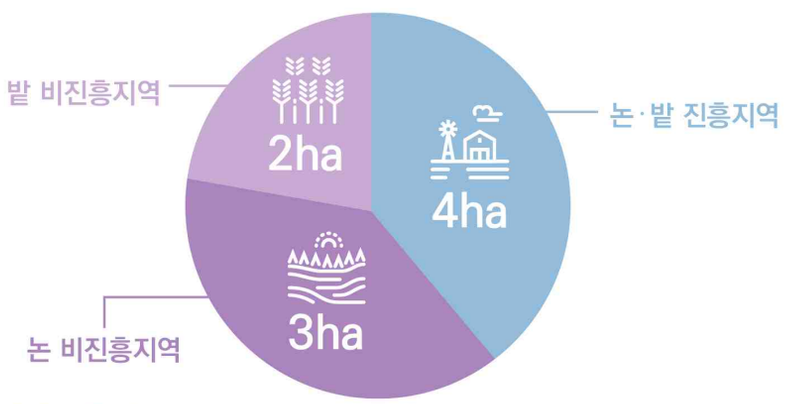
2019년	→	2020년	→	인상율
352만원		526만원		49%↑

④ 지급금액

- 면적직불금 산출식 : 지급금액 = X + Y + Z
  ① 논·밭 진흥지역 면적(a)에 지급할 금액 X = Σ (해당 구간별 면적 × 해당 구간별 단가)
  ② 논 비진흥지역 면적(b)에 지급할 금액 Y = Σ (해당 구간별 면적 × 해당 구간별 단가)
  ③ 밭 비진흥지역 면적(c)에 지급할 금액 Z = Σ (해당 구간별 면적 × 해당 구간별 단가)

사례 살펴보기 9ha땅 경작자인 김씨네 직불금

• 김씨네 땅(9ha)



• 김씨네 면적직불금 계산법



• 논·밭 진흥지역 면적 4ha, 논 비진흥 면적 3ha, 밭 비진흥 면적 2ha인 경우
  - 지급금액 = (진흥지역 804만 원) + (논 비진흥 502만 원) + (밭 비진흥 200만 원)

	1구간	2구간	3구간	금액 합계
논·밭 진흥 4ha	2ha × 205만 원	2ha × 197만 원		804만 원
논 비진흥 3ha		2ha × 170만 원	1ha × 162만 원	502만 원
밭 비진흥 2ha			2ha × 100만 원	200만 원
			총 면적직불금	1,506만 원

- www.agrix.go.kr(농림사업정보시스템) 〉 이용안내 〉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⑤ 지급상한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10] 400ha

- 기존에는 지급상한을 농업인당 논(30ha)·밭(4ha) 각각에 적용하였으나,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소유한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
- 다만,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2019년에 종전의 쌀직불, 밭고정직불,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논+밭) 면적의 합이 지급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을 인정

표 2 2019년 대비 면적직접지불금 지급 상한

구분		농업인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기존 직불	쌀	30ha	50ha	400ha(25인 이상)
	밭고정	4ha	10ha	-
	조건불리	논·조지 30ha, 밭 4ha	논·조지 50ha, 밭 10ha	-
공익직불		논밭 합산 30ha * 30ha 초과시 '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해 인정	50ha * 50ha 초과시 '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해 인정	400ha

10)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 법인구성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 농업인 25인 이상이 경작하는 50만㎡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공동영농 규약을 구비하고 육묘부터 수확까지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법인
- 법인구성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 농업인 25인 이상으로부터 출자 또는 임대받은 50만㎡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단일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공동경작하는 법인
- 25인 이상의 농업인을 법인구성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50만㎡ 이상의 농지를 임대 받아 단일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공동경작하는 법인
- 그밖에 위 각 호의 사항이 복합된 경우로서 25인 이상의 농업인을 참여시켜 50만㎡ 이상의 농지를 공동경작하는 법인

Ⅴ 재배면적 조정의무

① 재배면적 조정의무란?

- 수급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본직불금 신청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

법 제13조 재매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 부록2 P.13

② 재배면적 조정 계획 수립 방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하여 조정의무 부과 작목 및 면적 등을 포함한 재배면적 조정 계획 수립
  - 미곡은 양곡관리법의 재배면적 조정결과 반영
  - 조정계획 수립 시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
  - 조정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자문 요청
- 재배면적 조정계획에 따른 조정의무 부과 절차 및 방법은 별도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 → P.182

Ⅵ 농업인 준수사항

① 주요 내용

- 기본직불금(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17개 의무
-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먹거리안전, 영농활동 준수 등 5개 분야 17개 의무(세부 평가단위) 도입
- 농업의 환경영향, 국민공감대, 정책적 도입 필요성, 현장수용성, 연구결과 등을 고려하여 준수의무 설정

표 3 준수사항 분야 및 기대효과

분야	준수사항	관련 법령
환경 보호	**기대효과 : 물과 땅의 건강 회복**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을 준수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비료량 기준을 준수할 것	법 제1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
비료 적정 보관·관리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를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	법 제12조 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3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하고, 동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지 아니하고 액비 살포기준을 지킬 것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농약 및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유출·방치하지 않을 것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하천수 이용시 허가 등을 받고, 동 법 제52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시 허가 등을 받고, 동 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생태계 보전	**기대효과 :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② 다음의 활동 실시 •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휴경을 하더라도 ①농지형상 유지 ④ 교육이수 ⑤ 경영체 정보변경 ⑥공익 증진활동 ⑦ 법상 의무 준수 등을 지켜야 함 •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법 제12조 제1호 및 시행령 제12조

분야	준수사항	관련 법령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동 법 제24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법 제12조 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3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 및 그 주변에 규제병해충,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할 것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대효과 : 농촌 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 마을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치회(마을이장 포함 3~5인, 경작사실심사위원회가 수행 가능)를 구성하여 공동활동하고 활동결과를 해당 마을(자치회)에서 보관 - 농업인등은 주소지 기준(도시 거주자는 농지 소재지)으로 공동활동에 참여 * 지자체는 마을 공동활동 일지(양식)를 마을에 제작 배포한다. • 농관원이 이행점검 등 필요시 마을(자치회)에 공동활동 결과를 요청하면 해당 마을(자치회)은 관련 자료를 농관원에 제출 •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또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과 관련한 마을 공동활동*에 참여할 것 * (1) 마을 주변 영농·생활폐기물 공동 수거·처리 (2) 마을공동공간 청소·정비·경관개선 (3) 생태교란 식물 제거 (4) 농경문화의 계승을 위한 공동체 활동 (5) 지자체, 마을 자율조직 등이 운영·개최하는 마을축제, 농업기술교육, 문화활동 등 공동행사 • '20년과 '21년에는 총 활동시간이 연 8시간 이상, '22년과 '23년에는 연 12시간 이상, '24년 이후로는 연 2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 영농폐기물을 임의로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 등에 보관하여 농지등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할 것 •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을 농지에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않을 것 • 시·군·구 : 마을에서 모아둔 폐기물을 마을순회 회수차 등을 운영하여 수거 *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소각, 투기 등을 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강화	법 제12조 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3

먹거리 안전	기대효과 : 안전·안심 먹거리 공급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 국내 미등록 농약(밀수농약), 등록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난 농약(폐기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잔류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법 제1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 이산화황 등 기타 유해물질의 임의사용으로 인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다만, 중금속, 방사능, 독소류(유해미생물, 바이러스) 등의 비의도적 오염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잔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	법 제12조 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3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연기, 폐기 등의 출하제한 명령을 준수할 것	

분야	준수사항	관련 법령
영농활동 준수	**기대효과 : 경영체 역량 강화**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영농활동과 관련된 (1) 필지별 종자(종묘)·농약·비료 구매내역, 사용내역 등(영수증 포함) (2) 필지별 경운 일자 (3) 수확·판매 등 기타 영농활동 등을 재배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할 것 • 농관원 등 관계기관에서 기본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적합 발생시 농약·비료 구매·사용기록을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시 협조할 것 * 작성방법 : 수기 또는 온라인 기록, 단, '20년에는 농자재구입 영수증 보관 시 인정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 농업인은 매년 직불금을 지급받기 전(9.30)까지 농관원, 지자체, 농진청 등이 주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관련 교육을 2시간이상 이수할 것 * 교육내용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준수사항 이행 기준, 농업인등의 세부 실천방법 등	법 제1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할 것 * (1) 농업인 또는 법인의 성명(명칭), 주소 (2) 농지에 대한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재배품목, 시설현황	

② 준수사항 이행점검

표 4 준수사항 이행점검

이행점검 방식	고려 사항
점검기관	• 농관원, 지자체, 농진청 등
조사방법	• 현지조사 원칙으로 필요 시 서류조사 병행
조사대상	• 표본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기법 활용
표본 수	• 의무별로 현지조사 **표본의 적정 비중** * 농지형상의 경우 직불신청 필지의 50% 현지확인 등
타부처 소관법에 따른 의무	• **타부처 소관법**에 따른 의무 위반사항 파악을 위한 **협업·통보 체계** 마련, 직불금 관리 시스템과 연계
점검 시기 (적용 기간)	• 품목별 작부체계를 고려하여 연중 점검 실시 필요 •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년도 직불금 지급 시 지난해 10월부터 해당년도 9월까지 실시한 이행점검 결과를 지급액에 반영 - 2020년 : '20. 5. 1. ~ '20. 9. 30.(시료수거일 등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 한 날 기준) - 2021년부터 : 전년 10월 1일부터 등록신청연도 9.30일까지
이행점검 결과입력 또는 결과전송	• 이행점검기관의 장은 기본직접지불금 준수사항에 대하여 적용기간 중 수행했던 이행점검 결과(재조사 결과 포함)를 매년 10.31일까지 지자체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입력하여 전송 •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이행점검기관의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감액 등 지급제한을 결정하고 해당 농업인에게 감액지급에 대한 의견제출 과정을 거친 후 수령대상자에게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

이행점검 방식	고려 사항
이행점검 보고	• 기본직접지불금 이행점검기관은 익년 1.20일까지 이행점검 결과 및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에 보고 - 다만, 농관원은 당해연도 11.30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에 보고 - 점검결과는 적용 기간(전년도 10.1일부터 등록신청연도 9.30일까지)의 결과를 분석. (단, 의견제출에 의한 재조사는 10.31일까지 실시하여 결과 반영 가능)

③ 농업인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감액방법과 기준

표 5 준수사항 미이행 시 준수사항별 지급제한 기준

대분류	준수사항 (지급제한 평가단위)	미이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미이행한 농지 등 부분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은 농지 등에 대하여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다음의 활동을 실시할 것 •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다만, 이행점검 과정에서 등록된 농지 중 일부 면적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10%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 * 1) 유지(웅덩이), 2) 양·배수시설, 3) 수로, 4) 포장된 농로, 5) 제방, 6)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내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농지 7) 간이퇴비장, 8) 농막(20㎡이하, 주거목적 제외), 9) 간이저온저장고(33㎡이하), 10) 간이액비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	
2 농약 등의 사용기준 준수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농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3 비료 사용기준 준수	① 비료 사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대분류	준수사항 (지급제한 평가단위)	미이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
⑥ 마을 공동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기타 준수사항	① 등록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20~'21) 주의장 발급 ('22~'23) 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20~'21) 주의장 발급 ('22~'23) 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③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20~'21) 주의장 발급 ('22~'23) 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⑦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 (해당 법령의 위반에 의해 과태료·형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①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③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④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⑤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⑥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⑦ 병해충 발생 신고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⑧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가.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감액방법

1) 대상

- 기본직접지불금(면적직접지불금, 소농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법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미지급

사례 살펴보기 직불금별 준수사항 이행 대상기준과 지급제한 대상기준

 면적직불금 등록자	구분	 소농직불금 등록 농가 (대표 등록자 + 그 외 농업인 구성원)
등록자	준수사항 이행 대상	등록 농가 구성원 모두
등록자 수령 직불금의 일부 또는 전부 미지급	지급제한 대상	농가 대표 등록자 수령 직불금의 일부 또는 전부 미지급

2) 이행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기관의 조사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미지급

법 제18조,19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감액지급 등 → 부록2 P.23~24

3)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감액(지급제한) 기준

○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 총 감액(지급제한) 비율 : **등록연도 기준 최대 100%까지**
- **복수위반** : 지급제한 적용단위 기준 2가지 이상의 준수사항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을 합산**하여 적용
- **반복위반** : 전년도와 동일한 유형의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2회 반복시 20%, 3회 반복 이후 40% 감액 적용**

  - 동일 위반사항이 2개년 연속되는 위반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반복 위반으로 보지 않음
  - 지급제한 기준이 연차별로 확대되는 경우(등록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는 '23년까지의 위반에 대해서는 반복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정해진 지급제한 기준만 적용

- **가중, 감경기준** : 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제한 기준의 1/2범위에서 가중, 감경 적용 가능. 다만, 반복위반이 발생한 해에는 감경 불가

  - 가중, 감경이 적용된 이후 해당 준수사항의 반복 위반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의 가중, 감경을 반영한 최종 지급제한 비율에 2배를 곱하고 필요 시 가중 적용 가능(감경 불가)

○ **예외 적용**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경우

  - 미이행한 농지 등 부분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은 농지 등에 대한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다만, 이행점검 과정에서 등록된 농지 중 일부 면적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만 제외(10%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

  * 1) 유지(웅덩이), 2) 양·배수시설, 3) 수로, 4) 포장된 농로, 5) 제방, 6)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내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농지 7) 간이퇴비장, 8) 농막(20㎡이하, 주거목적 제외), 9) 간이저온저장고(33㎡이하), 10) 간이액비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

사례 살펴보기 복수위반

사례1) '20년 이행점검기간 동안 "1-①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과, "1-②다음의 활동을 실시할 것"을 모두 위반한 경우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되지 않은 토양 부분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은 농지 등에 대한 기본직불금의 20% 감액

➜ 다만, 소농직불금의 경우 기본직불 등록면적과 상관없이 소농직불금(정액)에서 20%감액하여 지급

사례2) "2-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결과 유통단계 안전성조사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고, 이후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단계 재조사 결과 다시 부적합이 발생 된 경우

➜ 같은 준수사항 내의 위반이므로 1건으로 처리하여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사례3) "2-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결과 2개의 품목에 대하여 각각 생산단계의 잔류허용기준이 위반된 경우

➜ 같은 준수사항 내의 위반이므로 1건으로 처리하여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사례 살펴보기 반복위반

사례1) '20년에 "2-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결과 A 품목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고, '21년에는 B 품목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 반복위반으로 판단, '20년에는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21년에는 기본직불금의 20% 감액

사례2) '20년에 "1-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을 미이행하고, '21년에 "1-② 다음의 활동을 실시할 것"을 미이행한 경우

➜ '20년에는 미이행한 농지 등 부분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은 농지 등에 대한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서로 다른 준수사항이므로 2021년에는 기본직불금의 1/10만 미지급

사례3) "5-② 등록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위반한 경우

➜ 2020년 주의장 발금, 2021년 주의장 발급, 2022년 기본직불금의 5% 감액, 2023년 기본직불금의 5% 감액, 2024년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2025년 기본직불금의 20% 감액

사례 살펴보기 가중, 감경기준

'20년에 최초 위반이 발생하여 이후 '21년 및 '22년에 반복 위반이 발생한 경우('21년과 '22년에는 감경은 적용할 수 없음)

사례1) 가감을 하지 아니할 경우

연도		2020년(1차 위반)	→	2021년(2차 위반)	→	2022년(3차 위반)
가중 또는 감경 판단	=	가감 없음		가감 없음		가감 없음
지급제한 비율	=	10% 감액		20% 감액		40% 감액

사례2) 1차 년도 감경조치함에도 불구하고 2차년도 반복위반이 발생되었을 경우

연도	2020년(1차 위반)	2021년(2차 위반)	2022년(3차 위반)
가중 또는 감경 판단 / 지급제한 비율	= 1/2 감경 / = 10% × (1−1/2) = 5% 감액	→ 1/2 가중 / 20% × (1+1/2) = 30% 감액	→ 가감 없음 / 40% 감액

4) 준수사항 단계적 확대

- 농업인의 적응,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완화된 제재 적용 필요

- 현장의 이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행 초기에 완화된 의무 및 감액 수준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함
  - 중장기적으로 기본 준수의무보다 더 강화된 공익기능 수행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선택직불제 도입을 통해 인센티브 부여

- 3가지 준수의무(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는 20년, 21년 현장 계도·홍보
  - 주의장 발부(계도홍보, 20~21) → 5% 감액(22~23) → 10% 감액(24년부터)

-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준수사항은 단계적으로 확대
  - 확인품목 단계적 확대(20년 1개 → 21년 6개 → 22년 16개)
  - 20~21년은 변경 요청한 경우 14일 내 변경신고, 22년부터는 14일 내 변경신고

표 6 연도별 준수사항 수준 및 감액 수준

준수의무	준수사항 수준	감액 수준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20) 폐비닐·폐농약병 지상 방치 금지 ('22) 폐비닐·폐농약병 매립 및 소각 금지 추가 ('24) 폐농약, 생활 폐기물 지상 방치 금지 추가	('20) 주의장 발부 ('22) 5% 감액 ('24) 10% 감액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20) 8시간 이상 활동 의무 ('22) 12시간 이상 활동 의무 ('24) 24시간 이상 활동 의무	('20) 주의장 발부 ('22) 5% 감액 ('24) 10% 감액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20) 농자재구입 영수증 보관의무 ('22) 농약·비료 사용내역 작성 및 보관의무 추가 ('24) 기타 영농활동 작성 및 보관의무 추가	('20) 주의장 발부 ('22) 5% 감액 ('24) 10% 감액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20) 기본정보, 농지정보, 재배품목(1개*) 변경에 따라 농관원이 변경 요청한 경우 14일 내 변경신고 * 벼	'20년부터 10% 감액

준수의무	준수사항 수준	감액 수준
	('21) 기본정보, 농지정보, 재배품목(6개*) 변경에 따라 농관원이 변경 요청한 경우 14일 내 변경신고 * 벼,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22) 기본정보, 농지정보, 재배품목(16개*) 변경 시 농관원 요청이 없더라도 14일 내 변경신고 * 벼,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참외, 오이, 딸기, 토마토, 호박, 수박, 사과, 배, 감귤, 포도	

5) 부적합 결과 통보 및 의견청취 안내

○ **이행점검기관의 장**(농관원, 농진청, 지자체 등 행정청)은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해당 농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부적합 점검결과 및 이로 인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가능의 내용을 10일 이내 통보하고 의견제출서 제출을 고지**

- 다만, 현장에서 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 또는 부재시 전화 녹취 등으로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경우(의견제출서 포함) 부적합 결과 서면 통보 생략 가능

○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의견이 있는 **농업인은 14일 이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이행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

- 농업인이 해당 기간 내 의견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의견서를 받은 이행점검기관은 재조사 등을 통해 재확인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농업인은 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의견 제출 불가

6) 과태료·처분에 대한 적용

○ '〈표5〉 준수사항 미이행 시 준수사항별 지급제한 기준' 중 "7 관련 법령상 의무 준수"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의 위반에 대하여,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 위반사실을 확인한 시점에 지급제한 조치 혹은 지급제한 대상 금액의 기지급분을 환수

* ①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②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③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④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⑤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⑥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⑦ 병해충 발생 신고, ⑧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 과태료나 처분의 결정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이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감액대상 금액을 결정하여 환수
-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였으나, 향후 무혐의가 입증되었을 때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2조에 따라 과오납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1.8%)을 적용하여 환급조치
- 지급된 직불금을 환수하거나 감액한 직불금을 환급하는 경우 지급예정인 기본직접지불금에서 가감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처리

7) 지급제한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점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를 근거로 농업인별 감액 등 지급제한을 정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직불금 감액의 내용을 10일 이내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
-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의견이 있는 **농업인은 14일 이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이행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
  - 농업인이 해당 기간 내 의견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인의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감액 사실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았을 경우 해당 이행점검기관에 의견제출에 대한 관련 자료 등 제출을 요청 가능.
  - 이미 이행점검기관의 소명 절차를 거친 경우 소명을 불인정

④ 준수사항 세부 내용

가. 환경보호

1)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가) 실천 의무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을 준수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비료량 기준」을 준수할 것

법 제12조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부록2 P.11

시행령 제13조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부록2 P.12

시행규칙 제5조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부록2 P.12

나) 이행점검방법

- **검정대상** : 기본직불금 등록대상 농지등의 토양
  - '19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지 및 '20년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 분석대상 확대 : 벼재배 논 → 전체 농지등(밭, 과수원, 시설재배지 추가)
    - 도 농업기술원 및 시 ·군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사용처방을 한 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작물 목록은 시행지침으로 정함 (비료사용기준이 없는 조경수 및 소규모 작목은 이행점검 대상에서 제외)
  - 적합인 필지에 대하여 중복조사 생략

- 농업인이 지자체에 희망조사 요청 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르지 않음.
  - 다만, 지자체에서 희망조사를 통한 토양검정 결과는 '흙토람'에 등록하고,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처방에 맞게 비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권고

검정시기

- '20년도 이행점검 기간 : 2020. 5. 1. ~ 2020. 9. 30(시료수거일 기준)
- 2021년부터 : 전년 10.1일부터 등록신청연도 9.30일까지
  - '21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전에 '20년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대상자 대상으로 사전 검정 가능

검정항목과 적용기준

- **검정항목** : pH*, 유기물함량, 유효인산함량, 교환성칼륨함량
  * 검사항목 확대 : 3개항목 → 4개항목(pH 추가)
- **적용기준**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적용기준

표 7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기준

항목 / 지목	① pH(1:5)	② 유기물(g kg^{-1})		③ 유효인산 (mg kg^{-1})	④ 교환성칼륨 ($cmol_c$ kg^{-1})
		내륙	제주*		
논	5.0~7.5	13~45	130이상	180이하	0.5이하
밭	5.5~7.5			825이하	1.2이하
과수원	5.5~7.5	13~53			
시설재배지		17~53	170이상		

* 제주도의 토양특성상(화산회토) 유기물함량 기준 별도 설정
* 토양검정 토양화학성분 분석 결과값의 반올림
  ① pH, 교환성칼륨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예시) pH 5.07 → pH 5.1
  ② 유기물, 유효인산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예시) 유기물 13.55 → 14
* 현장 확인 결과 경영체 등록정보상의 지목·품목과 상이할 경우 현장에서 확인한 지목·품목으로 적용하되, 농관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변경조치하도록 통보
* 작물특성이 특이한 5종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작물명	토양화학성 기준	비고
유채	유기물(13~60)	pH, 유효인산, 교환성칼륨은 지목별 기준과 동일적용
차나무	유기물(13~50)	
토란	유기물(13~50)	
인삼(예정지)	pH(5.0~6.5), 유기물(10~30)	유효인산, 교환성칼륨은 지목별 기준과 동일적용
블루베리	pH(4.5~5.5)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칼륨은 지목별 기준과 동일적용

• **토양검정 적합여부 판단기준**

- 1차 토양검정 적합여부(작물재배 전) :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적용기준을 2개 항목 이상 만족할 경우 적합
- 2차 토양검정 적합여부(작물재배 후) :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적용기준을 2개 항목 이상 만족할 경우 적합. 2차 토양검정 적합 필지는 적합 통보하고, 부적합 필지에 대해서는 3차 적합여부 추가 적용하여 최종 판정
- 3차 적합여부 : 2차 토양검정 결과를 활용하여 〈표 8〉 "3차 적합여부 판정기준" 분석항목 중 2개 이상이 적합판정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으로 최종 판정

표 8 3차 적합여부 판정기준

항 목	구 분		판 정
pH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적용기준의 적정기준 범위 내		적 합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적용기준의 적정기준 범위 외		부적합
유기물	기준 초과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적 합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기준 미달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적 합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유효인산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적 합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치환성칼륨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적 합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점검절차

① [지자체]토양검정 대상자 선정 및 사전안내

- 지자체는 Agrix의 농업경영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별 논·밭·과수원·시설 재배지의 면적, 주요 재배작물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토양검정 대상자를 선정
  - 1차 토양검정 결과 부적합 농가는 2차 대상자에 반드시 포함
- 지자체는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시료 수거 7일전 조사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이 포함된 현장 입회요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
  - 다만, 정해진 일자에 조사대상자 미입회시 시료를 임의로 채취 가능

② [시군농업기술센터, 도농업기술원] 토양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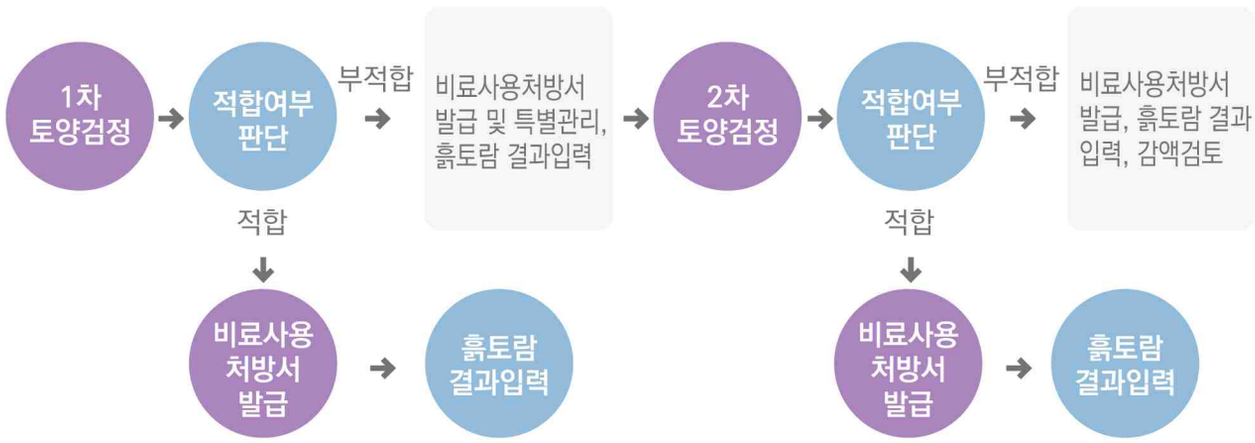


그림 4 토양검정 절차

- (1차 토양검정) 작물의 수확 직후 또는 재배 직전(작물재배전 이행점검 가능)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농경지에 대하여 토양검정 실시
  -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적용기준 2개 항목 이상 만족할 경우 적합 판정
  - 토양검정 결과 농경지내 화학비료 함량을 고려하여 재배작물에 적합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하고 비료사용처방서를 근거로 비료 구매하도록 지도
  - 1차 토양검정 실시 결과 부적합 필지 발생시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른 구매·살포 확인 등 특별관리하고 작물 수확 직후 2차 토양검정을 실시(1차 토양검정 결과 적합은 2차 토양검정 제외).

사례 살펴보기 1차 토양검정 부적합시

옥수수 터널재배 파종(3월) → 옥수수 수확 및 1차 토양검정 부적합(6월) → 옥수수 파종(7월) → 옥수수 수확(9월) → 2차 토양검정 추진

- (2차 토양검정) 1차 토양검정 이후 재배한 작물 수확 직후 토양검정 실시
  -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적용기준 2개 이상 만족하면 적합 조치한다
  - 부적합 필지에 대해서는 3차 적합여부를 추가 적용하여 최종 판정
- (3차 적합여부) 2차 토양검정 결과를 활용하여 “3차 적합여부 판정기준” 분석항목 중 2개 이상이 적합 판정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으로 최종 판정
  - 단, 3년 이내(2차 토양검정 연도 + 3년)에 다시 1차 토양검정 대상에 포함하고 비료사용처방, 교육 등 집중관리

사례 살펴보기 **3년 이내 토양검정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 (1차 밭토양) pH 7.0, 유기물 11, 유효인산 827, 교환성칼륨 1.3 → 1항목 적합 ⇒ 부적합
- (2차 밭토양) pH 7.0, 유기물 11, 유효인산 826, 교환성칼륨 1.3 → 1항목 적합 ⇒ 부적합
- (3차 밭토양) pH 7.0, 유기물 11, 유효인산 826, 교환성칼륨 1.3 → pH가 적정범위 이내이고, 유효인산이 개선되었음 ⇒ 적합

➜ 적합으로 처리하되, 시비처방과 교육을 지원하고 3년 이내 다시 1차 토양검정 실시

③ [지자체]부적합 통보

- 2차 토양검정결과 부적합인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처분에 대하여 10일 이내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

④ [농업인, 농업법인] 이의신청

- 지급제한과 관련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14일 이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 기간 내에 소명이 없는 경우 이행점검기관은 처분의 내용을 적용
  - 농업인 등이 토양검정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도기술원, 시군기술센터에서는 1회에 한하여 추가 토양검정을 실시 가능
  - 농업인이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비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토양검정결과 부적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비료 구매영수증 또는 영농기록일지 등을 제출하여 소명
  - 지자체에서는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대상에서 제외 가능

⑤ [지자체,농촌진흥청] 이행점검 결과처리 및 보고

-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1.31일까지 이행점검 「전년도 결과 및 금년도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에 보고
  - 이행점검 계획은 조사대상 필지수, 조사계획 필지수, 이행점검 기간 등을 포함
  - 이행점검 결과는 조사대상 필지수, 조사결과 필지수, 부적합 필지수 등을 포함

  * 점검 계획 및 결과 적용기간 : 1.1일 부터 12.31일 까지
- 자치단체장은 매년 1.20일까지 이행점검 「전년도 결과 및 금년도 계획」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이행점검 계획은 조사대상 필지수, 조사계획 필지수, 이행점검 기간 등을 포함
  - 이행점검 결과는 조사대상 필지수, 조사결과 필지수, 부적합 필지수 등을 포함

  * 점검 계획 및 결과 적용기간 : 1.1일부터 12.31일까지
- 자치단체의 장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와 관련하여 시료채취 기간에 따라 아래의 기한에 이행점검 결과를 흙토람·Agrix에 입력·전송
  - 결과입력 전송 기한

  * 시료채취 기간(1.1.~9.30.) 이행점검 결과 입력·전송 기한 : 10.31.
  * 시료채취 기간(10.1.~12.31.) 이행점검 결과 입력·전송 기한 : 12.31.
  * 전산 오류 발생 또는 오류가 확인된 경우 즉시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 수정

참고 2 흙토람 시스템(예시)

○ 우리나라 논·밭의 토양특성 정보 및 알맞은 비료 추천량을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 및 모바일 웹 시스템

- 농촌진흥청이 50여년간 국책사업으로 수행한 정밀 토양조사 등 R&D 결과로서 토양특성에 맞는 합리적 농경지 관리에 활용

흙토람 주요 서비스

- 우리나라 토양 설명: 토양종류(405개 토양통), 논·밭 토양유형 등
- 토양환경지도(119종): 토양특성 30종, 토양적성 64작물, 농경지화학성 25종
- 비료사용처방(146작물): 토양 화학성 검정결과, 작물별 비료추천량 등



〈흙토람-토양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활용현황
  - 홈페이지 활용 : ('12) 191천건 → ('15) 328 → ('18) 566
  -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 ('12) 256천건 → ('15) 538 → ('19) 575
  - 토양도 제공: ('12) 7천 도엽 → ('15) 94천 → ('18) 163천

참고 3 비료사용 처방서(예시)

논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경지 현황

조사번호	2020-1	작물명	벼(일반답)	면적	3,306㎡
경작자명	홍길동	경작지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		
경작자주소					
토양유형	사질답	토성	미사질양토	토양통	만경통	배수등급	약간불량
토양특성	모래가 많아 양분과 수분을 지니는 능력이 적으므로 유기물 시용 및 점질 토양의 객토 등의 토양관리가 필요합니다.						

토양검정 결과



단위	pH(1:5)	g/kg	mg/kg	cmol+/kg	cmol+/kg	cmol+/kg	mg/kg
적정범위	5.5~6.5	25~30	80~120	0.25~0.3	5.0~6.0	1.5~2.0	157~180

※ 전기전도도(dS/m): 0.3

☞ 유기물 함량이 부족하며 토양중 인산성분과 규산성분은 적습니다.
인산함량이 높은 비료를 사용하고, 규산질 비료를 시용하십시오.

비료 추천량 (kg / 3,306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구분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퇴비 종류				규산질비료
	요소	유안	용성인비	용과린	염화칼리	황산칼리	우분퇴비	돈분퇴비	계분퇴비	혼합퇴비	
밑거름	32	69	109	109	12	14	5,296	1,165	900	1,910	993
웃거름	25	54	0	0	5	6	-	-	-	-	-

< 참고 >10a당 화학비료 성분량(밑거름/웃거름): 질소(4.4/3.4),인산(6.6/0.0),칼리(2.1/0.9)kg

< 복합비료 추천량 >

♣ 밑거름 : 인산맞춤6호(16-20-8) 비료 4포와 11kg을 주십시오.
♣ 웃거름 : NK비료 (30-0-10) 비료 1포와 18kg을 주십시오.

담당자 의견

› 벼(일반답) 재배시에 밑거름은 추천한 비료량을 사용하시고 웃거름은 생육상태에 따라 다소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참고> 분얼거름은 이앙 후 12~14일에 요소 9.9kg을 주고, 이삭거름은 이삭길이가 1.0~1.5mm가 되고 이삭꽃이 생길때(이삭패기 25일 전)에 요소 14.8kg과 칼리비료를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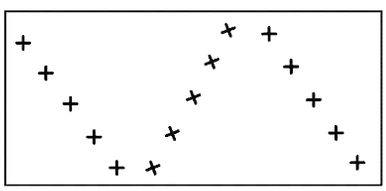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일: 2020년 01월 15일 발급일자: 2020년02월01일 담당자: 성춘향 전화: 063-23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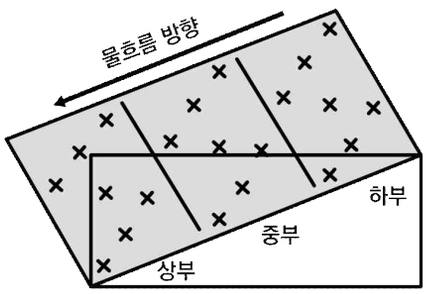
참고 4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절차(예시)

1. 토양 시료 채취

○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지별로 토양 시료를 균일하게 채취. 필지별로 대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평지에 지그재그로 지점을 선정하고, 경사지에서는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누어 채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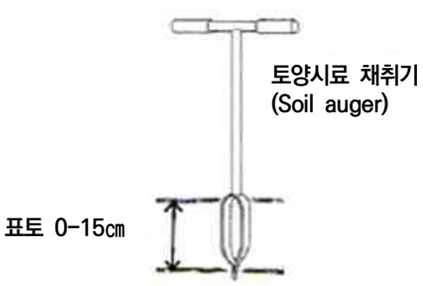
①필지를 대표하는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지그재그로 지점 선정



②경사지에서는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누어 채취

○ 토양 시료는 표토로부터 작물뿌리가 주로 분포하는 깊이인 약 15cm 깊이까지 균일하게 채취. 이 때 토양시료채취기(Soil auger)를 이용하거나 삽을 이용하여 채취

• 토양시료채취기를 이용한 시료 채취



① 15㎝ 깊이까지 균일하게 채취할 수 있는 토양시료채취기



② 시료채취 깊이만큼 토양시료채취기를 들린 후 빼내어 시료봉투에 담음

• 삽을 활용한 간편한 토양시료 채취

① 두 삽을 이용하여 작물 뿌리가 주로 분포하는 깊이(약 15㎝)와 일정한 두께(약5~7㎝)의 토양시료를 채취

② 채취한 토양의 가장자리를 잘라내고 지점 별 토양시료를 선별

③ 토양시료를 봉투에 넣어 잘게 부수고, 공기를 넣어 밀 후 흔들어 복합시료조제



참고 5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절차(예시)

2.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절차

단계	주요 추진 내용	추진주체
토양시료 접수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을 토양시료 분석 의뢰 - 재배이력, 비료 사용 등 특이사항 기록 *토양검정 의뢰 및 시료보관: 500g은 농업기술센터에 송부, 200g은 자체보관	농업인
↓		
시료조제 토양검정	• 토양 및 식물분석법에 준하여 토양검정 실시 - 토양검정과정: 풍건·시료조제 → 전처리 → 기기분석 *분석항목: pH, EC,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 유효규산(논), 석회소요량(밭) 등 *분석 소요일수: 14일, 1회 50점 의뢰 기준[1)]	농업기술센터
↓		
검정결과 등록	• 흙토람 토양검정업무 시스템에 토양검정결과 등록	농업기술센터
↓		
처방서 발급	•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및 처방서 발송 *모바일 처방서는 발급 즉시 발송	농업기술센터
↓		
처방서 발송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뢰인에게 처방서 발송 *농산물 인증용 처방서는 인증용 시스템으로 직접 발송	농업기술센터
↓		
처방서 확인	• 모바일 처방서 문자 서비스(휴대전화번호 등록시)	농업인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2)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 실천 의무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를 실내 또는 적정한 공간에 보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하고, 토양이나 하천 등에 비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비료 적정 보관·관리 비료관리법

제19조의2(비료의 관리의무) ①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있어 유출·방치·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7.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한 자

나) 이행점검방법

○ **점검항목** : 비료의 유출·방치·매립으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료 보관·관리 사항

- 구분·밀폐된 공간의 비료 보관장소 확보, 비료 사용 후 포장재 봉합 관리 등

○ **점검시기** :

- '20년도 이행점검 기간 : 2020. 5. 1. ~ 2020. 9. 30(현장점검 기준일)

  - 향후 회계연도 기준 전년도 10.1일부터 회계연도 9.30까지의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

○ **점검절차**

① [지자체] 위반자 적발·처분

② [지자체] 위반자 적발·처분내역 통보·보고

③ [지자체] 관리기관 결과 제출(Agrix 입력)

○ **적합여부 판단** : 관계 행정기관의 적발·처분 결과(형사고발자)

다) 관련 사진



적정한 비료보관(1)



적정한 비료보관(2)

3)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가) 실천 의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하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지 아니하고 액비 살포기준을 지킬 것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가축분뇨법)

제13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등) ① 자원화시설의 퇴비화 또는 액비화의 기준(이하 "퇴비액비화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참고) 다만,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비 또는 액비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 또는 액비의 공정규격(이하 "공정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운영자"라 한다),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처리시설설치·운영자"라 한다)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나) 이행점검방법

- **점검항목** :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및 액비 살포기준 등 준수 사항

  - 퇴비액비화 기준

퇴비액비화 기준 가축분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1. 퇴비화기준

종류	항목	기준
모든 가축	부숙도(腐熟度)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70% 이하
돼지	구리	500㎎/㎏ 이하
	아연	1,200㎎/㎏ 이하
소·젖소	염분	2.5% 이하

2. 액비화기준

종류	항목	기준
돼지·젖소	부숙도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 돼지: 95% 이상 • 젖소: 93% 이상
	염분	2.0% 이하
	구리	70㎎/㎏ 이하
	아연	170㎎/㎏ 이하

*비고
부숙도 관련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퇴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2020년 3월 25일
2. 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가. 허가대상 배출시설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의 경우
      : 2017년 3월 25일
   나. 가목 외의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9년 3월 25일

• 액비의 살포기준

액비의 살포기준 가축분뇨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23조의2

1. 액비는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腐熟)시켜 악취는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은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및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는 액비를 살포하여서는 아니되며, 별표 3에 따른 액비 살포에 필요한 면적에 맞게 살포하여야 한다.
3.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 살포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액비 살포가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비료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분뇨발효액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악취 발생이 없는 경우
4.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은 액비 사용량 절감 및 액비를 계속 쓴 데에 대한 사용량 조절을 위하여 염류가 토양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해야 한다.

점검시기:

• '20년도 이행점검 기간 : 2020. 5. 1. ~ 2020. 9. 30(현장점검 기준일)
- 향후 회계연도 기준 전년도 10.1일부터 회계연도 9.30까지의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

- **점검절차**
  ① [지자체(시·군·구)] 위반자 적발·처분
  ② [지자체(시·도)] 위반자 적발·처분내역 통보·보고
  ③ [지자체(시·도)] 관리기관 결과 제출(Agrix 입력)

- **적합여부 판단** : 관계 행정기관의 적발·처분 결과(형사처분자)

다) 관련 사진



가축분뇨 퇴비화



가축분뇨 액비 살포

4)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배출금지

가) 실천 의무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농약 및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유출·방치하지 않을 것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배출금지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및 원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제77조(벌칙) 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한 자
3.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배출금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가축분뇨법)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①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 이행점검방법

○ **점검항목** : 농약, 가축분뇨 등을 공공수역에 배출 금지 준수 사항

○ **점검시기**

• '20년도 이행점검 기간 : 2020. 5. 1. ~ 2020. 9. 30(현장점검 기준일)

- 향후 회계연도 기준 전년도 10.1일부터 회계연도 9.30까지의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

○ **점검절차**

① [지자체(시·군·구), 한국환경공단] 위반자 적발·처분

② [지자체(시·도)] 위반자 적발·처분내역 통보·보고

③ [지자체(시·도)] 관리기관 결과 제출(Agrix 입력)

○ **적합여부 판단** : 관계 행정기관의 적발·처분 결과(형사고발자)

다) 관련 사진



농약 오염 하천



가축분뇨 배출 오염 하천

5)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가) 실천 의무

- 농업용수로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50조의2에 따라 사용 신고할 것

- 1일 8천㎥이상 농업용수 사용시「하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그 사용 내용을 기록·보관할 것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하천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제50조의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 중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 중 제10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제9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5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자

나) 이행점검방법

- **점검항목** : 하천수 이용 허가(신고)사항, 계측시설 설치 및 농업용수 사용 기록 작성 및 보관사항

별지 제27호 서식 하천수 사용 허가신청서 → P.232

별지 제28호 서식 하천수 사용 허가증 → P.233

- **점검시기**
  - '20년도 이행점검 기간 : 2020. 5. 1. ~ 2020. 9. 30(현장점검 기준일)
    - 향후 회계연도 기준 전년도 10.1일부터 회계연도 9.30까지의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

점검절차

① [지자체(시·도), 환경부 관할 홍수통제소] 위반자 적발·처분

② [지자체(시·도)] 위반자 적발·처분내역 통보·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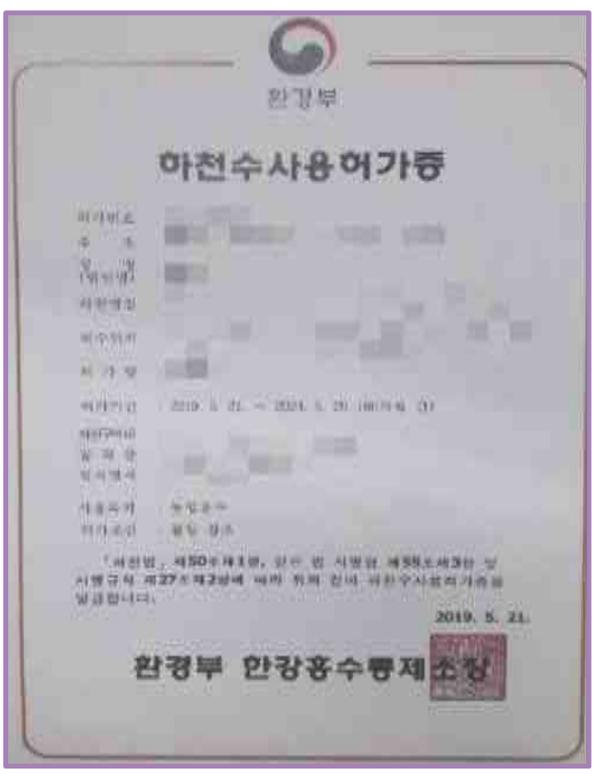
③ [지자체(시·도), 환경부 하천관리청] 관리기관 결과 제출(Agrix 입력)

적합여부 판단 : 관계 행정기관의 적발·처분 결과(형사고발자, 과태료처분자)

다) 관련 사진



농가 이용 하천수



하천수 허가증(예시)

라) 관할 홍수통제소 정보

한강홍수통제소	02-590-9931,3
금강홍수통제소	041-851-0522,4,9
낙동강홍수통제소	051-603-3325,9
영산강홍수통제소	062-600-8321,2

6)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가) 실천 의무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허가를 받거나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할 것

- 「지하수법」 제15조, 제20조에 따른 정기적 지하수 수질검사, 시설·토지의 원상복구 등 적정하게 관리할 것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지하수보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
   다. 「하수도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3. 지하수의 수위저하·수질오염 또는 지반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5조(원상복구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에 의한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3.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4.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6. 제8조의2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7. 제9조의4에 따라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8. 그 밖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다만,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상복구 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경우
2.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토지의 굴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의 기준·방법·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질검사 등)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수질검사의 항목·기준·절차 및 검사전문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나) 이행점검방법

- **점검항목** : 지하수 개발·이용시 지자체 허가·신고, 명령 준수 및 적정 관리 사항
- **점검시기** : 연중

별지 제29호 서식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P.234
별지 제30호 서식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서→ P.235

- **점검절차**

  ① [지자체(시·군·구)] 위반자 적발·처분

  ② [지자체(시·군·구)] 위반자 적발·처분내역 통보·보고

  ③ [지자체(시·군·구)] 관리기관 결과 제출(Agrix 입력)

- **적합여부 판단** : 관계 행정기관의 적발·처분 결과(형사고발자, 과태료처분자)

다) 관련 사진



지하수 개발 사진(1)



지하수 개발 사진(2)

나. 생태계 보전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가) 실천 의무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 다음의 활동 실시
  -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법 제12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부록2 P.11

시행령 제12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부록2 P.12

나) 이행점검방법

- **점검대상**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된 농지(농업인)
  - 등록된 농지(농업인) 중 경영체 DB 및 팜맵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대상 위주로 선정. '20년 등록 농지의 50% 이상

- **점검시기**
  - '20년도 이행점검 기간 : 2020. 5. 1. ~ 2020. 9. 30(현장점검 기준일)
    - 향후 회계연도 기준 전년도 10.1일부터 회계연도 9.30까지의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
  - 적용시점 : 위 기간 내에 부적합으로 적발된 시점
    - 다만,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의견제출로 재조사 한 경우 10월까지 가능

- **점검항목**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한 토양의 유지 여부, 폐경 여부, 작물재배, 경운, 경계 설치, 용·배수로 정비 상태

- **적합여부 판단**
  - 해당 농지등에서 농작물 생산가능 토양의 유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시 연중 1회 이상 경운, 둑·이랑·표지석 등으로 경계를 설치,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의 경우 용수의 흐름이 쉽도록 용·배수로 정비를 하는 등 모든 기준의 충족 여부(* 필요시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별지 제31호 서식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준수사항 이행점검표→ P.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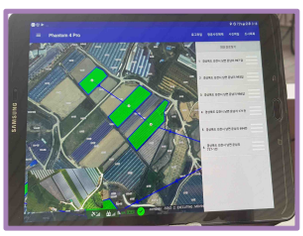
점검방법:

- (1차)팜맵(농경지 전자지도)를 활용한 사전점검
- (2차)태블릿PC, 드론을 활용한 현장조사
  - 요건 미비 확인 시,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확보·보유

*〈현장조사〉 : 태블릿PC와 드론을 활용한 현지 확인




조사원 현지 확인




자동비행 드론 조사용 앱과 영상촬영 사진

점검절차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표본필지 선정·통보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조사대상자는 AgriX의 농업경영정보를 활용하여 부정신청 고위험군 위주로 표본을 선정
  - 다만,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및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는 반드시 조사대상에 포함
  - 표본선정 우선순위 :
    (1순위) 전년도 부적합 필지
    (2순위) 경영체 DB 농지정보와 직불신청 내용 불일치 신청자
    (3순위) 필지 또는 면적 변경이 많은 신청자
    (4순위) 당해 년도 신규등록 관외 경작자
    (5순위) 과거 3년간 비표본 필지 등
- 표본 선정된 농지의 현장조사 시 해당 농업인에게 일시, 목적, 내용 등을 7일 전까지 안내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도 가능
  - 다만, 기획조사, 긴급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상기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현장에서 제시함으로 갈음 가능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이행점검

- (1차) 팜맵(농경지 전자지도)을 활용한 사전점검 → (2차) 태블릿PC, 드론 활용 현장조사
- (증빙자료 확보) 현장조사 시 조사원은 부적합 사항에 대한 현장사진, 조사내용에 대한 농업인 서명·날인, 조사자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
- 의무 불이행 확인 시 조치내용
  - 증빙자료(현장사진, 조사자 소견서)확보
  - 서면 등으로 결과 통보

③ [지자체,Agrix] 부적합 통보

- (부적합 사전통보)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를 농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며 직불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을 안내
  - 다만, 현장에서 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 또는 부재시 전화 녹취 등으로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경우(의견제출서 포함) 부적합 결과 서면 통보 생략 가능

별지 제33호 서식 농지등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이행점검 결과통보서 → P.238

④ [농업인, 농업단체] 이의신청

- 의견서 제출 : 부적합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후 14일 이내 의견서를 농관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별지 제49호 서식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의견서 → P.254

- 재조사 : 의견서를 받은 관할 농관원은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결과를 농업인에게 서면 통보(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농업인 의견청취는 없음).

⑤ [지자체,Agrix] 이행점검 결과 통보 및 보고

- 농관원은 부적합 사항과 재조사 결과를 포함한 이행점검결과를 10.31.까지 AgriX시스템으로 시·군·구에 통보하며, 11.30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농식품부에게 서면으로 보고

별지 제34호 서식 농지등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보고 → P.239

다) 관련 사진 : 유형별 실천 의무 미준수 토지

환경유해물질·건축폐기물 등이 적치되어 있는 농지



모래·자갈 등이 적치되어 있는 농지



○ 휴경으로 신청하고, 건축자재가 적재되어 있는 경우



○ 등록된 농지에 물웅덩이가 있는 경우



○ 등록된 농지에 묘지가 있는 경우



2)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가) 실천 의무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동 법 제24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유예) ① 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6.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한 자

나) 이행점검방법

○ **점검항목** :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보관 여부

•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185호)

① 포유류, 양서류·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9종)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

구 분	종 명	사 진
포유류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양서류·파충류	가.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나.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어류	가. 파랑볼우럭(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나. 큰입배스 *Micropterus salmoides*	

구 분	종 명	사 진
갑각류	미국가재 *Procambarus clarkii*	
곤충류	가. 꽃매미 *Lycorma delicatula*	
	나.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	
	다. 등검은말벌 *Vespa velutina nigrithorax*	

② 식물(15종)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

구 분	종 명	사 진
식 물	가.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나.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다.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라.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마.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	
	바.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사.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아. 가시박 *Sicyos angulatus*	
	자. 서양금혼초 *Hypochoeris radicata*	

구 분	종 명	사 진
	차.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카.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타. 가시상추 *Lactuca scariola*	
	파.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하.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거.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Siebold & Zucc.*	

점검시기

- '20년도 이행점검 기간 : 2020. 5. 1. ~ 2020. 9. 30(현장점검 기준일)
  - 향후 회계연도 기준 전년도 10.1일부터 회계연도 9.30까지의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

점검절차

① [지자체(시·군·구), 지방환경청, 유역관리청] 위반자 적발·처분
② [지자체(시·도), 환경부] 위반자 적발·처분내역 통보·보고
③ [지자체(시·군·구)] 관리기관 결과 제출(Agrix 입력)

적합여부 판단 : 관계 행정기관의 적발·처분 결과(형사고발자)

3)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가) 실천 의무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 및 그 주변에 규제병해충,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할 것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식물방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규제병해충"이란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을 말한다.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식물을 재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
2.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제32조(방제계획)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제기본지침 및 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제기본지침

가. 방제의 기본방향
나.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다. 방제의 추진 요령 및 방제예산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제5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물의 재배자

나) 이행점검방법

○ **점검항목** : 규제 병해충·방제 대상 병해충의 발생시 신고의무 준수 사항

- 규제병해충 정보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www.qia.go.kr)에서 확인 가능

- 규제병해충 : 병해충 중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검역병해충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과 규제비검역병해충으로 구분
- 검역병해충 : 국내 유입시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중요성이 있고, 국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국내의 일부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 사업, 기타 방제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으로서 금지병해충과 관리병해충으로 구분
- 금지병해충 :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당해 병해충의 분포국가로부터 기주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해충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해충과 병해충위험분석결과 금지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병해충

- 관리병해충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병해충
- 규제비검역병해충 : 재식용 식물에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비검역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병해충

• 방제대상 병해충 정보 :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https://ncpms.rda.go.kr/)에서 확인 가능

표 9 재배 시기별 방제대상 병해충

구분	못자리 시기	본논 초기 (5월중~6월중)	본논 중기 (6월하~8월상)	본논 후기 (8월중~수확기)
병	모잘록병, 모도열병, 깨씨무늬병, 키다리병	잎도열병	잎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깨씨무늬병, 이삭도열병(조생종)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세균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 이삭마름병, 깨씨무늬병
해충	벼잎선충	애멸구, 벼물바구미, 벼잎벌레 ,벼굴파리류	벼멸구, 애멸구 흰등멸구, 벼물바구미, 이화명나방, 혹명나방, 노린재류	벼멸구, 흰등멸구, 이화명나방, 혹명나방, 노린재류

※ 출처: 농촌진흥청 주요병해충 종합관리

점검시기

• '20년도 이행점검 기간 : 2020. 5. 1. ~ 2020. 9. 30(현장점검 기준일)
- 향후 회계연도 기준 전년도 10.1일부터 회계연도 9.30까지의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

점검절차

① [지자체(시·군·구), 식물검역기관, 농촌진흥청] 위반자 적발
② [지자체(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위반자 처분 요청
③ [지자체(시·도)] 위반자 처분 및 통보
④ [지자체(시·군·구)] 관리기관 결과 제출(Agrix 입력)

적합여부 판단 : 관계 행정기관의 적발·처분 결과(과태료처분자)

다) 관련 사진



과수화상병

라) 참고

- 과수화상병 등 검역병해충을 비롯해 불분명한 병해충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국 어디서든 국번 없이 1833-8572(바로처리)로 전화하면 발신자 위치와 가장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담당자에게 연결(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 신고 시 고지 : △병해충 발견 장소와 일시 △신고대상 식물의 품종·수량 등
  -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병해충을 신고했다면 식물방역법 제43조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

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1)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가) 실천 의무

- 마을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치회(마을이장 포함 3~5인, 경작사실심사위원회가 수행 가능)를 구성하여 공동활동하고 활동결과를 해당 마을(자치회)에서 보관
  - 농업인등은 주소지 기준(도시 거주자는 농지 소재지)으로 공동활동에 참여
  - 지자체는 마을 공동활동 일지(양식)를 마을에 제작 배포

- 농관원이 이행점검 등 필요시 마을(자치회)에 공동활동 결과를 요청하면 해당 마을(자치회)은 관련 자료를 농관원에 제출

-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또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과 관련한 마을 공동활동에 참여할 것

나) 이행점검방법

- **점검대상** : 전체마을의 1% 내외로 무작위 표본 선정(500여개 수준)

- **점검항목** : 마을 공동활동 참석자(명단 및 서명), 활동 내용, 활동 일시 및 시간 등을 확인

별지 제45호 서식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준수사항 이행점검표→ P.250

  - 마을 주변 영농·생활폐기물 공동 수거·처리(연 2회, 1회 4시간 이상)
  - 마을공동공간 청소·정비·경관개선
  - 가시박 등 생태교란식물 공동 제거
  - 농경문화의 계승을 위한 공동체 활동 등(사물놀이, 마을단위 김장담기행사, 지역 고유 전통문화 관련 활동 등)
  - 지자체, 마을 자율조직 등이 운영·개최하는 마을축제, 농업기술교육, 문화활동 등 10인 이상 참여하는 공동행사(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작목반 교육, 축제 운영요원 활동, 마을가꾸기, 작은영화관 등)
  - 다만, 여건을 고려 10인 미만의 마을은 농업인의 1/2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는 인정

- **점검시기**
  - '20년도 이행점검 기간 : 2020. 5. 1. ~ 2020. 9. 30(현장점검 기준일)
    - 향후 회계연도 기준 전년도 10.1일부터 회계연도 9.30까지의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

- **점검절차**

① [마을(자치회)] 마을별 공동활동 실천결과 증빙서류 보관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스템 및 현장점검

③ [지자체(시·군·구)] 불참자 부적합 통보
④ [지자체(시·군·구)] 관리기관 결과 제출(Agrix 입력)

지자체의 역할

- 지자체(시·군·구)는 기술센터, 지역농협,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대표, 이장 등이 계획하고 있는 지역단위, 마을단위 공동체활동과 관련하여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마을 공동활동 범위에 따라 수요조사를 파악하여 연간계획을 수립
  - 마을 주변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공동 수거활동을 매년 1회 4시간 이상 2회(3월, 11월, 지역 특성에 따라 폐기물에 집중되는 시기를 조정 가능) 실시계획을 반드시 포함
    * 마을 공동활동 결과 작성일지(양식) 제작 및 마을별 배포 계획 포함
  - 수요조사 결과 지원사업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가용범위에서 공동체활동에 필요한 예산 또는 자원 지원 가능
  - 다만, 개인 또는 특정 단체의 이득과 관련한 행사, 선거 관련 행사 등은 마을 공동활동으로 불인정
- 지자체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관리기관인 농관원에 제출
- 마을단위 공동체활동을 주관하는 대표는 원활한 공동활동 등 추진을 위하여 방송 또는 마을회관 게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외거주자, 귀농인에는 전화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안내
  - 다만, 공동활동 실시일에 입원 중인 농업인을 포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가 어려운 농업인은 공동활동 참여 제외 가능. 이 경우 공동활동 참여자로 인정 가능.(읍·면 단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관리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
- 마을 공동체 활동결과는 해당 마을 공동체(대표)에서 보관하되 지자체, 농관원 등 관련 기관 요청시 제출
  - 다만, 지자체, 마을 자치조직, 이장 등이 주관하여 별도로 공동활동을 실시한 후 관련자가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한 경우, 지자체는 해당 농업인에 대하여 마을 공동활동 내용을 실적으로 인정 가능
- 지자체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마을별로 공동활동 실적과 향후 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10.31일까지(3월, 6월 분기 보고 포함) 농관원에 제출. 농관원은 마을 단위 공동활동 계획을 참고하여 이행점검을 실시
  - '20년에는 '20.5.1일부터 '20.9.30일까지 공동활동 실적을 제출
  - 이후 매년 전년도 10.1일부터 회계연도 9.30일까지 활동실적을 제출

적합여부 판단 : 공동활동 참석 및 활동 여부

* 마을별 활동 내역 및 사진을 온라인상 제출할 수 있는 사이트 구축 추진(예정)

표 10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연도별 판단기준

준수사항	수준(안)	감액 수준(안)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20) 8시간 이상 활동 의무	('20) 주의장 발부
	('22) 12시간 이상 활동 의무	('22) 5% 감액
	('24) 24시간 이상 활동 의무	('24) 10% 감액

다) 관련 사진



마을공동체 활동(1)



마을공동체 활동(2)

2)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가) 실천 의무

- 영농폐기물을 임의로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 등에 보관하여 농지등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할 것
-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을 농지에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않을 것
  - 영농폐기물 : 폐농약, 농약용기류, 농촌폐비닐, 폐영농시설자재류 등
  - 생활폐기물 등 : 음식물 폐기물, 폐전기전자제품, 폐목재 및 폐가구류, 건설폐자재류 등
- 시·군·구 : 마을에서 모아둔 폐기물을 마을순회 회수차 등을 운영하여 수거
  -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소각, 투기 등을 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강화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제6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이행점검방법

- **점검대상** : 기본직불제 신청 필지의 약 30% 수준
- **점검항목** : 영농폐기물(생활폐기물 포함)을 농지등과 그 주변에 방치 행위
- **점검시기**
  - '20년도 이행점검 기간 : 2020. 5. 1. ~ 2020. 9. 30(현장점검 기준일)
    - 향후 회계연도 기준 전년도 10.1일부터 회계연도 9.30까지의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
- **점검절차**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 표본필지 선정·통보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이행점검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부적합 통보
④ [지자체(시·군·구)] 이행점검 결과 제출(Agrix 입력)

지자체의 역할

- 지자체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수거함,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농업인 등이 영농폐기물 등을 농지에 방치,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않고 농지와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지도·교육·홍보를 추진
- 지자체는 마을 공동체 단위로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의 공동 수거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제 수거 기간 등을 운영
  - 농업인 등은 마을 지역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 일제 수거 기간 중에는 관계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적합여부 판단 : 농지등과 그 주변에 영농폐기물 방치 여부

표 11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연도별 판단기준

준수사항	수준(안)	감액 수준(안)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20) 폐비닐·폐농약병 지상 방치 금지	('20) 주의장 발부
	('22) 폐비닐·폐농약병 매립 및 소각 금지 추가	('22) 5% 감액
	('24) 폐농약, 생활 폐기물 지상 방치 금지 추가	('24) 10% 감액

사례 살펴보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① 영농폐기물 등 수거·처리 책임은 영농폐기물 등이 방치·매립·소각된 농지 경작자에게 부여
② 영농폐기물 등 매립·소각 여부 점검시, 육안으로 이상 없는 경우 적합 판정하되 민원 등 발생시 현장재조사 할 수 있음.
③ ('20~'21년) 이행점검시 영농폐기물 등 방치·매립·소각 여부 확인시 주의장 발송 및 지자체 신고, ('22년~) 이행점검시 영농폐기물 등 매립·소각 여부 확인시 부적합 처리(5%,10% 감액대상) 및 지자체 신고

다) 관련 사진


영농폐기물 적정 수거처리(1)


영농폐기물 적정 수거처리(2)



영농폐기물 적정 수거처리(3)



영농폐기물 적정 수거처리(4)



재배지 근처 영농폐기물 수거 부적합 처리(1)



재배지 근처 하천 영농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부적합 처리(2)

라. 먹거리 안전

1)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가) 실천 의무

-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 국내 미등록 농약(밀수농약), 등록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난 농약(폐기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잔류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① 방제업자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농약등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을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방제업자

제4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한 방제업자 외의 농약등의 사용자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농진청고시)

제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2.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3.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 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4.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5.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6.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6조(생산단계의 안전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 자료나 법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생산단계의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이하 "농수산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식약처고시)

제2조(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① 농산물의 분류 및 품목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분류체계(이하 "농산물 분류"라 한다)를 적용한다.

② 출하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하 "출하일 기준"이라 한다)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7)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①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해당 기준 이하를 말한다. 단, 개별 기준과 그룹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② 농산물에 잔류한 농약에 대하여 [별표 4]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는 경우 0.01 mg/kg이하를 적용한다.

③ 「농약관리법」상 사용·등록된 농약 및 외국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농약에 함유된 유효성분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 대상성분은 아래 표와 같다.

㉮ 독성이 현저히 낮아 인체 위해가능성이 없는 성분
㉯ 식품에 전혀 잔류되지 않는 성분
㉰ 자연계에 존재하여 해당 식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분이 어려운 성분
㉱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식물보호제(미생물 등 포함) 성분

〈내용에서 언급되는 [별표 4]와 아래표는 식약처 고시 참조〉

나) 이행점검방법

- **검사대상** :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농산물
  - 분석대상 작물 : 쌀 → 전체 농작물 확대 / 유통단계 신규추가

- 생산단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대상자는 AgriX의 농업경영정보를 활용하여 지역·품목·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
  - 친환경, GAP인증, 로컬푸드 등 정책지원으로 대상자가 특정한 경우, 폐광산 등 중금속 오염우려지역의 농산물 안전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선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다만, 전년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포함 가능

① 생산 및 유통·판매단계 농산물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
② 농산물에서 농약 외 유해물질의 잔류기준을 초과한 농가
③ 국내 미등록 농약(밀수농약), 등록 취소된 농약(폐기농약)이 검출된 농가

○ 표본 분석건수 : 농관원, 식약처,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농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결정

○ **검사시기** :

- 2020년 : '20. 5. 1. ~ '20. 9. 30.(시료수거일 등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
- 2021년부터 : 전년 10월 1일부터 등록신청연도 9.30일까지
  - 안전성조사 기피자, 생산단계 부적합고지(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사항 이행 위반자, 도매시장 출하제한 조치 위반자에 대한 적용시점은 고발, 과태료부과 등을 명령(공문 시행)한 날
- 생산, 유통·판매 단계별 검사시기
  - (생산단계) 수확·출하 10일 전 경 시료 수거 후 분석
  - (유통·판매단계) 상시 수거 후 분석

○ **검사항목** : 잔류농약

○ **적합여부 판단** : 농작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 국내 등록 농약 여부

① 생산단계 농산물

-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이거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검출 시 준수의무 미이행으로 처리

② 유통·판매단계 농산물

- 유통·판매단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이거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검출 시 준수의무 미이행으로 처리
  - 유통·판매단계 부적합 처분농가는 생산단계 추적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1건의 준수의무 미이행으로 처리

③ 기타사항

- 친환경인증, GAP인증 농산물 등 정책지원으로 실시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유통·판매단계(「식품의 기준 및 규격」) 기준을 초과한 경우 준수의무 미이행으로 처리

- 수출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수출농산물은 국내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수입국 기준에 적합하면 준수의무 이행으로 처리하고 수입국기준과 국내기준을 동시에 초과하여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의무 미이행으로 처리
-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성분 또는 최근 5년 이전에 등록 취소된 농약성분(표12) 검출된 경우
  - 허용기준과 상관없이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른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처리. 다만, '18년 환경유래잔류허용기준(eMRL)으로 설정한 농약성분(DDT, 엔도설판, 퀸토젠, BHC) 제외

표 12 등록 취소(폐기) 농약성분 또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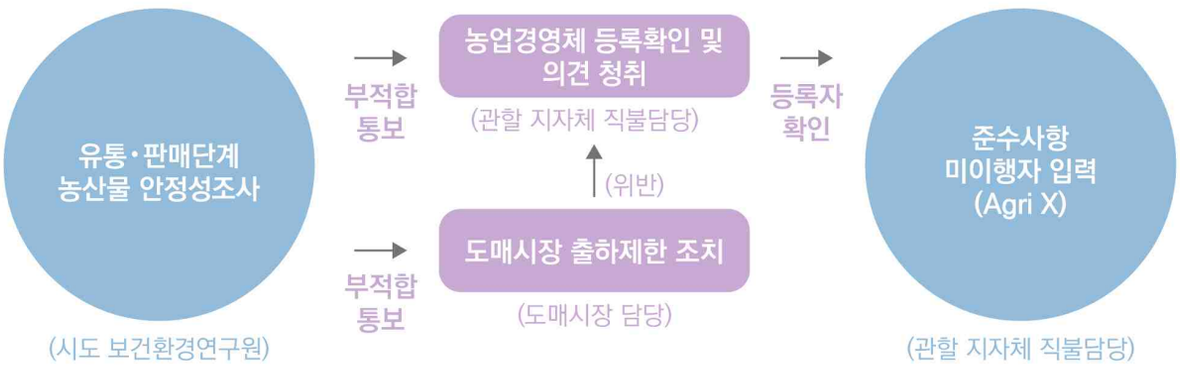
구분	해당 농약(폐기연도)
등록 취소(폐기) 농약성분	* 토양 장기잔류로 디디티, 비에치시, 퀸토젠, 엔도설판은 환경유래잔류허용기준 설정 파라티온메틸(1969년), 디엘드린(1970년), 디디티(1971년), 비에치시(1979년), 헵타클로르(1979년), 퀸토젠(1987년), 디설포톤(1989년), 클로로벤질레이트(1990년), 프로폭서(1990년), 클로르펜빈포스(1991년), 에트림포스(1996년), 터부트린(1998년), 벤족시메이트(2001년), 키노메티오네이트(2001년), 메카밤(2001년), 피리미포스에틸(2001년), 펜코나졸(2006년), 퓨라티오카브(2007년), 터부틸라진(2007년), 디코폴(2010년), 헥사플루뮤론(2010년), 아이소펜포스(2010년), 포사론(2010년), 피리미디펜(2010년), 트리아조포스(2010년), 엔도설판(2011년), 아닐로포스(2011년), 이피엔(2011년), 메토밀(2011년), 모노크로토포스(2011년), 오메토에이트(2011년), 파라티온(2011년), 피리미카브(2011년), 디클로플루아니드(2012년), 톨리플루아니드(2012년), 페노티오카브(2013년), 뉴아리몰(2013년), 프로피소클로르(2013년), 피라클로포스(2013년), 트랄로메트린(2013년), 빈클로졸린(2013년), 아진포스메틸(2014년), 최근 5년 이내 등록 취소된 농약성분 : 플루아크리피림(2015년), 클로펜테진(2016년), 플루시트리네이트(2016년), 헥사지논(2016년), 말라티온(2016년), 몰리네이트(2016년), 포스파미돈(2016년), 피리미포스메틸(2016년), 피리다펜티온(2016년), 트리아디메놀(2016년), 에디펜포스(2017년), 실라플루오펜(2017년)
국내 미등록 농약성분	* 농관원 안전성조사 결과 검출되고 있으나 국내 등록된 적이 없는 농약성분 디우론, 디클로포프메틸, 메톡시클로르, 에티오펜카브, 에티온, 옥사밀, 유니코나졸, 이마잘릴, 퍼메트린, 페나미포스, 페노트린, 피페로닐부톡사이드

점검절차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안전성조사 대상자 선정·통보 및 시료수거

- 농산물 안전성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과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일부가 지급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 시료수거 7일전 경 조사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이 포함된 현장입회 요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
- 다만, 유통단계 부적합 농산물 재배농가의 생산단계 재조사, 기획조사, 긴급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상기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현장에서 제시함으로 갈음

② [지방식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안전성 검사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지자체에서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조사 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의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이 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8조의2제2항 따른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후 전국 도매시장에 통보하며 생산 농업인의 소재지에 속한 지자체(직불담당부서)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
- 시도 도매시장 담당부서(지자체에서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에서는 출하제한 명령을 받은 농업인이 이를 위반하여 출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농안법」 제9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정보를 지자체(직불담당부서)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 중 시는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③ [지자체(시·군·구)] 농업경영정보 확인

-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 농업경영체정보 등록여부 및 기본직불금 신청 여부를 AgriX를 통해 확인하여 기본직불금 신청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자로 처리

④ **[지자체(시·군·구)] 미이행자 제외대상 확인**

- 검출된 농약성분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비의도적인 원인으로 오염된 것으로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미이행자에서 제외
  - 검출된 농약성분이 DDT, 엔도설판(Endosulfan), 퀸토젠(Quintogene), BHC인 경우(* 농약 PLS 시행 대비 환경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는 성분으로 구분)

⑤ **[지자체(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및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부적합 등록·통보 및 의견 청취**

- 농관원(지원·사무소)에서는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10일 이내에 농업인에게 부적합 판정 결과 및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지자체 직불담당부서는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농업인에게 부적합 판정 결과 및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별지 제35호 서식 농약, 기타 유해물질 안전사용기준 준수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통보 → P.240

  - 통보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14일 이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기관(농관원(지원·사무소), 지자체(시·군·구))에 의견을 제출

별지 제49호 서식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의견서 → P.254

  - 필요한 경우 농업인의 농약 구매이력(농약판매상 확인), 영농일지에 사용기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농약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참고 가능
  - 출하제한 명령준수 위반, 안전성조사 기피 등으로 고발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의견청취 없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제한대상으로 처리
  -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의견서를 제출받은 담당기관(농관원(지원·사무소), 지자체(시·군·구))는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농업인 의견청취는 없음).
  - 부적합 고지 및 생산단계 안전성 재조사 시 현장에서 준수사항 위반 통보 및 의견서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로 갈음

⑥ **[지자체(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이행점검 결과처리 및 보고**

- 농관원(지원·사무소)에서는 이행점검결과 미이행 정보를 10.28일까지 안전성정보관리시스템(SafeQin)에 입력
- 농관원(본원)과 지자체에서는 입력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기본직접지불금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는 매년 10.31일까지 AgriX에 최종 전송
- 농관원(본원)은 11.30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에 보고

⑦ [지자체(시·군·구)] 농약 안전사용교육 등

- 시군구에서는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업인 대상 「농약관리법」 제23조*의 농약 안전사용 교육 실시

  * 적용대상 농작물·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2) 정해진 사용방법과 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3) 사용시기,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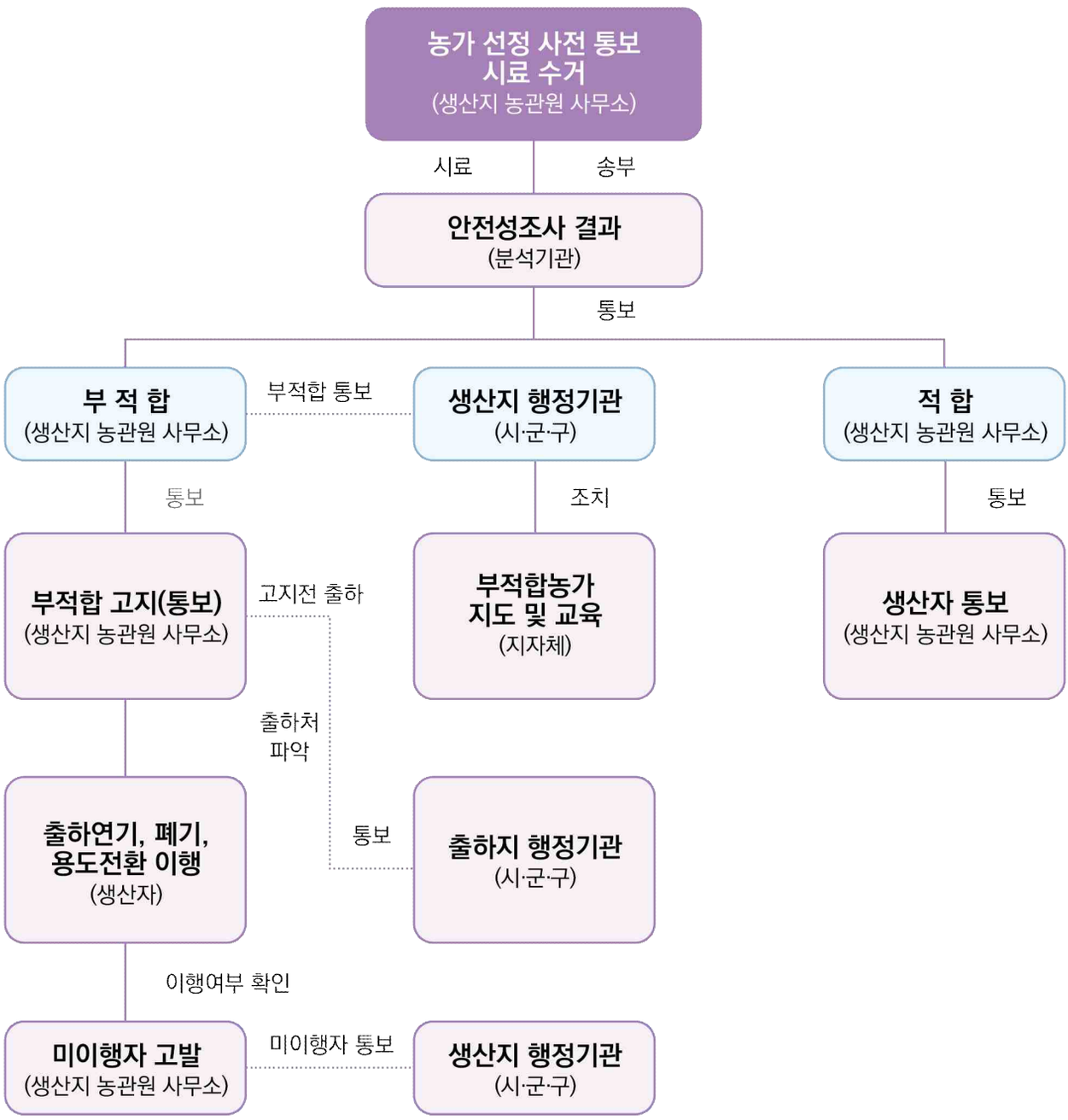
  -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성분 또는 최근 5년 이전에 등록 취소된 농약성분(표 12)이 검출된 경우 농촌진흥청 또는 도농업기술원의 전문가와 함께 구매처(경로), 농가가 보유한 농약확인 등 조사를 실시
  - 지자체 담당자는 국내 미등록 농약성분 또는 최근 5년 이전에 등록 취소된 농약성분이 포함된 농약제품을 농약판매상에서 진열·판매·보관 등이 확인된 경우 「농약관리법」 제32조에 따라 고발등의 조치를 하고 사용한 농업인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농약관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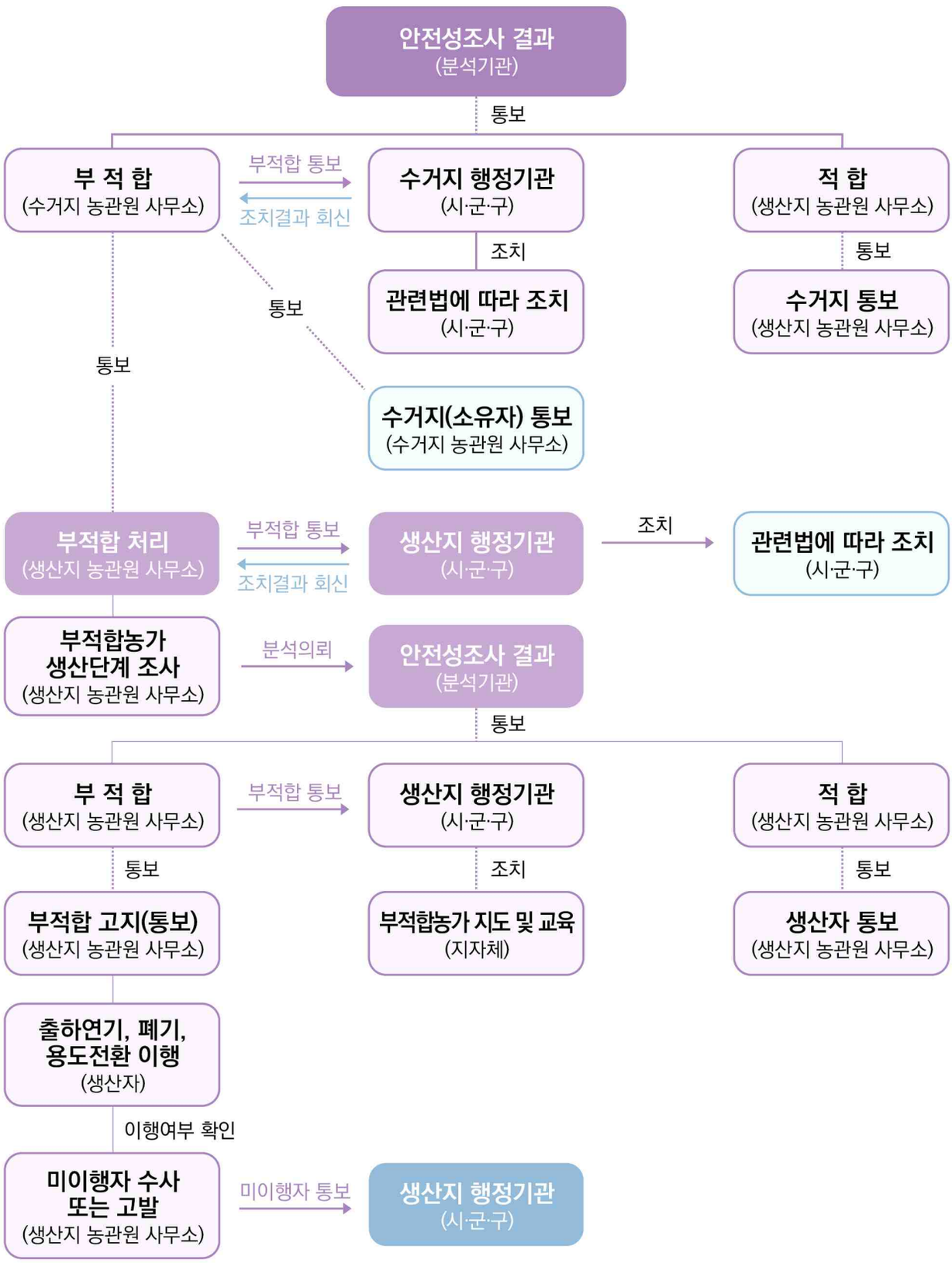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자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한 자

참고 6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절차(농관원)



참고 7 유통·판매단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절차(농관원)



2)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가) 실천 의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 이외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 이산화황 등 기타유해물질을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이산화황 등 기타 유해물질의 임의사용으로 인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다만, 중금속, 방사능, 독소류 등의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폐기한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감액대상에 미포함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4)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2) 식중독균 5) 오염물질 (2) 중금속 기준 (3) 곰팡이독소 기준 등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6조(생산단계의 안전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 자료나 법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생산단계의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이하 "농수산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식약처고시)

제3조(농산물의 중금속 잔류기준) ①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의 잔류기준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농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기준)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곰팡이독소, 방사능핵종의 잔류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나) 이행점검방법

- **검사대상** :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농산물
  - 분석대상 작물 : 전체 농작물 신규
  - 생산단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대상자는 AgriX의 농업경영정보를 활용하여 지역·품목·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
    - 친환경, GAP인증, 로컬푸드 등 정책지원으로 대상자가 특정한 경우, 폐광산 등 중금속 오염우려지역의 농산물 안전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선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다만, 전년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포함 가능
    ① 농산물에서 농약 외 유해물질의 잔류기준을 초과한 농가

- **표본 분석건수** : 농관원, 식약처,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농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결정

- **검사시기** :
  - 2020년 : '20. 5. 1. ~ '20. 9. 30.(시료수거일 등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
  - 2021년부터 : 전년 10월 1일부터 등록신청연도 9.30일까지
    - 안전성조사 기피자, 생산단계 부적합고지(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사항 이행 위반자, 도매시장 출하제한 조치 위반자에 대한 적용시점은 고발, 과태료부과 등을 명령(공문 시행)한 날
  - 생산, 유통·판매 단계별 검사시기
    - (생산단계) 수확·출하 10일 전 경 시료 수거 후 분석
    - (유통·판매단계) 상시 수거 후 분석

- **검사항목** : 유해물질(중금속, 항생제, 독소류, 방사능, 이산화황 등)
  -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제3조·제4조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 13 유해물질의 종류

구분	대상 유해물질	관련 법규
잔류농약	• (농산물) 국내 유통 및 사용량이 많고 잔류기간이 긴 농약성분	「식품위생법」 제7조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중금속	• (농산물) 납, 카드뮴, 비소(쌀에 한함) 등 3개 성분	「식품위생법」 제7조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중독균	• (농산물) 식중독균 * 대장균, 장출혈성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식품위생법」 제7조
곰팡이독소	• (농산물) 아플라톡신(B_1, B_2, G_1, G_2), 오크라톡신A, 푸모니신(B1, B2),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등	「식품위생법」 제7조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방사능	• (농산물) ^{131}I, ^{134}Cs + ^{137}Cs 등 감마핵종 2종	「식품위생법」 제7조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항생물질	• (농산물)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항생물질 * 발리다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만 기준설정	「식품위생법」 제7조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첨가물	• (농산물) 이산화황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및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적합여부 판단 : 농작물 유해물질 허용기준 초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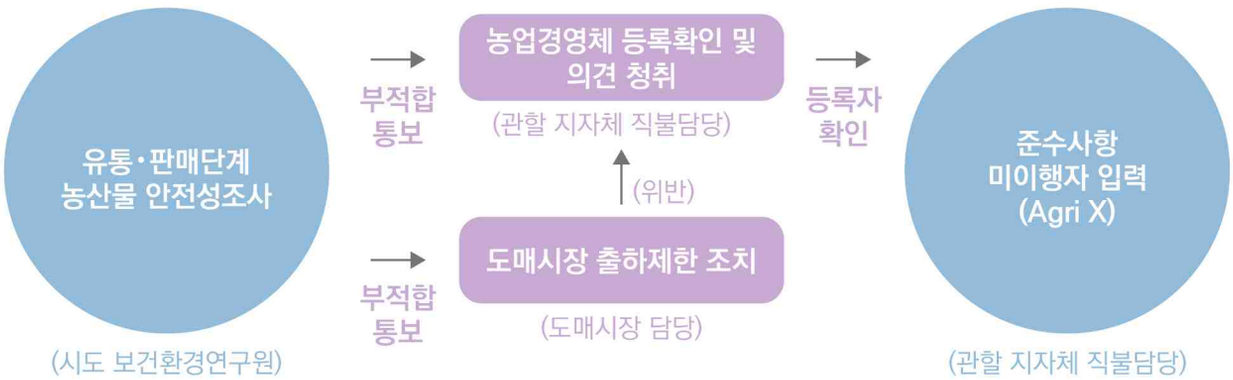
- 농약 외 유해물질 중 임의사용으로 인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잔류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
  - 다만, 중금속, 방사능, 독소류와 같이 비의도적인 요소로 오염되어 해당 농산물을 폐기한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감액대상에 미포함

점검절차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안전성조사 대상자 선정·통보 및 시료수거**

- 농산물 안전성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과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일부가 지급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 시료수거 7일전 경 조사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이 포함된 현장입회 요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
- 다만, 유통단계 부적합 농산물 재배농가의 생산단계 재조사, 기획조사, 긴급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상기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현장에서 제시함으로 갈음

② [지방식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안전성 검사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지자체에서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조사 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의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이 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8조의2제2항 따른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후 전국 도매시장에 통보하며 생산 농업인의 소재지에 속한 지자체(직불담당부서)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
- 시도 도매시장 담당부서(지자체에서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에서는 출하제한 명령을 받은 농업인이 이를 위반하여 출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농안법」 제9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정보를 지자체(직불담당부서)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 중 시는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③ [지자체(시·군·구)] 농업경영정보 확인

-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안전성조사 결과 기타 유해물질(이산화황)로 인하여 부적합이 발생되어 농업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 농업경영체정보 등록여부 및 기본직불금 신청 여부를 AgriX를 통해 확인하여 기본직불금 신청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자로 처리

④ **[지자체(시·군·구)] 미이행자 제외대상 확인**

- 유해물질이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비의도적인 원인으로 오염된 것으로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미이행자에서 제외한다.
  - 중금속(카드뮴, 납, 비소(쌀)), 방사능, 독소류(아플라톡신 계열)인 경우

⑤ **[지자체(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및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부적합 등록·통보 및 의견 청취**

- 농관원(지원·사무소)에서는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10일 이내에 농업인에게 부적합 판정 결과 및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지자체 직불담당부서는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농업인에게 부적합 판정 결과 및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별지 제35호 서식 농약, 기타 유해물질 안전사용기준 준수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통보 → P.240

  - 통보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14일 이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기관(농관원(지원·사무소), 지자체(시·군·구))에 의견을 제출

별지 제49호 서식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의견서 → P.254

  - 필요한 경우 농업인의 농약 구매이력(농약판매상 확인), 영농일지에 사용기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농약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참고 가능
  - 출하제한 명령준수 위반, 안전성조사 기피 등으로 고발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의견청취 없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제한대상으로 처리
  -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의견서를 제출받은 담당기관(농관원(지원·사무소), 지자체(시·군·구))는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농업인 의견청취는 없음).
  - 부적합 고지 및 생산단계 안전성 재조사 시 현장에서 준수사항 위반 통보 및 의견서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로 갈음

⑥ **[지자체(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이행점검 결과처리 및 보고**

- 농관원(지원·사무소)에서는 이행점검결과 미이행 정보를 10.28일까지 안전성정보관리시스템(SafeQin)에 입력
- 농관원(본원)과 지자체에서는 입력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기본직접지불금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는 매년 10.31일까지 AgriX에 최종 전송
- 농관원(본원)은 11.30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에 보고

3)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가) 실천 의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출하연기, 폐기 등의 출하제한 명령을 준수할 것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제1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 중 시는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참고2)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나) 이행점검방법

○ **검사시기** :

- 2020년 : ’20. 5. 1. ~ ’20. 9. 30.
- 2021년부터 : 전년 10월 1일부터 등록신청연도 9.30일까지

- 생산단계 부적합고지(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사항 이행 위반자, 도매시장 출하제한 조치 위반자에 대한 적용시점은 고발, 과태료부과 등을 명령(공문 시행)한 날

○ **점검항목** : 농산물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처분 준수사항

- 농관원의 폐기.용도전환.출하연기에 대한 준수 여부
- 도매시장 출하제한에 대한 준수 여부

○ **적합여부 판단** : 출하제한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 **점검절차(농관원)**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출하제한 처리**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처분사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20조(벌칙)에 따라 조치하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

○ **점검절차(지자체)**

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지자체에서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조사 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의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이 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8조의2제2항 따른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후 전국 도매시장에 통보하며 생산 농업인의 소재지에 속한 지자체(직불담당부서)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

② **[도매시장 개설자] 준수여부 확인 및 미준수자 과태료 부과**

- 시도 도매시장 담당부서(지자체에서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에서는 출하제한 명령을 받은 농업인이 이를 위반하여 출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농안법」 제9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정보를 지자체(직불담당부서)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

③ **[지자체(시·군·구)] 농업경영정보 확인**

- 시군구 직불담당부서에서는 시도 도매시장 담당부서로부터 「농안법」 제9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농업경영체정보 등록여부 및 기본직불금 신청 여부를 AgriX를 통해 확인하여 감액대상으로 등록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 중 시는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④ **[지자체(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이행점검 결과처리 및 보고**

- 농관원(지원·사무소)에서는 이행점검결과 미이행 정보를 10.28일까지 안전성정보관리시스템(SafeQin)에 입력
- 농관원(본원)과 지자체에서는 입력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기본직접지불금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는 매년 10.31일까지 AgriX에 최종 전송
- 농관원(본원)은 11.30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에 보고

마. 영농활동 준수

1)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가) 실천 의무

- 영농활동과 관련된 (1) 필지별 종자(종묘)·농약·비료 구매내역, 사용내역 등(영수증 포함) (2) 필지별 경운 일자 (3) 수확·판매 등 기타 영농활동 등을 재배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할 것
- 농관원 등 관계기관에서 기본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적합 발생시 농약·비료 구매·사용기록을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시 협조할 것

  * 작성방법 : 수기 또는 온라인 기록, 단, '20년에는 농자재구입 영수증 보관 시 인정

나) 이행점검방법

- **점검대상** : 농약 등 유해물질, 비료 등 준수사항 부적합 농가 대상으로 필요시 점검
  -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의 농약·비료 판매·구매정보를 통보 받아 확인한 후, 기록누락 우려 위험군* 대상으로 관리

    * 위험군 : (1순위)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자, (2순위) 화학비료 사용기준 위반자
  - 농약 등 유해물질 및 비료 등 준수사항 부적합 농가 중심 표본 선정

- **점검항목** : 영농기록 작성·보관 여부 및 영농기록의 적정성
  -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및 농산물 출하 전표, 관련 시스템* 등을 비교하여 허위기재, 자료 누락 등 점검

    - 농약판매이력시스템(농약판매상), 농자재판매시스템(농협) 등

- **적합여부 판단** : 영농기록 작성·보관 및 영농기록의 진위 여부

표 14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연도별 판단기준

준수사항	수준(안)	감액 수준(안)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20) 농자재구입 영수증 보관의무	('20) 주의장 발부
	('22) 농약·비료 사용내역 작성 및 보관의무 추가	('22) 5% 감액
	('24) 기타 영농활동 작성 및 보관의무 추가	('24) 10% 감액

- **점검시기**

○ '20년도 이행점검 기간 : 2020. 5. 1. ~ 2020. 9. 30(현장점검 기준일)

- 향후 회계연도 기준 전년도 10.1일부터 회계연도 9.30까지의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

- **점검절차**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 이행점검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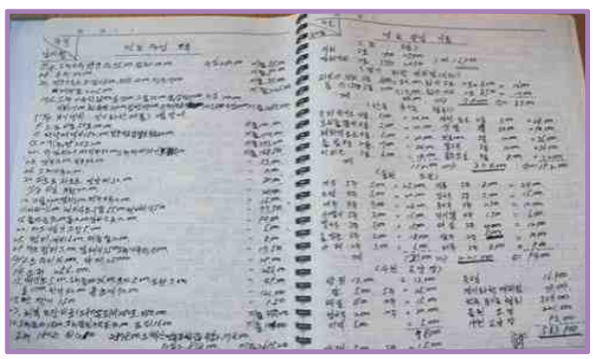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농약, 비료 등 부적합 농가 현장점검

- 영농기록 관리 시스템 입력자에 대해서는 '농약판매이력시스템, 농협의 농자재 판매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비교·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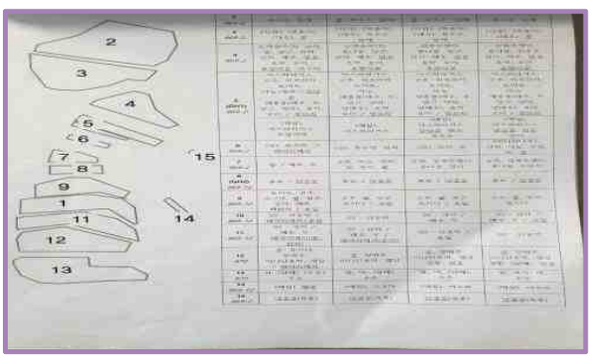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부적합 통보

④ [지자체(시·군·구)] 이행점검 결과 제출(Agrix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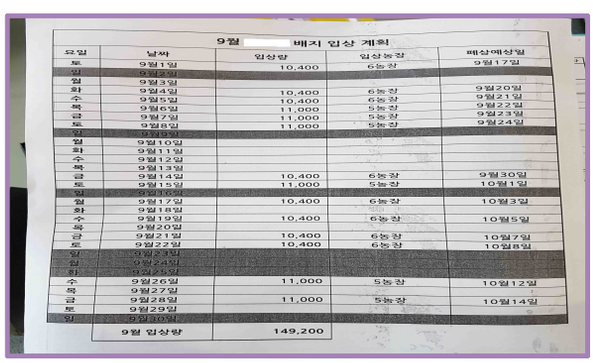
다) 관련 사진 : 영농기록 작성 예시



영농일지 기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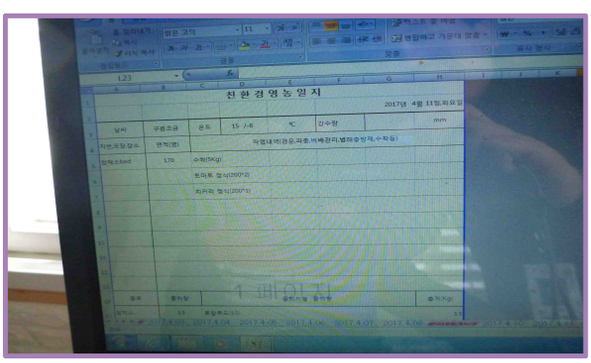
영농일지 기록(2)



9월 배지 입상 계획

요일	날짜	입상량	입상농장	배상예상일
토	9월1일	10,400	6농장	9월17일
일	9월2일			
월	9월3일			
화	9월4일	10,400	6농장	9월20일
수	9월5일	10,400	6농장	9월21일
목	9월6일	11,000	5농장	9월22일
금	9월7일	11,000	5농장	9월23일
토	9월8일	11,000	5농장	9월24일
일	9월9일			
월	9월10일			
화	9월11일			
수	9월12일			
목	9월13일			
금	9월14일	10,400	6농장	9월30일
토	9월15일	11,000	5농장	10월1일
일	9월16일			
월	9월17일	10,400	6농장	10월3일
화	9월18일			
수	9월19일	10,400	6농장	10월5일
목	9월20일			
금	9월21일	10,400	6농장	10월7일
토	9월22일	10,400	6농장	10월8일
일	9월23일			
월	9월24일			
화	9월25일			
수	9월26일	11,000	5농장	10월12일
목	9월27일			
금	9월28일	11,000	5농장	10월14일
토	9월29일			
일	9월30일			
	9월 입상량	149,200		

영농일지 기록(3)



영농일지 기록(4) : 온라인 작성

참고 8 영농기록 작성 내용

A. 어떤 품목을 언제 심어서 얼마나 수확했는지? 수확한 농산물은 어디로 얼마나 판매했는지?

〈파종 기록〉

날짜	내용	재배지	사용자재	출처
4월15일	볍씨 파종	1번 논	무농약 벼 100kg	○○○에서 구입
5월15일	모내기	2번 논	모판 100개	1번 논에서 키운 것

〈수확〉

날짜	내용	재배지	수확량	출처
10월20일	벼 수확	3번 논	1,200kg	산물벼 1,000kg(농협)

B. 재배포장에 언제, 어떤 농자재를 무슨 목적으로 투입했는지? 사용자재가 인증농장에 허가된 자재인지?

〈자재 사용〉

날짜	내용	재배지	사용자재	출처
4월10일	○○유기농 퇴비	1번 논	20kg×5	○○○에서 구입 (공시○○○)
5월25일	○○유기농 비료	2번 논	20kg×5	○○○에서 구입 (공시○○○)
6월25일	○○유기농 균제	3번 논	5kg×10	○○○에서 구입 (공시○○○)

C. 농약·비료를 구매한 내역이 있다면 어디에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보관하고 있다면 보관 장소와 그 수량은 얼마인지?

〈농약·비료 사용〉

	구매		사용		보관	
자재명	수량	구매처	수량	사용처	수량	보관장소
○○제초제	2kg×10개	○○상회	8개	○○○번 논 (비인증)	2개	농약창고
○○복합비료	20kg×10개	○○상회	2개	○○○번 논 (비인증)	8개	비료창고
○○살충제	2kg×10개	○○상회	5개	○○○번 논 (비인증)	5개	농약창고

2)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가) 실천 의무

○ 농업인은 매년 직불금을 지급받기 전(9.30)까지 농관원, 지자체, 농진청 등이 주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관련 교육을 2시간 이수할 것

- 교육내용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준수사항 이행 기준, 농업인등의 세부 실천방법 등

법 제12조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 부록2 P.12
시행령 제14조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 부록2 P.13
시행규칙 제6조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 부록2 P.13

나) 이행방법

○ **교육대상(교육시간)** : 기본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2시간)

○ **점검항목** : 교육실시기관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관련 교육 수료 여부

- 교육 참석 본인 확인(참석대장 서명 등), 이석관리, 이수증 발급 및 제출 등

○ **교육의무 적부 판단** : 정해진 기간(9.30.) 내 의무교육 이수 여부

○ **교육시기**

- '20년도 교육이수 적용기간 : 2020. 5. 1. ~ 9. 30(5개월간)
  - 향후 회계연도 기준 전년도 10.1일부터 회계연도 9.30까지의 교육이수 결과를 반영
  - '20년도 교육이수 실적은 9.30.까지이며, 약 120만(추정) 농업인 대상 추진

○ **교육과정**

구 분	교육 방법	비 고
집합교육	• 시군 단위 읍·면별 집합 교육(강의+시청각)	
집합교육(연계)	• 농업기술교육과 연계한 교육(연중)	* 한국농수산대학, 도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단체 등
찾아가는 교육	• 마을 단위 방문 교육(연중)	* 고령농업인 대상

○ **추진절차**

① **[지자체(시·군·구)] 세부 실시계획 수립**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자선정·통지, 교육일정·장소, 교육결과 처리 등을 포함하여 농업인 의무교육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

별지 제50호 서식 농업인 의무교육 세부 실시계획 예시 → P.255

- 농관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과정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지자체는 관내 직불금 지급 예상인원*이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개설
-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다른 교육과정에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과정(2시간)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 가능
- 지자체는 교육장소를 지역 농업인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선정하고, 1회 교육인원은 시·군·구 단위 읍·면·동별로 200명 내외로 편성
  - 1회 교육인원은 200명 내외로 운영하되, 교육효과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 교육일정은 교육이력관리시스템의 강사 인력풀을 활용하여 사전 조율 후 결정하고, 확정된 교육일정은 교육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
- 강사 출강은 농관원에서 양성·관리하는 전문강사 인력에 요청 가능

② **[지자체(시·군·구)] 일정안내**

- 교육시작 7일 전까지 교육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안내서 또는 문자발송하고, 교육실시기관 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

  * 교육대상자임을 알리는 내용, 교육받을 일시와 장소, 교육 미이수 시 기본직접지불금의 일부 미지급 등을 포함하여 최소 교육 7일 전까지 우편 또는 문자로 통지

별지 제51호 서식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안내서(안) → P.256

③ **[지자체(시·군·구)] 교육실시**

- 교육장 준비, 교육 참석자 본인 확인, 참석명부 서명(이수증 발급 여부 체크), 교재 배부, 교육 진행(사회), 이석관리 등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완료 후 퇴장 시에 안전사고 예방 조치 및 안내
  - 교재는 농관원 홈페이지(사이트맵〉새소식〉공지/공고)에 게시된 파일을 활용

④ **[지자체(시·군·구)] 결과처리**

- 교육 이수자 내역은 교육 종료 7일 이내에 교육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수증은 참석여부 서명시 발급을 희망한 경우에만 발급
  - 입력내용: 이수자 및 특이사항(미이수 사유,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우수사례, 기타)
  - 이수증은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갈음할 수 있음

별지 제52호 서식 교육 이수증 양식(안) → P.257

⑤ **[지자체(시·군·구)] 이수독려**

- 지자체는 매월 초 교육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 미이수자를 조회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

표 15 교육 방법별 추진 절차

교육 방법		교육 추진 절차
집합 교육	단독*	① 교육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대상자 통보[교육일정 및 장소 등/교육실시기관(예시: 시·군·구)] ② 교육 실시[참석자·이석자 조사 등 교육운영/교육실시기관(예시: 읍·면·동)]

교육 방법		교육 추진 절차
		③ **교육결과 등록**[이수자 시스템 입력/교육실시기관(예시: 읍·면·동)] ④ **교육 이수증 발급**[시스템 발급, 본인 희망시/교육실시기관(예시: 읍·면·동)] ⑤ **미이수자 통보 및 이수 독려 안내**[교육실시기관(예시: 읍·면·동)] * 미이수자 통보 및 이수 독려는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만 실시하여 중복 통보 및 안내를 방지
	연계**	① **교육 세부실시계획 수립**[교육일정 및 장소, 대상자/교육실시기관] ② **교육 실시**[참석자·이석자 조사 등 교육운영/교육실시기관] ③ **교육결과 등록**[시스템 입력/교육실시기관] ④ **교육 이수증 발급**[시스템 발급, 본인 희망시/교육실시기관]
찾아가는 교육***		① **교육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대상자 통보**[교육일정 및 장소, 대상자/교육실시기관] ② **교육 실시**[참석자·이석자 조사 등 교육운영/교육실시기관] ③ **교육결과 등록**[시스템 입력/교육실시기관] ④ **교육 이수증 발급**[시스템 발급, 본인 희망시/교육실시기관]

* (단독)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내용만으로 편성된 교육과정

** (연계) 다른 농업인 교육과정에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내용을 포함한 교육과정

*** (찾아가는 교육) 고령 농업인, 이동이 어려운 농업인 대상 마을단위 교육

다) 교육기관

- **교육관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교육실시기관** : 지자체(전담 : 시·군·구)

  * 시·도, 중앙·지방 교육전문기관 및 농업인 등 관련 단체 추가 지정 운영

라) 관련 사진



집합교육(1)



집합교육(2)

3)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가) 실천 의무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할 것

- 농업경영정보

① 농업인 또는 법인의 성명(명칭), 주소

② 농지에 대한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자경 및 임차 농지 추가 또는 삭제), 재배품목*(재배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현황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나) 이행점검방법

○ **점검대상**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농업경영체

- (일반현황·농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한 모든 농업경영체를 선정
- (재배품목) 기본직접지불금 등록한 농지 중 벼 품목('20년)을 대상으로 지역·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표본 3% 무작위 선정

○ **점검항목**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별지 제36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준수사항 이행점검표 → P.241

- **일반현황·농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현황·농지 정보와 주민정보·토지대장 시스템간 대량검증으로 불일치한 정보의 변경여부

- 일반현황·농지 정보 : 농업인 성명, 주소, 농업법인 명칭, 법인 대표자 성명, 대표자의 주소, 농지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자경, 임차), 지목, 농지 소유자의 성명

- **재배품목** : 표본 농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벼 품목 재배 및 면적과 불일치한 정보의 변경여부

- 등록정보 미 변경 확인 시,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증빙

적합여부 판단

- **일반현황·농지** :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불일치 사항을 변경하도록 직불금 신청자에게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불일치 사항을 변경하지 않았으면 부적합 판정, 통지

별지 제38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서 → P.243

별지 제39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 P.244

- **재배품목** : 표본 필지의 현지조사 결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상의 품목('20년도는 벼)의 재배 면적과 실제 재배 면적이 10%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다만 차이 면적이 100㎡이하는 제외),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재배 면적 불일치 사항을 변경하도록 직불금 신청자에게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불일치 사항을 변경하지 않았으면 부적합 판정, 통지

  *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35호) 참고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농식품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및 가축·곤충 종별 사육규모의 변경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별 재배면적 및 가축·곤충 종별 사육규모의 변경등록 범위) ①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 품목이 바뀌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 각 호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660㎡
2.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330㎡

②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사육규모는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2. 가축 또는 곤충의 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규모의 변경이 다음 각목과 같은 경우

가. 닭 : 1,000마리 이내

나. 오리 : 500마리 이내

표 16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연도별 판단기준

준수사항	수준(안)	감액 수준(안)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20) 기본정보, 농지정보, 재배품목(벼) 변경에 따라 농관원이 변경 요청한 경우 14일 내 변경신고(1개)	20년부터 10%감액
	('21) 기본정보, 농지정보, 재배품목(벼,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변경에 따라 농관원이 변경 요청한 경우 14일 내 변경 신고(6개)	
	('22) 기본정보, 농지정보, 재배품목(벼,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참외, 오이, 딸기, 토마토, 호박, 수박, 사과, 배, 감귤, 포도) 변경 시, 농관원이 요청이 없더라도 14일 내 변경 신고(16개)	

점검시기

- '20년도 이행점검 적용기간: 2020. 5. 1. ~ 2020. 9. 30.(5개월간)

  - '20년도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 의견제출로 재조사 한 경우 10월까지 가능

  - 향후 회계연도 기준 전년도 10.1.부터 회계연도 9.30.까지의 이행점검 결과를 적용

점검절차

- 일반현황·농지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시스템 대량검증(주민정보·토지대장) 결과 불일치 통지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농업경영체에게 불일치 정보 변경요청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14일 이내 미변경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의견제출(위반자) → 재조사(지원·사무소) → 재조사 결과 통보(지원·사무소 → 위반자)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지자체에 부적합 항목 통지

- 재배품목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표본필지 선정·통지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농업경영체에게 불일치 정보 변경요청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14일 이내 미변경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의견제출(위반자) → 재조사(지원·사무소) → 재조사 결과 통보(지원·사무소 → 위반자)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지자체에 부적합 항목 통지

  * 불일치 정보 변경요청은 서면(등기우편),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

다) 관련 사진



농업경영체등록 및 변경신고



현장확인

참고 9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절차

(변경등록 신청)

1. 사무소 직접방문, 우편, 팩스 신청
   가.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중 1가지 제출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중 1가지 제출
2. 인터넷(www.agrix.go.kr) 신청: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I-PIN)을 통한 본인확인
3. 콜센터(1644-8778) 및 사무소 전화: 생년월일, 주소 등 구술을 통한 본인확인

(변경등록 구비서류)

1. 생산수단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 삭제: 구비서류 미제출
2. 생산수단 추가: 농업경영체 경작(경영)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타인의 소유 생산수단을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40호 서식 농업경영체 경작(경영)사실 확인서→ P.245

3. 경영주외 농업인 추가
   가. 경영주인 농업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또는 경영주인 농업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자: 경영주외 농업인 영농사실확인서

별지 제41호 서식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P.246

   나. 제5조제2호: 경영주인 농업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3개월 이상 급여지급 내역

(변경등록 현지조사)

1. 농지 및 농작물재배: 실제경작면적, 휴경면적, 폐경면적, 재배품목, 시설면적 등
2. 가축·곤충 사육: 사육시설 면적, 사육품목, 사육규모 등

Ⅶ 사업추진 체계

표 17 기본형 직불금 사업추진 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요내용
① 경영체 변경등록	2-4월	•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농업인등) - 농관원(지원·사무소) * 시군, 읍·면·동 협조
② 신청·접수 전	4월	• 기본직접지불제 시행지침(안) 시달 • 사업설명·홍보, 신청·접수 일정 공고
③ 직불금 신청·등록	5-6월	• 사업신청서 배부(읍면동) - 경영체 정보를 토대로 신청서 배부 • 등록신청서 제출(농업인등)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③ 신청자 정보 공개	6-9월	• 농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읍면동(마을) 게시판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④ 신청내용 조사(서면·현지) - 등록증 교부	7월	• 대상농지·농업인 여부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경우 경작사실 조사(읍·면·동) • 등록증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 확정, 읍·면·동에서 출력·발급 * 등록 제외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⑤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 등록내용 변경신청(신고)	7-9월	• 지급요건 검증(농식품부, 지자체 등) * 농외소득, 토지대장, 주민정보, 중복신청, 농지전용 등 • 검증 결과 통보 : 소농직불 대상 여부 등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준수사항 등 이행 점검(농관원 등) → 확인조사 결과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 (필수점검)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 신규·관외 신청자, 팜맵·경영체정보 불일치, 전년대비 신청면적이 많은 경우 등 • 등록 내용에 대한 의견제출 및 수정(읍·면·동)
⑥ 직불금 지급	11-12월	• 지급대상자·면적·금액 요청(시·군·구→시·도→농식품부) • 통장계좌입금(시·군·구→지급대상자) •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⑦ 사후관리	연중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644-8778) 및 시·군 신고센터 •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①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

등록계획 시달 (농식품부(2월)) → 신청서 출력·배부 (농관원·지자체(2월)) → 신청접수 (농관원(2~4월))

가. 변경 등록 계획 시달(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계획을 수립하여 농관원에 시달

나. 농업경영체정보 접수계획 수립(농관원, 시·군·구)

- 농관원과 시·군·구는 기관간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先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後 공익직불금 신청 체계**의 정착 등을 위한 신청 접수계획 수립
  - 농관원은 지자체(시·군)와 협의하여 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와 안내자료를 농업인에게 배부 및 홍보 등 협조

다. 신청서 출력·배부

- 농관원은 '19년 직불금 지급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출력하여 지자체에 전달

별지 제38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서 → P.243

- 지자체는 이장 등을 통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농업인에게 배부

라.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농관원)

- 농식품부와 농관원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교육 및 홍보 실시
- 농관원은 업무담당자 및 조사원을 대상으로 자체 실무교육 실시

마. 등록(변경) 신청(농업인등)

-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농업경영체 변경이 있거나 신규 신청이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을 반드시 선행
- **신청기간: 2월~4월**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 및 지정된 장소**
- **신청방법: 농관원 방문, 전화,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등**
-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임차농지의 경우) 필요

② 신청·접수 준비

직불금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식품부(4월)) → 교육·홍보 실시 (농식품부·지자체·농관원(4월)) → 신청접수 일정 공고 (농식품부·지자체·농관원(4월))

가.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기본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

나.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시·도)

- 농식품부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시·도별 순회교육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농관원은 업무담당자 및 조사원을 대상으로 자체 실무교육 실시

다.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하고, 전년도 지급대상자에게 직불금 지급내역을 발송하는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시·도(시·군·구)는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관원,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홍보지, 지방지, 새해영농실용화 교육, 이통장 월례회,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한 홍보 실시(신청서 배포를 하지 않는 신규 신청인의 신청 방법 포함*)

  * 1년이상 농업에 종사, 실경작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읍면동 직접 방문 등

라. 직불금 신청 접수계획 수립(시·도, 시·군·구, 농관원)

- 시·군·구는 농관원 등 기관간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先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後 공익직불금 신청 체계**의 정착 등을 위한 신청 접수계획 수립

별지 제2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계획(00시·군·구) → P.184

  - 지자체는 농관원, 농협 등과 협의하여 기본직불 신청서 접수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직불금 사업신청서와 안내자료를 농업인에게 배부 및 홍보 등 추진

마. 등록신청 공고(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 및 지자체는 접수일 7일 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농식품부·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신청 공고
  -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 강화 등 제도 개편 내용 포함

바. 보조원 및 조사원 채용 등 사업준비(시·군·구, 농관원)

- 시·군·구는 사업신청 및 접수를 위한 전산입력 보조원 채용
- 농관원은 지원·사무소별로 조사원 채용 등 이행점검 세부 계획 수립

③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단계

신청서 배부 (읍면동(4월)) → 신청·접수 (읍면동(5~6월)) → 신청내용 확인 및 접수증 교부 (읍면동(5월~6월)) → 전산입력 (읍면동(5월~6월))

가. 신청서 배부(읍면동)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서를 토대로 직불신청서를 출력하여 배부

  ①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 초과 등 면적직불 대상자는 직불신청서만 제출 안내

  * 다만, 공통사항인 실경작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은 필요시 별도 준비 필요

  ② 농가 전체의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이하**와 0.5ha 초과~1ha 미만중 소농직불금을 신청할 농가는 **농가내 1인만 직불금을 신청**하도록 당부

- 신청서 배포가 되지 않는 신규대상자 등은 읍면동 직접 방문 신청 안내
- 공익직불제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검증과 민형사상 처벌도 강화되었음을 공지

  - 거짓 등으로 **직불금을 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하기만 해도 지원에서 제외**되며, 벌칙 부과(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및 등록 제한(면적 3년, 소농 5년)
  - 부정 수령시는 벌칙외 5배의 제재부과금 및 등록제한(면적 5년, 소농 8년)
  - 신고포상금도 대폭 상향(환수액의 30%)되고, 연간 한도 폐지 등

  *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한 사람, 실경작을 증명해준 농지소재지 거주자 등도 신고 가능

- 명예감시원제도 도입을 통한 신고·감시 강화 및 추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시 부정 수급에 관한 집중 수사 예상 설명

  * 실경작자가 신청하는 분위기 조성 강조

나. 신청서 작성(농업인)

별지 제3, 4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 농업법인용) → P.184~199

- '17~'19년에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만**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 가능

  * 경영체 등록을 한 농지라도 '17~'19년 지원실적이 없는 농지는 신청대상이 되지 않음

- 기본형 공익직불에 신청할 면적은 실경작면적과 휴경면적에 한해 신청 가능

  * 폐경 등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면적은 신청할 수 없음

① **(면적직불 대상) 농가의 경지면적이 1ha 이상인 경우로** 신청서의 농지 면적 등에 이상이 없는 지 확인 → 신청할 면적 기재 → 면적 직불 선택

- 면적 직불 선택 후 **신청자 본인의 신청 서명 및 정보 동의 서명**

② **(면적 또는 소농)** 농가의 경지면적이 **0.5ha 초과~1ha 미만**은 원칙적으로 **면적직불 대상**이나 금액이 120만원보다 적은 경우 **소농직불 신청이 가능**

- **면적직불 대상자**는 위의 면적직불 대상과 동일하게 신청서 작성

* ⓐ금액이 120만원보다 많거나 ⓑ금액이 1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본인의 농촌거주 및 영농거주 기간 등이 소농요건을 확실히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 **소농직불을 희망하는 농가**는 소농직불을 선택하고, 아래 소농직불 대상과 동일하게 신청서 작성(농가내 1인만 소농 직불금 신청 등)

* 금액이 120만원보다 적고, 농촌거주 및 영농거주 기간 등이 소농요건을 충족하므로 추후 농외소득 등 검증을 거쳐 소농직불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

③ **(소농직불 대상)** 농가의 경지면적이 0.1ha 이상~0.5ha 이하인 소농직불 대상은 신청서의 농지 면적 등을 확인, 농가내 1인만 소농 직불금을 신청

* 다만, 본인의 농촌거주 및 영농거주 기간(각 3년) 등이 소농요건을 확실히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면적직불 신청

ⓐ 모든 세대원* 정보를 작성하고,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에 자필 서명**

*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미혼 자녀(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17.1.1~)인 자녀는 모두 포함)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아래 신청서를 받으면 주민등록상 세대원은 ④-1에 작성하고, 세대를 분리한 세대원은 ④-2에 작성, **뒷부분 정보 동의에 모든 세대원 자필 서명**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농"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 농지 면적 등을 확인하고,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농직불 선택

ⓒ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는 관련 소득금액을 기재

다. 직불금 신청(농업인등)

①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을 완료한 농업인등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갖추어 신청 장소에서 직불금 신청

〈신규 신청인(신청서가 배포되지 않은 대상)〉

- 1년이상 농업에 종사 등 신규 신청 요건 충족시 신청서가 배포되지 않더라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을 방문하여 면적 직불*을 신청

* 신규 신청인은 영농종사 기간 3년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적 직불 신청

- 직전 3년 중 1년이상 지급대상 농지등 1천㎡이상(휴경면적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한 자로 신청시에는 아래의 ⓐ, ⓑ,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여야 함

ⓐ **경작면적 및 기간 증명** : 농업경영체(경영주 또는 경영주외)에 등록한 기간이 1년이상이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등 1천㎡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경우 인정 원칙(시스템으로 확인)

* 기간 : 1년('19.1.1~'19.12.31)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

☞ 다만, '21년까지는 지급대상 농지등 1천㎡이상에서 직전 3년동안 1기작 이상 재배하고, 90일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 1년이상 종사로 인정하는 방안 병행

ⓑ **실경작 여부 확인** : 경작사실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당년 및 전년도 영농자재 구입 등)

ⓒ 다만, 기존 대상자의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시 추후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

* 정당하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자와 농지 분할을 해준 기존 대상자 모두 지원 제외 및 등록제한

〈기 지원받던 농업인(신청서 배포대상)〉

ⓐ 농가내 면적의 합이 1ha이상, 0.5~1ha미만 중 면적 대상 농가는 **면적직불을 선택하여 신청**

ⓑ 농가내 면적의 합이 0.5ha이하 및 0.5~1ha미만 중 소농 가능 농가는 **농가내 1인만 직불금을 신청하되, 소농직불을 선택하여 신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축산, 시설재배농가는 관련 소득 기재)

* 서명은 본인 및 세대원이 직접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세대원의 서명은 받아오는 것이 필요

- 안내에도 불구, 농가내 2인이 신청하는 경우나 소농 직불 희망란에 표시하지 않으면 소농 대상이 되어도 면적직불금 지급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비교하여 세대원이 있음에도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없도록 유의

- 다만, 농가의 면적 합은 1ha이상이나 기존에 받아오던 방식이 남편 0.6ha, 아내 0.6ha로 변경이 없다면 각각 신청할 수 있으나 면적 직불만 신청

* 만일, 소농직불 희망란에 기재시 추후 거짓 신고 등으로 지원 제외 및 등록제한

② 읍면동에서는 농관원 등과 협조하여 신청 접수하되, 등록신청서 확인, 누락된 개인정보 동의 서명, 전산 입력 등 역할 분담하여 추진

- 등록신청서 확인

ⓐ (공통) 신청면적 기재 및 직불 선택 여부, 정보 동의 여부 등

ⓑ (소농 신청자) 제출한 신청서에 모든 세대원이 다 작성되고, 정보 동의 서명이 있는 지 등을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비교하여 확인

☞ 빠진 세대원이 있는 경우 작성해 주고, 세대원에게 전화하여 ARS로 서명하도록 설명

* **(주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결혼 여부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자에게 확인하여 분리된 세대원을 파악할 필요(거짓 신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할 것을 설명)
* **(참고)** 분리된 세대원의 기간 확인은 G4C로 주민정보를 끌어와서 확인 가능

- 누락된 개인정보 동의 서명 : 불가피한 경우 ARS(1522-2830) 방식의 서명 검토
- 전산 입력 : 완성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등본에 빠진 세대원은 직접 입력

*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세대원은 G4C를 활용하여 신청 시 바로 입력

③ **신청기간: 5. 1. ~ 6. 30.**

④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특히, 소농 신청자는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하고 지급 원칙

⑤ **제출서류: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서(및 관련 첨부서류**

- (공통) 등록신청서, **(소농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농신청자)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관련 소득을 등록신청서에 기재

- (필요시) 경작사실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부정수급 의심자 등은 실제 경작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 등의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필수

➜ 특히, **보조사업DB 비교시 지원대상자가 다른 자** 등에 대해서는 경작사실에 대한 서류 및 현장 확인 강화, 추후 부정수급 조사 및 수사 등 집중

별지 제3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농업인용) → P.184

별지 제4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농업법인용) → P.192

참고 10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	내용
0 등록신청서	• 모든 신청자(필수) *매년 제출, 생략 불가
1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17~'19년 1회이상 지급받은 농지이므로 전산 확인 가능 * 다만,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2 지급대상 제외 농지 여부 확인 서류	• 이전까지 직불금을 지원받았어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했는 지 확인 - 농지전용허가 농지, 산지전용협의를 거치지 않은 농지 여부 등 -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지처분 농지 여부 - 무단점유농지 여부,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 필수
3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경작사실확인서, 영농자재 구입 등) • 후계농, 전업농육성자, 신규 농업인 요건 등 확인 * 최근 3년 이내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자에 중점
4 소농직불금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축산업, 시설재배 영위자는 관련 소득자료 제출
5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승계대상자일 경우
6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및 영농기록 - 모든 신청인 대상, 특히, 보조사업 DB비교시 동일 필지에서 지원대상자가 다른 경우 현장조사 등을 거쳐 경작자 여부 확인 - '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신규 지급대상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나 관외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등도 포함
7 지급대상 제외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타인 소유의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국·공유지는 제출 생략 • 신청면적 감소가 고의적 분할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8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전산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1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또는 ②, 필요한 경우 ③

① '98년~'00년 동안 논농업, '12년~'14년 동안 밭농업, '03~'05년 동안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 P.200

-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 확인자는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② '97년('11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되었으나, '98년~'00년('12~'14년) 동안 불가피하게 논농업(밭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각 1개 이상씩

㉮ '97년('11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 '98년~'00년('12~'14) 동안 불가피하게 논농업(밭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③ 지급대상 제외 농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하천구역, 주·상·공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2 지급대상 제외 농지 여부 확인 서류 ① 또는 ②, 필요한 경우 ③~⑦

- 계속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라도 아래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했는 지 확인

◇ 아래 ①~⑤까지 사항은 시군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일괄 받아서 추후 검증

◇ 다만, 사업 신청시에 민원인에게 아래 사유에 따른 제외 농지가 있는 지 확인하고, 추후 검증시 나오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것이므로 지원제외, 등록제한 등의 처벌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신청시 자발적으로 신고할 것을 안내

①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인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나 협의를 거치 농지인지 여부

②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농지인지 여부

- 시군 담당부서에서 일괄 받아서 추후 검증

③ 택지개발지구 등 개발예정지이나 예외적으로 지원했으나 예외 사유가 없어졌는 지 여부

④ 등록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의 소유 농지를 타인 명의로 신청하지는 않았는 지

⑤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가 아닌 지 여부

⑥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 서류

* 공동소유·경작 농지는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서류 첨부

⑦ 임차농지인 경우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농지 *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첨부

※ 매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3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또는 ②,③, 필요한 경우 ④,⑤,⑥

① '16~'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전산 확인)

②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등록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을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농업법인은 5만㎡)

- ㉮, ㉯, ㉰ 1개이상씩

㉮ 경작면적 및 기간 증명 : 신청자 명의의 농업경영체 등록(전산 확인)

* 당분간은 지급대상 농지등 1천㎡이상에서 직전 3년동안 1기작 이상 재배하고, 90일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 1년이상 종사로 인정하는 방안 병행

㉯ 영농 증명 자료 : 해당 기간 중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 실경작 여부 확인 : 경작사실 확인서 등

* 2개 이상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농지도 면적계산에 포함되며, 휴경면적은 면적계산에 제외

별지 제6호 서식 경작사실 확인서 → P.201

④ 등록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 ㉮, ㉯, ㉰ 중 1개 이상

㉮ RPC 또는 A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RPC 또는 A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⑤ '04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 종사하였고,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임대·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중 1개

㉮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 경작면적 증명서류 또는 농산물 판매액 증명서류 (③과 ④ 참고)

⑥ 신청한 농지에 대한 경작사실확인서

※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4 소농직불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②, ③, ④, ⑤ 모두

① 농가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농업인)의 지급대상 농지등(임차 포함) 면적 확인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임대차계약서(임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농가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농촌지역 거주기간 및 영농 종사기간 확인 서류(전산)

- 주민등록등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으로 확인

④ 농가내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외소득(개인별), 구성원 전체 농외소득(가구)(전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⑤ 축산업 소득금액 또는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축산업과 시설재배을 영위하는 자는 소득 확인 자료 제출

※ 소농직불 대상자 또는 소농직불 승계자만 해당 /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5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기간 이후 승계시) ①, ②, ③, ④ 모두

① 등록자에게 발급된 등록증

②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기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뇌사 판정서, 실종확인서, 수감확인서, 진단서 등 (1개 이상)

③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 모두 필요, ㉰는 필요시)

㉮ 등록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등록자가 치료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장확인서, 입원증명서 등

㉱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확인서를 의미

㉲ 직불금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 소농대상자 증명자료,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전산 검증 등을 위한 시간이 없는 경우 농업외 종합소득, 소농 요건은 관련 서류로 확인

* 상속중인 농지를 가족 1인이 승계시 다른 상속인의 동의 필요(아니면 동의한 상속 비율 만큼만 인정)

④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승계의사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승계의사 확인서 → P.202

* 등록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확인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중 승계자가 아닌 자의 확인으로 갈음

※ 승계대상자만 해당 /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6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② 모두

① 경작사실 확인서

② 영농기록 별지 제6호 서식 경작사실 확인서 → P.201

- (관내경작자) ㉮ ~ ㉲ 중 1종 이상, (관외경작자) ㉮ ~ ㉲ 중 2종 이상

* 관내경작자 : 등록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포함)

** 관외경작자 : 등록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신청인

㉮ 농산물 판매 영수증 : R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R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등

㉰ 종자·육묘 등 구매 서류 : 정부보급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획서 등

㉱ 계약재배 증명서류 : 계약재배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기타 증명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 모든 증명서류는 신청자 명의여야 하며, **등록신청 해당연도 또는 전년도의 것만 인정**

** 마을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하는 경우만 인정

※ ① 보조사업 유비교시 동일 필지에서 지원대상자가 다른 경우, ② '19년에 신청자가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③신규 및 관외거주자 등은 확인 철저(신청 농지등이 동일한 경우 면제)/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7 지급대상 제외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②, ③ 모두

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전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② **타인의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원칙) 임대차 계약서
- (허용)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기간은 매년 확인 필수

③ **신청 면적 감소가 고의적 분할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
- 매매·상속·증여 등 소유권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농지법 제24조에 따라 시·구·읍·면장이 갖추어 둔 농지임대차계약 확인 대장의 사본,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
- 농지등 분할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농지전용허가증, 농지전용신고증,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 농지의 전용 협의(의제 포함)를 거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신고수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의제 포함)를 거쳐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차계약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 배우자, 미혼 자녀 등 동일 농가내에서의 임대차는 농지분할 사유로는 불인정, 다만, 농지 전체를 승계하거나 이전부터 동 사유로 분할하여 기 지급받던 농지는 인정

④ **거짓 등 직불금 등록 또는 수령한 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인지 확인(전산 등)**

※ (농외소득) 모든 신청자. 다만, 전산으로 확인 가능
※ (무단점유) 타인 소유의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만. 국·공유지 등 전산 확인 가능시 생략

8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이상을 경작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5만㎡ 이상)**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1개 이상)

② **전년도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 ㉮, ㉯, ㉰ 중 1개 이상
- ㉮ R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R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 ㉯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③ **등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둔 시구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등록 직전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각 1개 이상씩
- ㉮ 주소지 증명 : 주민등록등본 등
- ㉯ 경작면적 증명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 ㉰ 경작기간 증명 : 신청자 명의의 해당 기간 중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경작사실 확인서 등
  *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읍면동 내 농지도 포함

※ 농촌 외 지역 거주자만 해당 /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 승계자는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제출생략

라. 신청 접수·등록(지자체)

1 신청서류 확인

-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 후 접수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일정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 (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 미비한 신청서류는 접수받은 읍·면·동에서 보완 완료 후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

2 QR코드 스캔

- 접수 즉시 QR코드를 스캔하여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여 신청서에 QR코드가 없는 경우 Agrix 접수정보에 직접 입력

  * QR코드 스캔은 전산입력 누락 방지장치이고, '19년부터는 QR코드 스캔정보를 이용해 등록신청서 접수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실시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① **직불금 수령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직불금 신청자는 신청서 상 "수령자"와 동일해야하며, 신청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 신청서 2번 항목 중 ④

④ (신청인 성명)	(연락처)	(은행명)
직불금 신청자 성명 기재		(계좌번호) 직불금 신청자 명의 계좌만 가능

② **임대차 계약기간 등 서류 확인 및 입력 철저**

- 전년도보다 신청 면적이 큰 경우 임대차 등 서류확인 필수, 전년도와 변동이 없을 시에도 임대 농지는 임대계약기간 종료시점 확인 필수

③ **농업외 소득과 소농 요건 등의 검증 결과와 준수사항 미이행 등에 따라 지급 제외, 소농 제외, 감액 가능 안내 철저**

- 농업외 소득금액, 소농요건, 준수사항 등 자격 요건을 필히 안내하여 민원사례 예방

④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농지요건 확인 철저**

3 접수증 발급

- 신청인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때는 접수증 발급

별지 제8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 P.203

4 전산입력

- **입력기간 : 5월 ~ 6월**
- **입력내용** : 사업신청서 1. 일반현황의 ④번 항목 '가족관계 인적정보' 중 세대 분리한 가족관계 구성원과 축산업 및 시설재배업 소득은 직접 입력

  - 소농 직불을 원하는 대상은 '소농', 그렇지 않은 경우는 '면적' 선택

- **입력기관** :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 * 접수기관에서 타 읍·면·동 정보까지 모두 입력
  - 관할 읍·면·동에서는 신청서를 이송 받은 후 입력 내용 확인

신청정보 전산입력

① 타 읍·면·동에서 접수한 경우
- 접수한 읍·면·동에서 타 읍·면·동 정보까지 모두 입력

②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후 읍·면·동에서 직불정보 입력
  * 농관원에서는 신청·접수 기간(4월) 내 신속히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③ 기존 경영체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경영주 외 농업인 추가, 농지 추가)
- 농관원에서 경영체 정보 先 변경 등록 원칙

➜ 읍·면·동에서 농지추가 등을 하는 경우 전년과 달리 '농관원 인터넷 민원시스템과 연결'되어 읍면동 담당자의 권한으로 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 농관원 접수 → 지자체 해당정보 확인 업무처리

* 변경등록 신청한 정보는 관할 농관원에서 접수처리를 할 경우 바로 직불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관할 농관원에서 접수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유선연락하여 접수처리 요청

➜ 농관원은 변경접수한 정보에 대해 사후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 전년과 같이 사후 대량점검 과정에서 경영정보와 직불신청정보의 상이한 사항 검증 예정

5 서류이송

- **이송기간** : (지자체↔지자체) 10일 이내
- **이송방법** : 우편, 방문, 팩스 등 업무여건에 따라 선택
  - 기관간 서류 이송 즉시 상호 "인계인수서" 작성·교환

별지 제10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신청서 인수인계서 → P.205

- **원본보관** : 최초 접수기관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 원본보관
- **이송기관**
  - (지자체 → 지자체) 지급 관할(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이송

* 농지소재지 읍면동이 2곳 이상인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으로 서류 이송,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서류 접수 후 타 읍면동으로 서류 재이송
* 금년부터는 직불시스템 내의 지자체간 이송시스템을 활용, PDF를 활용 전송계획

마. 신청자 정보공개

- **공개기간** : 6월 ~ 9월
- **공개방법** : 농식품부, 농관원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www.agrix.go.kr와 읍·면·동(마을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 포함)의 게시판에 공개

- **공개내용** : 신청자 성명(법인명), 신청 농지지번, 신청면적
  *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마감한 날부터 30일이내에서 15일이상의 기간 동안
- **열람방법**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서면으로 신청
  - 직불금을 등록신청한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 직불금을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또는 지번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자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등록신청한 농지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직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개되고 열람되므로, 정해진 방법 외에는 제공불가

별지 제17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서 → P.222

④ 신청내용 조사 및 등록증 교부

현지(서면)조사 (마을, 읍·면·동(~7월)) →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읍·면·동(~7월))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및 대장관리 (시·군·구(~7월))

가. 서류 및 현지조사

- **조사 및 심사기간** : 신청서 접수 후 등록증 발급 전까지
- **현지(서면)조사** :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함

① 단계 경작사실심사위원회(마을단위)

* '20년에는 교부된 지자체 행정비, 마을공동기금 등을 활용하여 시범 추진(시군 자율)

- 읍면동장은 신청서 접수 후 각 마을의 전체 신청인 목록과 **관외경작자·신규 신청인, 실경작 의심자*** 등 **확인이 필요한 목록**을 마을 이장에게 배부
  * 보조사업간 DB연계로 동일 필지에서 서로 다른 농업인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등
- 마을이장은 마을공동체 자치회 등을 활용하여 경작사실심사위원회를 구성(마을이장을 포함하여 3~5인 이상)하고, 실경작여부, 임대차 여부 확인
- 최종 현장확인 결과 등을 반영한 심사 의견을 심사위원회 전원의 명의로 서명하고 읍면동장이 지정한 날짜까지 기한내 제출

② 단계 서류 및 현장조사(읍면동)

- 읍면동장은 전체 신청인을 대상으로 이상 여부를 확인하되, 관외경작자·신규신청인, 실경작 의심자 등을 중심으로 서면 및 현장조사를 집중 실시
  - 농업경영체정보와 타 보조사업 신청자 간 정보 확인으로 동일 필지에서 지원받은 대상자가 다른 경우는 부정 의심자로 보고 실경작 여부 집중 확인
    * 농약, 농자재 구매 이력 등을 전산 등으로 확인하고, 서류 및 현장조사로 최종 확인
  - 농업경영체 등을 활용한 경작면적 및 기간 확인, 경작사실확인서 및 영농증명 자료 등을 활용한 실경작 여부 등 현장 확인
- 농관원은 지역을 잘 아는 이통장,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공익직불 지도·홍보 및 위반행위 감시·신고
  * 농업보조사업 DB 비교시 부정의심자에 대한 점검, 감시·신고 등 협력체계를 구축
- 추후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시 농관원에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는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집중수사

③ 단계 등록관리위원회 심사(읍면동)

- 읍면동은 위원장 등 7인 이내로 등록위원회를 구성하고,
  - 마을단위 심사위원회 의견, 사전 서류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실경작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추진

기타 행정사항

- 동일한 시·군·구 내 2개 이상 읍·면·동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신청서 등을 전달 받아 조사에 활용
- 신청자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나.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및 이의 요청(시·군·구, 읍·면·동)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발급방법** : 지급대상 농지·지급대상자 적격여부,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신청자를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에 등록 → 등록증 발급

별지 제11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 P.206

별지 제12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 P.207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할 수 없음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원 제외자는 등록거절통보서를 보내고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

등록증 및 지급대상자 제외 통보서는 이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발급

별지 제15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 거절자(제외자) 대장 → P.220

별지 제16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 → P.221

• **등록내용 수정 요청**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 **이의신청** : 등록거절통보서를 받은 자가 재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기간 : 등록거절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 읍·면·동장
- 신청서류 : 이의신청서, 등록거절통보서와 해당 증명서류 첨부
- 결과조치 : 확인을 거쳐 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 주어야 함

별지 제15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 거절자(제외자) 대장 → P.220

별지 제17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서 → P.222

다.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농업인등)

- 관련기관의 서면 및 현장조사, 준수의무 등 이행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안됨
- 준수의무, 직불금 등록 등과 관련된 서류를 2년간 보관·비치하여야 함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산물 판매 영수등, 농약·비료 등의 농자재 구매서류 등

⑤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등록사항 변경)

지급요건 검증 및 소농 여부 통보	/	이행점검	/	등록사항 변경신청(신고)
농식품부, 읍·면·동(7월~9월)		농관원(7월~9월)		읍·면·동(7월~9월)

가. 지급요건 검증(농식품부, 읍·면·동)

- **검증대상** : 등록자 및 등록농지 전수 검증
- **검증방법** : 유관기관 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
- **검증내용** : 농외소득, 토지대장, 주민정보, 소농요건, 중복신청, 농지전용 등
- **검증결과 통보** : 농외소득 등에 따른 지원 제외, 소농 대상인지 면적직불대상인지 여부를 통보(읍면동, 9월말)

나. 이행점검(농관원)

- **점검기간** : 7 ~ 9월(지자체 통보 포함)
- **점검의뢰** : 등록된 농지(농업인)에 대하여 농식품부에서 농관원으로 일괄 의뢰

  - 의뢰시기 이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현장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직불금 신청·등록된 농지(농업인)

  - 등록된 농지(농업인) 중 경영체 DB 및 팜맵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대상 위주로 선정(등록농지의 50% 이상)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및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는 필히 조사대상에 포함
- **점검내용**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 공익직불제 준수의무

  - 폐경여부, 농작물 재배 여부, 2명 이상이 공동경작시 관리 실태, 관외경작자 실경작여부 등 중점 점검

    * 필요시 지자체에서 필요자료 요구(지자체 협조)
  - 공익직불제에 따라 추가된 영농기록, 영농(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여부, 교육이수,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여부 등도 점검

- **점검방법** : 농관원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팜맵,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점검실시

  * 이행점검표(별지 제31호, 36호, 42호, 45호 서식) 참고

  - 요건 미비 확인 시,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확보·보유

- **결과통보** : 농관원은 매월 부적합 내역이 있는 농업인에게 서면(별지 제33호, 35호, 39호, 44호, 47호) 등으로 점검결과를 통보

  * 점검결과에 대해 농업인 확인을 받을 시 서면통보 생략 가능

  - 이행점검이 완료되는 10.31일까지 Agrix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에 통보

- **의견제출** :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14일 이내 서면으로 관할 농관원으로 재조사 요청

  - 의견제출을 받은 농관원은 즉시 재조사 후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

별지 제49호 서식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의견서 → P.254

- **결과보고** : 농관원은 이행점검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면으로 보고(11월)

자격요건 상시검증

시·군(읍·면)은 신청자 및 등록자가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격요건을 지급 전까지 상시검증 실시

- 지급대상 농지 적격여부
  - 농지법 상 농지등인지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등인지 여부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인지 여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협의를 거친 농지인지 여부
  -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등인지 여부
  -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등인지 여부
  - 중복지급 불가능한 보조금을 중복 신청한 농지등인지 여부
-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업인등인지 여부
  -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
  -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지 여부
  -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인지 여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인지 여부(해당농지에 한 함)
  -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인지 여부
  -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다. 등록사항 변경(시·군·구, 읍·면·동)

1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변경기간** : 9.30.까지
- 변경 신청 및 신고 대상 농지등 : **당해연도에 등록된 농지등**에 국한
- 변경 **신청 대상자** : 등록농지의 면적 및 이용정보(등록된 필지 정보 포함) 변경 시
- 변경 **신고 대상자** : 타인 등록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하거나 신청자가 사망시
  - ⓐ 등록자로부터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된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농업인등
  - ⓑ 등록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 조치 : 변경 신고한 농업인등이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기본직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
-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13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 → P.208

별지 제14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 → P.214

구 분	필요 서류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①②③ 모두	① 발급된 등록증 ②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서류 (단, 읍·면장이 농업경영체 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 가능시 생략) -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1호, ⓑ제4호, ⓒ제5호 나목·다목의 서류 * ⓐ지급대상 농지등, ⓑ해당 농지등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관내, 관외 구분) ⓒ농지의 고의적 분할 여부, 무단점유 여부 관련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①과③ 또는 ②와③	①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임차,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② 사망 또는 뇌사 판정에 따른 직불금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 읍·면장이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 가능시 생략) - 발급된 등록증 - 등록자의 사망진단서(뇌사 포함),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자진단서, 뇌사 판정서, 실종확인서, 수감확인서, 진단서 등(1개이상) -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등록자가 치료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입원증명서 등 ㉱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확인서를 의미

구 분	필요 서류
	-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등록자가 사망 또는 의식불명 등으로 확인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중 승계자 외의 자의 확인으로 갈음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서류(지급대상자, 소농대상자, 해당 농지등의 경작자임을 증명,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농지의 고의적 분할 및 무단점유 여부 증빙 관련)

2 변경등록증 발급

- 시·군·구는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읍·면·동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내용 수정'에 준하여 처리

  * 14일 이내에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등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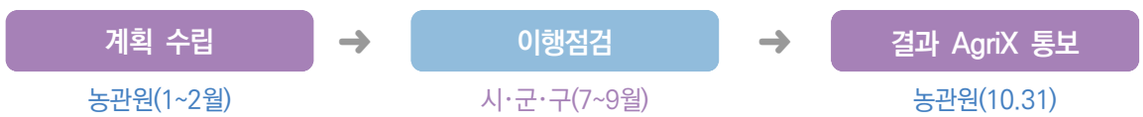
- 신청되지 않았던 농지, 농외소득 요건 등 자격요건이 미충족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신청했던 농지는 변경등록 대상이 될 수 없음
- 등록사항 변경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사망자 승계 가능 기간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이후 직불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 중에 사망(뇌사 포함)하여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직불금 지급(해당 시군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단계) 이전까지 승계 신청(변경등록 신고가 아닌 신규 승계신청에 해당)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승계 신청시 승계 사유 및 승계확인 증명서류 제출) ☞ 참고4 신청시 제출서류의 「5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기간 이후 승계시)」 참고
  - 다만, 직불금은 일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승계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사망한 지급대상자의 일반 상속인에게 지급은 불가함

⑥ 각 기관별 준수사항 이행점검 절차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점검기관 및 기간** : 농관원 / '20. 7 ~ 9월
- **점검대상**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에 등록된 농지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된 농지 중 경영체 DB 및 팜맵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대상 위주로 선정(등록 농지의 50% 이상)
- **점검내용** :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여부, 2) 농작물 재배 여부 3) 휴경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경운 실시 여부 4) 소유자 간 농지의 경계설치 여부 5) 논농업의 경우 용수로·배수로 유지·관리
- **이행점검 결과통보** : 부적합 필지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수렴 후 부적합으로 판명된 경우 AgriX에 입력·전송(매년 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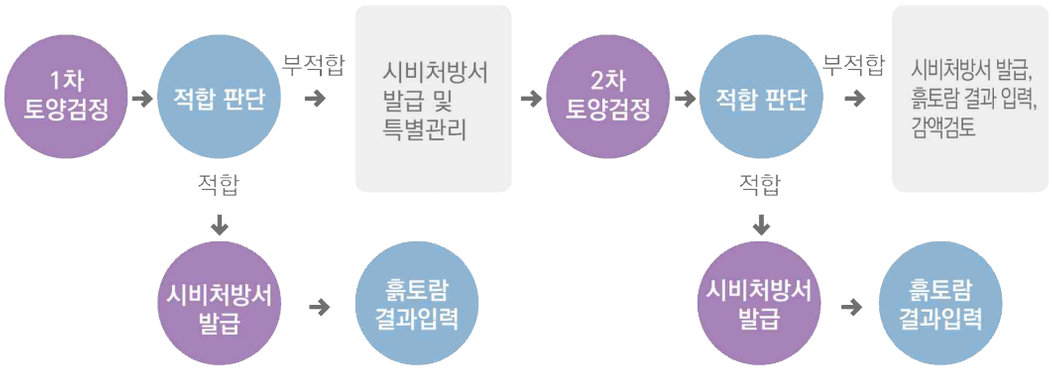
2 농약 등의 사용기준 준수

- **점검기관 및 기간** : 농관원·지자체 / 연중
- **점검대상** : 생산 및 유통·판매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 **점검내용** :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잔류기준을 초과한 자 등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 등에 따라 농관원, 식약처, 지자체에서 수립된 유해물질에 대한 농약등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발생 농업인 등

    * 다만, 중금속, 방사능, 독소류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유해물질은 지급제한 대상에서 제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 및 「농안법」 제38조의2에 따라 출하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자
- **이행점검 결과통보** : 농관원, 식약처, 지자체의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농업인의 의견수렴 후 최종 부적합으로 판명된 경우 AgriX에 입력·전송(매년 10.31)

3 비료 사용기준 준수

- **점검기관 및 기간** :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 연중
- **점검대상**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농지대상 약 91천 필지
- **점검내용** : 작물의 수확 전후 토양검정 결과



- 수확직후, 재배직전 1차 토양검정결과 부적합인 경우 해당 작물 수확 후에 2차 토양검정결과 개선이 되지 아니한 경우 감액검토

• **이행점검 결과통보** : 농업인의 비료 구매 내역, 영농기록 등을 확인·검토(의견수렴)하여 시비처방전을 초과하여 비료를 사용한 경우 AgriX에 입력·전송(매년 10.31)

• **결과보고** : 매년 1.20일까지 이행점검 결과 및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이하 '농업인 의무교육', 연 2시간)

• **점검기관 및 기간** : 농관원 / 연중

- '20년 교육이수 적용기간: 2020.5.1.~9.30.(5개월간)

• **점검대상**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전수)

• **점검내용**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교육 이수 여부

* 교육 이수 여부는 AgriX시스템에서 확인

• **결과통보** : 교육이력관리시스템에 교육 이수자 입력으로 결과 통보 갈음

- 교육이력관리시스템과 AgriX시스템을 연계하여 교육 미이수자 상시 확인 가능

* 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7일 이내에 이수자를 교육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

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14일 이내)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 ('20~'21) 농관원에서 변경 요청 후 14일 이내 변경 ('22~) 변경사항 발생 후 14일 이내 변경

* 변경신고 사항 : 일반현황·농지 정보, 재배품목['20년 1품목(벼) → '21년 5개 추가(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 '22년 10개 추가(참외, 오이, 딸기, 토마토, 호박, 수박, 사과, 배, 감귤, 포도)]

• **점검기관 및 기간** : 농관원 / 연중

• **점검대상**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농업경영체

- (일반현황·농지)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한 모든 농업경영체

- (재배품목)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한 농지 중 해당품목('20년 : 벼)을 대상으로 지역·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3% 무작위 표본선정

• **점검내용**

- (일반현황·농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현황·농지 정보와 주민정보·토지대장 시스템간 대량검증으로 불일치한 정보의 변경여부

* 일반현황농지 정보 : 농업인 성명, 주소, 농업법인 명칭, 법인 대표자 성명, 대표자의 주소, 농지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자경, 임차), 지목, 농지 소유자의 성명

- (재배품목) 표본 농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벼 품목 재배 및 면적과 불일치한 정보의 변경여부

* 등록정보 미 변경 확인 시,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증빙

• **결과통보** : 변경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농업경영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를 AgriX에 입력(매년 10.31)

6 마을 공동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기타 준수사항

•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보관
* ('20~'21) 주의장 발급, ('22~'23) 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비료의 적정 보관·관리,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등 농업·농촌의 환경을 관리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 「비료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지하수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처분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경우 감액 조치

• **점검기관 및 기간** : 농관원, 지자체 / 연중

• **점검대상** : (마을공동활동 등) 전체 마을의 1% 수준(500여개 마을) / 관계부처·지자체·검역본부에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기록

• **점검내용**

-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연 2회) 및 마을 공동활동 등을 추진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 기반을 조성하고, 농관원 등 이행점검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

* 농약, 비료 등 부적합 발생시 영농기록 작성 확인

• **결과통보** : 농관원, 지자체, 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은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AgriX에 입력(매년 10.31)

⑦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자금요청 및 교부결정 (농식품부, 시·도(10월)) → 직불금 지급 (시·군·구(11월)) → 지급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 (시군구·읍면동(12월~1월))

가. 자금요청 및 교부결정(농식품부, 시·도)

- **자금요청** : 시·도는 시·군·구별 지급대상자, 면적, 소요자금 등을 확정하여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자금요청
  - 소농직불은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120만원 일괄 요청
  - 면적직불은 면적 비율에 따라 시스템에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읍·면·동에서 각각 요청

별지 제20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 P.225

- **교부결정** : 농식품부는 시·도의 자금요청 등을 토대로 시·도별 교부결정 통보
- **전산작업** : 시·도는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 **자금교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 자금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구에 전금

나. 직불금 지급(시·군·구, 읍·면·동)

- 지급시기 : 11~12월
- 시·군·구(읍·면·동)는 시·도에서 자금을 교부받은 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입금
  - 입금 시 공익직불금임을 알 수 있도록 “농림공익직불”이라 통장에 명기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다. 지급결과 보고(시·도)

- 시·도는 직불금 지급결과를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보고(12월)

별지 제21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 P.226

라. 정산 및 반납(시·군·구, 읍·면·동)

- 시·도는 기본직접지불금 정산결과를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시·도의 정산결과를 토대로 기본직접지불금에 대한 정산을 확정
- 시·도는 기본직접지불금 집행잔액을 반납

시·도(시·군·구)는 자금교부 후 신속히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시 추경, 성립전 등으로 필요예산을 편성하고, 지급 전 계좌검증 철저

⑧ 사후관리(사업추진 상황점검)

- **교차점검** : 시·도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교차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간 교차점검 실시(6월, 10월)
- **중앙·지방 합동점검** : 농식품부는 시·도, 농관원과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합동점검 실시(7월, 11월)
-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등 사후관리**

- 농식품부는 부당수령금 등 사업비 회수 및 반납업무 처리상황을 정기 및 수시(필요시) 점검
- 시·도는 관내 업무 추진상황 지도·점검 시 부당수령금 관리실태 점검

* 시·도 주관 교차점검(6월, 10월)시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처리상황 점검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농림축산식품부

수신자
(경유)

제 목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2.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작목 및 농지등

구분	실제 경작작목	조정의무 대상작목	농지등 소재지				실제 재배면적 (㎡)	조정의무 부과대상면적 (㎡)	재배면적 조정방법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 계(㎡)									

※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미지급하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계획(00시·군·구)

□ 시·군·구 및 관계부처간 업무협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 참석기관 및 참석자 :

○ 협의 사항 :

□ 주요 협의 내용

○ 집중 접수기간(읍·면 별) 일정

시·도	시·군·구	읍·면·동	운영일자	비고

○ 기관간 협조체계

○ 기타 협의시 논의된 내용

□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농업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8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농업인 번호	경영정보변경일	처리기간	90일

1. 일반현황

① 등록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농업인 번호	신청유형	※ 안내문 참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마을명)	전화번호	축산 · 시설농 가여부	[ ]축산농가 [ ]시설농가
③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성명	생년월일	농업인 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배우자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등록신청인 기준) ※ ⑥-1 '기본'란의 **"기본직접지불금종류 선택"**에서 **"소농직접지불금"**을 선택한 경우만 해당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가족관계를 작성합니다.

④-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④-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 ※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			-

❶ 소농직접지불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세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받습니다.
④-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등록신청인을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작성합니다.
④-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를 작성합니다.

❷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중 제출한 가족관계 인적정보가 전년도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는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 작성 및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❸ 위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4쪽)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5쪽)"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을 거부한 경우는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에서 제외되며,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고의로 **미등록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 ] 확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 서식]

2. 농지등 및 농작물재배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⑥-1은 기본직접지불금(소농직접지불금, 면적직접지불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2은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품목 · 면적은 ⑤-5의 **재배품목** 중 해당하는 품목과 재배면적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인1 성명)	(은 행 명)	(등록신청인2 성명)	(은 행 명)
(연락처)	(계좌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 **'소농직접지불금'**은 농가 구성원 중 **지급대상자(등록신청인)인 1명**에게 지급합니다.
'면적직접지불금'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 외의 농업인만 지급대상자(등록신청인)**에 해당되며, 공익직접지불금 종류별로 **등록신청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⑤-1 농지일반					⑤-3 농지등 면적(㎡) A≧B+C+D						⑤-4 시설현황		⑤-5 품목별 재배면적			⑥-1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해당란 [ ]에 √ 하시오)					⑥-2 선택 (논활용)		⑥-3 등록 신청인 성명
번호	농지등 소재지	농지등 소유자	⑤-2지목		공부(A) A≧자경+임차			실제 경작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품목	재배면적		신청 면적(㎡) E≦B+C	논밭 구분	농촌 진흥 지역 여부 (○,×)	기본직접지불금종류 선택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소농직접지불금" 선택, 1개라도 "미해당"인 경우 "면적직접지불금" 선택]			재배 품목	신청 면적(㎡)	
			공부	실제	자경	임차	기간 (~)		휴경 (C)	폐경 (D)				노지(㎡)	시설(㎡)				소농 지급요건	신청 · 소유면적 등				
																			❶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하**	신청(경영) 면적의 합 (㎡)	[ ]해당 [ ]미해당			
																			❶-1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1만5천500제곱미터 미만**	소유면적의 합 (㎡)	[ ]해당 [ ]미해당			
																			❷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종사 __년 농촌거주 __년	[ ]해당 [ ]미해당			
																			❸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 ]해당 [ ]미해당			
																			❸-1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		[ ]해당 [ ]미해당			
																			❹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5천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3천800만원 미만**		[ ]해당 [ ]미해당			
합 계																	**기본직접지불금종류 선택**		[ ]소농직접지불금 [ ]면적직접지불금				

⑥-1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란은 6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❶ 의 면적을 초과하나 다른 요건(❶-1부터 ❹)은 모두 충족하는 농가 중 면적직접지불금 금액이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단가보다 낮은 경우 소농직접지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3.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전년도 기준)

구 분	소농직접지불금 신청내역		면적직접지불금 신청내역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농촌진흥지역 안 논밭				
농촌진흥지역 밖 논				
농촌진흥지역 밖 밭				
합 계				

4. 선택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전년도 기준)

구 분	논활용직접지불금 신청내역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농촌진흥지역 안 · 밖		
합 계		

*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지급대상 농지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농지 매매, 임대차 등으로 신청면적이 변경된 경우**는 직접지불금 신청정보 입력 · 등록 과정에서 **소농직접지불금 또는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변경**될 수 있으며 예상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V **표시**합니다.

1.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3.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및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및 논활용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향후 **지급대상자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5.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 ·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1 (서명 또는 인)

등록신청인2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 · 면장 · 동장

[별지 제3호 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교육관리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 · 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 ·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정보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지불금,**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정보,**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8쪽 중 제5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등록·점검·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조사 및 확인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동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작성방법

1. 일반현황: 등록신청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 등록신청인별 연락처와 은행명, 계좌번호는 2쪽 상단에 작성합니다.

②와 ③의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④란의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는 소농직접지불금 신청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④-1란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등록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작성합니다. ④-2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받습니다.

2. 농지등 및 농작물재배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및 농작물재배,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등록합니다.

⑤-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⑤-2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⑤-3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 · 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 · 사용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등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추가제출합니다)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입니다.(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입니다.

⑤-4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
- 시설종류: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번호를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⑤-5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농지등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노지인 경우 노지란, 시설인 경우 시설란에 적습니다.

⑥-1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논 · 밭 구분 및 농촌진흥지역 여부는 자동표출됩니다)
- **'신청면적'**란은 ⑤-3 '농지등 면적'의 실제경작(B)과 휴경(C)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논밭구분'**란은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 "논"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표시됩니다.

㉮ "논"으로 표시 - 쌀 고 정: 1998. 1. 1. ~ 2000. 12. 31. 해당 농지를 논농업(논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밭 고 정: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조건불리: 2003. 1. 1. ~ 2005. 12. 31. 해당 농지등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농촌진흥지역여부'**란은 농지등 소재지별로 농촌진흥지역은 "○", 농촌진흥지역 외의 지역은 "×"로 표시됩니다.
- '기본직접지불금종류 선택'란은 등록신청인이 표 안의 1 ~ 4 까지 소농직접지불금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된 경우는 해당란에 선택, 미해당된 경우는 미해당에 선택합니다. '기본직접지불금종류'는 모두 '해당'일 경우에는 '소농직접지불금'을 선택하고 '미해당'이 1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면적직접지불금'을 선택합니다.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추고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을 말합니다.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란 기본직접지불금의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되므로 농가 내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⑥-2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란**은 논활용직접지불금에 해당하는 품목을 작성합니다.
- '신청면적'란은 논활용직접지불금 재배품목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이때 품목 · 면적은 ⑤-5의 재배품목 중 해당하는 품목과 재배면적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⑥-3란의 '등록신청인 성명'란은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 외의 농업인만 해당되며, 공익직접지불금 종류별로 등록신청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3.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지급대상 농지등 기준으로 자동표출 됩니다.

4. 선택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지급대상 농지등 기준으로 자동표출 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8쪽 중 제7쪽)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시 첨부서류

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이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합니다)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라 합니다)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지등 중 법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 및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2조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시 첨부서류

다.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라. 법 제9조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

마.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동이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등록신청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이하 "관내경작자"라 합니다)인 경우: 1)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경작사실에 관한 확인서.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읍·면·동 공무원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으로 한정합니다)

3)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합니다)

4)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합니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내경작자 외의 자의 경우: 가목1)의 서류와 가목2)부터 6)까지의 서류 중 2개 이상의 서류

4. 소농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시행령 제4조·제7조에 따른 지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농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

나.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및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바.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Ⅱ.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신청인이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의 경작사실확인서. 이 경우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시행규칙 제3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4호 서식]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8쪽 중 제1쪽)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농업법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경영정보변경일		처리기간	90일

1. 일반현황

① 등록신청인	대표자명(법인명)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법인주소지: (마을명:)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② 법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③ 구성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농업인 번호	증빙서류

※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등기이사(또는 업무집행자) 및 농업인 출자자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 서식]

2. 농지등 및 농작물재배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⑤-1은 **기본직접지불금(소농직접지불금, 면적직접지불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⑤-2은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품목 · 면적은 **④-5**의 **재배품목** 중 해당하는 품목과 재배면적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④-1 농지일반					④-3 농지등 면적(㎡) A≧B+C+D						④-4 시설현황		④-5 품목별 재배면적			⑤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⑤-3 실경작자
번호	농지등 소재지	농지등 소유자	④-2지목		공부(A) A≧자경+임차			실제경작(B)	미이용		시설종류	시설면적(㎡)	품목	재배면적		⑤-1 **기본(면적)**			⑤-2 **선택(논활용)**		
			공부	실제	자경	임차	기간 (~)		휴경(C)	폐경(D)				노지(㎡)	시설(㎡)	신청면적(㎡) E≦B+C	논밭 구분	농촌진흥지역 여부(○,×)	재배품목	신청면적(㎡)	
합 계																					

※ ⑤ '공익직접지불금 신청'란은 **6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⑤-1란의 신청면적은 ④-3 '농지등 면적'의 실제경작(B)과 휴경(C)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논 · 밭 구분은 농지등 소재지별로, 농촌진흥지역 여부는 농촌진흥지역은 "○", 농촌진흥지역 외의 지역은 "×"로 표시됩니다.

※ ⑤-2란의 논활용 재배품목은 ④-5의 재배품목 중 해당하는 품목과 재배면적을 동일하게 작성하며, ⑤-3은 법인 내 농지등 소재지별 실경작자를 작성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8쪽 중 제3쪽)

3.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전년도 기준)

구 분	소농직접지불금 신청내역		면적직접지불금 신청내역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농촌진흥지역 안 논밭				
농촌진흥지역 밖 논				
농촌진흥지역 밖 밭				
합 계				

4. 선택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전년도 기준)

구 분	논활용직접지불금 신청내역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농촌진흥지역 안 · 밖		
합 계		

* **법인은** 기본직접지불금의 **'면적직접지불금'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지급대상 농지등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농지등 매매, 임대차 등으로 신청면적이 변경된 경우는 예상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V **표시**합니다.

1.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3.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및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및 논활용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향후 **지급대상자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5.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 ·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 · 면장 · 동장

[별지 제4호 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교육관리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 · 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 ·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정보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지불금,**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정보,**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8쪽 중 제5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 · 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 · 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 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기타 농업 · 농촌 관련 융자 ·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 · 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 · 등록 · 점검 ·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 · 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 ·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 ·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 · 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 · 제공 · 활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조사 및 확인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 · 면장 · 동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 · 면장 · 동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작성방법

1. 일반현황: 농업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마을명 포함),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는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 · 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직접지불금 신청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수령은행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2. 농지등 및 농작물재배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해당 농업법인의 농지등 및 농작물재배,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등록합니다.

④-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등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④-2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④-3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 · 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영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 · 사용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등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추가제출합니다)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입니다.(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입니다.

④-4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

- 시설종류: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번호를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④-5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농지등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노지인 경우 노지란, 시설인 경우 시설란에 적습니다.

⑤-1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논 · 밭 구분 및 농촌진흥지역 여부는 자동표출됩니다)

- **'신청면적'**란은 ④-3 '농지등 면적'의 실제경작(B) 면적과 휴경(C)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논밭구분'**란은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 "논"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표시됩니다.

㉮ "논"으로 표시 - 쌀 고 정: 1998. 1. 1. ~ 2000. 12. 31. 해당 농지를 논농업(논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밭 고 정: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조건불리: 2003. 1. 1. ~ 2005. 12. 31. 해당 농지등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농촌진흥지역여부'**란은 농지등 소재지별로 농촌진흥지역은 "○", 농촌진흥지역 외의 지역은 "×"로 표시됩니다.

⑤-2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란**은 논활용직접지불금에 해당하는 품목을 작성합니다.
- **'신청면적'란**은 논활용직접지불금 재배품목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면적은 ④-5의 재배품목 중 해당하는 품목과 재배면적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⑤-3란은 법인 내 농지등 소재지별 실경작자를 기록합니다.

3.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지급대상 농지등 기준으로 자동표출 됩니다.

4. 선택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지급대상 농지등 기준으로 자동표출 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8쪽 중 제7쪽)

공익직접지불금 등 신청 시 첨부서류

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이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합니다)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라 합니다)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 및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중 하나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2조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직접지불금 등 신청 시 첨부서류

다.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라. 법 제9조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

마.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동이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등록신청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이하 "관내경작자"라 합니다)인 경우: 1)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경작사실에 관한 확인서.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읍·면·동 공무원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으로 한정합니다)

3)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합니다)

4)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합니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내경작자 외의 자의 경우: 가목1)의 서류와 가목2)부터 6)까지의 서류 중 2개 이상의 서류

Ⅱ.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신청인이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의 경작사실확인서. 이 경우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시행규칙 제3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신청구분 (쌀,밭,조건)	농지 소재지			면적(㎡)	재배작목 논농업('98~'00) 밭농업('12~'14) 조건('03~'05)
		읍·면·동	리·통	지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는 다음과 같이 이용된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 '17.1.1부터 '19.12.31까지 3년 중 1회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종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98.1.1부터 '00.12.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 '12.1.1부터 '14.12.31까지 밭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이외 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 '03.1.1일부터 '05.12.31.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등 소재지				농지이용면적			재배 기간 (연도)
	읍·면·동	리·통	지번	공부상면적 (㎡)	논 (㎡)	밭 (㎡)	휴경 (㎡)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 ]에 ∨표를 합니다.

[ ]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시행규칙 제3조제3호) 또는 직전 1년 이상(시행령 제5조 '농업 주업 요건') 신청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 ] 경작사실 확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모든 경우에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승계의사 확인서

등록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구분 ([ ] 해당란에 "√"표시)	등록 농지등 소재지 및 면적				등록 농지등 이용면적(㎡)		
	읍 · 면 · 동	리 · 통	지번	면적(㎡)	합계	작물재배	휴경
기본[ ], 선택[ ]							
기본[ ], 선택[ ]							
기본[ ], 선택[ ]							
기본[ ], 선택[ ]							
기본[ ], 선택[ ]							
기본[ ], 선택[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자는 승계자( )에게 ( )의 사유로 승계함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등록자				
* 등록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승계자 외 1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자와의 관계)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할 목적으로 위 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기본: 소농( )·면적( ), 선택: 논활용( )] ※( ) 해당란에 "√"표시

<접수번호 : >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취-----선----------

<접수번호 : >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기본: 소농( )·면적( ), 선택: 논활용( )] ※( ) 해당란에 "√"표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동장(사무소장) (인)

[별지 제9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 해당 관할 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해 직접 접수받은 내역과 농관원(사무소) 및 타 지자체(읍·면·동)에서 이송 받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접수 내역[2]		이송 여부[3] (O,X)	전산 입력 여부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경영주성명[1] 지역 신청자 성명(전체)	직접 접수	이송			

1) 신청서의 경영주 성명을 기재하고, 점선 밑*의 란에 관할 지역 내 신청자 전부 표기

예시) ① 경영주와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같은 경우 : 경영주 성명 표기
②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를 포함하여 여러명인 경우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자 모두 표기
③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와 다를 경우 : 신청자 명 표기(복수일 경우 전부 표기)

2) 직접 접수 받은 경우는 직접접수란에 '○', 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1', 타 지자체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2'로 표기

3) 직접 접수 또는 농관원으로부터 최초 이송받은 읍·면·동이 타 지급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별지 제10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신청서 인수인계서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와 ○○ 간에
아래 사항에 대해 이상 없이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직불금 신청 내역 사본 000부

0000년 00월 00일

인 계 자	(소속) ○○	직	이 름	서 명
인 수 자	(소속) ○○	직	이 름	서 명

□ 붙임 : 인수인계 내역

인수인계서 내역

접수번호	경영체명 (신청자명)	주소지	신청내용(해당에 "○"표시)		
			소농직불	면적직불	선택직불 (논활용)

[별지 제11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 월일 (법인 등록번호)	기본직불금 (소농·면적)						선택직불금 (논활용)		등록 연 월일	변경 사항
			합계 (진흥 지역 안+밖)	진흥 지역 안 (㎡) (논+밭)	진흥지역 밖 (㎡)		농지이용 면적 (㎡)		재배 면적 (㎡)	휴경 면적 (㎡)		
					논	밭	작물 재배	휴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기본: 소농직접지불금( ) · 면적직접지불금( ), 선택: 논활용직접지불금( )] ※( ) 해당란에 "○"표시

등록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농지등 소재지			농지등 소유자	기본직접지불금 (소농직접지불금 · 면적직접지불금)						선택직접지불금 (논활용)	
읍 · 면	리 · 동	지번 (임시 지번)		합계	농촌진흥 지역 안(㎡) (논 + 밭)	농촌진흥지역 외의 지역(㎡)		농지등이용면적 (㎡)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논	밭	작물재배	휴경		
합계											

위 등록신청인은「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소농직접지불금( ) · 면적직접지불금( )], 논활용직접지불금(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기본직접지불금의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법 제19조제1항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논활용직접지불금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농지의 논활용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 제재부가금 · 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법 제43조제1호부터 4호까지에 따른 형사처벌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3호 서식]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

※ 5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6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

① 등록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② 농지일반					③농지등 면적(㎡) A≧B+C+D						④ 시설현황		⑤ 변경 전				⑥ 변경 후				⑦ 변경 사유
번호	농지등 소재지	농지등 소유자	②-1 지목		공부(A) A≧자경+임차			③-1 실제 경작 (B)	③-2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⑤-1 기본직접지불금 (소농직접지불금·면적직접지불금)		⑤-2 선택직접지불금 (논활용)		⑥-1 기본직접지불금 (소농직접지불금·면적직접지불금)		⑥-2 선택직접지불금 (논활용)		
			공부	실제	자경	임차	기간 (~)		휴경 (C)	폐경 (D)			논·밭 구분	신청 면적 (㎡)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논·밭 구분	신청 면적 (㎡)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 기타 변경 사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등록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첨부서류	발급받은 등록증 등 (기타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은 제5쪽부터 제6쪽까지 참고)	수수료 없음

※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농지등 소재지, 등록면적, 공적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3호 서식]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V **표시**합니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및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및 논활용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5.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에 확인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6.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별지 제13호 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교육관리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 · 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 ·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정보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농업인용 등록신청인(경영주와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인(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지불금,**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정보,**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농업인용 등록신청인(경영주와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인(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지원, 농업 · 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 · 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 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기타 농업 · 농촌 관련 융자 ·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 · 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 · 등록 · 점검 ·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 · 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 ·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 ·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 · 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 · 제공 · 활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조사 및 확인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 · 면장 · 동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 · 면장 · 동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별지 제13호 서식]

(6쪽 중 제5쪽)

작성방법

※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 사항은[「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6조제1항,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신청합니다.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농지등의 소재지, 소유자** 등 농지 관련 사항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농지등의 자경(自耕)·임차(賃借)·휴경(休耕) 및 폐경(廢耕) 현황 면적**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종류 및 면적**

④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

⑤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 재배작물 등이 변경된 경우**

※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등록신청서 ①~⑤란까지의 자동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⑥란에 작성합니다.

2. 농지등이 신규로 추가될 경우 농지등의 소재지, 농지등 면적, 시설현황 등 신청정보를 등록합니다.

②란의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②-1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③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등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추가제출합니다)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입니다.(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입니다.

④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

- 시설종류: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번호를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3. 등록신청인(법인)의 공익직접지불금 변경등록 정보를 변경 전(前)과 변경 후(後) 내용을 등록합니다.

⑤-1란은 변경 전의 기본직접지불금의 '논·밭 구분'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면적은 ③ '농지등 면적'의 실제경작(B)과 휴경(C)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논밭구분'**란은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 "논"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표시됩니다.

㉮ "논"으로 표시 - 쌀 고 정: 1998. 1. 1. ~ 2000. 12. 31. 해당 농지를 논농업(논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밭 고 정: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조건불리: 2003. 1. 1. ~ 2005. 12. 31. 해당 농지등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⑤-2란은 변경 전의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⑥-1란은 변경 후의 기본직접지불금(소농, 면적)의 '논·밭 구분'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⑥-2란은 변경 후의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⑦란은 필지별로 변경사유[매매(증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공익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
   나.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 다만,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서만 첨부해도 됩니다.
   다.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법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 및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중 하나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Ⅱ.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신청인이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의 경작사실확인서. 이 경우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시행규칙 제3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4호 서식]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

※ 5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6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

① 등록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등록신청인1** 성명) (은 행 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록신청인2** 성명) (은 행 명)
(연락처) (계좌번호)

② 농지일반					③농지등 면적(㎡) A≧B+C+D						④ 시설현황		⑤ 기본(선택)직접지불금 신청				⑥ 변경 사유
번호	농지등 소재지	농지등 소유자	②-1 지목		공부(A) A≧자경+임차			③-1 실제 경작 (B)	③-2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⑤-1 기본직접지불금 (소농직접지불금·면적직접지불금)		⑤-2 선택직접지불금 (논활용)		
			공부	실제	자경	임차	기간 (~)		휴경 (C)	폐경 (D)			논·밭 구 분	신청 면적 (㎡)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 기타 변경신고 사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등록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첨부서류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제5쪽부터 제6쪽까지 참고)	수수료 없음

※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농지등 소재지, 등록면적, 공적 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4호 서식]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V **표시**합니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 **[ ] 확인**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 **[ ] 확인**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및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및 논활용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5.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에 확인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6.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별지 제14호 서식]

(6쪽 중 제3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교육관리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 · 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 ·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정보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농업인용 등록신청인(경영주와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인(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지불금,**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정보,**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 서식]

(6쪽 중 제4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농업인용 등록신청인(경영주와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인(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지원, 농업 · 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 · 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 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기타 농업 · 농촌 관련 융자 ·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 · 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 · 등록 · 점검 ·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 · 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 ·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 ·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 · 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 · 제공 · 활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조사 및 확인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 · 면장 · 동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 · 면장 · 동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별지 제14호 서식]

(6쪽 중 제5쪽)

작성방법

※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 사항이란?[「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6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6조제2항,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신청인(대표자)과 관련한 사항을 변경등록합니다.

①란은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을 변경등록신고하는 농업인(대표자)으로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대표자)을 말합니다.

- 등록신청인별 연락처와 은행명,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 '등록신청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서 '소농직접지불금'은 농가 구성원 중 지급대상자(등록신청인)인 1인에게 지급합니다. '면적직접지불금'은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 외의 농업인만 지급대상자(등록신청인)로서 자격이 있으며, 해당 지급대상자 중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별로 등록신청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법인은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면적직접지불금 또한 등록신청인(대표자)에게 지급됩니다.

2. 신청서 ②~⑤란까지의 자동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작성합니다. 농지등이 신규로 추가될 경우 농지등의 소재지, 농지등 면적, 시설현황 등 신청정보를 등록합니다.

②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사유구분: 매매(증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

②-1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③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등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추가제출합니다)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입니다.(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입니다.

④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

- 시설종류: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번호를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⑤-1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논·밭 여부는 자동표출됩니다)

- **'논밭구분'**란은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 "논"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표시됩니다.

㉮ "논"으로 표시 - 쌀 고 정: 1998. 1. 1. ~ 2000. 12. 31. 해당 농지를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밭 고 정: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조건불리: 2003. 1. 1. ~ 2005. 12. 31. 해당 농지등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신청면적'**란은 ③ '농지등 면적'의 실제경작(B)과 휴경(C)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2란은 변경신고하는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필지별로 기록합니다.

- **'재배품목'란**은 논활용에 해당하는 품목을 작성합니다.
- **'신청면적'란**은 논활용 재배품목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⑥란은 필지별로 변경사유[매매(증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공익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 시 첨부서류

Ⅰ. 기본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 ·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 · 면장 · 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한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 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변경사항과 관련된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Ⅱ.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 · 면장 · 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 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제2호 · 제3호 · 제5호의 서류
3.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의 경작사실확인서. 이 경우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5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 거절자(제외자) 대장

번호	신청구분 ([ ] 해당란에 "√"표시)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 면적 (㎡)	제외사유
1	기본[ ],선택[ ]					
2	기본[ ],선택[ ]					
3	기본[ ],선택[ ]					
4	기본[ ],선택[ ]					
5	기본[ ],선택[ ]					
6	기본[ ],선택[ ]					
7	기본[ ],선택[ ]					
8	기본[ ],선택[ ]					
9	기본[ ],선택[ ]					
10	기본[ ],선택[ ]					
11	기본[ ],선택[ ]					
12	기본[ ],선택[ ]					
13	기본[ ],선택[ ]					
14	기본[ ],선택[ ]					
15	기본[ ],선택[ ]					
16	기본[ ],선택[ ]					
17	기본[ ],선택[ ]					
18	기본[ ],선택[ ]					
19	기본[ ],선택[ ]					
20	기본[ ],선택[ ]					

※ 1) "기본"은 "소농"과 "면적"으로 구분
2) 제외자: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 농지등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 년 월 일

○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16호 서식]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등록이 거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신청 구분	[ ] 소농직접지불금 [ ] 면적직접지불금 ※ [ ] 해당란에 "√"표시									
거부 사유										
등록거부 내용										
등록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농지등 소재지			소농직접지불금			면적직접지불금			
	읍·면	리·동	지번 (임시지번)	합계	신청면적(㎡)		합계	신청면적(㎡)		
					작물재배	휴경		작물재배	휴경	

* 위의 등록거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7호 서식]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서

구분	[ ] 소농직접지불금 [ ] 면적직접지불금 ※ [ ] 해당란에 "√"표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	읍장·면장·동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증 사본 2. 등록거부 통보서 3.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증명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8호 서식]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제 호

조사 공무원증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백상지 120g/㎡〕

(색상: 연노란색)

(뒤쪽)

조사 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거주지·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농자재판매처·출하처 등에 출입하여 조사·수거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19호 서식]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제 호

조 사 원 증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백상지 120g/㎡〕

(색상: 연녹색)

(뒤쪽)

조 사 원 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조사를 위하여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거주지·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농자재판매처·출하처 등을 출입할 때에는 이 조사원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20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시·군·구	지급대상자(명)				지급대상 면적(㎡)								소요 자금(천원)					
	합계	기본 직불		선택 직불 (논활용)	소농직불				면적직불			선택 직불 (논활용)	소농 직불	면적직불				선택 직불 (논 활용)
					합계	진흥 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진흥 지역 안	진흥 지역 밖		
		소농	면적			논·밭	논	밭		논·밭	논	밭			논·밭	논	밭	
합계																		

※ 1ha = 10,000㎡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시·군·구	자금배정액(천원)				지급 면적(㎡)									지급 결과(천원)					
	합계	기본직불		선택직불(논활용)	소농직불				면적직불				선택직불(논활용)	소농직불	면적직불				선택직불(논활용)
		소농	면적		합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논·밭	논	밭		논·밭	논	밭				논·밭	논	밭	
합계																			

※ 1ha = 10,000㎡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신고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			
	주소		전 화 번 호	
<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신고내용>				
부정수급자 성명	(전화번호)			
부정수급자 주소				
부정신청 농지등 지번				
신 고 내 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부정수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신고대상자(부정수급자)의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자(신고자)의 사실확인서
2. 신고대상자(부정수급자)의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직계존비속은 제외) 이상의 사실확인서
3. 기타 부정수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고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정수급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 서식]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신고 관리 대장

기관명 :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방법 (콜센터, 우편 등)	피신고인 성명	농지등 주소	위반 행위	직불 종류	처리 연월일	처리 내용	결과 통보 연월일	결과 통보 방식 (전화, 우편 등)	포상금 지급액

※ 직불종류: 기본직접직불금(소농·면적) 또는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 경관보전 등)

[별지 제24호 서식]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신고 처리결과서

1. 신고개요

○ 신고일자 :

○ 신 고 자 : (생년월일 :)

– 주 소 지 :

– 연 락 처 :

○ 피신고자 : (생년월일 :)

○ 신고농지 :

○ 신고내용 :

2. 조사결과 및 처분결과

○ 담 당 자 : (소속) (직급) (성명)

○ 조사결과

– 부정수급 연도 :

– 부정수급 농지등 : (면적 : ㎡)

– 부정수급 직불 :

– 부정수급 금액 : 원

– 부정수급 내용 :

○ 처분결과

– 처분일자 :

– 환 수 액 : 원 (부정수급액 원, 가산금 원)

– 등록제한 : 년(년 ~ 년)

3. 부정수급 상세내역

○ 부정수급자 : (생년월일 :)

직불종류	수령연도	농지등 지번	면 적 (㎡)	금 액 (원)	비 고
합 계					

※ 직불종류 : 기본직접지불금(소농·면적) 또는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 경관보전 등)

[별지 제25호 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①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 분	□ 민간인 □ 명예감시원	전화번호		
	주 소				
	지급계좌번호	(은행)			
②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 분	□ 민간인 □ 명예감시원	전화번호		
	주 소				
	지급계좌번호	(은행)			
신고내용	일 자	20 . . .	유 형	□ 신고 □ 고발	
	내 용				
포상금 배분비율	① ( ) % : ② (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여부	청구여부	[ ] 있음 [ ] 없음	(기관명:)		
	수령여부	[ ] 있음 [ ] 없음	(금액:)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상금 지급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통장사본 2. 부당수령신고 처리결과서(해당 부당수령신고를 처리한 기관에서 첨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구비서류 및 관련사항 검토 →	포상금 지급
신청인	주무관청	주무관청

210㎜×297㎜(중질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 서식]

1. 부정수급 기본정보

보조사업 개요			
사업명	00000사업	지원연도	'2015.~
사업비	► 총계 : 123,400,000천원(국고 34,567,000) ▪ 00년도 : 000천원(국고 0000) ▪ 00년도 : 000천원(국고 0000)		
보조사업자			
법인명	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
성 명	홍길동	주민번호	00000000000
부정수급 관련 정보			
부정수급 확인 경위	* 01.23일자 000의 신고에 의해 적발 등 구체적으로 서술		
부정수급 내 용	* 농업인 000이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등 * 이에 대해 보조사업 대표자에 대해 사실확인서 징구		
기타	*		

2. 제재 검토 기본정보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정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	480천원(국고 480천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 결정 내역	*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 추진 등
제재부가금 감경·면제사유	
보조사업 수행 배제 관련 정보	
보조사업 수행배제 조치에 대한 의견	*
보조사업 수행배제 예외 사유	
명단공표 관련 정보	
명단공표 조치에 대한 의견	*
명단공표 제외 사유	

[별지 제27호 서식]

[ ] 하천수 사용허가
[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제 호	
하천의 명칭		
취수위치		
사용용도		
점용(행위) 면적 및 허가량	면적: ㎡, 허가량: ㎥/일	
사용(연장)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사유 및 내용		

「하천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항,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하천수 사용허가, [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수통제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용허가의 경우 가. 위치도 나. 사용 허가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구적도를 포함합니다) 다.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2. 사용 변경허가의 경우 가. 제1호의 서류 중 변경과 관련이 있는 서류 나. 하천수 사용허가증 3.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의 경우 : 하천수 사용허가증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 홍수통제소

[별지 제28호 서식]

하천수 사용허가증

제 호

주 소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하천명칭		하천등급	
취수위치			
허 가 량	㎥/일		
허가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월 일간)		
하천구역내 공작물 설치명세			
사용목적			
허가조건			

「하천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홍수통제소장 직인

[별지 제29호 서식]

지하수개발 · 이용 [ ] 허가신청서 [ ]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개발·이용 명세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설치 명세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mm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명세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mm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지하수영향 조사기관	기관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공사 예정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 ([ ]허가, [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뒤쪽 참조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 서식]

(앞쪽)

허가번호 제 호

지하수개발 · 이용허가서
[ ]허가 [ ]변경허가 [ ]유효기간 연장허가 [ ]행위허가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펌프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허가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조건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지하수법」 제7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의 ([ ]허가, [ ]변경허가, [ ]유효기간 연장허가, [ ]행위허가)를 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별지 제31호 서식]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준수사항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폐경 면적(㎡)	신청면적(㎡)		조사결과						비고 (불이행 사유 등)
							농지형상·기능유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읍면동	본번	부번			재배	휴경	(불이행 항목 "○"표시)				불이행 면적(㎡)	(불이행 시 "○"표시)	
							①	②	③	④	①		
							①	②	③	④	①		
							①	②	③	④	①		
							①	②	③	④	①		

※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①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관리 ②농작물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 ③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 및 관리 ④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항목 중 불이행 항목란에 "○" 표시하고 ①항목이 불이행할 경우 불이행 면적을 기재 / 비고란에는 불이행 사유 기재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20~'21년 농지에서 지상 방치된 폐비닐·폐농약병 대상) 항목 불이행에 "○" 표시 / 비고란에는 불이행 사유 기재

[별지 제32호 서식]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별지 제33호 서식]

농지등의 형상 및 기능유지, 영농폐기물 이행점검 결과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면적 (㎡)		부적합 면적 (㎡)	조사결과						비고 (불일치 사유 등)
							농지형상·기능유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읍면동	본번	부번		재배	휴경		(불이행 항목 "○"표시)				불이행 면적 (㎡)	(불이행 시 "○"표시)	
							①	②	③	④	①		

※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①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관리 ②농작물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 ③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 및 관리 ④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항목 중 불이행 항목란에 "○" 표시하고 ①항목이 불이행할 경우 불이행 면적을 기재 / 비고란에는 불이행 사유 기재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20~'21년 농지에서 지상 방치된 폐비닐·폐농약병 대상) 항목 불이행에 "○" 표시 / 비고란에는 불이행 사유 기재

*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불이행시 직불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으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불이행시 주의장이 발급됩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기본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농지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별지 제34호 서식]

농지등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보고

□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이행 농가					불이행 농가					비고
	농가 수	필지 수	농지면적(㎡)			농가 수	필지 수	농지면적(㎡)			농가 수	필지 수	농지면적(㎡)			
			계	재배	휴경			계	재배	휴경			계	재배	휴경	
합계																

※ 1ha = 10,000㎡

보고절차

- 농관원 사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관원 지원장
  * 농관원 사무소는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농관원 지원장 → 시·도지사 및 농관원장
- 농관원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35호 서식]

농약, 기타 유해물질 안전사용기준 준수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통보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조사결과

접수 번호	품목	시료 수거			종 류	소유자		생산자	
		연월일	수거 단계	장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일반, 인증, 수출국 등)				
분석항목		검출성분		검출치 (mg/kg)		허용기준 (mg/kg)		검토의견	
(잔류농약, 기타 유해물질 등)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미이행 조치계획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예정인 기본직불금의 10%를 감액을 검토할 예정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동봉한 의견서를 농지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별지 제36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준수사항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폐경 면적 (㎡)	재배품목 및 면적(㎡)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읍면동	본번	부번			품목	면적	휴경	품목	면적	

※ 비고란에는 불이행 사유(일부 부적합 포함) 등 기재

[별지 제37호 서식]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별지 제38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서

1. 경영체 등록번호 :
2. 주소 :
3. 경영주(법인대표) 성명 :

경영정보 구분	등 록 내 용	확인결과 변경을 요청 하는 내용
일반현황 농지정보 재배품목·면적 정보		

상기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오니 ( )월 ( )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확인결과 변경 요청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장(사무소장)

<안내사항>

1. 본 통지서는 현지조사과정에 경영주가 참여하지 않았거나 확인을 기피한 경우 또는 현지조사 및 전산검증 결과 등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 발급합니다.
2. '20년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이행점검 대상 품목은 벼이며, 농관원이 농업경영체등록 변경 요청한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부적합 결과가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39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1.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일반현황)

조사결과(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불일치사유 등)

2-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농지현황)

소재지			공부상 지목	공부상 면적(㎡)	조사결과(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일치사유 등)
읍면동	본번	부번			말소	소유자명	공부상 지목	공부상 면적	

2-3.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재배품목)

소재지			공부상 면적(㎡)	폐경 면적(㎡)	재배품목 및 면적(㎡)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읍면동	본번	부번			품목	면적	휴경	품목	면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본직접지불금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의견서(별지 제37호 서식)를 농지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불이행시 직불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별지 제40호 서식]

농업경영체 경작(경영)사실 확인서

경영주 (법인대표)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경작확인대상농지 또는 사육시설	농지 또는 시설 소재지			품목 또는 축종	경작(경영)사실여부 (있음, 없음)	재배면적 (㎡) 또는 마릿수
	읍·면·동	리·통	지번			

* 칸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추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자 직· 성명

상기 경영체의 경작(경영)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성 명	주 소	서 명
농지소재지 현동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이웃주민 2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별지 제41호 서식]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신 청 가족농업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우편번호)	
	④ 전화번호	

농업경영주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우편번호)	
	④ 전화번호	

	읍·면·동	리·통	지번	품목 또는 축종	재배면적 (㎡)/ 두수(두)	⑩영농종사(일)
⑨ 농지 및 영농정보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일) □ 1년 중 90일 미만 농업에 종사 (일)

상기 신청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성 명	주 소	서 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이웃주민 2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유의 사항

○ 농업경영주의 가족농업인으로서 농업인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⑨번란은 농지별 영농정보를 작성하며, 월별 영농종사(일)란에는 신청일 기준 직전 1년 동안 해당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한 일수를 합산하여 기재하며, 하루 중 4시간 이상 영농시 1일로 처리합니다.

○ ⑩번란은 1년중 90일 이상 종사여부를 표시하고 종사일을 기재합니다. (예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2호 서식]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점검내용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표시)	비고 (불이행사유 등)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입영수증 보관		
농약, 비료 등 사용내역		
경운 등 기타 재배과정 필요한 사항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작목별·필지별 농약 및 비료의 투입내역, 종자사용내역 등을 재배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기록 또는 구매한 투입자재 및 종자는 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2년간 보관) 항목 중 불이행 항목란에 "○" 표시

※ 비고란에는 불이행 사유 등 기재

[별지 제43호 서식]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별지 제44호 서식]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점검내용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표시)	비고 (불이행사유 등)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입영수증 보관		
농약, 비료 등 사용내역		
경운 등 기타 재배과정 필요한 사항		

※ 조사결과 항목별 내용(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농약 및 비료의 투입내역, 종자사용내역 등을 재배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기록 및 구매한 투입자재 및 종자는 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2년간 보관

* (‘20～’21년) 농약, 비료 등 농자재구입영수증 보관 불이행시만 주의장 발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기본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농지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불이행시 직불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별지 제45호 서식]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준수사항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 **마을현황**

마을명		법정리명		위원장 성명	
				지급대상자수	명

□ **의무 이행 상황**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실천 의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공동 활동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연간 8시간 이상 활동

신청인(성명)	연간 공동활동(8시간 이상)			이행점검결과
	활동명	기간(월일)	시간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 또는 “불이행”을 기재하고 “불이행”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별지 제46호 서식]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대표자 등 확인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대표자 (인)	연락처 :
조사일자 :	대표자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별지 제47호 서식]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준수사항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 마을현황

마을명		법정리명		위원장 성명	
				지급대상자수	명

□ 의무 이행 상황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실천 의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공동 활동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연간 8시간 이상 활동

신청인(성명)	연간 공동활동(8시간 이상)			이행점검결과
	활동명	기간(월일)	시간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 또는 “불이행”을 기재하고 “불이행”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기본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농지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연간 8시간 이상 공동활동 불이행시 주의장 발부

※ 위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별지 제48호 서식]

제 호

주 의 장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위반사항

□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 지상 방치 폐비닐·폐농약병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 8시간 미만 공동활동 실시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농자재 구입 영수증 미보관

* 해당 위반 준수사항에 체크(√) 표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기본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주의장을 발부하오니 위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별지 제49호 서식]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의견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2. 의견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자 (서명 또는 인)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 / 읍장·면장·동장 (귀하)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의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별지 제50호 서식]

농업인 의무교육 세부 실시계획 예시

❑ 교육목적

○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추진

❑ 교육개요

○ 교육대상: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 교육내용: 농관원 개발 표준교육과정을 활용·편성

* 표준교육과정 자료는 농관원 홈페이지(사이트맵>새소식>공지/공고)에 게시

○ 교육일정: 읍·면·동별로 수립, 1회 인원은 200명 내외(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교육대상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인원	교육강사
○○리(○○마을)				
△△리(△△마을)				
□□리(□□마을)				

* 교육일정은 ‘교육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 / 별첨(엑셀)으로 작성

❑ 교육일정 안내(교육시작 7일전까지 실시)

○ 교육대상자에게 안내서 또는 문자발송(별지 4)

○ 시·군·구 및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대에 교육일정 공고

❑ 교육결과 처리 및 미이수자 교육 독려(읍·면·동)

○ 교육 종료 7일 이내에 교육이력관리시스템*에 이수자 입력

* 농정원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 “교육이력관리시스템”

○ 참석명부 서명 시 본인이 희망한 경우 이수증(별지 5) 발급

* 이수증은 문자메시지(별지 6) 발송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교육 이수 안내·독려

❑ 교육결과 보고(매년 10월 31일까지)

○ 교육이력관리시스템에 다음 내용 입력으로 보고 갈음

- 교육 이수율 및 미이수 사유,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우수사례, 교육운영 중 특이사항 등

[별지 제51호 서식]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안내서(안)

□ 우편 발급 양식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안내서

1. 성명 : _____ 2. 생년월일 : _____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의3에 따라 매년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소농직접지불금 또는 면적직접지불금 수령하려는 자)
교육일시	2020. 0. 0. 00:00
교육장소	○○시 · 군 · 구 ○○읍 · 면 · 동 ○○교육장
준비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1.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일정은 지자체(시군구,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공고되어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읍 · 면 · 동장 또는 교육실시기관명

□ 시스템을 통한 교육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양식

OOO는 2020년 00월 00일 00000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읍면동 또는 교육실시기관, 연락처(000-0000-0000)

(교육 미이수 시에는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 조치됩니다.)

[별지 제52호 서식]

교육 이수증 양식(안)

□ 현장 및 시스템 발급 양식

발급번호: 시도-시군구-읍면동-날짜-일련번호(예시: 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20200501-0001)

《 교부용 》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증

성　　명: OOO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주　　소: OO시·도 OO시·군·구 OO읍·면·동

교육과정: 2020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교육일시: 2020.　.　.

교육장소:

위 사람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호에 따라 공익직접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음

2020년 00월 00일

교육실시기관명　　직인

□ 시스템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 양식

OOO는 2020년 00월 00일 00000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교육실시기관명(직인생략)

(이수증 발급번호: 시도-시군구-읍면동-날짜-일련번호)

[별지 제53호 서식]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구분	기본: [ ]소농직접지불금 [ ]면적직접지불금, 선택: [ ]친환경농업 [ ]친환경축산 [ ]경관보전 [ ]논활용 신청인 구분: [ ]등록신청자, [ ]수령자 ※ [ ] 해당란에 "√"표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등 지번		신청 농지등 면적	
이의신청 내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첨부서류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4장 선택형 공익직불제

Ⅰ 선택형 공익직불제
Ⅱ 친환경농업직불제
Ⅲ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Ⅳ 경관보전직불제
Ⅴ 논활용 직불제

제4장
알아봅시다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
- 철저한 이행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다.
- 각 추진체계 및 일정에 따라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다.



Ⅰ 선택형 공익직불제

① 선택형 공익직불제 구조

가. 공익직불제 개편 전 직불제와의 비교

개편 전		개편 후
조건불리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쌀직불제	쌀고정직불제	
	쌀변동직불제(→폐지)	
밭직불제	밭고정직불제	
	논이모작(→논활용)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를 포함
  - 밭직불제의 논이모작은 논활용직불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하고 식량자급률의 증진뿐 아니라 품목별 수급안정 등까지 그 목적에 포함하여 운영
- 기존과 같이 기본형 직불금에 더하여 중복지급이 가능
- 각 선택직불제별 지급조건 등 제도 운용은 기존과 동일
  - 기존의 「생산자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

나. 선택형 공익직불제 구조

구분	사업목적	사업내용
친환경 농업직불제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 • 인증단계별·품목군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3~5년간 직불금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 지급), 유기지속직불금은 기한 없이 지급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친환경축산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안전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을 지급 • 신청일 현재 HACCP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유기)을 받은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구분	사업목적	사업내용
경관보전 직불제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농촌과 준농촌 지역에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 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논활용 직불제 (논이모작에서 명칭 변경)	•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 식량자급률의 증진, 쌀 과잉문제 대응 등을 위하여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논활용직접지불금(이하 “논활용직불금”이라 한다)을 지급 • 종전의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98년 이후 조성된 논에서 동계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Ⅱ 친환경농업직불제

① 친환경농업직불제

가. 사업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시행령 제20조 친환경농업 → 부록2 P.26

나. 주요 내용

○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

- 인증단계별·품목군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3~5년간 직불금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 지급), 유기지속직불금은 기한 없이 지급

다. 관련 법령

법 제21조 친환경농업직불제도 → 부록2 P.25
시행령 제20조~26조 친환경농업직불제도 → 부록2 P.26~28
시행규칙 제21조~23조 친환경농업직불제도 → 부록2 P.27~28

②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 가능

농업인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⑤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농업경영정보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나. 지원대상 농산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산물 및 무농약 농산물

다. 지원대상 농지

○ 2020년 사업기간(1월~10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사업기간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10월까지 1년간으로 하되, '19년 11~12월의 경우 '19년에 직불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20년에 한하여 사업기간을 1~10월로 정함.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사업기간 중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① 경운 등 경작 흔적 또는 울타리 등 경계표시에도 불구, 인증필지의 경계를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필지. 인증필지 내에서도 식재 예정지 등 재배에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

②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

③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③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④ 지원형태 및 지급단가

○ 자금재원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표 1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단위: 천원/ha)

인증단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농지에 한한다.)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

⑤ 지원한도

가. 지급한도 면적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0.1~5.0ha

-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5ha를 초과할 수 있음. 이 때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5ha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법인에 소속된 개별 생산자 A(7ha), B(6ha), C(4ha)의 경우 법인 대표가 14ha를 신청, A, B, C는 각각 5ha, 5ha, 4ha에 대한 직불금 수령

나. 지급한도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수령 가능
- 같은 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유기·무농약)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에는 추가 2년(2회) 지급

  - 최초 인증필지(유기·무농약 인증 종류 무관) 3년(3회) + 유기는 추가 2년(2회)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농약→유기 또는 유기→무농약)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 이행점검 종료일(10.31.)을 기준으로 함.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⑥ 사업추진체계

표 2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추진 체계

세부계획	시기	주요내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19.12월~'20.3.31.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지침 설명,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3.1.~4.30.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30.~5.10.	•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30.) • 선정결과 보고(시·도 → 농식품부, 5.10.)
④ 사업량 배정통보	5.11.~5.20.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5.20.)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시·군·구 → 신청인, 5.31.까지)
⑤ 이행점검	5.21.~10.31.	• 자자체에서 인증기관에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담당자, 5. 21.까지) •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읍면동 담당자) •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10.31.까지)
⑥ 사업대상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1.~11.10.	•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액 신청 (시·도 → 농식품부, 11.10.까지)
⑦ 보조금 지급	11.15.~11.30.	• 소요예산액 교부(농식품부 → 시·도, 11월) •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1월말)

가. 사업 신청 단계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식품부('19.12월) → [사업신청 홍보] 지자체('20.1~3월) → [사업신청] 친환경농업인('20.3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인증기관 등에 시달('19. 12월~'20. 1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20. 1~3월)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20. 1월~3월)
  -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20년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읍·면·동)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기간 중 인증이 종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 종료 전에 인증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공지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 (개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필요 시)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②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 P.272

  - (생산자단체)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 가능
    * 신청서류: ①, ②와 신청인 정보, 입금계좌, 인증종류, 품목, 농지 소재지, 재배면적이 포함된 세부 신청 현황
- 신청기간 : '20. 3. 1. ~ 4. 30.(전산입력 기간: '20. 3. 1. ~ 5. 10.)
  * 농업경영정보를 참조할 수 없는 대지 등 필지는 AgriX에 개별 자료 입력 필요
- 신청 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19년 중 신규 인증을 받은 필지는 '20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20년 중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해 '20. 1. 1.~10. 31.까지 인증기관의 관리가 지속되어야 함.(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 것으로 인정)

나. 사업자 선정 단계

1)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20. 5. 10까지)
  - 신청 자격, 논·밭 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조정
    * 읍·면·동 담당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기간, 인증필지·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

2)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사업 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
    ** 인증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직불금 최종 수령일 전까지 인증정보 변경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인증기관)** 사업 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 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 농지의 주소(지번) 변경, 필지 수 및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 상의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 포함)
- 변경신청 기간 : 변경 및 승계 승인일자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해당 시 군·구청장(읍·면·동)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업보조금 사업신청 변경신고서 → P.276

  - 변경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AgriX 운영기관(1588-6830)에 변경기능 허용 요청 후 자료 입력 (AgriX 운영기관은 시·군·구의 요청 시 즉시 조치할 것)

3) 사업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5. 20.까지)

4)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 P.275

  * 단,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다.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대상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와 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 및 인증 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기관별 점검 사항
  - (인증기관) 인증정보의 유효성 전산 검증
    *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와 직불금 신청정보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지자체에 전송
  - (시·군·구)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지급한도 초과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인증기관이 전송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 인증기준 위반 의심 농가는 현장점검 의뢰
-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 인증기관)
  - 시·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대상자의 신청정보에 대해 인증기관에 전산검증 요청('20. 5. 21.까지)
- 이행점검 기간: '20. 5. 21. ~ 10. 31.
  - (시·군·구) 인증기관에서 회신한 전산검증 결과 확인 후 조치
  - (인증기관) 인증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 발생 시 농관원과 협조하여 생산과정조사 등 추진
- 검증 결과 회신(인증기관 → 시·군·구)
  -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여 시·군·구에 회신(정기/수시, '20. 10. 31.까지)

라.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1)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군·구)

- 시 군·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결과를 참조하여 이행점검을 마감하고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 인증 취소, 인증기간 종료, 신청 포기, 면적 불일치 등 부적격자(필지) 제외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20. 11. 10.까지)

2)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농림축산식품부 → 시·군·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20. 11월)
-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20. 11월)

마. 자금 집행 후 관리 단계

1) 사후관리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1.1.~10.31.) 인증취소, 인증종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종료(10.31.) 후에도 당해연도 말(12.31.)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

2) 제재

-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 환수절차: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각 시·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 면적 (㎡)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여부(O,X)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 · 군 · 구	읍 · 면	리 · 동	지번			
논										
밭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 · 면장 · 동장

첨부서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 성 방 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란에 개인은 생년월일을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 · 도, 시 · 군 · 구, 읍(면) · 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계좌번호”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종류”란에는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적습니다.
6. “품목”란에 대분류에는 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적고, 소분류에는 실제 경작 품목명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 · 면장 · 동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 · 면장 · 동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농정 지원, 농업 · 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전업농 등 육성 ·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 · 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체정보의 등록 · 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등록(선정) 심사, 공개, 보조금의 부정 · 중복 지원 방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 ·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 ·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 · 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세부현황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구분	인증종류	품목	농지 소재지				재배면적 (㎡)	계좌번호
						시 · 군 · 구	읍 · 면	리 · 동	지번		
			논								
			밭								

[별지 제2호 서식]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2. 지급대상 농지

구분	인증 종류	실제경작 품목	농지 소재지				지급대상 면적(㎡)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여부 (O,X)	예상 금액 (원)
			시 · 군 · 구	읍 · 면	리 · 동	지번			
논									
밭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예상액 합계									

※ 1ha=10,000㎡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친환경농업보조금 사업신청 변경신고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②신청 변경사항 : ( )사업대상자, ( )인증기관, ( )인증종류, ( )농지현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일자
사업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현황	농지 주소			
	농지 면적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 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③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없 음

(뒤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변경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생년월일 동시 기재

② 신청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당초 신청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승계한 경우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농지의 주소변경, 필지수,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③ 입금계좌: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할 농업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
신청인		읍 · 면 · 동		시 · 군 · 구		시 · 군 · 구 인증기관(농관원)		농식품부 시 · 도		농식품부 시 · 군 · 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직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 •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 • 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 • 중복 지원 방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 •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 •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 • 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Ⅲ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①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가. 사업 목적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시행령 제27조 친환경축산 → 부록2 P.28

나. 주요 내용

○ 친환경축산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안전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을 지급

- 신청일 현재 HACCP[11]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유기)을 받은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다. 관련 법령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 제21조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도 → 부록2 P.25

시행령 제27조~33조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도 → 부록2 P.28~30

시행규칙 제24조~26조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도 → 부록2 P.29~30

11) HACCP
: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서 위해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말한다.

② 지원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농업인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③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HACCP 농장인증의 경우 업종이 ‘가축사육업’이어야 함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④ 지원기준 및 지급기간 산출방법

- 지원기준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 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
- 지급기간 산출방법
  -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5년간만 지급
  -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5년간만 지급
  -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이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가족일 경우라도 개별적으로 친환경인증 및 HACCP인증을 받고 독립 축사를 관리·운영시 각각 보조금 지급

⑤ 지원형태 및 지급단가

- 자금재원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불기금
- 지원형태 : 국고 보조 100%
- 지급대상 기간 : ’19. 11. 1. ~ ’20. 10. 31.
  - HACCP 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지급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근거자료에는 친환경인증 여부를 알 수 있는 문자(유기인증)나 인증도형 표시가 있어야 함
  -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종축,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단가

표 3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 지급단가

구분	지급 단가	비고
한 우	유기 170,000원/마리	* 육우는 한우 지급단가 보다 50% 감액 지급
젖 소(우유)	유기 50원/L	* 우유 1L는 1.03kg임
돼 지	유기 16,000원/마리	
산란계(계란)	유기 10원/개	*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 가능 산식:{(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입증량 × 단가)} × 0.5
육 계	유기 200원/마리	* 토종닭은 육계 지급단가 보다 30% 증액 지급
오 리	유기 400원/마리	
오리알	유기 20원/개	

⑥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지급한도액

○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3천만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은 보조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보조금 지급기간('19. 11. 1.~'20. 10. 31.) 보다 짧을 경우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함(보조금 지급 시점에 지정이 유효할 필요는 없음)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나. 지급한도 기간 및 방법

○ **지급 기간**

- '19. 11. 1.부터 '20. 10. 31.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20. 12월 지급

  - 다만, 산란계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1개월 미만은 제외)

○ **지급 방법**

- 신청기간 이후 인증종류가 변경될 경우에도 출하된 인증종류에 따라 지급(무항생제에서 유기로 변경된 경우만 해당)
-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당해연도 기간 중에 친환경 및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인증을 연장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당해연도에 종료된 경우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은 유효하나 당해연도 기간(사업신청일로부터 지급대상기간 종료 시까지) 중에 인증 유효기간이 연속되지 못하고 인증기간의 공백이 생긴 경우에도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으나,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기간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⑦ 사업추진체계

가.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유기) 축산물의 생산·판매실적을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관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나. 사업신청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홈페이지 공고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전체 농업인에게 개별 통보 등 홍보 실시('20. 1~2월)

• 사업신청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장소재지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20. 3. 2. ~ 3. 20.)

• 신청서 양식 :

-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 P.286

- 신청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사업지침 통지	→	세부계획 수립 및 홍보	→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19.1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 1~2월)		친환경축산인 ('20. 3. 2.~ 3. 20.)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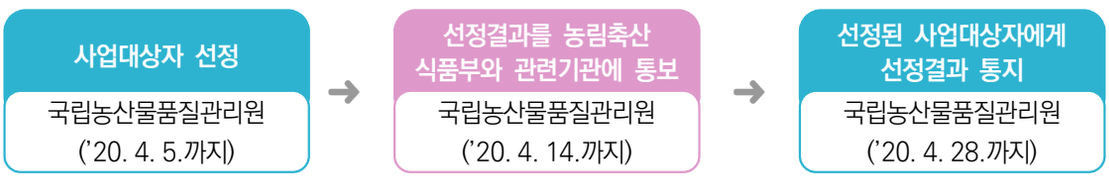
다. 사업자 선정단계

1) 사업대상자 선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신청 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①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② 친환경인증과 HACCP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두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
③ '②'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④ '②'와 '③'이 모두 같은 경우 사육규모가 큰 농가

-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기자로 선정·관리
- 불용예산 발생 시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선정
  - 사업대기자 중 위의 사업대상자 선정순위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통지양식 :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 P.287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대상자(사업대기자 포함)로 선정된 인증사업자에 대해 인증 교육을 실시하고, 인증사업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 친환경축산직불 교육·홍보 사업(친환경인증기관협회 운영)을 활용하여 교육 추진

2)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축사)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사업대상 축사(농장)의 경영주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농지현황) 사업장소재지의 주소(지번)변경, 인증품목 축소, 필지수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에 기재된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 변경신청 기간 : 인증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 제출
  * 변경신고서에는 '인증서 사본 등 승계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 → P.288

라. 이행점검 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민간인증기관에서는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축산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이행점검 요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기관(지원·사무소 포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은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인증기관(HACCP 및 친환경 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이행점검을 요청('20. 4. 28.까지)

    * 민간인증기관의 이행점검과는 별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선정된 사업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행점검 실시
- 이행점검 기간 : '19. 11. 1. ~ '20. 10. 31. (1년간)
- 점검내용 : 인증번호, 인증농장·축종 등 일치여부, 인증기준 준수 여부(현장조사),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별표5(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생산과정조사를 실시
- 점검결과 통보(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20. 11. 10.까지)

    * 점검결과는 Agrix 시스템(인증기관에서 직접 입력)을 통해서 제출

마.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1)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농업인은 거래내역서(정산서, 세금계산서 등)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보조금을 신청('20. 11. 1. ~11. 10.)
  - 신청서 양식 : 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자금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자금 신청서 → P.289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대상자의 자금 신청결과 보조금의 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지급대상자를 선정·통보하고, 해당 지원·사무소로 세금계산서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

  ** 보조금 신청 기간 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이 제출한 이행점검 결과와 자체 점검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20. 11. 17.까지)
  - 인증취소, 인증기간만료, 신청포기, 사업장소재지 및 인증품목 불일치 등 부적격자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가에서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 자격요건 및 생산·판매실적 확인('20. 11. 13.~11. 3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생산·판매실적 확인 결과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20. 12. 8.까지)

2)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사업비 배정('20. 12. 15.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농가에게 보조금 지급('20. 12. 15.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비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지급대상 기간 내 입증된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바.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제재)

- 당해연도 기간 중에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포기한 날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인증기관은 이행점검 종료(10. 31.) 후에도 보조금 지급 시까지 지급대상자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통보
- 농업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하고, 향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 이행점검 등 전(全)단계 협조사항

-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농장현황	농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표자	성명	
	팩스번호		생년월일	
	설립일 년 월 일		전화번호	
	구성원수 명		전자우편 주소	

친환경인증 최초 인증일 (인증번호)		안전관리인증농장 최초 인증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수급횟수	회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예상생산량 (단위)	예상금액 (천원)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합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 ]에 "√"표시)합니다.

[ ]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1부 2.「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지급대상자 선정 통보
신청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 서식]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자 택 전 화	
	휴 대 전 화		전자우편 주소	
	주 소			

농장현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표자	성 명	
	팩스번호			생년월일	
	설 립 일	년 월 일		전화번호	
	구성원수	명		전자우편 주소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예 상 생산량 (단위)	예 상 금 액 (천원)
		시 · 군 · 구	읍 · 면	리 · 동	지번				
합 계									

※ 향후 확인 · 점검 결과 등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의 선정요건인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인증을 연장해야 합니다.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 )인증기관, ( )인증종류, ( )농지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일자
사 업 대 상 자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현황	농지(축사)주소			
	인증품목			
	사육두수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친환경축산보조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네모(□) 안에 ✓표시)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 인증서 사본 1부 2.「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 3.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처	→	변경사실 확인 및 대상자 선정 검토	→	대상자 선정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농장현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표자	성 명	
	Fax			생년월일	
	설 립 일	년 월 일		전화번호	
	구성원수	명		e-mail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출하량 (단위)	금액 (천원)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합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3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자금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네모(□) 안에 ✓표시)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거래내역서(정산서, 세금계산서 등)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직불금 지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 급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Ⅳ 경관보전직불제

① 경관보전직불제

가. 사업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시행령 제34조 경관작물 → 부록2 P.30

나. 주요 내용

○ 농촌과 준농촌 지역에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다. 관련 법령

경관보전직불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①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생산 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2. 영세농(零細農) 등을 위한 보조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耕種農)에 대한 보조
4.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경관보전직불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관보전직불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경관 및 농업 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경관보전직불제 → 부록2 P.25

시행령 제34조~41조 경관보전직불제 → 부록2 P.30~34

시행규칙 제27조~31조 경관보전직불제 → 부록2 P.31~34

②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해당없음)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나. 지원대상 농지등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중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등으로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토지로 사업신청일부터 이행여부 확인·점검시까지 경관작물의 재배·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 (농지)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초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

경관보전직불제 농지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이상 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 이어야 함.(준경관초지의 경우 집단화 최소면적 미적용)

경관작물 집단화 기준

- 집단화는 원칙적으로 필지끼리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한 농지 및 초지의 면적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관작물 집단화 면적에 포함 가능함
  - 식재 면적이 50%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또는 1필지 이내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집단화 포함)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건물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집단화 포함)

○ 직불금 지원 제외 대상 농지

① 논이모작 직불금(→논활용 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지(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에 적용함)

② 해당작물의 정부수매 농지와 녹비작물종자 및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및 초지(준경관초지 작물의 경우에도 종자대 중복지급 불가)

③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농지(초지는 제외)

④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지 및 초지

⑤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 등

⑥ 「농지법」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다만, ⑤~⑥항목의 경우 해당농지가 전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관보전사업과 이에 연계한 축제 등의 행사가 별다른 제한 없이 실제 추진 가능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

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 안의 농지

⑨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⑩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곤란한 농지

- 다만, ⑦~⑩항목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개시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경관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경관보전직불금 제외대상 농지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다. 지원대상 작물

- 지원대상 작물은 초화류로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
  - 대상 작물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 혼합구성), 디자인재배도 가능
  - 아래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후 재배 가능(예시 작물이외 작물은 사전협의)

표 4 경관직불금 대상작물(예시)

지목	농지		초지
작물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준경관초지
대상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경관, 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

③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가.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 45만원/ha
  -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나. 지원기준

- 지원조건
  - 농지(경관작물 또는 준경관작물) : 국비 50%, 지방비 50%(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 초지(준경관초지작물) : 국비 80%, 지방비 20%(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 재원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다. 사업대상지구 준수사항

- 사업대상지구와 참여 농업인 등은 마을경관보전 협약의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의무사항)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경관작물 식재 및 재배관리, 농지 및 마을경관개선 공동작업 등
  - (선택사항) 마을공동기금 조성
- 지원대상 농지는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야 하며, 경관작물 재배지에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로 구축·정비

④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은 30만 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50만 제곱미터
- 같은 농지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하여 각각 상한을 적용

⑤ 사업추진체계

표 5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추진 체계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내용
사업신청 (수요조사)	4월	추진위원회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을경관보전 활동계획수립 • 사업 신청서, 전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작성
↓			
사업수요 제출	5~6월	시·도, 시·군, 읍·면	•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면적을 취합하여 해당 면적에 대한 직불금 지원 대상면적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
↓			
사업면적 배정	7월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면적 등에 따라 시·도별 사업면적을 배정하여 통지(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지구 선정	8월	시·도, 시·군	• 사업대상지구 선정 통지(시·군 → 읍·면, 추진위)
↓			
협약체결	9~10월	시·군, 추진위원회	• 협약체결(시·군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협약체결 결과 10일이상 공고(시·군)
↓			
사업대상선정결과 제출	11월	시·도, 시·군	• 시·군별 사업대상 선정(협약체결) 결과 및 면적배정결과 제출(시·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예산 배정	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대상면적 확정 및 사업예산 배정·통지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
↓			
이행점검	(차년도) 개화기 (4~5월, 9~10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협약사항 이행실태 점검 • 이행실태 점검결과 통보(농관원 → 시·군)
↓			
보조금 지급	(차년도) 6월, 11월	시·도, 시·군	• 이행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미이행 및 재배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액 지급

* 전년도에 사업대상지구를 확정, 당해연도는 이행점검을 통해 예산지급(예 20년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지 중 농지는 '19년 기확정)
* 다만, '20년 신규로 포함된 준경관초지는 '20.5월 중 대상지를 접수받아 선정·통보하되, '21년 부터는 기존경관보전직불금 지급체계로 운영('21년 대상지는 '20년말 확정통보)
  → '20년도는 '20년 사업대상지 및 '21년 예정지 동시 접수

가. 사업신청 단계

1)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① 마을 경관보전 및 관리활동, 경관작물 재배 등에 대한 계획수립·사업신청·이행여부 확인 등마을 경관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농업인 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

② 추진위원회는 해당 마을 주민대표(이장 등), 경관작물 재배농가(2명 이상), 경관작물 재배자 이외 마을주민(2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④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함

2) 사업신청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①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에게 제출(4월 말까지)

- 신청서 제출시 해당지구(마을)의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연계 전년도* 추진실적(증빙자료 포함), 추진계획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를 결정하여 첨부

* 전년도란 사업신청 당해연도의 이전연도이며(예 '20년에 '21년 사업대상지를 신청할 경우 전년도 실적은 '19년 실적을 말함), 준경관초지작물로 신청할 경우 작성제외

**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는 희망하는 해당지구(마을)에 한하여 첨부하되 참여자 2/3이상 찬성시 조성가능

별지 제1호 서식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 → P.305

별지 제2호 서식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 → P.307

별지 제3호 서식 마을공동기금조성 참여의결서 → P.309

② 읍·면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 시 활용하도록 협조

3) 사업신청서 접수

읍·면

①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대상 마을의 경관작물 재배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여부 확인
- 농업인 등이 신청한 농지의 소재지·면적 등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통하여 대조 확인하고, 집단화기준 충족여부는 지적도를 통하여 확인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 농업경영체정보에 신청인에게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② 읍·면장은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제출(5월 15일까지)

-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함께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와 사업신청 농지의 위치도(축척 1/1000지형도)를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변경) 확인결과 → P.310

나. 사업대상지구 추천

시·군

① 시장·군수는 읍·면장을 통해 신청 받은 사업신청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와 사업신청 농지의 위치도에 대한 적격여부 조사·확인을 거쳐 사업신청지구를 시·도지사에게 추천(5월 말까지)

②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지구의 집단화기준 충족여부를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추진위원회 위원장, 경관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확인

별지 제5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지구별 집단화 확인 → P.311

시·도

③ 시·도는 시·군과 협의하여, 마을공동기금 조성을 희망하는 해당지구(마을) 또는 시·군별 최소적립 비율을 결정

별지 제6호 서식 시·군/지구별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결정 결과 → P.312

④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직불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6월 10일까지)

다. 사업대상지구 선정단계

1) 시·도별 사업대상 면적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신청 현황, 전년도 협약체결 실적 및 이행실태 점검결과, 예산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사업대상 면적배정(7월 말까지)

2) 시·군별(지구별) 사업대상 면적배정

시·도

①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받은 면적 한도 내에서 시·군의 사업신청 현황, 전년도 협약체결 실적 및 이행실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사업면적 배정(8월 10일까지)

시·군

② 시장·군수는 읍·면을 통해 신청 받은 사업신청지구를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 에 따라 경관 전문가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 후 시·도에서 배정받은 면적 한도 내에서 사업대상지구를 선정(8월 말까지)

- 전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약이행실태 점검결과 마을(지구)별 협약면적 대비 파종면적 비율이 65%이하인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7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 → P.313

③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구를 선정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구 대상농지, 대상자 등을 읍·면장, 추진위원장, 사업참여자에게 일괄 통보

별지 제8호 서식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선정 통지서 → P.314

3)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시·군,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①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와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9~10월)

별지 제9호 서식 마을 경관보전 협약서(예시) → P.315

② 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대상지구별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1년 단위로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 동계/하계사업 구분 없이 협약기간은 1년으로 체결하여 경관보전활동 수행

③ 시장·군수는 ①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군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4) 사업대상지구 선정결과 보고 및 확정

시·군

①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후 사업대상지구 선정 및 지구별 면적배정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하여 시·도에 보고(11월 10일까지)

시·도

② 시·도지사는 Agrix시스템 입력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군별 협약체결 및 면적배정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1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협약체결 및 면적배정 결과, 예산확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예산 배정(12월 말까지)

시·도, 시·군

④ 시·도지사는 시·군별로 면적을 배정하고, 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 선정결과를 Agrix 시스템에 입력하여 시·도에 보고(차년도 1월 31일까지)

라. 사업 이행 단계(차년도)

1) 작물재배관리

농업인 및 농업법인

① 경관작물 식재
-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을 파종, 식재
- 집단화기준 충족

② 성실한 재배관리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실시
- 동계작물은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관리·보존

* 단, 관리·보존기간 이내에 축제 등 행사 종료로 경관보존의 의미가 없는 경우, 준경관초지작물에 한하여 조기 수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사전협의하여 이행점검을 완료 토록하고, 이행점검 완료시 타 목적으로 활용 가능

2) 「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 관리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① 추진위원회는「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작물재배내용을 날짜별로 정리(전/후 사진 첨부)하여 관리하여 이행점검시 제시

3) 사업대상자 변경

농업인 및 농업법인

① 농지의 매매, 임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농가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읍·면장에게 신청

* 사업대상자 변경(축소)으로 인하여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지구 전체를 사업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 → P.305

별지 제2호 서식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 → P.307

② 특히, 당초 신청자가 변경등록 가능기간(사업대상지 선정 후 해당 직불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중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자격 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에게 승계가능

- 승계자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 변경신청을 하고, 향후 지급 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

* 직불금은 일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승계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사망한 지급대상자의 일반 상속인에게 지급은 불가함

• 승계자격요건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산입

** 농업경영체등록 등으로 농업인 확인이 가능한 자

- 단,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별지 제10호 서식 승계의사 확인서 → P.318

표 6 승계신청시 구비 서류

구분	필요 서류	비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증명 ①②③ 중 1개	①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이상을 경작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업법인은 5만㎡ 이상)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1개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만 해당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② 전년도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 ㉮, ㉯, ㉰ 중 1개 이상 ㉮ A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A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승계자만 해당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③ 등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둔 시·구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등록 직전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각 1개 이상씩 ㉮ 주소지 증명 : 주민등록등본 등 ㉯ 경작면적 증명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 경작기간 증명 : 신청자 명의의 해당 기간 중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등 *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읍·면·동 내 농지도 포함	

구분	필요 서류	비고
승계 대상자 증명 ①②③④ 모두	① 등록자에게 발급된 등록증 ②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뇌사 판정서, 실종확인서, 수감확인서, 진단서 등 (1개 이상) ③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또는 ㉮, ㉰, ㉲ 각 1개 이상씩 ㉮ 등록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등록자가 치료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장확인서, 입원증명서 등 ㉲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확인서를 의미 ④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승계의사 확인서 * 등록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확인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중 승계자 외의 자의 확인으로 갈음	

읍·면

③ 읍·면장은 경영을 이양 받을 자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시장·군수에게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변경) 확인결과 → P.309

시·군

④ 시장·군수는 변경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여 읍·면장, 추진위원장,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별지 제8호 서식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선정 통지서 → P.314

마. 이행점검 단계(차년도)

1) 이행점검 의뢰

시·군

①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사업지구별 필지 현황을 Agrix를 통해 작물별 생육·개화시기를 고려하여 동계작물은 3월 말까지, 하계작물은 8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이행점검 의뢰

* 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와 협의하여 의뢰시기 조정 가능

2) 이행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세부이행점검계획을 수립, 각 지원에 시달

② 점검시기 : 동·하계 사업별로 각 1회(이행점검은 작물별 개화시기에 맞춰 실시)
③ 점검기간 : 동계작물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 10월 15일까지
④ 이행점검 사항 : 마을경관보전협약사항 중 작물재배관리 이행여부
⑤ 작물재배관리 이행점검시 지자체 공무원 및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입회하여야 함. 다만, 지자체 공무원 및 마을 추진위원회가 2회이상 불응시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 2인이상의 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음.

시·군

① 마을공동기금에 대한 집행여부 적정성은 및 집행상태는 시·군 및 읍면에서 기금사용의 적정성 및 집행상태를 점검하여 시·도에 보고(12월)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마을공동기금 집행상황 점검결과(20 년) → P.320

3) 점검결과 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관작물재배관리 상태를 작성하고, AgriX 시스템을 통해 시·군에 통보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필지별 내역을 AgriX 시스템으로 통보

별지 제12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조사표 → P.322

시·군

② 시장·군수(읍·면장)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경관보전직불금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4) 이의신청

시·군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거쳐 시장·군수(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읍·면장)는 Agrix시스템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

별지 제13호 서식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P.3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재조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 후 해당 시·군으로 재전송

시·군

③ 시장·군수(읍·면장)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② 시장·군수는 AgriX시스템을 통해 시·도에 이행점검결과를 통보

5) 이행점검 마감 및 결과 보고

시·도, 시·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Agrix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마감 조치

② 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이 전송한 자료를 근거로 직불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내역을 Agrix시스템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동계작물 6월 10일까지, 하계작물 11월 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의 이행점검결과를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동계작물 6월 10일까지, 하계작물 11월 10일까지)

6) 이행점검결과 확정 이후에는 Agrix시스템에 정보입력 및 수정 불가

바. 직불금 지급 및 정산 단계 등(차년도)

1) 직불금 산출(시·군, 시·도)

① 직불금 산출기준

- 협약이행면적에 지급단가(경관작물 ㎡당 170원, 준경관작물 ㎡당 100원, 준경관초지 ㎡당 45원)를 곱하여 산출하되 “직불금 감액기준”을 적용

* 산출결과 농가별 총금액에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 후 지급

②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 최대 2회(동계작물, 하계작물)까지 지급 가능

③ 직불금 감액기준

- 재배관리 및 협약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직불금을 산출

표 7 직불금 감액기준

지급요건	점검결과	감액기준
경관작물 재배관리	①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직불금 지급 취소(100% 감액) - 다만, 필지 전체 파종 및 식재 불이행한 경우가 2회 연속 발생한 사업 대상자는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
	② 재배 면적부족	• 부족한 면적만큼 직불금 감액 지급
	③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된 경우	• 파종확인(농관원)이 가능한 경우 직불금의 30% 지급 - 다만,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된 경우가 2회 연속 발생한 사업 대상자는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
	④ 필지별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필지별로 직불금 감액지급 - 불량면적에 비례하여 감액 * 불량면적 30% 미만은 감액 없음

지급요건	점검결과	감액기준
	⑤ 이행점검결과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직불금 지급 취소(지구전체 미지급) – 다만, 불가피한 사유(사망, 농지매매 등)로 집단화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구내 협약 이행농가는 재배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⑥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 파종 및 식재 불이행으로 간주(100% 감액)
	⑦ 신청작물과 재배작물이 다른 경우	•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 내에서의 작물을 변경하여 재배한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 • 경관작물 신청 후 준경관작물을 재배하거나 준경관작물 신청 후 경관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미지급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재해피해 지역은 파종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파종 확인이 불가능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2) 보조금 신청 및 교부

① 교부요청 : 시·도(시·군)는 사업대상지구별 지급대상자, 면적, 산출한 직불금 소요액 등을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교부요청

② 교부결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교부요청 등을 토대로 시·도별 교부결정 통보

③ 전산작업 : 시·도(시·군)는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④ 보조금 교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 보조금 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에 교부액 전금

3) 직불금 지급(시·군)

① 시·군은 시·도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입금 시 경관보전직불금임을 알 수 있도록 경관, 준경관작물의 경우 "농식품부 경관보전", 준경관초지의 경우 "농식품부 준경관초지"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지급대상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4) 지급결과 보고

① 시·도(시·군)는 직불금 지급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2월말)

별지 제14호 서식 경관보전직불금 지급결과 보고 → P.325

5) 정산 및 반납(시·도, 시·군 등)

① 시·도는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정산결과를 토대로 정산액 확정

③ 시·도는 집행잔액 등 반납

[별지 제1호 서식]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2개월

대상지역	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지역현황	가구수 총 호 (농가: 호, 비농가: 호)		
	인구수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호) (논 ㎡, 밭 ㎡, 과수원 ㎡, 초지 ㎡, 기타 ㎡)		

마을내 경관자원 보유현황	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경관작물 식재계획	대상작물 구분	[ ] 경관작물 [ ] 준경관작물	[ ] 준경관초지
	경관작물명	식재면적	식재시기(파종~수확)
		㎡	~
		㎡	~
		㎡	~
	계	㎡	~
경관관리 및 지역축제 도·농 교류 연계계획			
특이사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위원장 주소: (전화:)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첨부서류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참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수수료 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등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근거 법조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참여자 및 대상농지등 현황

연번	성 명	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주민등록주소)	공부상 지목 및 면적(㎡)						서명(인)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기 타		

작 성 방 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
4.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에는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경관작물 재배계획 적정성 확인	→	서류 심사 및 현지실사	→	대상지구 선정	→	통지
신청인		시·군 또는 자치구								신청인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2개월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전화 또는 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주소	

	농지등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경작시기 (파종~수확)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논	밭	과수원	초지	기 타		
신청 토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에 지급대상자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출)	수수료 없 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등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근거 법조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 추진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농업경영체에 등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의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체정보의 등록·변경 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신청, 등록(선정) 심사, 공개,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등록(선정)·점검·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해당 목적으로 위해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신청인”란은 신청농지등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농지등 소재지”란은 신청인이 경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지등-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을 대상으로 기재합니다.

3.“지목”란은 신청농지등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4.“면적”란은 신청농지등의 면적을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5.“경작시기”란은 경관작물의 재배 시기(파종에서 수확 또는 작물제거까지)를 기재합니다.(예, 6~10월)

[별지 제3호 서식]

마을공동기금조성 참여의결서

□ 일　　자:

□ 장　　소:

□ 참석인원: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00명

□ 의결내용

○ 0000년 경관보전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및 조성비율

⇒ (의결내용) 0000년 경관보전직불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조성 비율은 경관보전직불금의 00%로 한다.

연번	성명	주 소 (주민등록주소)	찬성	반대	기권	서명(인)	비고
							추진 위원장
							추진 위원 1
							추진 위원 2
							추진 위원 3

[별지 제4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변경) 확인결과

○ 신청(변경)자 명단

사업 지구명	주소 (번지)	성명	신청 면적 (㎡)	확인면적(㎡)					지급 예상액 (원)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등 기타		
	소계	○○ 명 신청								

년 월 일

○ ○ 면(읍·동)장 (인)

*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괄호 외서로 표기

[별지 제5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지구별 집단화 확인

담 당	계 장	과 장

❑ 신청지구 현황

지구명(주소)			
추진위원장		주요품목	

❑ 집단화 여부 확인

○ 신청 현황 및 확인 결과

신청 현황			확인 결과	
신청품목	공부상면적(㎡)	신청면적(㎡)	집단화 포함면적(㎡)	집단화 제외면적(㎡)
합 계				

* 집단화 제외 면적(해당 필지)은 사업대상지구에서 제외

○ 집단화 적정 여부("○" 또는 "√")

적 정	부적정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이상 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이어야 함)

집단화 여부 확인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시·군/지구별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결정 결과

시·도	시·군	지구명	참여인원	최소 적립비율	비고

년 월 일

○ ○ 시·도 OOO과 과장 성 명 :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

〈○○시·군·구〉

지구명	위 치		면적 (㎡)	경관 작물	주 요 점 검 항 목							
	시·군	읍·면			계 (100점)	미관성 (20)	창의성 (20)	연계성 (30)	집단화 (10)	성취도 (10)	계획성 (10)	가감점

점검항목	배점비율	배 점 기 준		점수
미관성	20점	◇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경관개선효과와 지역적 특색이 뛰어남		20점
		◇ 경관 개선효과는 양호하나 지역적인 특색이 미흡		10점
		◇ 경관개선 효과가 보통 이하		5점
창의성	20점	◇ 간작(색동재배), 디자인재배, 다품목 단지 조성 등 창의성이 뛰어남		20점
		◇ 경관작물 혼파, 사이재배 등 경관형성 노력 우수		10점
		◇ 단일작물 재배		5점
연계성	30점	◇ 전년 및 차년에 직접적인 축제개최에 활용하는 경우		30점
		◇ 전년 및 차년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현장학습·농촌관광으로 활용하는 경우		15점
		◇ 전년 및 차년에 기타 도농교류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경우		1점
집단화 면적	10점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	
		10ha 이상	50ha 이상	10점
		5ha 이상	25ha 이상	5점
		2ha 이상	10ha 이상	1점
성취도	10점	◇ 전년도 계속지구로 관광객 10% 이상 증가		10점
		◇ 신규지구 또는 관광객 10% 미만 증가		5점
		◇ 관광객 등 감소		1점
계획성	10점	◇ 시·군이나 읍·면 단위의 경관계획에 작물재배 및 경관활용		10점
		◇ 마을단위 경관계획에 따라 작물재배 및 경관활용		5점
		◇ 경관계획 없이 작물 재배		1점
우선선정대상	가점	◇ 국가농업유산 지정지구, 시·군 단위 지역경관계획에 따른 경관작물재배지구,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금·은·동상 수상마을		20점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입선 마을, 한국에서 가장아름다운마을에 선정 또는 수상마을		10점
전년도 이행점검결과	감점	◇ 미파종 면적이 35% 이상		사업제외
		◇ 미파종 면적이 30% 이상 35% 미만		-20점
		◇ 파종면적 중 불량면적이 30%이상일 경우		-10점

[별지 제8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선정 통지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현황
   가. 지구명 :
   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위원장 :

2. 선정 현황

연번	성명	주소	대상면적(㎡)						지급보조금 예상액(원)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	
지급보조금 예상액 합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별지 제9호 서식]

마을 경관보전 협약서(예시)

지 구 명	도 시·군 읍·면 리·동
협 약 참가자	총 명 (농업인 , 법인)
대 상 면 적	총 ㎡ (논 , 밭 , 초지 등 기타)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마을 경관보전 협약서(예시)

○ ○ 시장·군수·구청장
○ ○ ○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관작물 재배를 실시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

2.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및 책임과 의무) ①"을"의 구성원은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마을 주민대표(이장 등), 경관작물 재배농가(2명 이상), 경관작물 재배자 이외 마을주민(2명 이상)을 포함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④ 추진위원장은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대표자로서 마을 경관보전 및 관리활동, 경관작물 재배 등에 대한 계획수립·사업신청·이행여부 확인 등 마을경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며,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한다.

⑤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경관작물 관련 축제나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⑥"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경관작물의 파종·식재·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경관작물 식재

가.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

2. 성실한 재배관리

가. 경관작물 식재 필지별로 배수로 설치

나.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다.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

라.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마. 작물의 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

3. 경관작물 재배 농지 및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가. 유휴지 관리, 수로정비, 논두렁 정비, 주변숲 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

나. 작물 수확 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수확물 및 농지를 잘 정비

제2조(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경관보전직불제 직불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을”의 각 구성원이 신청한 입금계좌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제3조(보조금의 회수 등) ①“갑”은 “을”의 구성원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고, 향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②“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경관작물의 파종·식재 및 관리에 있어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1.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
2. 면적 부족 :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3. 관리 부실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의 관리부실에 따른 감액 및 제재 기준에 의함
4. 집단화 기준 미충족 : 지구 전체 보조금 미지급

제4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규정」 및 약정 체결 당시의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특약사항)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과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 또는 “을”의 각 구성원 상호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장·군수·구청장 : 인
“을” 위 원 장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승계의사 확인서

등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토지	②농지 소재지				③지목 및 면적(㎡)				④경관작물별 식재면적(㎡)				⑤재배시기 (파종~수확)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논	밭	과수원	기타						
	합 계													

본인은 승계자(　　)에 대해 (　　)의 사유로 승계함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등록자				
* 등록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승계자 외 1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자와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 및 방법으로 위 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취소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마을공동기금 집행상황 점검결과(20 년)

(단위 : 명, ㎡, 원)

시·도	시·군	읍·면	법정리	행정리(마을명)	'20년도 조성현황*					기금 조성 총액(~현재까지)(D)	기금 집행 총액(~현재까지)(E)	기금 집행잔액[F=D-E]	부적합 내역	비고
					참여 인원(명)	참여 농지(㎡)	직불금 지급액(A)	기금 조성액(B)	기금 조성율(C=B/A×100)					

※ '20년도에 마을공동기금을 자율적으로 적립한 마을 또는 '19년도 이전에 조성되어 기금 잔액이 있는 마을 모두 작성

※ ['20년도 조성현황]은 '19년도에 마을공동기금을 자율적으로 적립한 마을을 대상으로 작성

〈마을공동기금의 용도 및 집행절차 등〉

◆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한 마을은 관리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민통선, 섬지역 등 사업대상 법정리 또는 행정리 내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경우에 조성된 마을공동기금은 제출한 마을발전계획서대로 농지소재 지원대상 법정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신청자들의 거주지 마을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공동기금 사용 불가)

◆ 기금은 관리협약에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다만,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5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자율적 집행 가능

○ 경관보전직불에 선정되지 않은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잔액은 마을협약의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마무리,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계속 사용하되, 신규 사업은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

○ 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보관

○ 계좌는 가능한한 마을명의로 개설하고 위원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경관보전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의 인감을 공동 날인하는 등 엄격히 관리

* 기금적립 등의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예시)〉

◆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한계농지 정비사업, 마을공동 보관창고 건립, 재능기부 등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의 공공성 비용, 소득유망 품목 시험재배 및 도입 등

◆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 친환경농업 지원, 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꽃길 조성 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물이음도랑)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조림(조경·관상수 식재), 경작포기 농지의 보전관리, 마을 공동방역, 붕괴된 제방 등의 재해복구, 도로 진출입로 개선 등

◆ 농용지 보전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 기반정비, 공동 농로·수로 정비, 토지개량사업 등

◆ 지역마켓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산지 공동 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트랙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가공 등을 위한 기계구입 등

◆ 마을주민 복리향상 : 마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및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효도관광, 마을주민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 등

○ 부지매입 : 마을회관 건립, 폐비닐 공동수거장 설치 등 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적 기능증진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마을명의'로 등기

○ 제세·공과금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냉·난방비, 전기료 등)

○ 재해보험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재해보험에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

○ 연구용역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 지역특산품 개발, 농업기술개발 등 연구용역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만 가능(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

◆ 기타 : 공동방역, 공동수로 정비 등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및 농용지 보전활동에 부합되는 사업수행 시 행정비(인건비 포함) 집행가능

* 단, 인건비는 마을총회를 거쳐 참석인원 전체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가능(증빙자료 구비 철저)

[별지 제12호 서식]

담 당	주 무	소장(과장)

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조사표 (작물재배관리)

❑ 신청지구 현황

지구명(주소)				주요품목	
추진위원장		생년월일		전화번호	

❑ 이행점검 결과

○ 지구전체 집단화기준 충족 여부 : 여 □, 부 □

* 대상지구 파종면적 최소기준 : 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 작물재배관리

신청인	신청현황				이행점검 결과					불일치 사유
	농지 소재지	신청품목	공부상 면적	신청 면적	재배 품목	파종 면적	생육 및 개화면적	집단화	보존 기간	
합계										

❑ 특이사항

이행점검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 조사표 작성방법 ❖

❑ 불가피(사망, 농지매매 등)한 사유 없이 지구전체 파종 면적이 5%이상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행점검을 생략하고 조사자 및 확인자 서명 날인

❑ 경관작물 재배관리분야 조사표 작성은 파종면적 란은 직불제 신청 품목의 파종면적을, 생육 및 개화면적 란에는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을 기재, 집단화, 보존기간 란에는 그 준수여부에 따라 ○ 또는 ×를 각각 표시

❑ 특이사항에는 위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부연설명 등을 기재

❑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에 따른 감액기준

❍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초과할 때 : 불량비율 만큼 감액

❍ 파종 이후 보존기간(5.15, 10.15)까지 보존을 하지 아니한 때 : 미 파종으로 간주(감 100%)

※ 위에 해당할 경우 마을대표자에게 감액에 대해 충분히 설명

❖ 불일치 사유 ❖

① 휴경, ② 폐경, ③ 미재배, ④ 비대상작물, ⑤ 중복신청, ⑥ 실경작아님,

⑦ 자진취소, ⑧ 기타

※ “불일치 사유”란에 위 해당 번호를 기재

<< 직불금 계산식 >>

○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이 파종면적 대비 70% 이상일 경우

- 직불금액 = 파종면적 * 직불금단가

○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이 파종면적 대비 70% 미만일 경우

- 직불금액 = (파종면적*직불금단가*0.3) + (파종면적*직불금단가*0.7*생육 및 개화면적비율)

* 직불금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원/㎡, 준경관작물 100원/㎡

[별지 제13호 서식]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용		조사결과 (품목 및 면적(㎡))	비고 (불일치사유)
법정리·동명	본번	부번		품목	면적(㎡)		

3.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경관보전직불제사업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경관보전직불금 지급결과 보고

시·군·구	교부액 (천원)	사업지구수			지급농가수(호)			지급면적(㎡)			지급 결과(천원)		
		계	동계	하계	계	동계	하계	계	동계	하계	계	동계	하계
합계													

※ 시·도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V 논활용 직불제

① 논활용 직불제

논이모작 시행지침 사용근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부칙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이나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이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논이모작 용어를 논활용으로 대체함

가. 사업 목적

○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나. 주요 내용

○ 식량자급률의 증진, 쌀 과잉문제 대응 등을 위하여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논활용직접지불금(이하 “논활용직불금”이라 한다)을 지급

- 종전의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98년 이후 조성된 논에서 동계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시행령 제42조 논활용작물 → 부록2 P.26

다. 관련 법령

법 제21조 논활용직불제 → 부록2 P.25
시행령 제42조~50조 논활용직불제 → 부록2 P.34~39
시행규칙 제32조~39조 논활용직불제 → 부록2 P.35~39

② 지원대상

가. 지급대상 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 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12]에 이용되는 논

- 종전의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임

법 제8조제2항 지급대상 제외 농지 → 부록2 P.4

①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②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③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
④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
⑤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
⑥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농지
⑦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내 농지 등

○ 공동소유·경작 농지에 대한 처리

- **공동소유 :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농지를 신청 하는 경우**
  -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 다른 사람 지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 받아야 함
  - 공동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농지를 임차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 받아야 함

    * 일부 공동소유자에게서 무단점유 증명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소유자 지분만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공동경작 :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농지를 신청 하는 경우**
  - 신청자별로 경계를 명확히 설치하고,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일부 위탁 포함)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

12) 밭농업(논이모작)
: 논에서 보리, 밀, 콩 등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

나. 지급대상자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단,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시행령 제5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부록2 P.7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승계자**

- 밭농업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고령, 질병, 부상 등 밭농업 종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밭농업에** 종사[13]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산입

** 농업경영체등록 등으로 농업인 확인이 가능한 자

- 단,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농촌지역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13)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일부위탁 포함)
*일부위탁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의미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임

①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② 0.1ha(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 직전 지급면적이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④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⑤ 무단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등

법 제9조제3항 지급대상 제외 농업인 → 부록2 P.6

시행령 제6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 부록2 P.7

다. 지급대상 품목

○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 및 시설[14]면적 제외)

표 8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①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②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료작물 및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옥수수, 수단그라스, 호맥, 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Birds foot trefoil(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Tall fescue(톨페스큐), 티모시, Perennial rye grass(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Redtop(레드톱), Reed canarygrass(리이드 케너리그라스), Meadow fescue(메도우페스큐), Bromgrass(브롬그라스) 등

③ 지급요건

○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면서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에 지급

• 단, 수확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녹비용으로 재배시 지급대상에서 제외

14) 시설
: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토록 설치한 것.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미포함

④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급단가 : 1ha 당 50만원 (㎡당 50원)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농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원형태(재원) : 국고보조 100%(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불기금)
- 논활용직불금 대상품목 재배양식별 지급대상 면적산정

① 한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 지을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하여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

② 한 필지 내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을 섞어 지을 경우(혼작, 간작, 색동재배, 디자인재배 등)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비대상품목 재배면적은 제외
  - (예시) 필지면적 1,000㎡, 색동재배 시 대상품목 재배비율이 80%일 경우 지급대상면적은 1,000㎡ ×80% = 800㎡
  - 다만, 필지 내 전체 재배면적 대비 대상품목 재배면적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며, 50% 미만일 경우 전체 필지 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③ 한 필지 내에 일부는 대상품목을 식재하고, 일부는 휴경할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휴경면적은 제외

⑤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 : 30ha (300,000㎡),
- 농업법인[15] : 50ha (500,000㎡)
- 들녘경영체[16] 운영법인 : 400ha (4,000,000㎡)
- 지급상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농지를 모두 접수하되, 직불금은 지급상한면적까지만 지급

15) 법인
- 종사의 범위를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일부위탁 포함)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법인의 조합원이 해당 필지의 경작권 등을 보유하고 농산물이 조합원에게 최종 귀속된다면, 해당 법인은 해당 필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직불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에 미달

16)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 25명 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공동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논농업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⑥ 사업추진 체계

업무흐름	시기	주요내용
① 신청·접수 전	1월~2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교육·홍보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시군구, 농관원)
② 신청·접수	2월~3월	• 등록신청(농업인등) 및 접수(읍면동, 농관원) – 논활용직불금 신청 추진 – 등록신청서 접수증 발급 • 신청서 전산입력(읍면동)
③ 신청자 정보공개	3월~9월	• 성명, 지번, 면적, 품목 등 신청정보 공개 (농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④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	3월	• 정보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시군구) • 서류 및 현지조사(읍면동) – 지급대상농지 적격여부,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 •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최(읍면동) – 실경작여부, 무단점유여부 등 신청자의 밭농업 종사여부 심사 • 지급대상자 선정(시군구) 및 등록증 발급(읍면동) – 지급대상 제외자에게는 해당 사유 통보
⑤ 등록사항 변경 및 이행점검	3월~5월	•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읍면동→시군구) –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등록자에게 지급대상농지를 양수·임차한 경우 • 농지의 기능 및 형상 유지여부 이행점검(농관원) •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농관원)
⑥ 지급요건 검증	6월~8월	• 지급요건 검증(읍면동) – 등록자 및 등록농지 전수 검증 – 유관기관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
⑦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10월	• 지급대상자 확정(시군구) •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시군구)
⑧ 사후관리	연중	• 수령자 정보공개(농식품부, 농관원, 시군구 홈페이지) •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 사후관리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신청·접수 전 단계

사업시행지침 통보 (농식품부(1월)) → 교육·홍보 실시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 (농식품부·지자체·농관원(1~2월)) → 신청접수 일정 공고 (농식품부·지자체·농관원(1월))

1)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

2)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농관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순회교육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농관원은 업무담당자 및 조사원을 대상으로 자체 실무교육 실시

3)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하고, 전년도 지급대상자에게 직불금 지급내역을 발송하는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
- 시·도(시·군·구) 및 농관원은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홍보지, 지방지, 새해영농실용화 교육, 이통장 월례회,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한 홍보 실시

4) 신청·접수계획 수립(시도, 시군구)

- 시·군·구는 신청·접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2월)
  - 필요시 농관원과 협의내용, 읍·면별 집중접수 기간 및 일정, 기관 간 협조체계 등 포함

별지 제2호 서식 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계획(00시·군·구) → P.347

5) 등록신청 공고(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 및 지자체, 농관원은 접수일 7일 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등록신청 공고
  -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6) 보조원 및 조사원 채용(시군구, 농관원)

- 시·군·구는 사업신청 및 접수를 위한 전산입력 보조원 채용
- 농관원은 지원·사무소별로 이행점검을 위한 조사원 채용

나. 신청·접수 단계

사업신청·접수 (읍면동·농관원(2월~3월)) → 서류 이송·전달 (읍면동·농관원(2월~3월)) → 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농식품부·시군구(3월))

1) 사업신청(농업인등)

-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장소에서 등록 신청
- **신청기간: 2~3월**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 **신청시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P.346

  - (기존 수급자) 직전연도와 신청내용에 변동이 없을 경우
    → 등록신청서만 제출
    * 임대차계약기간, 지번변동 등 확인
  - (기존 수급자) 직전연도와 신청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 등록신청서, 변동된 내용에 대한 자격요건 증명서류
  - (신규신청자)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신청서, 지급대상자 증명, 지급대상 농지 증명, 경작사실 증명

구 분	첨부 서류	비 고
1 지급대상농지 증명 ①또는② 필요한 경우 ③	① 종전의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98년~'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 확인자는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별지 제3호 서식 논활용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 P.348 ② '97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되었으나, '98년~'00년 동안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각 1개 이상씩 ㉮ '11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 '98년~'00년 동안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③ 지급대상 제외 농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하천구역, 주·상·공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신규신청 농지만 해당 (과거에 1회 이상 쌀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 및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구 분	첨부 서류	비 고
2 지급 대상자 증명 ①	①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이상을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농업법인은 5만㎡)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 2개 이상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농지도 면적계산에 포함되며, 휴경면적은 면적계산에 제외	신규신청자만 해당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2 - 1 지급제외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 ①② 모두	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② 타인의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원칙) 임대차 계약서 - (허용) 농지주가 해외에 거주하는 등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의 필지지번, 계약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 * 국·공유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전산으로 확인)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2 - 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증명 ①②③ 중 1개	①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이상을 경작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5만㎡ 이상)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1개 이상) ② 전년도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 ㉮, ㉯, ㉰ 중 1개 이상 ㉮ A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A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③ 등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둔 시·구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등록 직전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각 1개 이상씩 ㉮ 주소지 증명 : 주민등록등본 등 ㉯ 경작면적 증명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 경작기간 증명 : 신청자 명의의 해당 기간 중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등 *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읍·면·동 내 농지도 포함	농촌 외 지역 거주자만 해당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2 - 3 승계 대상자 증명 ①②③④ 모두	① 등록자에게 발급된 등록증 ②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뇌사 판정서, 실종확인서, 수감확인서, 진단서 등 (1개 이상) ③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또는 ㉮, ㉰, ㉱ 각 1개 이상씩 ㉮ 등록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등록자가 치료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장확인서, 입원증명서 등 ㉱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확인서를 의미 ④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승계의사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승계의사 확인서 → P.349 * 등록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확인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중 승계자 외의 자의 확인으로 갈음	승계자만 해당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2) 신청접수(지자체 및 농관원)

1 신청서류 접수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에서 접수

2 신청서류 확인

-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 후 접수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동에선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 미비한 신청서류는 접수받은 읍·면·동에서 보완 완료 후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① 직불금 수령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직불금 신청자는 신청서 상 "수령자"와 동일해야하며, 신청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 신청서 2번항목 중 ④

④(수령자 성명)	(연락처)	(은행명)
직불금 신청자 성명 기재		(계좌번호) 직불금 신청자 명의 계좌만 가능

② 임대차계약기간 확인 및 입력 철저
- 임대계약 기간 종료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이나, 전년도와 변동이 없을 시 면제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임대계약 기간 종료시점 확인 필수

③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지급대상 제외 가능여부 안내 철저
- 공동경작 농업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 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자격 요건을 필히 안내하여 민원사례 예방

④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농지요건 확인 철저

3 QR코드 스캔

- 접수 즉시 QR코드를 스캔하여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여 신청서에 QR코드가 없는 경우에도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QR코드 스캔은 전산입력 누락 방지장치이고, '19년부터는 QR코드 스캔정보를 이용해 등록신청서 접수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반드시 실시

4 접수증 발급

- 신청인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때는 접수증 발급

별지 제5호 서식 논활용 직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 P.350

5 전산입력

- **입력기간** : 2월 ~ 3월
- **입력내용** : 등록신청서 2번항목의 '⑥ 직불정보'
- **입력기관** :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
  -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 포함)한 읍·면·동에서 전체 신청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급 관할 타 읍·면·동으로 이송
    * 미이송에 따른 신청누락 책임은 최초 접수·입력한 읍·면·동에 있음
  - 관할 읍·면·동은 타 읍·면·동에서 이송된 신청서의 전산입력 정보 누락·적정 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을 최종 확인
    * 전산입력 내용 및 첨부서류 확인에 관한 최종 책임은 지급 관할 읍·면·동에 있음

신청정보 전산입력

① 타 읍·면·동에서 접수한 경우
- 접수한 읍·면·동에서 타 읍·면·동 정보까지 모두 입력

② 농관원에서 접수한 경우
- 농관원에서 서류를 이송받은 읍·면·동에서 모든 전산입력

③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후 읍·면·동에서 직불정보 입력
  * 농관원에서는 신청·접수 기간 내 신속히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④ 기존 경영체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 농관원에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 다만, 신규 농지 추가의 경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관원과 지자체 업무협의를 통해 읍·면·동에서 처리 가능

다. 서류의 이송·전달(읍면동, 농관원)

- **이송기간** : (농관원↔지자체) 7일 이내, (지자체↔지자체) 10일 이내
- **이송방법** : 우편, 방문, 팩스 등 업무여건에 따라 선택
  - 기관간 서류 이송 즉시 상호 "인계인수서" 작성·교환

별지 제7호 서식 통합 신청서 인수인계서 → P.352

- **이송기관**
  - (지자체 → 지자체) 지급 관할(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이송
  - (지자체 → 농관원) 주소지 농관원 지원·사무소로 이송
  - (농관원 → 지자체) 지급 관할(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이송
    * 농지소재지 읍면동이 2곳 이상인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으로 서류 이송,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서류 접수 후 타 읍면동으로 서류 재이송

다. 신청자 정보공개 단계

- **공개기간** : 3월 ~ 9월
- **공개방법**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www.agrix.go.kr에 공개
- **공개내용** : 신청자 성명(법인명), 신청 농지지번, 신청면적
- **열람방법**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서면으로 신청

별지 제8호 서식 논활용직불금 등록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서 → P.353

주의사항

직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개되고 열람되므로, 공개된 정보라도 정해진 방법 외에는 제공불가
*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고시) 참고

라.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 단계

현지(서면)조사 (읍·면·동(3월)) → 심사위원회 심사 (읍·면·동(3월))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및 대장관리 (시·군·구(3월))

1)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읍면동)

- **조사 및 심사기간** : 신청서 접수 후 등록증 발급 전까지
- **현지(서면)조사** : 신청인이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 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동일한 시·군·구 내 2개 이상 읍·면·동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신청자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 대표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시·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담당자
- **제척·기피·회피** : 심의의 제척·기피·회피는「행정절차법」제29조를 준용
- **임무** : 실제 밭농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
  - 조사대상에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판정 신청자는 필히 포함
  - **집중 심사 내용**
    ① 관외경작자의 밭농업 종사여부 확인 : 판매증빙서, 자재구입영수증, 영농기록 등
    ② 사망,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받는 자에 대한 심사
    ③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④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⑤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⑥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⑦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⑧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시군구, 읍면동)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발급기간** : 3월 내
- **발급요건 확인**
  - 지급대상 농지 적격여부(농지처분명령 대상자 신청 농지 등 제외)
  -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등 확인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발급방법**

①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할 수 없음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별지 제9호 서식 논활용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 P.354

②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별지 제10호 서식 년도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 P.355

③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해당자에게 제외사실을 통보

* 지급대상 제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등록증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준하여 처리

별지 제11호 서식 년도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 P.356

등록증 및 지급대상자 제외 통보서는 이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 함

마. 등록사항 변경 및 이행점검 단계

등록내용 수정 및 변경	/	이행점검	→	이의신청 및 재조사
읍·면·동(3월~5월)		농관원(3월~5월)		농관원(~5월)

1) 등록내용 수정 및 등록사항 변경(시군구, 읍면동)

1 등록내용 수정

- **수정사유**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2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변경기간** : 5. 25.까지
- **신청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변동된 지급대상자
- **신고 대상자**
  - 등록자에게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13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 농업법인) → P.208

별지 제14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 신고서 (농업인, 농업법인) → P.214

사망자 승계 가능 기간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이후 직불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 중에 사망(뇌사 포함)하여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직불금 지급(해당 시군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단계) 이전까지 승계 신청(변경등록 신고가 아닌 신규 승계신청에 해당)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승계 신청시 승계 사유 및 승계확인 증명서류 제출)
  - 다만, 직불금은 일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승계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사망한 지급대상자의 일반 상속인에게 지급은 불가함

구 분	필요 서류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①②③ 모두	① 발급된 등록증 ②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서류 (단,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나목의 서류(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무단점유 여부 관련)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①과③ 또는 ②와③	①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임차,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② 사망 또는 뇌사 판정에 따른 직불금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발급된 등록증 -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서류(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무단점유 여부 증빙 관련)

* 신청시 첨부서류 참고

3 변경등록증 발급

- 시·군·구는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읍·면·동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내용 수정'에 준하여 처리

주의사항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등 자격요건이 미충족되었다 하여 변경등록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신청자 변경 불가
- 등록사항 변경신청 및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자격요건 상시검증

시·군·구(읍·면·동)은 신청자 및 등록자가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격요건을 지급 전까지 상시검증 실시

- 지급대상 농지 적격여부
  - 농지법 상 농지인지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인지 여부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인지 여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협의를 거친 농지인지 여부
  -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인지 여부
  -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인지 여부
  - 중복지급 불가능한 보조금을 중복 신청한 농지인지 여부
-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업인등인지 여부
  - 밭농업(논이모작)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법인 5만㎡) 이상 여부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지 여부
  -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인지 여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인지 여부(해당농지에 한 함)
  -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인지 여부
  - 실제 밭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2) 이행점검 실시(농관원)

- **점검기간** : 3월말 ~ 5. 25.

  * 지자체 통보기간 포함

- **점검의뢰** : 등록된 농지(농업인)에 대하여 농식품부에서 농관원으로 일괄 의뢰

  - **의뢰시기 이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현장점검 실시**

- **점검대상** : 밭농업직불금 신청·등록된 농지(농업인)

  - 등록된 농지(농업인) 중 경영체 DB 및 팜맵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대상 위주로 선정(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 필수 포함)

  * 점검비율: 전체 대상필지 대비 40% 이상(현장점검 40%)

- **점검내용**

  - 대상품목 재배여부 및 재배면적 등

- **점검방법** : 농관원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팜맵, 드론 등을 활용

별지 제12호 서식 년 논활용 직불금 신청농지 이행점검표 → P.357

* 필요시 시·군·구(읍·면·동)에서 필지별 내역, 지적도면 등 관련자료 확보(지자체 협조)

- 특히,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혼·간작 시 대상품목 재배면적 비율(논이모작) 중점 점검 실시
- 의무 불이행사례 확인 시,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확보·보유하되, 이의신청 제기 건에 대하여는 재조사 과정에서 (필요시)신청자의 확인서 징구

• **결과통보** : 농관원은 부적합 내역이 있는 농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점검결과를 통보(매월)

* 점검결과에 대해 농업인 확인을 받을 시 서면통보 생략 가능

- 시·군·구에는 이행점검이 완료된 5.25.까지 Agrix시스템을 통해 통보

별지 제13호 서식 년 논활용 직불금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 P.359

• **이의신청** :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7일 이내 서면(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할 농관원으로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을 받은 농관원은 즉시 재조사 후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

별지 제14호 서식 논활용 직불금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P.360

• **결과보고** : 농관원은 이행점검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면으로 보고(7월)

바. 지급요건 검증

• **검증대상** : 등록자 및 등록농지 전수 검증

• **검증방법** : 유관기관 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

• **검증내용** : 농외소득, 토지대장, 주민정보, 중복신청, 농지전용 등

사.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자금요청 및 자금배정 (농식품부, 시·도(9월)) → 직불금 지급 (시·군·구(10월)) → 지급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 (시·도(12월~1월))

1) 자금요청 및 교부결정(농식품부, 시·도)

• **자금요청** : 시·도는 시·군·구별 지급대상자, 면적, 소요자금 등을 확정하여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자금요청

별지 제16호 서식 논활용 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 P.362

• **교부결정** : 농식품부는 시·도의 자금요청 등을 토대로 시·도별 교부결정 통보

• **전산작업** : 시·도는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 **자금교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 자금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구에 전금

2) 직불금 지급(시·군·구, 읍·면·동)

- **지급시기** : 10월
- 시·군·구(읍·면·동)는 시·도에서 자금을 교부받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입금 시 밭농업직불금임을 알 수 있도록 **"농식품부 논활용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 통장입금 시 지급대상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3) 지급결과 보고(시·도)

- 시·도는 직불금 지급결과를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보고(12월)

별지 제17호 서식 논활용 직불금 지급결과 보고 → P.363

4) 정산 및 반납(시·군·구, 읍·면·동)

- 시·도는 정산결과를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시·도의 정산결과를 토대로 정산금액 확정
- 시·도는 집행잔액 반납

주의사항

시·도(시·군·구)는 자금교부 후 신속히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시 추경, 성립전 등으로 필요예산을 편성하고, 지급 전 계좌검증 철저

아. 사후관리 단계

수령자 명단공개 및 사업추진 상황점검 / 부당신청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환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1) 수령자 명단공개

- **공개기간** : 직불금 지급 후 30일 이내 공개 후 1년간
- **공개장소**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www.agrix.go.kr
- **공개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열람방법**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

별지 제8호 서식 논활용직불금 등록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서 → P.353

*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고시) 참고

2) 사업추진 상황점검

- **교차점검** : 시·도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교차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간 교차점검 실시
- **중앙·지방 합동점검** : 농식품부는 시·도, 농관원과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합동점검 실시
-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등 사후관리**
  - 농식품부는 부당수령금 등 사업비 회수 및 반납업무 처리상황을 정기 및 수시(필요시) 점검
  - 시·도는 관내 업무 추진상황 지도·점검 시 부당수령금 관리실태 점검

3) 부당수령 신고센터

- 부당수령 신고접수를 위해 부당신청 신고센터(시·군·구)와 콜센터 연중운영

신고 및 처리 절차

① 해당 시·군·구의 "부당수령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또는 직불금 콜센터(1588-6830)를 통해 구두신고
* 신고서 및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별지 제18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 P.364

② 신고를 접수한 해당 시·군·구는 신고내용을 관리대장에 등록
- 구두신고의 경우, 콜센터에서 해당 시·군·구로 즉시 이송
* 콜센터 구두신고시 확인사항 : 부당수령자 성명, 농지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신고인 연락처

별지 제19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 관리 대장 → P.365

③ 시·군·구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와 협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④ 부당수령자로 판명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회수조치 및 등록제한 등 조치

4) 부당이득금 환수

- 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함
  * 납부의무자가 체납액 미납부시 체납액의 100분의 9범위 내에서 중가산금 부과
- 징수(회수)절차

① 납입고지서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징수(회수)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② 납입 : 납부의무자가 부당수령금을 납부 시,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기금 계좌 순으로 납입

③ 결과입력 : 시·군·구(읍·면·동)는 부당수령금 회수 즉시 관련 정보(부당이득금, 가산금, 회수일자 등)를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
*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5)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10에 해당하는 경우 직불금의 일부 및 전부 미지급 및 등록제한 가능(「농업소득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기준)
  * 등록제한 기준은 위반행위가 확인된 해당 연도를 시작연도로 하고, 제한기간 만료 후 다음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마지막 연도 연말까지로 결정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대상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법인명・대표자명)	
	주소	
제출 증명자료		

변경신청 내용

기존 등록 내용	변경신청 내용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
	주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 서식]

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계획(00시·군·구)

❑ 신청·접수 계획

○

○

○

❑ 주요 내용

○

○

○

❑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논활용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농지 소재지			면적(㎡)	비고
읍·면·동	리·통	지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제2호 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로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는 다음과 같이 이용된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 '98.1.1.부터 '00.12.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승계의사 확인서

등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면·동	리 · 통	지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에 따라 등록자는 승계자 (　　)에 대해 (　　)의 사유로 승계함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등록자				
* 등록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승계자 외 1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자와의 관계)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논활용 직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　　〉

□ 신청자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취-----선----------

〈접수번호 :　　〉

논활용 직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논활용 직불금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동장(사무소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 해당 관할 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해 직접 접수받은 내역과 농관원(사무소) 및 타 지자체(읍·면·동)에서 이송받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접수 내역[2]		이송 여부[3] (O,X)	전산 입력 여부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경영주 성명[1] 지역 신청자 성명(전체)	직접 접수	이송			

1) 신청서의 경영주 이름을 기재하고, 점선 밑의 란에 관할 지역 내 신청자 전부 표기

예시) ① 경영주와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같은 경우 : 경영주 성명 표기
②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를 포함하여 여러명인 경우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자 모두 표기
③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와 다를 경우 : 신청자 명 표기(복수일 경우 전부 표기)

2) 직접 접수 받은 경우는 직접접수란에 '○', 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1', 타 지자체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2'로 표기

3) 직접 접수 또는 농관원으로부터 최초 이송받은 읍·면·동이 타 지급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별지 제7호 서식]

통합 신청서 인수인계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 신청과 관련하여 ○○와 ○○ 간에 아래 사항에 대해 이상 없이 인수인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직불금 신청 내역 사본 000부

0000년 00월 00일

인 계 자	(소속) ○○	직	이 름	서 명
인 수 자	(소속) ○○	직	이 름	서 명

□ 붙임 : 인수인계 내역

인수인계서 내역

접수번호	경영체명 (신청자명)	주소지	신청내용(“○”표시)			
			쌀	밭	조건	비직불

[별지 제8호 서식]

논활용직불금 등록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등록신청자 성명	
등록신청 농지 지번	
등록신청 농지 면적	
이의 신청 내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0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논활용 직불금 등록신청한 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별지 제9호 서식]

논활용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 기관명 :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 번호)	면적 (㎡)	등록 연월일	변경 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년도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마을명	농지 소재지			소유자	공부상		농지이용	
	읍·면	리·동	지번 (임시지번)		지목	면적(㎡)	재배품목	신청면적 (㎡)
합계								

위 신청인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5월 25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논활용직접지불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10제1항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번호 제 호

년도 논활용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①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 신청내용	농지 소재지			④신청면적(㎡)		
	읍·면	리·동	지번 (가지번)	계	작물재배	휴경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 규정에 의하여 논활용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제외사유 :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인]
구청장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년 논활용 직불금 신청농지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신청내역		조사결과				
읍·면·동	본번	부번		품목	면적(㎡)	적합면적(㎡)	부적합면적(㎡)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재배	휴경	폐경	기타	

※ 비고란에는 불일치 사유 및 면적 등 기재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별지 제13호 서식]

년 논활용 직불금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역		조사결과				
읍·면·동	본번	부번		품목	면적 (㎡)	적합면적 (㎡)	부적합면적 (㎡)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재배	휴경	폐경	기타	
합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7에 따라 실시한 논활용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동봉한 이의신청서(별지제16호서식)를 농지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직인

[별지 제14호 서식]

논활용 직불금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2.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논활용 직불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별지 제15호 서식]

시·도별 논활용 직불금 이행점검 결과 보고

시도	지자체 요청			농관원 미점검(비표본)			농관원 점검(표본)								
							합계			적합			부적합		
	농가수	필지수	면적 (ha)	농가수	필지수	면적 (ha)	농가수	필지수	면적 (ha)	농가수	필지수	면적 (ha)	농가수	필지수	면적 (ha)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별지 제16호 서식]

논활용 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시·군·구	지급대상자(명)	지급대상 면적(㎡)	소요 자금(천원)
합계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논활용 직불금 지급결과 보고

시·군·구	자급배정액(천원)	지급자(명)	지급면적(㎡)	지급결과(천원)
합계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처리기간 60일
신고인	성명		전 화 번 호	
	주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내용>				
피신고인	성명		전 화 번 호	
	주소			
	해당농지주소			
신 고 내 용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부당수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자의 사실확인서
2.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 이상의 사실확인서
3. 기타 부당수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고 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당수령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 관리 대장

기관명 :

접수 번호	접수 연월 일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 방법 (콜센터, 우편 등)	피신고인 성명	농지 주소	위반 행위	직불 종류	처리 연월일	처리 내용	결과 통보 연월일	결과 통보 방식 (전화, 우편 등)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 처리결과서

1. 신고개요

○ 신고일자 :
○ 신 고 자 : (생년월일 :)
- 주 소 지 :
- 연 락 처 :
○ 피신고자 : (생년월일 :)
○ 신고농지 :
○ 신고내용 :

2. 조사결과 및 처분결과

○ 담 당 자 : (소속) (직급) (성명)
○ 조사결과
- 부당수령 연도 :
- 부당수령 농지 : (면적 : ㎡)
- 부당수령 직불 :
- 부당수령 금액 : 원
- 부당수령 내용 :

○ 처분결과
- 처분일자 :
- 환 수 액 : 원 (부당수령액 원, 가산금 원)
- 등록제한 : 년(년 ~ 년)

3. 부당수령 상세내역

○ 부당수령자 : (생년월일 :)

직불 종류	수령 연도	농지지번	면적 (㎡)	금액(원)		비고
				고정	변동	
합계						

제5장 부정수급

Ⅰ 부정수급의 범위
Ⅱ 부정수급 사례
Ⅲ 부정수급 방지 대책
Ⅳ 부정수급자 처리절차

제5장
알아봅시다

- 공익직불제 시행 관련 부정수급 사례와 방지대책을 이해할 수 있다.
- 부정수급자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Ⅰ 부정수급의 범위

○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불금의 전부를 미지급, 환수. 기본직불 등록자가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

법 제19조제1항 부정수급의 범위 → 부록2 P.24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 기본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 여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농지등의 면적 1천㎡(휴경면적 제외) 등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허위 신청하여 등록 또는 수령 한 경우

-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기본직불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Ⅱ 부정수급 사례

① 재촌지주, 부재지주의 부당수령

-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 소유주가 양도세 감면, 농업인 지위 유지 목적 등으로 직불금 부당 수령
- 재촌지주(在村地主)[17]의 경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지역민과 밀접한 유착으로 인해 직불금 부정수급 단속이 어려운 실정
- 부재지주(不在地主)[18]가 지인·지역민과 결탁하는 경우, 차세대 보조금 관리시스템 연계만으로는 검증이 불가하여 단속에 한계

표 1 재촌지주, 부재지주의 부당수령 유형

유형	구체적 사례
① 양도세 감면 목적	• 양도세 감면 목적으로 농지 소유주가 실경작자인 임차인과 구두로 계약하여 부재지주는 임대료 받는 대신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수령
	• 양도세 감면 목적으로 농지 소유주가 실경작자인 임차인과 구두로 계약하여 부재지주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수령한 후 직불금을 실경작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임대료 받음
② 농업인 지위 유지 목적	• 지역농협 조합원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부재지주가 실경작자인 임차인과 구두로 계약하여 임대료 대신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한 직불금을 실경작에게 양도
	• 외지인이 농지를 매입한 후 지자체의 농지처분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임차인이 경작하고 농지 소유주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수령

17) 재촌지주(在村地主)
: 농지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지주

18) 부재지주(不在地主)
: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해 주고,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지주.

② 분리등록

○ 보다 많은 직불금 수령을 위한 농지 또는 농가의 분리등록(농지 분할, 농가 분리 등)

표 2 분리등록 유형

유형	구체적 사례
① 지급 요건 미충족으로 직계가족 양도 신청	• 실경작을 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모나 자녀에게 양도하여 직불금 수령하게 함
② 공동 소유 농지 분리 등록	• 소유주가 2명 이상의 공동소유 농지를 실제로는 한 농가가 실경작하고 있으나 소유 지분만큼 일부 경작으로 각각 분리 신청하여 직불금을 각각 수령
③ 지급한도 이상의 직불금 수령을 위한 세대 분리 등록	• 실제 영농을 같이 하는 농가(직계 가족)가 직불제 지급한도 이상을 경작하는 경우 세대 분리 후 세대별로 농업경영체를 분리 등록하여 지급 한도 이상의 면적에 대한 직불금 수령

③ 관행적(고의) 신청

○ 부정신청 하여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관행적·고의적인 신청

표 3 관행적(고의) 신청 유형

유형	구체적 사례
① 영농행위 없이 위탁 영농으로 직불 신청	• 고령농(요양원, 병원 입원 등)의 경우 영농행위(모내기, 농약살포, 수확 등) 일체를 다른 사람이 대행토록 하고 직불금을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② 무단 점유 농지 신청	• 농지 소유자로부터 농지 관리를 위탁받은 마을이장이 마을 주민에게 재임대를 해주어 직불금 수령
	• 농지 소유주가 고령으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장 및 면사무소 직원과 결탁하여 이웃농가가 해당 농지를 직불금 신청하여 수령함
③ 농촌지역으로 허위 전입 신고	• 도시 지역 거주자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10,000㎡이상)이 되지 않아 농촌지역(1,000㎡이상)으로 허위 전입 신고 후 직불금 수령
④ 폐경임에도 경작농지로 허위신청	• 농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였음에도 직불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 임야지역의 오랫동안 방치(칡넝쿨, 수목이 우거진 곳)되어 영농 행위가 없는 농지를 매년 직불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 농업경영체 등록은 폐경 면적을 제외하고 실면적만 등록한 후 직불 신청할 때는 폐경 면적을 전부 포함하여 신청 후 직불금 수령
⑤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후에도 직불신청	• 농지전용허가(태양열 설치 등)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직불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 「하천법」제2조에 따라 보상받은 하천부지를 직불 신청 후 직불금 수령
	• 토지 소유주가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 신고,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를 받았음에도 해당 농지를 가족이나 지인이 직불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⑥ 농림사업간 신청자 불일치	• 토지 소유주가 농지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였음에도 직불금 신청

Ⅲ 부정수급 방지 대책

○ 비농업인의 부정수급 증가에 대한 농업인 우려를 감안하여 신청, 이행점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지제도 개선 추진

① 실경작 확인 프로세스 보완

○ 마을단위 심사결과를 읍·면단위 등록위원회에서 재확인하는 **2단계 검증**으로 실경작 여부 확인 기능 강화

- 1단계 : 경작사실심사위원회(마을단위)
- 2단계 : 조사위원회(읍·면·동단위)

○ 경작사실심사위원회(마을단위) * 시·군 자율

- 목적 : 읍·면장은 직불금 신청인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 운영
- 구성 : 마을공동체 자치회 등을 활용하여 마을이장을 포함(3~5인 이상)
- 임무 :
  - 읍·면·동장은 신청서 접수 후 각 마을의 전체 신청인 목록과 관외경작자·신규 신청인, 실경작 의심자* 등 확인이 필요한 목록을 마을 이장에게 배부

    * 보조사업간 DB연계로 동일 필지에서 서로 다른 농업인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등
  - 경작사실심사위원회를 통해 실경작여부, 임대차 여부 확인
  - 최종 현장확인 결과 등을 반영한 심사 의견을 심사위원회 전원의 명의로 서명하고 읍면동장이 지정한 날짜까지 기한 내 제출

시행규칙 제12조~13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부록2 P.19~20

○ 조사위원회(읍·면·동단위)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원 :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 농지등 소재지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 대표
  - 농업회의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농업회의소에서 추천하는 회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 또는 농업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 해당 시·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담당자

• 제척·기피·회피 : 심의의 제척·기피·회피는「행정절차법」제29조를 준용

• 임무 : 실제 농업에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

- 조사대상에 보조사업간 DB 비교로 동일 필지에서 서로 다른 보조금을 수령한 자,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판정 신청자는 필히 포함
- 집중 심사 내용

① 동일 필지에서 서로 다른 보조금을 수령한 자의 실 경작 및 농업 종사여부 확인
: ⓐ경작면적 및 기간 + ⓑ실경작여부(실경작확인서 + 영농 증명(판매, 자재 영수증 등))
② 사망,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받는 자에 대한 심사
③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④ 관외경작자의 농업종사 여부 심사
⑤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⑥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⑦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⑧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② 감독·제재·벌칙 강화

○ 직불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리기관 지정

• 사업기관(시·군·구, 읍·면·동 등) 현지 감사 실시 등 지도·감독

* 복지부는 복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급여조사과'를 신설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을 설립하여 현지조사(감사) 기능 수행

○ 기존 제도의 경우 직불제 운영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부재했으나 변경된 제도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한 경우 지급제한 및 벌칙을 강화

* '20.5.1일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직불을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 아래 사항을 적용. '19년 이전에 발생된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적용

표 4 부당이득금, 가산금, 등록제한 기준

부정수급 종류(법 제19조제1항)	분류	부정수급액	제재 부가금	등록제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제1호)	등록	-	-	5년	3년
	수령	전액환수	5배	8년	5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제2호)	등록	-	-	3년	
	수령	전액환수	3배	5년	
지급대상 요건 미비(제3호, 제4호)	수령	전액환수	-	-	

- 조사 등 거부·방해, 관련 서류 미 보관·비치 **과태료 부과 및 법인 양벌규정 신설**

법 제45조 과태료 → 부록2 P.52

- 벌칙 : 아래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①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직불금을 수령한 자
  ②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 등을 한 자
  ③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자
  ④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직불제도 시행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③ 직불금 수령자 정보 공개 확대

- 직불금 수령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령자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대다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수령자 정보를 **온라인 외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읍면 마을별로 분류해 추가 공개**
- 기본직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15일 이상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AGRIX 등 인터넷 또는 읍·면·동(마을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 포함)의 정보*공개
  * 수령자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④ 명예감시원제 도입('20.7월~)

- 명예감시원 위촉
  - **목적** : 민·관합동 모니터링 및 사전 예방적 민간 자율감시 기능 강화로 공익직불금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위촉대상** :
    ①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등 임원·직원 또는 회원
    ② 이·통장 등 농업관련 지식이 풍부한 자
    ③ 전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민간전문가
    ④ 청년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농업법인 대표 등 농업분야 전문가 등
  - **운영계획** : 약 1,200명(지원·사무소 130개소에 10명 내외 위촉)
    -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 / 1인당 연 50일 이내의 범위

- **주요활동**
  - 공익직접지불제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지도·홍보,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지도·홍보,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 등에 참여한다.
- **특징**
  - 지역정보가 많은 이통장 및 생산자단체 등을 활용
  - 관외경작자의 부정수급 점검 등 협력체계 구축
  - 표본 미선정 대상에 집중 투입하여 준수사항 이행 등 관리지도

⑤ 신고포상금제 및 부정수급 신고센터 활성화

○ 기존 부정수급 신고제도의 한계

- 농촌 사회 특성상 **지역 내 신분노출 부담, 농지 반환 등**의 문제로 부정수급 신고에 소극적이고, 유사 제도 대비 낮은 포상금으로 **적극적인 신고 한계**
  -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 ('16년) 0건 → ('17년) 0 → ('18년) 4 → ('19년) 0

○ 신고포상금 확대

- (기존)50만원/건, 연간 200만원 한도 → (개정)건당 50만원 또는 환수액의 30% 중 높은 금액, 연간한도 없음

○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조건 완화하여 내부고발 유도 :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추가하는 등 신고 유도
- 지급제외 조건 5가지 항목 중 ④항목 제외
  ①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논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한 사람
  ② 이미 신고된 자를 신고한 사람(부당수령자로 판명된 경우만 해당)
  ③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신고대상자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
  ⑤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부정수급 신고센터 활성화(대표번호 : 1644-8778, '20.6월~)

신고 및 처리 절차

① 해당 시·군·구 및 농관원의 "부당수령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또는 농관원의 부정수급 신고 콜센터(1644-8778) 등을 통한 구두신고
* 신고서 및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

별지 제22호 서식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신고서 → P.227

② 신고를 접수한 해당 시·군·구, 농관원은 신고내용을 관리대장에 등록

별지 제23호 서식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신고 관리 대장 → P.228

- 구두신고의 경우, 콜센터에서 해당 시·군·구로 즉시 이송
  * 구두신고 시 최소 확인사항: 부당수령자 성명, 농지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신고인 연락처

③ 시·군·구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와 협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④ 부당수령자로 판명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회수 및 등록제한 등 조치
-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확인 후 안내

- 농관원·지자체는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신고를 받은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하여 신고접수를 한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①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②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③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④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⑥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농관원·지자체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특사경 등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또는 관계기관 자료요청·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한 방법과 같은 방법(전화신고의 경우 전화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의 통지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가급적 그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 신고에 의해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농관원·지자체에서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아 농식품부에 통지한다.

별지 제25호 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P.230

○ [참고11] 부당수령 신고·접수 시 처리절차

⑥ 특별사법경찰관리 도입

○ 행정 권한만으로 부재지주, 재촌지주 등의 부정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부정수급이 점차 정교해지는 양상을 띄고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하여 전담반 구성한 뒤 음성적 직불금 부정수급 강력 단속·차단**

○ 직불금 부정수급 단속 관련 특사경제도 도입을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 특사경 도입현황 : 9개 법률 14개 업무(농진청, 산림청 제외)

Ⅳ 부정수급자 처리절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41조 및 제4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처리

표 1 부정수급자 처리절차

구 분	조 사	심의 및 수사	행정처분	포상금
부정수급 적발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조사 및 특사경수사	▪ 청문 ▪ 심사위원회 심의 (필요시) * 법4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수사의뢰 ▪ 특사경수사(송치)	▪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징수, 등록제한 ▪ 포상금 지급요청	포상금 지급
	(농관원·지자체 등)	(농관원·지자체 등)	(지자체)	(농식품부·농관원)

○ **[농관원·지자체]**

- 지자체, 농관원에서는 부정수급 신고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실에 대하여 직불신청내역, 연계정보 등의 자료와 현지를 확인하고 위반행위가 명확한 경우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자에게 확인서 징구
  - 지자체는 위반행위에 대해 청문, 심사위원회 심의(필요시)를 실시하고, 위반행위가「공익직불법」제43조(벌칙)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 종결 또는 부당수령액 환수 등 행정조치
  - 농관원에서는 위반행위가「공익직불법」제43조(벌칙)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또는 특사경으로 하여금 수사, 검찰송치 등 조치하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 종결 또는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에서는 기본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수사 또는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이 완료된 사항을 확인하여 직불금 환수 등 행정조치(농관원은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에서는 기본직불금 부정수급이 확인,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지급된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

- 지자체에서 보고된 부정수급 내역, 환수금액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는 농관원에 부정수급의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요청하고, 농관원은 조사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은 지자체(읍면동 → 시군구 → 시도)로 부터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결정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조치

부정수급 처리절차

※ 부정수급 신고 등으로 특사경이 수사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농관원·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조사하고 행정처분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준용(참고11)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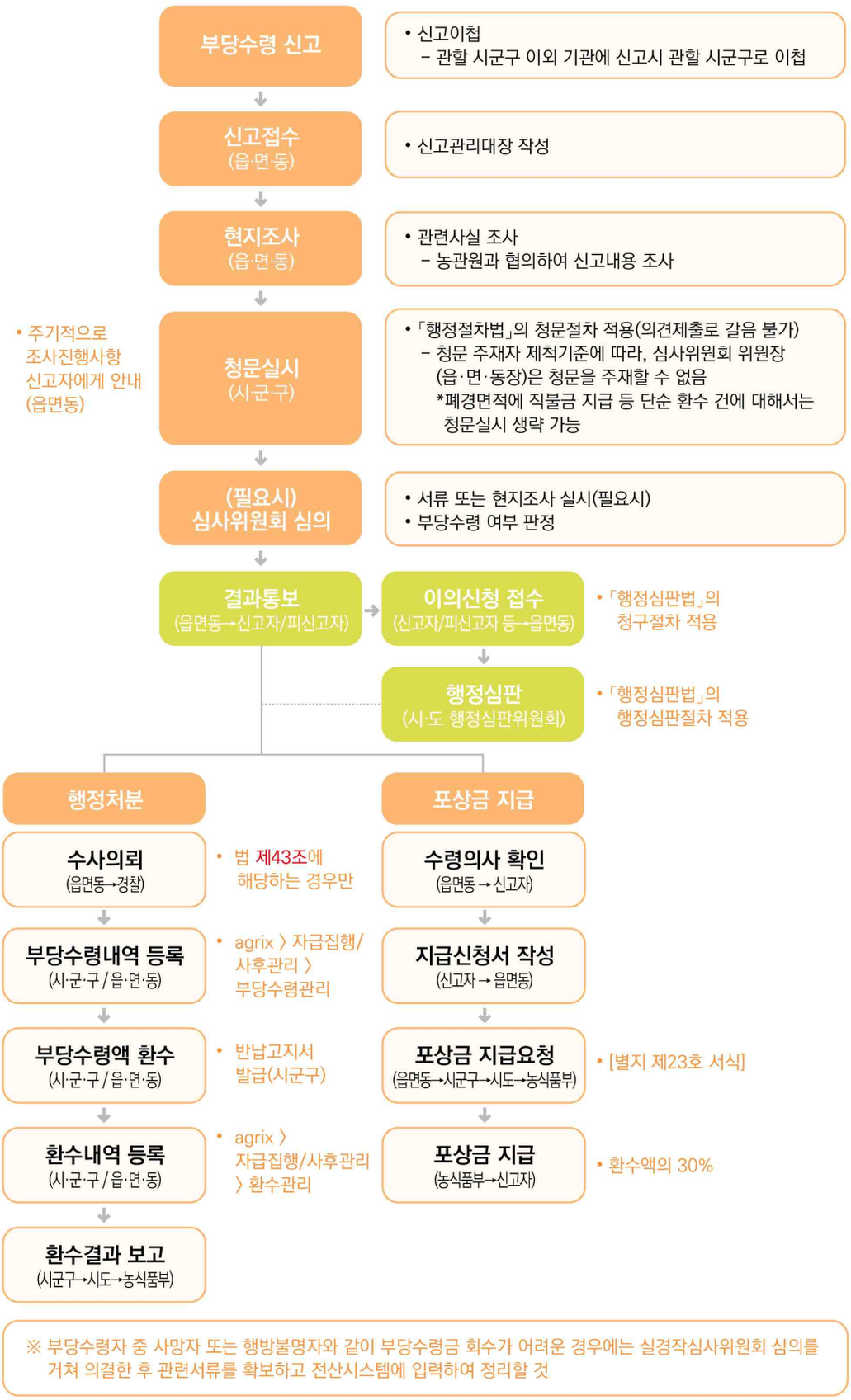
① 지자체에서는 기본직불 부정수급의 적발·확인 또는 이미 지급된 기본직불금의 환수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10일 이내(수사기관의 통보, 신고 등으로 부정수급이 확인된 날 기준)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농식품부에 보고한다.

* 성명, 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부정수급의 내용(환수의 내용), 환수금액(부정수급의 경우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포함), 환수통보일자, 환수예정일자 등
* 〈부정수급자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관계자, 대외사항 등 비공개하고 진행〉 ①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기본직불금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② 부정수급 또는 신고 등으로 인하여 지급된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경우

-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는 농관원을 통해 부정수급의 사실관계 확인, 부정수급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조사, 부정수급의 내용 등의 자료를 수집·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다만, 기본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수사 또는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이 완료된 사항을 확인

② 지자체는 ③기본직불금의 환수금, ⑥제재부가금(강제징수)을 환수 받은 경우 농식품부에 반납계획을 통보하고 공익직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참고 11 부당수령 신고·접수 시 처리절차



※ 부당수령자 중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같이 부당수령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경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정리할 것

부록1
질의응답

1 개요
2 대상농지
3 대상 농업인
4 구비서류
5 지급 금액
6 이행점검
7 부정수급
8 기타 사항

1. 개요

공익직불제란?

✓ 기존 9개 직불제 중 6개가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과 선택형 공익직불**로 구분

개편 전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쌀소득보전직불 : 고정, 변동
밭농업직불 : 고정, 논이모작

→

개편 후		
공익직불제	선택직불제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논활용(논이모작)직불
	기본직불제	면적직불금(역진적 단가)
		소농직불금(정액)

- **(기본직불제)**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나뉘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농업인들은 확**대된 준수사항** (기존 3개→17개) 적용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일정액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 **(선택직불제)** 기존의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논이모작)을 포함하고, 제도 운영·단가 등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 공익직불법에 규정된 **지급대상 농지 요건과 지급대상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에서도 농업에 종사한다고 무조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농지요건과 지급대상자 요건을 동시 충족시 지급하였음

2. 대상농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서
-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등***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2~'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03~'05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대상 농지에서 제외됨

농지전용을 거쳤으나 목적사업이 이행되지 않고 계속하여 농업에 이용될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농지가 될 수 있는지?

- ✓ 농지전용을 거친 경우 해당 농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비록 전용 후 농업에 이용된다 하더라도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등록신청 전 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지급대상 농지 중 일부 면적만 임차하여 경작할 경우 신청 방법은?

-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는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임차한 일부 면적만 등록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임차하지 않은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명확히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함

농업경영체 등록은 3년 전에 하였는데, 직불금 신청을 해야 하는지 몰라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는데 등록 가능한지?

- ✓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농지가 '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인도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직불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농지도 직불금을 수령한 적이 없고, 신청인도 '16~'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등의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불금 신청이 불가능함

논 500㎡, 밭 500㎡로 합계 1,000㎡가 경영체 등록된 경우 공익직불금 지급이 가능한지?

- ✓ 위의 농지가 '17~'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로, 지급대상 농지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농업에 이용하는 면적의 합이 1,000㎡ 이상(휴경면적 제외)이 되면 지급 가능
  - 즉, 경영체에 등록된 논 500㎡, 밭 500㎡이 지급대상 농지이면서 농업에 모두 이용하고 있다면 전체 면적의 합이 1,000㎡이므로 지급 가능함
- ✓ 단, 대상 농업인이 '16~'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후계농 또는 전업농,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농지 0.1ha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자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해야 함
  - 다만 밭 500㎡가 '17~'19년 중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다고 하면 지급대상농지 전체 면적의 합이 1,000㎡가 되지 않으므로 지급 불가

면적직불금 구간을 나눌 때 진흥지역 논·밭/비진흥 논/비진흥 밭 3구간으로 나누는데 이때 말하는 논과 밭은 공부상 지목을 말하는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용도로 구분하는지?

- ✓ 기본형 공익직불에서 논과 밭의 구분은 공부상 지목이나 현재의 논밭 이용형태와 관계없이 과거 기준연도 이용형태*를 기준으로 함
  즉, 과거 기준연도 이용형태에 따라 쌀직불금을 지원 받던 농지는 "논", 밭직불·조건불리직불을 지원받던 농지는 "밭"으로 적용
  *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2~'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03~'05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휴경농지도 등록 가능한지?

✓ 농지가 언제든지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경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지력증진, 노동력부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있는 **휴경농지의 경우는 등록대상임**
신청서 작성은 '농지등 및 농작물재배' 란에 휴경면적까지 기재하고 재배품목, 면적은 공란으로 처리. 휴경지에 **작물을 다시 재배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작물명과 재배면적을 등록해야 함. 향후 농사를 짓지 않을 계획이거나 작물재배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농지의 경우는 등록대상이 아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전부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되는지?

✓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휴경하는 농지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나, 지급대상 농지를 전부 휴경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 다만, 신청 면적에서 휴경 면적을 제외한 경작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함
-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이상(휴경면적 제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또한 휴경하는 경우에도 연 1회 이상 경운을 해야 하는 등 준수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17개 준수의무 중 농약·유해물질과 비료를 제외한 나머지 의무 준수)

논과 밭을 합쳐서 1,000㎡이상이면 직불금 신청 가능한지? 아버지 소유·경작했던 농지(과거 직불 수령함. 지급대상 농지 해당)를 증여받아 작년 연말에 경영체 등록(경영주외 농업인)하였는데 올해 직불금 신청 가능한지?

✓ 기본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전체 면적 합이 1,000㎡ 이상(휴경 미포함)이 되어야 지급 가능

*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

✓ 과거 직불금을 수령했던 지급대상 농지를 증여받았다면 해당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나 신청인이 지급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확인 필요

- 직불금 신규 지급대상자가 되려면, 신청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기간 동안 1,000㎡ 이상 면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작년 연말에 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 올해 직불금 신청은 불가능

(참고) 등록 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휴경 면적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한 자의 판단 기준(ⓐ+ⓑ+ⓒ 모두 충족시)

ⓐ **경작면적 및 기간 증명** : 농업경영체(경영주 또는 경영주외)에 등록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등 1천㎡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경우 인정 원칙(시스템에서 확인)

* 기간 : '19.12.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19.1.1이전부터) 경영체에 등록

- 다만, ’21년까지는 지급대상 농지등 1천㎡이상에서 직전 3년 동안 1기작 이상 재배하고, 90일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19.12.31.기준)을 한 경우 1년 이상 종사로 인정

ⓑ **실경작 여부 확인** : 경작사실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당년 및 전년도 영농자재 구입 등)

ⓒ 다만, 기존 대상자의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시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여야 함

* 정당하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자와 농지 분할을 해준 기존 대상자 모두 지원 제외 및 등록제한

지급대상 농지가 최근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상적으로 받은 농지로 한정하는데 내가 임대해준 농지를 임차인이 받았을 경우 금년부터 내가 농사짓고 직불금 신청할 경우 지급대상 농지가 되는지?

✓ 지급대상 농지로는 인정

✓ 다만, 신청인이 지급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

- 즉, 신청인이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 후계농, 전업농, 신청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1,000㎡ 이상의 지급대상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한 자 등의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함

* Q&A 29번 대상농업인 기준 참조

어머니 소유의 논을 임대한 상태, 이를 다시 자경하면 직불금 신청 가능한지?(어머니는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고, 해당 농지의 임차인이 직불금 수령해 옴) 어머니 소유의 별도의 밭이 있는데 1,000㎡가 약간 안되는데 직불금 신청이 전혀 안되는지? 쌀 생산이 많다하여 쌀농사 대신 휴경 또는 타작물 재배를 하려는데 이는 직불금 대상이 아닌지?

✓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머니 소유의 논이 과거 직불금 수령 실적이 있어 해당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함

다만, 신청자인 어머니가 ‘16~’19년에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고,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등 0.1ha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등 신규 신청 대상자의 자격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여야 직불금 신청이 가능함

✓ 어머니 소유의 별도 밭은 ‘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다면 내년에 직불금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 그렇지 않다면 직불금 신청 불가능

✓ 내년에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이상(휴경면적 제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1천㎡를 초과하는 면적의 논에 대해서는 휴경 또는 타작물 재배도 가능

기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인데 현재 골재 채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대상농지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지?

✓ 골재 채취장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지 못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고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이므로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 중에는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음

농지의 일부를 전용하였으나 지번을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하지 않은 면적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전용하지 않은 면적은 지급대상이 되는지?

✓ 비록 필지를 분할하지 않았으나, 농지전용을 하지 않은 면적은 여전히 농지이므로 전용하지 않은 면적이 '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해당 연도에 농지전용 협의를 거쳤지만 전용협의 전 수확 및 판매까지 완료한 경우, 지급대상농지가 될 수 있는지?

✓ 직불금 지급요건은 이행점검 완료일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농지전용 시점에 따라 달리 판단

- 농지전용 시점이 이행점검 완료일 이후라면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 다만, 이행점검 완료일 이전에 농지전용을 하였다면, 비록 수확까지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이행점검 완료일은 해당연도 9.30.까지)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된 농지에서 발전패널 아래에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농지가 될 수 있는지?

✓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해 농지를 전용한 경우는 지급대상농지에서 제외

- 다만,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 지붕에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하고 패널 아래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 농지의 기능 및 형상을 유지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농지에 고정형 비닐하우스로 버섯을 재배할 경우 등록 가능하는지?

✓ 고정형 비닐하우스 내의 농지가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직불금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

조경수를 식재한 농지도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될 수 있는지?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며, 논농업 및 밭농업의 범위에 '농업인등이 소득 증대를 위하여 재배하는 다년생식물'도 포함되므로 판매를 목적으로 조경수 묘목 등을 식재한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 다만, 판매목적이 아닌 조경을 목적으로 식재한 경우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영농회사법인에게서 임차한 농지도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되는지?

✓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면 영농회사법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라도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육묘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바닥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한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되는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아닌 자갈인 경우는?

✓ 직불금 지급요건으로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바닥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거나 자갈을 펴 놓은 경우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지급대상농지에서 제외
- 다만, 부직포로 바닥을 정비하는 등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가 가능한 경우는 지급대상농지로 인정

농지주가 실경작자인 임차인과 상의 없이 농지전용협의를 하였으나, 당해 연도 경작에 지장이 없을 경우 지급대상농지가 될 수 있는지?

✓ 농지전용 협의를 한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므로 비록 농지주가 일방적으로 전용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대상 제외

- 다만, 이행점검 완료(해당 연도 9.30.까지)일 이후에 전용한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등록제한기간 중인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 등록제한기간 중인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농지는 지급대상농지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불가

- 다만, 등록제한기간 중인 부정수급자 소유의 농지를 매입하여 자경하거나 매입자가 임차해 준 경우, 해당 농지는 지급대상농지로 인정되며,
-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가 부당 등록·수령한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는 등록·신청 가능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는 임대차계약서가 원칙

- 다만,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소유주가 신청인의 점유사실을 인지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서류도 허용

허가 없이 임야를 개간하여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도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 임야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① 우선, 2016.1.21.일 이전에 형질변경하고,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실상의 농지로 인정되었는지 여부(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제외)

②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대상농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17~'19년 사이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 종전 대상농지 기준 : (쌀) '98년~'00년, (밭) '12년~'14년, (조건불리) '03년~'05년

✓ 즉, ②번 요건인 '17~'19년에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았다고 하더라도 ①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직불금 지원 대상에 제외되므로 확인 요망

✓ (참고) 종전(2016.1.21.이전)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형질 변경을 하고,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하였으나,

- 「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16.1.21 이후)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질 변경을 하고,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 등에 대해서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함

* 단, 기득권 보호를 위해 농지법 부칙 제2조의 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시행일(2016.1.21.) 이전부터 농지로 인정되는 임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적용·해석

'19년에 쌀직불금을 받았던 농지 1필지(면적 3,000㎡)가 '20년 1월에 농지가 2필지로 새로운 지번으로 분할되면서 1필지(1,500㎡)는 농지전용되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1필지(1,500㎡)는 기존처럼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직불금 대상 농지가 되지 않는지?

✓ 19년에 직불금을 받은 농지이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농지전용된 필지는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농지 1필지(면적 4,500㎡)중 공동소유자인 A는 해당 필지에 대해 2,750㎡를 '19년에 직불금을 신청하여 받았으나, 공동소유자인 B는 나머지 면적인 2,750㎡를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공익직불제를 신청하려는데 직불금 대상 농지가 되지 않는지?

✓ 직불금 받은 이력이 있는 A 소유의 면적 2,750㎡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

3. 대상 농업인



소규모농가 지급요건 중 영농종사기간 3년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직불금을 3회 연속 수령 등으로 인정
* 2020년의 경우, 2017.1.1.~2019.12.31.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17~'19년 동안 직불금 수령

공익직불제 대상 농업인 요건을 '16~'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9년 10월 또는 2020년 1월에 경영체 신규등록자는 공익직불제 신규 대상 농업인이 되지 않는지?

✓ 아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익직불제 대상 농업인에 해당됨

①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기존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

②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③ 신청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원칙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20년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되려면 '19.1.1.~'19.12.31. 이상의 기간 동안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다만, '21년까지는 지급대상 농지등 1천㎡ 이상에서 직전 3년 동안 1기작 이상 재배하고, 90일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 1년 이상 종사로 인정하는 방안을 병행(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서 참고. '20년도에는 '20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기작 이상 및 경영체 등록기간 90일 이상을 '19년 12월 31일까지로 판단함)

✓ 따라서 '19년 10월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다면 90일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지 기간을 따져 판단하고, '20년 1월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다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20년에는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되지 못함

주소가 대구광역시 동지역(도시지역)이고 경작농지는 경남 함안군에 있는데 경작면적이 8,000㎡임, 작년까지는 면적이 미달되어 직불금을 못 받았는데 금년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받을 수 있는지?

✓ 작년과 동일하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1만㎡ 경작 또는 판매금액 9백만 원 이상)의 요건을 미충족하므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음

경영주 A(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농사짓고 있었고 경영주외 농업인 B(며느리)가 2018년도에 진입을 하였음.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5필지 모두 경영주 A가 직불금을 받아왔었는데 경영주 외 농업인 B가 세대분리해서 본인 소유 2필지를 신규로 면적직불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경영주외 농업인 B는 그 동안 본인 몫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금년에는 신규 신청자가 되지 않음

- 금년에 직불금을 받지 않는 본인 몫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한다면, 내년에 신규자로 신청할 수 있음
- 아울러, 경영주 A는 전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하여 고의적 분할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농지등 분할이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
가. 매매·상속·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농지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등
다. 농지법과 관련 농지등 분할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농지전용허가증 등
라. 그 밖에 농지등 분할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명자료

어머니가 고령으로 이제 농사짓기가 어려워 자식인 A가 직접 농사를 짓고 어머니가 신청한 직불금을 승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현재 어머니와 같은 마을에 살지만 주소는 다르고 어머니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계속 유지되어 있고 직불금도 계속 지급받고 올해도 신청하였음

✓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가능**

-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승계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 농지등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만 해당됨 (주소를 달리할 경우 미해당. 단,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

신규 신청인 A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 원이 넘을 경우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A의 배우자 B로 신청자를 변경신청 가능한지?

✓ 직불금 지급대상 요건을 미충족 하였다하여 타인으로 신청자를 변경 신청하는 것은 불가

- 다만, B가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음 연도에 B가 직불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농사짓는 면적은 4,000㎡이고, 경영주는 2,000만 원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지만 배우자인 경영주외 농업인은 농외소득이 없어 배우자 명의로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지?

✓ 소규모농가 지급요건 중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 이전연도에 직불금을 수령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단

① 등록신청연도 직전까지 경영주가 직불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없음

② 배우자가 직불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소농직불금 신청 가능하지만 다른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 원 이상일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 해당 기준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감사원 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마련된 제도개선 사항으로,

-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부업농 등 농업 이외에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 소득의 불안정 요소가 적은 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취지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당해 연도가 아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지?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은,

- 직불금 신청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다음연도 8~9월경 확정되어 신청연도에는 지급대상자 확정에 활용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한 것임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 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는데, 연금소득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연금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포함

*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은 ①이자소득, ②배당소득, ③사업소득, ④근로소득, ⑤연금소득, ⑥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의미함

실업급여도 농업외 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비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실업급여는 농업외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서는 임대수입이 종합소득금액 37백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데 직불제에서도 임대수입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의 종합소득금액 37백만 원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37백만 원 이상 급여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임

- 따라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닌 임대수입은 제외

✓ 그러나 직불제에서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 원은 시장개방에 따른 농촌거주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소득의 불안정 요소가 적은 자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취지임

- 따라서 직불제에서 임대수입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작년까지는 3,700만 원 이상이었는데 공익직불제도 동일한지? 그리고 작년까지는 개인별 3,700만 원 이상이었는데 혹시 부부합산으로 바뀌는지?

✓ **작년과 동일, 부부합산 아님**

-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은 2009년 도입된 이후 변동이 없어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현행화(상향조정 의견)가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3,700만원은 가구가 아닌 신청자 개인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현행 소득기준 대비해도 낮지 않으며, 타 제도·사업(조세특례법 양도소득세감면, 농민수당지급,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 준용사례 등을 고려하여 종전 기준을 유지함

기존에 직불금을 수령하던 자(농외소득 기준 충족)도 가족 구성원 소득의 합이 4,5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지?

✓ 가족 구성원 소득의 합이 4,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소농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농직불금 수령 불가능
그러나 면적직불금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소득으로 인한 요건 제한이 없으므로, 직불금 신청자 본인의 농업외 소득기준 3,700만 원 미만을 충족한다면 면적직불금으로 직불금 수령 가능함

기존 직불금을 수령하던 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인 새로운 필지를 등록신청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경작요건을 갖춘 뒤 다음 해에 등록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 기존 직불금 수령자가 새로운 필지를 등록 신청하는 경우 지급대상 농지라면 해당연도에 등록 가능

- '16년~'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수령한 자가 '17년~'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를 신청한다면 가능

배우자가 기존에 직불금을 받아왔는데 본인이 퇴직한 후 경영주외 농업인을 등록하려 함. 본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데, 직불금 신청 대상이 되는지? 또한 기존 받았던 직불금이 조건불리직불금 초지로 받았는데 초지도 대상이 되는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종전의 조건불리직불제 지원받던 초지는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에서는 제외되었고, 경관보전직불로 지원됨

본인(경영주), 부인(경영주외 농업인)이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데, 부인이 농업외 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농직불금을 신청·수령 가능한지? 소농직불금 요건에서 '농가 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 경영주외 농업인이 무조건 포함되는지? 또한 그 외에 포함되는 경우는 없는지?

✓ 소농직불금의 경우, 농가 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각각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는 '16~'19년에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하거나, 후계농, 전업농,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자기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임

✓ 따라서 경영주외 농업인인 부인이 위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면 부인이 농외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므로 소농직불금 신청은 불가,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해야 함

② 부인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소농 신청 가능

A는 6년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서 배우자(B)를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함. A는 경영체 등록 당시부터 농촌지역에 거주중인데, B는 자녀교육 때문에 2년 전에 도시지역으로 주소를 옮겼음. 이 경우 소농직불금 신청이 가능한지?

✓ 소농직불금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A의 배우자(B)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지급대상자 기준: 44번 참조)

✓ B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B는 농촌거주 요건을 검증하지 않아도 되며, A가 농촌거주 요건과 다른 소농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소농직불 신청 가능

전년도에 A가 직불금을 받은 필지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다른 필지를 경작하면서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는 B가 A의 필지를 임차하여 직불금을 신청하면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지?

✓ B는 기본형 공익직불 지급대상자이며, A의 필지는 지급대상 농지이므로 B가 A필지를 임차하여 직불금을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음

* 지급대상자: '16~'19 기간 중 기존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 후계농, 전업농,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자 등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등**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 기간 중에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법 제8조)

**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2~'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03~'05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의 농지를 동생이 경작하여 직불금을 수령하다가 사망. 동생의 조카가 이를 경작하면서 직불금을 수령 가능한지? (지자체에서는 형제들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불가능하며, 아버지 사후에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임)

✓ 직불금 수령을 받으려는 동생의 조카는, 사망한 동생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직불금 승계가 불가능함

다만, 동생의 조카가 직불금 지급대상자라면 해당 농지에 대해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전체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직불금 신청은 가능하며,

만약, 전체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동의 받은 상속인의 민법상 상속 비율만큼만 지급받을 수 있음

또한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경작하여 직불금을 신청할 해당 농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공유·다수인 상속 농지 임대차계약서 제출(직불금 신청 관련)

- 임차 농지에 대해 직불금 신청시 신청인에게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요구
- 「민법」*상 공유·다수인 상속 농지는 토지대장 기준 공유자·상속인 모두와 임대차계약서 작성 필요

  * 「민법」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A가 국·공유지를 임대하여 다시 B에게 재임대하고, B가 실제 경작하는 경우 B에게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지?

✓ 국·공유지는 반드시 무단점유가 아님을 확인하여야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국·공유지의 재임대(전대)는 허용되고 있지 않아 B는 국·공유지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

•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임차 받은 농지의 제3자 전대의 경우 직불금 수령 불가

기존에 직불금을 지급받던 농업인이 등록신청 직전연도에 도시지역에 거주하다가 등록신청 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 주소 기준은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급대상자에 해당

- 다만,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까지 지급요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그 이전에 도시지역으로 다시 이주하였다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해야 함

관내경작자의 범위는?

✓ 등록신청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자 및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를 의미

* 주소지 읍·면·동과 타 시·군·구의 읍·면·동의 경계가 맞닿아 있어야 함

- 다만, 주소지 및 연접한 읍·면·동의 적용 기준은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업인에게 유리하도록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행정동으로 하되, 법정면·동을 적용하는 것이 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법정면·동을 적용

자격요건 중 '종사'와 '일부위탁'의 구체적인 범위가 있는지? 농작업 중 주요작업은 모두 위탁하고 그 외 일부 작업만 신청자가 한 경우도 일부위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 '종사'의 정의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 일부위탁 포함)하는 것을 의미

- 일부위탁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 즉, 농기계 등을 활용한 주요작업을 전문 업체 등에 맡길 수는 있으나 자기 비용으로 바로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농작업 중 일부는 본인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모두 본인에게 최종 귀속되어야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면서 해당 구에 있는 농지에서 5년간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사를 시작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는데,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소농직불금 대상이 되는지?

✓ 해당농지가 '17~'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자가 '16~'19년 직불금을 받은 자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도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에 해당할 경우 면적 또는 소농직불 지원 대상이 가능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 같은 시·군·자치구에 소재하는 1만㎡(법인은 5만㎡)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군·자치구 농지 포함)를 경작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법인은 45백만원 이상)
- 등록신청연도 직년 1년 이상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직전 1년 이상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경작

✓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자치구이나, 거주 주소지가 자치구 내의 농촌 지역에 해당된다면, 3년 이상의 재촌·영농종사 기간을 충족하므로 0.5ha 이하 경작시 다른 소농 요건을 모두 충족시 소농직불금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거주 주소지가 자치구 내의 농촌 지역이 아니라면, 소농직불금 대상은 되지 못하며, 면적직불금 신청 대상은 가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농촌 지역
- 읍·면 지역
- 시(제주시·서귀포시 포함)의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의 동 지역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단,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경기도의 자치구의 동 지역은 제외)
- '02.8.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제외)

직불금을 신규로 신청하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도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지?

✓ 신규로 신청한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은 도시에 거주하여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시킬 필요가 없음

- 다만, 종전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된 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요건에서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에 축산, 임업, 수산업을 통한 판매금액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 농업소득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및 임업”이라 규정하고 있고, 축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에 포함되므로 축산, 임업을 통한 판매금액은 포함 가능

- 다만, 수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농업 및 임업과 구분되므로 포함 불가

직전 3년 중 1년 이상 5만㎡ 이상을 경작하였음을 증명하지는 못하나,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45백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법인이 직전 3년간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에 대하여 직불금 신청 가능한지?

✓ 신규 농업법인의 경우 등록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5만㎡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5백만 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되므로

- 해당 법인이 RPC, 도정공장, 도매시장 영수증 등을 통하여 지급 대상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 판매금액을 입증할 수 있으면 신청가능

기존 직불금 수령 법인이 법인명을 변경 후 신청한 경우 신규로 보아야 하는지?
(단, 법인등기부등록 상 관련 기록은 유지)

✓ 법인번호 및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면 동등성 인정

- 단,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농촌지역에 도시지역으로 변동된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

법인 소유 농지를 법인대표 또는 조합원 명의로 직불금 신청가능한지?

✓ 법에선 실경작자에 대한 소득보전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임차농지도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 법인과 법인대표 또는 조합원 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법인의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신청 가능
- 단, 법인이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법인 소유 농지를 임대해준 농지는 직불 신청 농지에서 제외해야 함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등록자가 사망시에는 사망 승계에 대한 별도의 절차 없이 변경등록 신고기간(9.30)까지 구비서류*를 갖추고 변경신청하면 됨

* 구비서류는 ①승계의사 확인서, ②사망진단서(주민등록등본), 뇌사판정서 ③고령·중환·수감·실종 증빙서류, ④농업인 증명(경영체등록 요건) 중 하나

✓ 변경등록 신고기간(9.30)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직불금이 지급되기 이전까지 승계신청하여야 함

- 다만, 직불금은 일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승계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지급이 불가함

'20년 5월 직불금 신청 후 사망한 기존 직불금 수령자 A의 배우자 B가 '20년 직불금을 승계하려고 하는데, A가 '19년 7~10월까지 주소를 이전하여 배우자 B와 주소를 달리 한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인지?

✓ 배우자 B는 A가 사망하기 직전 1년 이상 A와 주소를 같이 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승계가 불가능하며, 신규 진입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대상자에 해당

- 단, 직불금 수령자인 A가 사망 전 **치료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 (요양 목적은 주소 예외사유 불인정)하여 승계 가능

직전연도에 직불금을 수령하였던 A가 '20년 직불금 신청 후 사망하고, 사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며느리가 해당 농지를 포함하여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대상자인지?

✓ 며느리도 승계 대상자에 포함되므로 사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여 영농에 기여하고, 이후에도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의 승계자 요건을 충족시 A가 직불금을 수령하였던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농지를 포함하여 더 넓은 지급대상 농지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를 포함하여 직불금 지급 가능

사망자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자와 주소를 1년 이상 같이하고, 함께 경작하였을 경우 승계가 가능한지?

✓ 승계 대상자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사실혼 관계였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자는 승계할 수 없음

'19년 6월에 귀농하여 처음 농업에 종사한 A씨는 '20년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신규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후계농, 전업농육성대상자, 등록 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휴경 면적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한 자 등의 대상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따라서 A가 후계농, 전업농육성대상자가 아니라면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다만, '21년에는 종사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법령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대상자에 해당 가능

✓ (참고) 등록 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휴경 면적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한 자의 판단 기준(ⓐ+ⓑ+ⓒ 모두 충족시)

ⓐ **경작면적 및 기간 증명** : 농업경영체(경영주 또는 경영주외)에 등록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등 1천㎡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경우 인정 원칙(시스템에서 확인)

* 기간 : '19.12.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19.1.1이전부터) 경영체에 등록

- 다만, '21년까지는 지급대상 농지등 1천㎡이상에서 직전 3년 동안 1기작 이상 재배하고, 90일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 1년 이상 종사로 인정

ⓑ **실경작 여부 확인** : 경작사실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당년 및 전년도 영농자재 구입 등)

ⓒ 다만, 기존 대상자의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시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

* 정당하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자와 농지 분할을 해준 기존 대상자 모두 지원 제외 및 등록제한

수년간 직불금을 수령하던 A가 직불금 신청완료 후 농지를 B에게 판매한 경우 직불금 수령자는 A가 되는지? B가 되는지?

✓ 직불금 지급요건은 이행점검 완료일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농지매매 시점에 따라 달리 판단

- 이행점검 완료일 이후 농지를 매매하였다면 A가 직불금 수령
- A가 이행점검 완료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B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변경등록신고 할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B가 됨
- 다만, A가 B에게 임대차하여 당해 연도에 계속하여 해당 농지에서 경작함을 변경등록신고 할 경우 지급대상자는 A가 됨

농촌에 거주하는 A씨는 '14~'16년에 직불금 지급대상농지 3천㎡를 경작(휴경면적 없음)하고,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17~'19년에는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면 '20년에 다시 경작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인지?

✓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 농지가 '17~'19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이면서, '16~'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업인의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위의 사례는 농지가 '17~'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짐

① 만약, '17~'19년 기간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지는 않았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농지가 '17~'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에 해당하고, 농업인 A도 '16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20년에 신청 가능

② 그러나, '17~'19년 기간 해당 농지에 대하여 본인이 경작하지 않으면서 직불금도 받지 않았다면, 농업인 A는 '16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나 해당 농지가 '17~'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20년 직불금 신청이 불가

- 다만, '17년~'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지급받은 **1천㎡이상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할 경우**, 농지와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20년에 임차농지에 대해서 직불신청 가능

경영주외 농업인이었던 아들 A가 세대분리하여 경영주가 되었을 경우 첫 해부터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 경영주가 그 동안 전체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A는 자기 몫의 지급대상 농지 1천㎡(휴경면적 제외)가 없으므로 금년에는 지급대상자가 아님

- 금년에 지급대상농지 1천㎡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내년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A가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직전 3년 중 1년 이상 경영주가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자기 몫의 지급대상 농지 1천㎡(휴경 면적 제외)를 경작하였고, 법령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대상자에 해당 가능

✓ 한편, 신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아들 A가 결혼하여 세대분리 했다면 별도의 농가 경영주로 소농 또는 면적직불 신청이 가능하나, 아들 A가 미혼이라면 세대분리 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아 기존 부모 농가에 포함됨을 유의,

- 즉, 이 경우 ① 소농을 신청한다면 동일 농가이므로 기존 부모님과 아들 A가 각각 소농직불을 신청할 수 없으며, 1인만 신청 가능함 ② 부모님과 아들 A가 각각 면적직불을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농지 분할의 사유를 증명하는 경우에만 가능

세대를 분리하지 않은 부부가 각자 직불금 신청가능한지?

- ✓ 기본형 공익직불은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구분되고, 소농직불은 농가단위로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면적직불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지급
  - 이에 따라 직불금을 많이 받기 위한 농지분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보다 신청면적이 적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분할하여 각자 신청할 수 없음
  - 아울러, 소농직불은 농가단위로 신청하므로 부부가 분리하여 신청하는 것이 불가하며, 면적 직불은 각자 신청은 가능하나 정당한 사유* 여부 및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을 잘 확인하여야 함
    * 소유권이전, 임대차종료, 농지전용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 지원 가능(동일 농가 내에서는 임대차를 통한 농지 분할 불가)
  - 기존 직불제에서도 부부가 각자 신청하여 받아 왔다면 면적직불은 각자 신청 가능

남편이 경영주, 아내가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농가에서 남편이 소농직불금, 아내가 면적직불금을 신청가능한지? (기존에는 남편만 직불금 수령)

- ✓ 소농직불은 농가단위로 지급되므로 한 농가에서 소농직불과 면적직불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음
  - 즉, 동일 농가내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이하 또는 면적직불금 산출액이 120만원 미만 등이고, 다른 소농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농직불금을 농가내 1인이 신청할 수 있고,
  - 소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적직불금을 신청
- ✓ 따라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인 남편이 소농직불을 신청하거나 면적직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내는 신청할 수 없음
  * 참고로 그 동안 남편만 직불금을 수령하여 왔기 때문에 아내는 아직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직불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함

아내가 경영주이고, 남편이 경영주 외 농업인일 경우 아내 명의로 임차한 농지를 남편명의로 신청가능한지?

- ✓ 직불금은 경영체 단위가 아닌 농업인 개인이 신청하여 요건에 맞는 지급대상자를 선정·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의 관계가 부부라 할지라도 지급요건을 개인별로 확인해야 함
  - 따라서, 남편명의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남편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4. 구비서류



직불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직불금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내) 또는 2건(관외)이 필요

- 이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거나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농업인 등은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 없으며, 변경 또는 추가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됨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

  ①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② 연간 9백만 원 이상 농산물 판매증명서,

  ③ 해당 시·구에 1년 이상 거주 + 1천㎡ 이상 경작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의 정보로 관내·관외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 관내·관외 경작사실확인서는 신청인의 해당 필지에 대한 실경작 증명을 위한 서류이므로 원칙적으로 생략 불가

- 다만, 직전연도와 신청대상 농지가 같고, 직전연도와

  ① 주소지가 같거나,

  ② 관내에서 주소지 변동이 있었거나,

  ③ 직전연도에 관외 경작자였다가 주소를 이전하여 관내경작자가 된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직전연도에 정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경우, 전년과 같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나 지급대상자 요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 등록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면제가 가능한지?

✓ 관련 증빙서류 제출 면제 가능. 단,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

- 직전연도와 같이 지급대상 농지나 지급대상자 요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됨
- 다만, 농지(필지) 추가 등록신청, 주소 변경, 임대차 기간 종료 등 여건 변화 시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타인의 농지를 무단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소유자가 신청인이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농장주 확인서 등 무단점유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능

-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상속인*에게 무단 점유가 아님을 확인

  *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름

임대차 계약기간 중 농지주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 임대차계약서는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이므로

- 농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농지주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받아야 함

5. 지급 금액



면적직불금 산정시 구간별 단가 적용 순서는?

✓ **논·밭 진흥지역 → 논 비진흥지역 → 밭 비진흥지역**

- 1. 논·밭 진흥지역: 면적에 따라 해당되는 구간별 단가를 가장 먼저 적용
- 2. 논 비진흥지역: '1'의 면적 이후부터 해당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 3. 밭 비진흥지역: '1' 또는 '2' 합산면적 이후부터 해당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A농가가 농사짓는 면적은 총 9ha이다. 그런데 4ha는 논 진흥지역, 3ha는 논 비진흥지역, 2ha는 밭 비진흥지역이다. 이 경우 면적직불금 산출방법은?

✓ **(2ha×1구간 논 진흥지역 단가)+(2ha×2구간 논 진흥지역 단가)+(2ha×2구간 논 비진흥지역 단가)+(1ha×3구간 논 비진흥지역 단가)+(2ha×3구간 밭 비진흥지역 단가)**

	1구간	2구간	3구간
논·밭 진흥 4ha	2ha×205만 원	2ha×197만 원	
논 비진흥 3ha		2ha×170만 원	1ha×162만 원
밭 비진흥 2ha			2ha×100만 원

직불금의 지급상한면적은 얼마이며, 농업인 등이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지급상한 면적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농업인등이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접수는 모두 하고, 직불금은 상한면적까지만 지급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쌀고정, 밭고정,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논+밭) 면적의 합이 지급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을 인정

	농업인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지급상한 (논·밭 합산)	30ha (다만, 30ha 초과시 '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하여 인정)	50ha (다만, 50ha 초과시 '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하여 인정)	400ha

농지형상에 대한 이행점검시 10필지 중 1필지가 전체 폐경일 경우, 해당 농업인의 감액처분은?

✓ 농지형상 미준수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 즉, 미이행한 부적합 농지는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은 농지에 대해서는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신청 10필지 중 9필지는 적합하나, 1필지가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를 못해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 1개 필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처리, 나머지 9개 필지는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조치

A농업인의 경작면적이 0.5ha를 초과하여,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보다 경작 면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액이 소농직불금 보다 적을 수 있는지?

✓ 면적직불금이 소농직불금인 120만원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소농대상자들과 같이 나머지 소농요건인 ②~⑧ 지급요건을 충족할 시, 소농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소농 지급요건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0.1ha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종전 '논이모작') 등과 기본직불금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기본직불금과 선택직불금 중복여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5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되며, 기본직불금과 선택직불금은 각각 지급요건(농지 및 농업인) 충족시 중복신청 가능

* 다만, 경관보전직불(동계)과 논활용직불(논이모작)은 같은 경작 농지에 대하여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6. 이행점검

직불금 이행점검시 농작물이 없을 경우 안내 및 조치 방법

✓ **해당농지 이행점검 시 농작물이 없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확인**

- 해당 농지등에서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하는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시에도 연중 1회 이상 경운 여부 등의 지급요건을 이행점검 완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 특히, 임야는 '16.1.21.이전부터 형질변경을 하고,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여 농지법 시행령의 경과규정에 따라 농지로 인정받고 있는 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야 함
  * '16.1.21이후에 형질변경하여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임야라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지원대상 농지에 포함될 수 없음
  * '16.1.21 이전부터 직불금을 지급한 임야인 경우에도 형질변경 없이 방치 수준의 임야라면 농지가 아니므로 이행점검시 적발 필요

휴경과 폐경의 범위?

✓ 1 **휴경**(농지법 시행령 제18조 유휴 농지의 범위 참조)

① 경운 및 간단한 농작업으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농지로써 해당 논·밭 작물을 식재하지 않고 다음 작기로 넘기는 경우

- 지력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
-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 작물 수확 완료 후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식재를 위해 일시적으로 휴경하는 경우 휴경으로 보지 않음

2 **폐경**

① 작물의 경작지로 쓰던 땅을 휴경지로 놀리는 경우로 관목, 콘크리트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창고, 농로, 농기계 보관소 등의 면적 처리방법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기준을 미준수한 면적 부분은 해당 면적만큼 직불금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하고 남은 농지등에 대한 기본직불금의 10% 감액조치
다만, 이행점검 과정에서 등록된 농지 중 일부 면적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만 제외하고 10%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

* 1) 유지(웅덩이), 2)양·배수시설, 3)수로, 4)포장된 농로, 5)제방,
6)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내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농지,
7) 간이퇴비장, 8)농막(20㎡이하, 주거목적 제외), 9)간이저온저장고(33㎡이하),
10) 간이액비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

(참고) 기본직불금은 지급요건으로 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지, 수로, 농로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하였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하지 않음

(참고) 농지의 기능과 형상유지 시 시설*면적 지급 가능(휴경 시 연 1회 이상 경운 필요)

* 시설: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의미.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에 미포함

7. 부정수급



'16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것을 '20년에 적발한 경우, 등록제한 기간은?

✓ 등록제한 기간은 위반행위를 한 시점이 아닌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

- '16년 수령한 직불금은 종전의 쌀, 밭직불금 등으로 종전의 법을 적용하여 적발 시점부터 5년간 등록제한
  * 적발시점이 금년('20년) 직불금 지급전이라면 금년('20년)부터 5년간, 금년('20년) 직불금 지급 이후 적발시 다음연도('21년)부터 5년간 등록제한
- 위반행위 시기에서 적발 시기 사이에 직불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을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

'20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것을 '21년에 적발한 경우, 등록제한 기간은?

✓ 등록제한 기간은 위반행위를 한 시점이 아닌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

- '21년의 적발시점이 '21년 직불금 지급 전 이라면 해당연도('21년)부터 최대 8년*을, 직불금 지급 이후에 적발된 경우라면, 다음연도부터 최대 8년을 기산
  * 소농직불금의 경우 8년, 면적직불금의 경우 5년

부당수령 신고를 하여 신고대상자가 부정수급자로 판정이 된다면 해당 농지만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을 받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농지가 제재를 받게 되는지?

✓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소농직불의 경우 그 농가 구성원 모두)가 소유한 모든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도 해당 농지에서는 직불금 신청이 불가능
- 다만, 등록제한 기간 중인 부정수급자 소유의 농지를 매입하여 자경하거나 매입자가 임차해 준 경우, 해당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부당수령된 직불금의 환수 가능 기간(소멸시효)은?

✓ 국가 보조금의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 등을 고려하여 5년을 적용

▸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9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3조의2, 「국세기본법」 제27조

환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 대상자가 사망하기 전 환수 결정이 내려졌으나, 미납한 상태에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에 대하여 직불금 환수

- 다만, 대상자가 사망한 이후 부당수령 사실이 밝혀진 경우 사망자에 대한 환수 결정은 무효이므로 환수 불가

▸ 관련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국세징수법」 제37조제1항

부당수령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①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②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③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④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⑥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관련법령: 「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4조제2항

8. 기타 사항



등록 신청자의 신청서에 타 시·군·구 소재의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처리 방법은?

✓ 접수받은 읍·면·동에서 타 시·군·구의 신청사항까지 전부 전산 입력하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타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

- 신청서 등의 사본을 이송 받은 지급 관할 읍·면·동은 이송된 신청서의 정보 누락 및 적정 여부,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고 등록증 발급 등 후속절차 추진

  * '20년부터 직불시스템 내의 지자체간 이송시스템을 활용하여 pdf로 전송.
    다만, 업무 여건에 따라 기존방식인 우편, 방문, 팩스 등도 가능

  ** 사본 미이송으로 인한 신청 누락에 대한 책임은 최초 접수·입력한 읍·면·동에 있음

  *** 사본 이송이 완료되었다면 이송받은 지급 관할 읍·면·동이 입력사항 및 첨부서류 확인 등 직불금 적정 지급에 대해 최종 책임

경계가 직접 연접하지는 않았으나, 연륙교 등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연접한 지역의 경우 연접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 비록 행정구역 경계가 직접 연접하지 않더라도 연륙교 등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상호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예시) 하동군 ↔ 남해군, 해남군 ↔ 진도군

금융기관 등에서 직불금 수령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공해도 되는지?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불제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므로 제공 불가

- 다만, 직불금 수령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령내역 제공 가능

소농의 경지면적을 0.5ha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 소농직불금의 목적은 우리나라 농가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고 포용하기 위한 것임

- 기존의 직불금 수령 경영체의 면적 분포를 보면 전체의 47%가 0.5ha 이하를 경작하고 있고,
- EU 농업 직불제에서 사용 중인 소농기준 선정방식을 국내에 적용 시 소규모 농가 평균 경지면적은 0.5ha 수준임을 감안하였음

법상 0.5ha 초과 경작 농가도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유는?

✓ 경작면적 0.5ha를 초과하는 농가 중 면적직불금 지급액이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의 지급액인 120만원보다 적은 역전현상 일부 발생 가능

- 이에 따라 농가 규모에 따른 직불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 경작면적 외에 나머지 소농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소농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17년도에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어 '18~'19년 동안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했다('17~'19년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은 신청이력 없음). '20년에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한지?

✓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 불가능

- 친환경농업직불금과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은 별개의 사업으로, '17년에 친환경농업직불금만 지급받았던 해당 농지는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남편이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에 대하여 배우자가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지?

✓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처분 전에는 누구도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음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함 (「농지법」 제10조제1항, 2020.2.11., 일부개정)

- 따라서 배우자의 직불금 신청은 불가능

부록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칙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3. "논농업"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4. "밭농업"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5.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6. "초지"란 「초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토지를 말한다.
7.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시행령** **제2조(논농업·밭농업의 범위)**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다만,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한다.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

	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③ 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법률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법 제23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장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법률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기본직접지불제도"라 한다)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선택직접지불제도"라 한다)로 구성한다.
법률	**제6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농업인등으로 한다. ②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법률	**제7조(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

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은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과 그 밖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시행령

제4조(소규모농가의 범위)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란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농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법률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한다. 이하 제20조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다만,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나.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태풍이나 홍수 등「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나.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태풍이나 홍수 등「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

2.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농지법」 제36조·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 한정한다)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5.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이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서의 제한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구·지역·단지의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지등의 면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휴경 중인 농지등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본다. 가.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 면적이 제8조에 따른 지급

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나. 등록신청연도 직전 최근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된 면적이 등록신청연도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4.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시행령 **제5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인 경우

가. 같은 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 연접한 다른 시·군·구의 농지등을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이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라 한다)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가.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등(연접한 다른 시·군·구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경작하는 농업법인

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법인

↳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시행규칙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라 한다)의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하 "농촌"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가. 농업인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4.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이하 이 장에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가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계속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이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가. 농촌에 주소를 둔 농업인

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5.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 이 경우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에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등이어야 한다.

가. 농업인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나. 농업법인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시행규칙

제3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 ① 법 제9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매매·상속·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는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률

제10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농가의 구성원(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농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농업법인은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다만, 농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각각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영농 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4.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본문의 면적을 초과하나 제1항제1호 단서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모두 해당하는 농가 중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액의 합이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단가 보다 낮은 경우 지급대상자로 하여금 소농직접지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농직접지불금의 구체적인 지급단가, 지급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7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지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 시행령 **제8조(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의 농가당 지급단가는 120만원으로 한다.

② 소농직접지불금은 법 제15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법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률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면적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9조(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1. 1구간: 2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2. 2구간: 2만제곱미터 초과 6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3. 3구간: 6만제곱미터 초과 면적 구간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란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농지등(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단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단가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하 “농업진흥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의 순으로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산출한다.
↳	시행령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면적직접지불금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행령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라 한다)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30만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지급상한면적으로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이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400만제곱미터. 이 경우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한다. 3. 제2호 외의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50만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지급상한면적으로 한다.
법률		**제12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 시행령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2.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할 것
3. 이웃한 농지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할 것
4.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행규칙

제4조(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시행령

제13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농약: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농산물의 생산단계, 유통·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2. 화학비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및 비료량 기준

↳ 시행규칙

제5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①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농약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2. 농약 잔류허용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및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유통·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②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농경지의 유기·무기물질 및 화학성분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비료량 기준: 작물과 토양의 성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정하는 비료량 기준

↳	시행령	**제14조(교육 이수)**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1.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2.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등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시설과 인력을 갖춘 생산자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6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2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교육 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7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교육기관 지정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기관 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행령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	시행규칙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15조, 영 별표 3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률	**제13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대상작목 선정, 부과 절차 및 방법, 통보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6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배면적 조정의 기본방향
2.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한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작목의 선정 및 부과 대상면적의 규모
3. 그 밖에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에 재배면적 조정의무 대상작목, 부과 대상면적 및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적어 알려야 한다.

시행규칙 **제9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등록 및 사후관리

법률 **제14조(등록신청 및 공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
2.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3. 등록신청의 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기본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내경작자[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등을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등록신청의 공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판은 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의 게시판을 말하고,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일간신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제외한다)의 기간은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부터 등록신청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1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가 같은 시·군·구 내에서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의 구성원 중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이 대표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1.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이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

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 및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다.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라. 법 제9조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

마.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동이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이하 "관내경작자"라 한다)인 경우: 1)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경작사실에 관한 확인서(이하 "경작사실확인서"라 한다).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에 소재한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읍·면·동 공무원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으로 한정한다)

3)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

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한다)

4)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한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내경작자 외의 자인 경우: 가목1)의 서류와 가목2)부터 6)까지의 서류 중 2개 이상의 서류

4. 소농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영 제4조·제7조에 따른 지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영 제4조에 따른 농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

나.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및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바.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인이 직전 연도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1.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한 농지등 외에 추가로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이 없는 경우: 제2항제1호의 서류
2.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등록신청연도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제2항제2호가목의 서류 중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제2조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호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등록신청연도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경우(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와 주소지의 변동이 없거나 등록신청한 농지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항제2호가목의 서류 중 제2조제3호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호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등록신청연도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영 제5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제3호의 서류
   가. 등록신청인과 등록신청대상 농지등의 주소지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와 같은 경우
   나. 등록신청대상 농지등이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와 같은 때에는 등록신청한 농지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거나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관내경작자 외의 자로 등록한 이후 주소지를 등록신청대상 농지등 소재지로 이동하여 관내경작자가 된 경우

법률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의 등록) ① 읍·면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그 결과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재심사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2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읍·면·동에 두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농지등 소재지의 읍·면·동 관할 통·리의 마을대표
2. 해당 읍·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3. 해당 읍·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4. 해당 읍·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행규칙	**제13조(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여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조사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3.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행규칙	**제14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읍·면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조사결과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이하 "등록거부 통보서"라 한다)에 등록거부 사유 및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급대상자 등록거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시행 규칙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① 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재심사 결과 재심사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거부된 내용을 시정하여 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등록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률

제16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농업인등이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 농지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시행 규칙

제16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등록사항을 말한다.

1.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소재지·소유자 등 농지등
2. 농지등의 자경(自耕)·임차(賃借)·휴경(休耕) 및 폐경(廢耕) 등 농업현황
3. 농업시설 종류 및 면적 등 재배현황
4.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

나.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 다만,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서만 첨부해도 된다.

다. 영 제7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등록 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농지등의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를 신고하거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다만, 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⑤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의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법률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등의 소유·거래 및 휴경 등 등록사항(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수거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거주지,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농자재판매처, 출하처 등에 출입하여 조사·수거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그 대표자, 대리인, 피용자, 이행보조자, 가족 등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8조에서 같다)가 조사등 현장에 입회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등에 있어서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한 자를 이 조 및 제18조에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장 조사등을 할 때에는 조사등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사·수거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법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등록자의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처분의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7조(조사계획의 수립·통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은 그 내용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다.

시행규칙 **제18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① 시장·군수·구청장등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수거 등의 사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법률 **제18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비치 대상 서류의 종류, 보관·비치의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9조(서류의 보관 · 비치 의무)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보관 ·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및 경작사실확인서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변경등록 확인서
4.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약 · 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서류, 종자 · 육묘 등의 구매서류, 교육 이수증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 및 등록 · 변경등록과 관련된 서류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간 보관 · 비치해야 한다.

법률

제19조(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2.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9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어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제12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제18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제10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그 농가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8조(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률		**제20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등록된 모든 농지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직접 관련된 농지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해당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부당이득금, 제2항의 제재부가금 또는 제3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9조(체납가산금의 요율)**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 시행규칙	**제20조(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제5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법률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한다.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2.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2조(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선택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에 관한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방법과 절차, 환수 및 지급제한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 시행령	**제20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 시행령	**제2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 시행령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친환경농업 이행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되, 지급면적의 상한은 지급대상자당 5만제곱미터로 한다. ③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횟수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이 조에서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동안 계속하여 지급 2.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이 조에서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총 3회 지급 ④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계속하여 지급하는 경우 6회째(같은 필지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합산한다)

		부터는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2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① 영 제2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시행령	**제24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23조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2.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21조에 따른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시행령	**제25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등은 확인·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행령	**제26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4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2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제2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 시행령	**제27조(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친환경축산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친환경안전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안전관리인증농장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 시행령	**제28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물(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축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시행령 **제29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친환경축산물의 생산량을 곱하여 산출하되, 그 지급금액의 상한은 지급대상자에 대해 1회당 3천만원으로 하고, 지급횟수는 총 5회로 한다.

시행령 **제30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① 영 제30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시행령 **제31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0조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신청인의 농장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일 것
2. 지급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5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4조에 따른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행령	**제32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1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제33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31조에 따른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1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6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제3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시행령	**제34조(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61조에 따른 농촌과 준농촌 지역의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3호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하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경관작물"이란 초화류(草花類)로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을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시행령 **제35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농업인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시행령 **제36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은 농지 및 초지(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농지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이라도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부터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점검 시까지 경관작물의 재배·관리가 가능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등

시행규칙 **제27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 영 제36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농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의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등
4.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등

시행령 **제37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지급대상 농지등 면적의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로 하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로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28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 면적의 상한을 적용할 때 같은 농지등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해 각각 면적의 상한을 적용한다.

↳ 시행규칙 **제29조(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영 제39조에 따른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 대상 마을대표 및 주민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시행령 **제38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읍·면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4항에 따라 읍·면장이 송부한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읍·면장 및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업신청서의 제출 및 선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3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추진위원회는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경관보

	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를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선정 통지서로 읍·면장,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령	**제39조(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 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가 선정되면 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경관작물의 재배·관리 및 그 밖의 마을 경관보전 활동에 관한 협약(이하 "마을경관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군·구 및 해당 읍·면·동의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시행령	**제4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38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등에게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한 후 지급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경우 경관작물의 재배·관리 상태에 관한 확인·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을경관보전협약이 체결된 마을의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에 마을 경관보전 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점검, 마을 경관보전 활동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제4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38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

	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8조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6과 같다.

제4절 논활용직접지불제도

시행령	**제42조(논활용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논활용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식량자급률의 증진,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논활용직접지불제도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이하 "논활용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논활용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시행령	**제43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①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으로 한다. 1.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2.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3. 그 밖에 식량자급률의 증진,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 등을 위해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이 필요한 농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한다.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2.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50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이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농지,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

↳ 시행규칙

제32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영 제4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영 제40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농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의 농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5.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농지
6.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시행령

제44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①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업인등으로 한다.

1.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논을 활용·관리하는 자
2.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활용작물 재배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
3. 제50조제2항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논활용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5. 해당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분으로 한정한다)

↳ 시행규칙

제33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영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인등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농지가 같은 시·군·구에

있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등

2. 농업인등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와 농지가 같은 시·군·구에 있지 않은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인이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업법인
3.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 시행령

제45조(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해당 농지가 둘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인이 제44조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지를 조사·확인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면·동에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 결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44조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면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34조(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1. 해당 농지가 영 제43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신청인이 영 제4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의 경작사실확인서. 이 경우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제3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 규칙	**제35조(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에 두는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이하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관할 통·리의 마을대표 2. 해당 읍·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3. 해당 읍·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4. 해당 읍·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③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를 대표하고,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행 규칙	**제36조(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읍·면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인이 영 제44조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시행 규칙	**제37조(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	시행령	**제46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제45조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지급대상 농지 면적, 재배작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 소재지(해당 농지가 둘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읍·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신청인이나 신고인이 제44조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지를 조사·확인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은 제45조제3항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 결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44조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면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38조(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제3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의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1.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하는 서류
2. 제34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의 서류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영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 시행령

제47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급대상 농지를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관리할 것

		2. 식량자급률의 증진 또는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 등을 위해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논을 활용·관리할 것
↳	시행령	**제48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농업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면적당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 2.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경우: 400만제곱미터. 이 경우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한다. 3. 제2호 외의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행령	**제49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제47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이행하는지를 확인·점검한 후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행령	**제50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제49조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논활용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47조에 따른 지급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45조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39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은 별표 7과 같다.

제6장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법률 **제23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공익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본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단가체계, 준수사항 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행령** **제5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법률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환경부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농업인단체의 대표 5명 이내
   나.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언론인 5명 이내
   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자 5명 이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52조(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시행령** **제53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

		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시행령	**제54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시행령	**제55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시행령	**제56조(수당)**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53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장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법률	**제25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정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법률	**제26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6.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및 과태료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시행령	**제57조(기금의 재원)** 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이 법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말한다.

법률	**제27조(차입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조성·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 및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법률	**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법률	**제2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률	**제3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업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58조(기금의 관리 · 운용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업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 기금의 수입 · 지출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 시행령	**제59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법률	**제31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법률	**제3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법률	**제33조(기금 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률	**제3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제28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법률	**제35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법률	**제3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 적정성,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이용, 처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용·처리·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0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요청 사유
2. 자료 요청 기간
3. 자료 제공 범위 및 방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법률

제37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농업인: 성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2. 농업법인: 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또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등은 등록·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면·동(마을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정보
   가. 기본직접지불금: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의 등록 신청을 마감한 날 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영 제2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마감한 날 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영 제30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마감한 날 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의 제출을 마감한 날 마. 논활용직접지불금: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신청을 마감한 날 2.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가. 기본직접지불금: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영 제25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영 제3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마. 논활용직접지불금: 영 제49조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방법과 열람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제41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와 해당 농지등의 경작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률	**제38조(지도 등의 의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등록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또는 그 기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61조(지도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법 제21조·제22조 및 이 영 제20조·제27조·제34조·제4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선택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읍·면장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의 결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시행령

제62조(관리기관의 지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도등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지급대상자 등록신청·등록, 변경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2.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지도 및 단속
3. 법 제21조 및 제22조, 이 영 제4장(제2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의 지급, 지급대상자 선정·등록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선택직접지불금 지급제한·환수, 지급대상자 선정·등록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지도 및 단속
4.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기본직접지불금·선택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제61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시행계획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그 추진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고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률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6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제2항·제3항에 따른 조사·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1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나.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농약의 기준(농산물의 생산단계로 한정한다)
   다. 법 제12조제4호 및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마목(농산물의 생산단계로 한정한다)·바목(「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로 한정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라. 법 제1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서류 등의 보관·비치 의무(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조사·통보(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3.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위반사항 신고의 접수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이 항 제1호에 따른 조사·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6.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의 보관·비치 의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7.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시스템의 운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 및 면적직접지불금을 포함한다)
2. 법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논농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인정

3.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4. 법 제16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변경등록, 지급대상 농지등의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에 관한 신고 및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에 관한 조사
6. 법 제17조제2항·제3항에 따른 조사·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농약의 기준(농산물의 유통·판매단계로 한정한다)
   나.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화학비료의 기준
   다. 법 제12조제4호 및 별표 3 제1호마목(농산물의 유통·판매단계로 한정한다)·바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으로 한정한다) 및 사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라. 법 제1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서류 등의 보관·비치 의무(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
7. 법 제1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또는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8. 법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가산금의 부과·징수
9.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조사·통보(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17조제1항 및 이 항 제6호에 따른 조사·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1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항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법률

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이·통장,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등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규칙

제42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이장·통장 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 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선정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지도·홍보 및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신고
2.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률

제41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모범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및 방법,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규칙

제43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19조 및 영 제18조·제26조·제33조·제41조·제5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선정·등록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신고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사전에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하거나 조사·수사 중인 경우
4. 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행규칙	**제44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신청 및 지급대상자 등록을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2. 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의 조사를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3.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례
법률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3.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 시행령	**제6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및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 가능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신청 지원을 위한 준비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제2호에 따른 농약 및 화학비료, 제3호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및 제4호에 따른 사항에 대한 법 제17조에 따른 조사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의 변경등록, 지급대상 농지등의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에 관한 신고 및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및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에 관한 사무
10. 법 제20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부당이득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11. 법 제2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2. 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조사·통보에 관한 사무
14.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위촉·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15.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6.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무
2. 제32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제32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요건 이행여부 확인·점검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
4. 제3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무
5. 제42조제4항에 따른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현지조사에 관한 사무
6. 제42조제5항에 따른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무
7. 제44조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8. 제45조에 따른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무
9. 제48조제4항 및 제49조제5항에 따른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0.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논활용직불금 등록신청인에 대한 서면조사·현지조사 및 조사결과 심의에 관한 사무
11. 제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논활용직불금 변경등록신청인에 대한 서면조사·현지조사 및 조사결과 심의에 관한 사무
12. 제52조제1항에 따른 논활용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3. 제53조에 따른 논활용직불금의 등록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무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8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요건 이행 여부 확인·점

	검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 2. 제37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무 3. 제38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제3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무 5. 제44조제3항에 따른 경관작물 재배·관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점검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 6. 제52조제3항에 따른 논활용직불금 지급요건의 이행 여부 확인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

제9장 벌칙

법률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한 자 3.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4.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법률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에게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수거·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 칙

법률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5조에 따른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조(지급횟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제0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받은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제29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친환경축산보조금을 지급받은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	시행령	**제3조(지급대상자의 선정제한 및 등록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3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1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50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및 종전의「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조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는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시행령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및 밭농업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따른 처분·조치,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라 시행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및 밭농업직접지불제도는 각각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의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및 논활용직접지불제도에 따른다.

법률 **제4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2018년산 및 2019년산 쌀까지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은 쌀 10킬로그램당 26,750원(쌀 80킬로그램당 214,000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2019년산 변동직접지불금은 이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서 지급한다.

법률 **제5조(기금의 폐지 및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은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그 잔여액은 이 법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이입조치한다.

법률 **제6조(등록제한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등록제한 조치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등을 적용받은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7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이 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로 본다.

법률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다.

↳ **시행령** **제5조(친환경농업보조금 등의 지급중단·환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3조, 제23조의8, 제40조, 제40조의5 및 제40조의10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친환경축산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및 밭농업보조금의 지급중단·지급제한, 환수 및 등록제한의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규칙**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640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3조에 따른다.

법률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

②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③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자료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⑥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⑦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6호의2·제6호의3·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및 관리를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

제3장(제16조부터 제2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8까지)를 삭제한다.

제5장(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 또는 등록"을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정·등록"을 "선정"으로 한다.

⑧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정보 등 농식품사업 관련 정보

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의 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별표 4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란의 제37호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⑫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에 관한 자료,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에 관한 자료

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나목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⑮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⑯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지급대상 농지등에 관한 자료

별표 3 제73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⑲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6제1항제1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⑳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5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별지 제112호서식의 앞쪽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제16조·제24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제24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7조·제42조에 따라 받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논활용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받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받은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③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2항제1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④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9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2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직접 소득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4호서식 중 "직접 소득보조금"을 각각 "직접 소득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법률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령**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이나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이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규칙**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이나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이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업무별 문의처

업무 구분			담당부서 및 연락처
공익직불제 총괄 및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81
선택형 공익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제)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3
선택형 공익직불제(친환경축산직불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044-201-2354
선택형 공익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61
공익직불제 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000
신청·접수 및 직불금 지급			전국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
이행점검	1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지자체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2	비료 적정 보관·관리	지자체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3	가축분뇨 퇴비·액비화기준 준수	지자체 읍·면·동
	4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등 배출금지	지자체 읍·면·동
	5	하천수 이용 시 허가 등 취득과 관리	지자체 읍·면·동
	6	지하수 개발 시 허가 등 취득과 관리	지자체 읍·면·동
	7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관원 지원·사무소
	8	생태 교란생물 반입·사육·재배 금지	지자체 읍·면·동
	9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지자체 읍·면·동
	10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농관원 지원·사무소 * 지도기관은 지자체
	11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농관원 지원·사무소
	12	농약 안전사용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준수	농관원 지원·사무소, 지자체 읍·면·동
	13	농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중금속, 미생물, 항생제, 독소류 등)	농관원 지원·사무소
	14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농관원 지원·사무소, 지자체 읍·면·동
	15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관원 지원·사무소 * 지도기관은 지자체
	1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농관원, 지자체 시·군·구 및 읍·면·동
	17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농관원 지원·사무소

공익직불제 종합지침서

발 행 일 2020년 6월

발 행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노 수 현

편 집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장 김 재 민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 TF 사무관 이 용 관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 TF 주무관 김 영 철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 TF 주무관 박 준 영

제1장 집필에 도움주신 분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임 정 빈 교수

발 행 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 TF
우)39660
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
TEL : 054-429-4000
http://www.naqs.go.kr

편 집 처 ㈜비피에스